연구보고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희진
공동연구원 백혜정 김은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_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_ 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 시 원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출청소년이란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 상쇄를 위해 학계와 현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여 원가정의 지원 없이 성인기 이행에 직면하여 자립해야만 하는 가출청소년, 노숙 등 주거취약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의 실태와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가정 밖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및 FGI, 전문가 자문과 전문가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서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특성과 자립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 제시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과 학업 및 아르바이트 실태, 진로 및 자립지원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일부 진로계획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 대상의 2차 자료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이들의 가족과의 관계, 학업 의지, 근로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와 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준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 제도/환경적 영역의 중요성과 주거공간 및 주거비 지원,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성 등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였고,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일상생활/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의 6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가정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 시 원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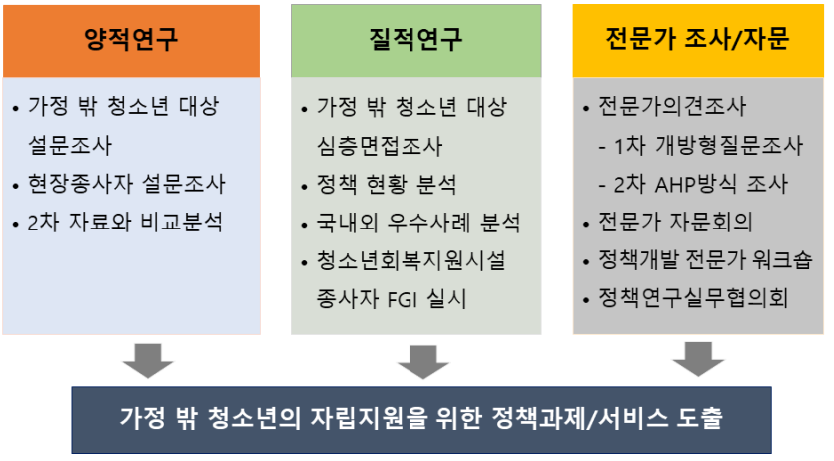
●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현황, 자립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 가정 밖 청소년관련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자립지원 우수 사례 분석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요구 분석과 2차 자료와의 비교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가정 밖 청소년 및 자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가정 밖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제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관련 학계·현장·법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가정 밖 청소년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실

태와 학업, 아르바이트 실태, 진로계획, 자립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자립지원 요구 등을 조사하고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와 자립지원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가정 밖 청소년 조사결과 중 일부 조사항목은 2차 자료(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시설장)와 FGI를 실시함.
- 전문가 워크숍: 정책과제 개발과 질적자료 분석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관련 학계·현장·정책·법률전문가와 함께 연구내용과 조사지 개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회의를 개최함. 가정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연구내용 및 청소년대상 조사항목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고 이외에 정책개발 전문가 워크숍과 질적자료 분석 워크숍을 개최,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4.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규모를 기준으로 9~18세 청소년 중 약 56,000여 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문제를 비롯하여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자립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결국 자립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되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며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상태로 볼 수 있음.

-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금전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원활한 대인관계, 취업 및 직장생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립준비는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충분한 준비 없는 자립 독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 일자리에서 그대로 성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자립준비에는 성인기 삶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계획, 준비가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주거 및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낮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부담 등)와 낮은 자립준비정도와 자립의지와의 관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정책현황 분석 결과

●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자

립지원 정책을 법적근거, 정책대상, 급여형태 및 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내용 및 자산형성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자립관련 시설 이용 연령 및 이용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여야 함.
-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주로 현물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처럼 자산형성사업 및 자립정착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전담/총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며, 지역별 자립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매칭펀딩 방식이나 지자체 이양보다는 가능한 국비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례연구 결과

- 국내의 자립지원 우수사례로 보호 종결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民官) 협력사업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과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 특히, 사업 내용과 대상, 운영예시, 우수 사례,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립 사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립 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과 평가, 자립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다양한 진로 영역 개발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외 우수 사례로 영국의 센터포인트(Centrepoint), 미국의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Sasha Bruce Youthwork: SBY), 독일의 오프로드키즈 재단(Off Road Kids Foundation)과 갱웨이(Gangway), 프랑스의 알규 포아예(Foyer les Algues),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Apprentis d'Auteuil)의 사례가 포함되었음.

- 각 국가의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민관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 자립지원 전담총괄기구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평가 및 계획 수립, 직업 훈련의 다양화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4)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1) 설문조사

● 가정 밖 청소년 총 73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평균 15.6세에 처음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부분(73.2%)은 2회 이상, 약 40%는 일 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하였음.

-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는 가족 간 갈등과 가정 폭력이었음.
- 대다수(73.7%)의 청소년들은 가정을 나온 후 최소 두 군데 이상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일부는 가출팸을 경험하였음.
- 쉼터를 비롯하여 지원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 중 70%이상은 지원기관 및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만큼 정서적 어려움(스트레스,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분노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계획, 건강상태, 사회적 역량, 자존감, 삶의 만족도)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비율이 높아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해서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재학률은 53.1%, 학업중단율은 29.8%,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은 17%였음.

- 비재학생 중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청소년은 63.4%였는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준비율이 더 높았음.

- 학업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에게는 학업의지가 꺾이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자 청소년에게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경험이 있었는데, 연령이 높고 비재학중인 경우,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았음.

- 주로 비숙련 저임금 근로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이나 탈법 일자리를 경험하기도 하며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을 경험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자신의 능력(26.6%)과 적성(23.3%)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과반수가 다른 외부적 요소보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진로관련 활동 참여경험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54.9%가 경험하였으며 직업훈련은 36.5%가 경험하였음.

- 응답자의 43.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직업훈련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은 특히 진로와 관련된 정보 습득과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더 받고 싶어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희망직업으로 예술/디자인/방송계통, 이·미용 분야, 요리사/바리스타, 군인/경찰/공무원, 상담/심리/사회복지 분야, 간호사/간호조무사, 학교교사/보육교사 등이 전체 64.1%로 나타났으며, 매우 다양한 직업들을 선호하였음.

● 90%가 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시기를 독립하는 시기,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각각 73.4%, 74.9%).

● 자립의지에 대해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없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가정 밖 생활 이후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의지가 다른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자립의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취업관련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배움카드제도, 일학습병행제, 기타 정부지원 등) 경험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음.

- 자립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지원 경험률이 각각 60.3%, 60.1%로 가장 많았고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를 포함한 진로지도가 54.1%였음. 직업훈련 지원 35.8%, 취업정보 제공 32.7%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진로지도와 직업/취업관련 서비스 제공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줌.
- 자립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83%,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조사 결과를 2차 자료와 비교한 결과, 심리사회적 지원과 희망하는 진로지도를 위한 장기적,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자존감이나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일반청소년보다 근로경험과 직업/진로관련 활동/직업훈련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 희망교육수준이 낮았으나 3년 이내 취업계획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학보다 취업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향후 직업선택에 대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한 반면,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였으며, 미래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은 낮았음.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빠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임.

(2) 면접조사

● 만 15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연구 주제를 추출/분류하고 항목화하였음.

- 분류된 연구 주제로는 '가족', '기관생활', '현재 학업 상황', '학업 지속 의지', '근로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 '자립 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을 위한 준비' 등 12개 항목이었음.

● 추출된 주제 및 내용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인과적 조건으로는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중심현상은 기관 생활, 중재적 조건은 기관의 지원 및 지지, 상호작용은 자립을 위한 시도, 그리고 결과는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구분하였음.

-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양육체계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며,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은 학교나 또래 관계 등 주요 사회화 과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음.

- 또한 궁핍한 경제생활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이들의 진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도 못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지원과 지지는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 대안으로서 기관 및 종사자의 지원 방안,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지원, 지방 소재 기관의 역량 제고,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 연구,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방안, 근로 지원 방안, 건전한 재정 관리 지원 방안,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 지원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음.

5)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5명의 학계/현장/법률가를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및 범위에 대한 1차 개방형 조사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가출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가정 밖 용어가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하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가정문제로 집을 나왔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과 관련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등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음.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방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제도/환경적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에서는 1순위가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2순위가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부여, 3순위가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나타남.

●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90.3%인 11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비슷한 비율로 기존의 가출청소년, 양육거부/유기된 청소년, 가정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 빈곤 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 일시적/영구적 주거취약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아동양육시설(57.5%)이나 위탁가정 청소년(35.5%)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해 아동복지법 우선 적용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서비스 중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인관계 훈련, 생활교육, 경제교육, 건강지원, 진로지도 등은 90% 이상의 조사대상 시설/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자립정착금 지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이나 실제 제공하는 시설은 39%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것을 고려할 때 예산부족에 따른 응답임을 시사하였음.
- 또한, 현장종사자의 50%이상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및 서비스, 인력, 예산 등 관련 인프라와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결과: FGI 참여 종사자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업 중단 비율이 높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자립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낮아 취업 관련 기회가 주어져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낮은 자립의지 및 학습 수준, 경제적 열악함, 지원체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에 더하여 열악한 재정, 인력의 부족, 한정된 보호기간 등 지원시설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종사자들은 거주지 및 보증금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수준에 맞는 취업 지원,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지원기간의 조정 및 시설 연계 등을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시하였음.

5. 정책제언

선행연구 고찰과 정책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가정 밖 청소년과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관련 설문조사와 면접조사(FGI 포함), 학계/현장/법률전문가 대상 2차례의 전문가의견조사, 2차 자료와의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방향성과 총 2개 영역의 29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②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 ③통합적 자립 지원, ④발달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 ⑤자립을 위한 영역별 지원 내용의 다변화 및 단계적 자립지원, ⑥자립준비과정에서의 재도전 기회 제공, ⑦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지원 환경 구축을 제시함.

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먼저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 용어의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함.
- 인프라 구축 제안내용으로 ①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②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④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됨.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①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②자립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을 제안함.

● 인력 및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①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종사자 처우개선, ②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제안함.

● 이외에 ①지역 편차 없는 고른 자립준비 기회 제공, ②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3)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주거지원을 위해 ①주거지원 우선 확대, ②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을 제안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현금) 지원과 관련하여 ①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②생활비 및 학비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음.

●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①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②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를 제안하였음.

● 일상생활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교육과 건강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①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②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홍보, ③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 지원 확대를 제안함.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 ①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②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를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으로 진로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①향후 직업 전망을 고려한 진로·취업지

원 다각화, ②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③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④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⑤근로 환경 개선, ⑥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⑦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음.

차 례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2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 9
   1) 선행연구 고찰 ····· 9
   2) 관련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 9
   3) 국내외 자립지원 우수사례 분석 ····· 9
   4)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요구 분석 ····· 10
   5) 일반 청소년과의 진로계획 비교 ····· 10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11
3. 연구방법 ····· 11
   1) 문헌연구 ····· 11
   2) 전문가 자문회의 ····· 11
   3) 양적조사 ····· 12

4) 질적조사 ····· 14
5) 사례조사 ····· 14
6) 기타 연구방법 ····· 15
4. 연구추진체계 ····· 16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 19
1) 가출청소년의 개념 ····· 19
2) 인식의 전환: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 21
3) 가정 밖 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 24
4)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 ····· 27
2.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 29
1) 가정 밖 청소년 현황 ····· 29
2)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 ····· 33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 42
1) 자립의 의미 ····· 42
2) 자립과 성인기 이행 준비 ····· 46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 48

Ⅲ. 정책 분석: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1. 정책 분석틀 ····· 53
1) 사회정책 분석 기준 ····· 53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분석틀 ····· 56
2. 자립지원 정책 현황 ····· 59
1) 여성가족부 정책 ····· 59
2) 보건복지부 정책 ····· 71
3. 소결 및 시사점 ····· 83

Ⅳ. 사례 연구: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

1. 국내 사례 ····· 89
   1)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 ····· 89
   2)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립지원 ····· 97
2. 국외 사례 ····· 103
   1) 영국 ····· 103
   2) 미국 ····· 109
   3) 독일 ····· 118
   4) 프랑스 ····· 124
3. 소결 및 시사점 ····· 136
   1) 국내 사례 ····· 136
   2) 해외 사례 ····· 137

Ⅴ.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1. 설문조사 ····· 148
   1) 조사개요 ····· 148
   2) 조사결과 ····· 156
2. 면접조사 ····· 284
   1) 조사개요 ····· 284
   2) 면접결과 ····· 290
3. 소결 및 시사점 ····· 325
   1) 설문조사 ····· 325
   2) 면접조사 ····· 332

Ⅵ.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 345
   1) 조사개요 ····· 345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 347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 369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 381
1) 조사개요 ····· 381
2) 조사결과 ····· 383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 403
1) 조사개요 ····· 403
2) FGI 결과 ····· 404
4. 소결 및 시사점 ····· 413
1) 전문가 의견조사 ····· 413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 417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 419

Ⅶ.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423
1) 문헌연구 결과 ····· 423
2) 정책현황 분석 ····· 425
3) 국내외 사례 연구 ····· 425
4)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 ····· 426
5) 전문가 및 종사자 조사 ····· 431
2.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 436
1) 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 436
2)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 ····· 437
3) 통합적 자립 지원 ····· 439
4) 발달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 ····· 441
5) 자립을 위한 영역별 지원 내용의 다변화 및 단계적 자립지원 ····· 442
6) 자립준비과정에서의 재도전 기회 제공 ····· 444

7)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지원 환경 구축 ····· 445
3. 정책과제 ····· 446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 ····· 448
2)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 468
3) 자립지원 정책 추진 체계 및 자립지원
로드맵 ····· 487

참고문헌 ····· 491

부 록

1. 가정 밖 청소년용 조사지 ····· 515
2. 현장 종사자용 조사지 ····· 532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2
표 Ⅰ-2.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 13
표 Ⅰ-3.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개요 ····· 14
표 Ⅰ-4. 자립지원 우수사례 조사개요 ····· 15
표 Ⅱ-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 ····· 27
표 Ⅱ-2.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 28
표 Ⅱ-3.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 30
표 Ⅱ-4.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청소년쉼터 지원예산 및 이용 청소년 수) ····· 30
표 Ⅱ-5. 가출 경험 청소년의 비율 ····· 31
표 Ⅱ-6. 자립준비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요소 ····· 43
표 Ⅲ-1.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시설유형별 법적 근거 ····· 60
표 Ⅲ-2.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대상 자립지원 정책 ····· 62
표 Ⅲ-3. 여성가족부: 자립지원 관련 내용 ····· 64
표 Ⅲ-4.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포함) 운영 예산 현황 ····· 68
표 Ⅲ-5. 여성가족부: 쉼터유형별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예산배정 기준 ····· 69
표 Ⅲ-6.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법적 근거 ····· 71
표 Ⅲ-7. 보건복지부: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산형성위한 법적 근거 ····· 73
표 Ⅲ-8.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대상의 자립지원 정책 ····· 74
표 Ⅲ-9.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정책 대상 예시 ····· 75
표 Ⅲ-10.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내용 ····· 76
표 Ⅲ-1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단계 ····· 77

표 Ⅲ-12.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 (2015~2018) ····· 81
표 Ⅲ-13.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 (2009~2016) ····· 82
표 Ⅲ-14. 보건복지부: 지역별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 82
표 Ⅳ-1. 지역 운영기관별 주요 내용 ····· 94
표 Ⅳ-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시설 ····· 95
표 Ⅳ-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계획(2017년) ····· 96
표 Ⅳ-4.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 ····· 98
표 Ⅳ-5.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프로그램 내용 ····· 99
표 Ⅴ-1. 설문조사 개요 ····· 149
표 Ⅴ-2. 조사 참여 시설 및 청소년 현황 ····· 149
표 Ⅴ-3.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에 포함된 2차 자료 동일 문항 ····· 150
표 Ⅴ-4. 설문조사 내용과 출처 ····· 152
표 Ⅴ-5. 지역별 청소년대상 조사 현황 ····· 154
표 Ⅴ-6. 청소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57
표 Ⅴ-7. 하룻밤 이상 가정 밖 생활 경험 횟수 ····· 158
표 Ⅴ-8. 처음 집을 나온 연령 평균 ····· 159
표 Ⅴ-9. 가정 밖 생활을 모두 합한 기간 ····· 160
표 Ⅴ-10.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중복응답) ····· 162
표 Ⅴ-11. 가출팸 경험 여부 ····· 163
표 Ⅴ-12. 집을 나온 후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164
표 Ⅴ-13. 집을 나온 후 생활 계획 ····· 166
표 Ⅴ-14. 가족과의 관계 ····· 167
표 Ⅴ-15. 가족과의 관계 (가정 내 갈등 및 폭력이 주된 이유 1,2순위) ····· 167
표 Ⅴ-16.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 168
표 Ⅴ-17. 가정 학대 관련 항목별 응답률 ····· 169
표 Ⅴ-18. 집단별 가정 학대 경험 정도 ····· 170
표 Ⅴ-19.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여부 ····· 170
표 Ⅴ-20.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모님(보호자) ····· 171
표 Ⅴ-21. 스트레스 인식 정도 ····· 172

표 Ⅴ-22.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 173
표 Ⅴ-23.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 175
표 Ⅴ-24. 분노조절 ····· 176
표 Ⅴ-25. 무기력 정도 ····· 177
표 Ⅴ-26. 주의집중 ····· 178
표 Ⅴ-27. 우울 ····· 179
표 Ⅴ-28. 자살 생각 ····· 180
표 Ⅴ-29. 자살 계획 ····· 181
표 Ⅴ-30.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183
표 Ⅴ-31. 현재 고민거리 ····· 183
표 Ⅴ-32. 진로·진학 문제 ····· 184
표 Ⅴ-33. 가족과의 불화 ····· 185
표 Ⅴ-34. 경제적 어려움 ····· 185
표 Ⅴ-35. 향후 거취(생활) 문제 ····· 186
표 Ⅴ-36. 건강에 대한 인식 ····· 186
표 Ⅴ-37. 신체적 건강 ····· 187
표 Ⅴ-38. 정신적 건강 ····· 188
표 Ⅴ-39. 사회적 역량 ····· 190
표 Ⅴ-40. 집단별 사회적 역량 정도 ····· 190
표 Ⅴ-41. 자존감 ····· 191
표 Ⅴ-42. 집단별 자존감 ····· 192
표 Ⅴ-4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193
표 Ⅴ-44. 재학률 ····· 194
표 Ⅴ-45. 재학생 교급별 비율 ····· 195
표 Ⅴ-46. 비재학생 학력 분포 ····· 196
표 Ⅴ-47. 비재학생 검정고시 계획 ····· 197
표 Ⅴ-48. 희망 교육수준 ····· 199
표 Ⅴ-49. 근로경험 여부 ····· 200
표 Ⅴ-50. 근로 형태 ····· 202
표 Ⅴ-51. 직업 선택 시 근로경험의 도움 정도 ····· 203
표 Ⅴ-52. 성별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 206
표 Ⅴ-53. 연령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 207
표 Ⅴ-54. 지역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적은 보수 ····· 207
표 Ⅴ-55. 재학 여부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 208
표 Ⅴ-56.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경험 여부 ····· 209

표 Ⅴ-57.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의 이유 ····· 210
표 Ⅴ-58.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 ····· 211
표 Ⅴ-59. 경제적 상황 ····· 213
표 Ⅴ-60.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 215
표 Ⅴ-61.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배경변인 ····· 216
표 Ⅴ-62. 최근 1년 동안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 ····· 217
표 Ⅴ-63. 직업/진로 관련 활동의 도움 정도 ····· 219
표 Ⅴ-64. 직업훈련 경험 ····· 220
표 Ⅴ-65.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 222
표 Ⅴ-66. 직업훈련 받은 목적: 기타 ····· 223
표 Ⅴ-67.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225
표 Ⅴ-68.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 227
표 Ⅴ-69.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인생목표가 있다 ····· 228
표 Ⅴ-70.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미래 희망직업 가질 가능성 있다 ····· 229
표 Ⅴ-71.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흥미/성격/적성 이해위한 검사와 상담 욕구 ····· 230
표 Ⅴ-72.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계획한 진로관련 정보 습득 관심 많다 ····· 231
표 Ⅴ-73.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원하는 직업위한 능력/기술 준비하고 있다 ····· 232
표 Ⅴ-74.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 ····· 234
표 Ⅴ-75.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 ····· 237
표 Ⅴ-76. 장래 희망 직업 ····· 238
표 Ⅴ-77.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기(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 240
표 Ⅴ-78. 성별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 241
표 Ⅴ-79. 연령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 242
표 Ⅴ-80.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 243
표 Ⅴ-81. 시설유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 244
표 Ⅴ-82. 취업지원 경험 여부 ····· 247
표 Ⅴ-83. 연령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 247
표 Ⅴ-84. 학교재학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 248

표 Ⅴ-85.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 249
표 Ⅴ-86. 시설유형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 249
표 Ⅴ-87. 취업지원 도움 정도 ····· 251
표 Ⅴ-88. 시설유형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252
표 Ⅴ-89. 자립의지 ····· 254
표 Ⅴ-90. 자립의지: 배경변인별 차이 ····· 254
표 Ⅴ-91. 자립의지: 희망교육과 향후 계획 ····· 255
표 Ⅴ-92. 자립의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1_심리사회적 적응 ····· 256
표 Ⅴ-93. 자립의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2_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 ····· 257
표 Ⅴ-94.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 259
표 Ⅴ-95. 연령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0
표 Ⅴ-96.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1
표 Ⅴ-97. 일 경험 유무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2
표 Ⅴ-98.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3
표 Ⅴ-99.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4
표 Ⅴ-100. 가족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7
표 Ⅴ-10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268
표 Ⅴ-102.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 270
표 Ⅴ-103. 성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 271
표 Ⅴ-104.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 272
표 Ⅴ-105.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 273
표 Ⅴ-106.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 ····· 275
표 Ⅴ-107. 성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76
표 Ⅴ-108. 연령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77
표 Ⅴ-109. 학교재학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78
표 Ⅴ-110. 일 경험 유무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79
표 Ⅴ-111.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79
표 Ⅴ-112.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80
표 Ⅴ-113.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282
표 Ⅴ-114. 면접 조사 내용 ····· 285
표 Ⅴ-115. 연구 주제 항목 및 각 연구 주제 구성 요소 ····· 286

표 Ⅴ-116.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조사 참여자 개요 ····· 288
표 Ⅵ-1. 전문가의견조사 참여자 현황 ····· 346
표 Ⅵ-2. 응답자 성별, 연령 빈도 ····· 347
표 Ⅵ-3. 관련 분야 종사기간 ····· 347
표 Ⅵ-4. 전문가 의견조사(1차 조사) 내용 ····· 348
표 Ⅵ-5.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352
표 Ⅵ-6.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해당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 355
표 Ⅵ-7.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관련 전문가 의견 ····· 356
표 Ⅵ-8.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필요 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 361
표 Ⅵ-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66
표 Ⅵ-1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제반여건(영역) 및 정책과제, 상세설명 ····· 370
표 Ⅵ-11. 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정책과제, 세부과제, 상세내용 ····· 371
표 Ⅵ-1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 및 정책과제 중요도 ····· 375
표 Ⅵ-13.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중요도 ····· 379
표 Ⅵ-14. 현장종사자 조사지 내용 구성 ····· 381
표 Ⅵ-15.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82
표 Ⅵ-16.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의 필요성 ····· 383
표 Ⅵ-17. 가정 밖 청소년 범위 ····· 386
표 Ⅵ-18. 가정 밖 청소년 범위: 아동양육시설·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청소년 ····· 387
표 Ⅵ-19. 가정 밖 청소년 범위: 빈곤 청소년 ····· 388
표 Ⅵ-20.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축소 경우 ····· 389
표 Ⅵ-21.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확대 경우 ····· 389
표 Ⅵ-22.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만 9~24세) 적절성 ····· 390
표 Ⅵ-23. 자립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 392

표 Ⅵ-24.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차이 …… 393
표 Ⅵ-25. 자립 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395
표 Ⅵ-26. 종사자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 396
표 Ⅵ-27. 종사자 직급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 397
표 Ⅵ-28. 종사자 경력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 398
표 Ⅵ-29.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 400
표 Ⅵ-30. 종사자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 401
표 Ⅵ-31. 종사자 직급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 402
표 Ⅵ-32. 종사자 종사 경력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 402
표 Ⅵ-33. FGI 참가자 특성 및 근무시설 현황 …… 403
표 Ⅶ-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요약 표 …… 433
표 Ⅶ-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총괄표 …… 447
표 Ⅶ-3. 가정 밖 청소년 범위(안) …… 450
표 Ⅶ-4.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변경 개정(안) …… 452
표 Ⅶ-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제안 …… 453
표 Ⅶ-6. 소년법 제 4조 ‘가출관련 항목’ 용어 삭제 개정(안) …… 454
표 Ⅶ-7.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시행령 포함 내용 제안 …… 455
표 Ⅶ-8.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포함 예시 …… 456
표 Ⅶ-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총괄 조직 역할(예시) …… 458
표 Ⅶ-1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추진 총괄표 …… 48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16
그림 Ⅱ-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인식의 변화 ····· 24
그림 Ⅲ-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분석 틀과 내용 ····· 58
그림 Ⅲ-2.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 65
그림 Ⅲ-3.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지원 추진체계별 역할 ····· 66
그림 Ⅲ-4. 여성가족부: 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의 보호 처분 현황 및 서비스 추진도 ····· 67
그림 Ⅲ-5.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 체계 ····· 79
그림 Ⅲ-6.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전달체계 ····· 80
그림 Ⅳ-1. 자립체험 지원 업무 흐름도 ····· 91
그림 Ⅳ-2. 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 업무 구조 ····· 93
그림 Ⅳ-3. 경기 자립생활관 내부 사진 ····· 98
그림 Ⅳ-4. 취·창업보육훈련장 사진 ····· 100
그림 Ⅴ-1. 청소년 대상 설문지 개발 과정 ····· 151
그림 Ⅴ-2.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 161
그림 Ⅴ-3.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의 2순위인 청소년들 중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1순위 비율 ····· 162
그림 Ⅴ-4. 경험한 일(아르바이트) 유형 ····· 201
그림 Ⅴ-5. 근로의 주된 이유 ····· 203
그림 Ⅴ-6. 구직 시 근로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 ····· 204
그림 Ⅴ-7. 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 ····· 205
그림 Ⅴ-8.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의 이유 ····· 209
그림 Ⅴ-9.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본 조사/2차 자료) ····· 214
그림 Ⅴ-10.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본 조사/2차 자료) ···· 218
그림 Ⅴ-11. 직업훈련 경험(본 조사/2차 자료) ····· 221
그림 Ⅴ-12.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 222

그림 Ⅴ-13.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본 조사/2차 자료) ····· 224
그림 Ⅴ-14. 진로관련 태도·행동 ····· 226
그림 Ⅴ-15. 진로관련 태도·행동(본 조사/2차 자료) ····· 227
그림 Ⅴ-16. 향후(3년 이내) 진로 계획(본 조사/2차 자료) ····· 233
그림 Ⅴ-1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본 조사/2차 자료) ····· 236
그림 Ⅴ-18.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기에 대한 인식 ····· 239
그림 Ⅴ-19. 취업지원 경험 내용과 비율 ····· 246
그림 Ⅴ-20. 취업지원 경험 도움 정도 ····· 250
그림 Ⅴ-21. 자립의지 항목별 긍정응답 비율 ····· 253
그림 Ⅴ-22.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비율 ····· 258
그림 Ⅴ-23.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 269
그림 Ⅴ-24.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 274
그림 Ⅴ-25. 자립 관련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 334
그림 Ⅵ-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계층 구조 ····· 373
그림 Ⅵ-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 중요도 ····· 374
그림 Ⅵ-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총 15개 정책 과제의 중요도 ····· 377
그림 Ⅵ-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관련 정책과제 중요도 ····· 378
그림 Ⅵ-5. '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총 16개 정책 세부 과제의 중요도 ····· 380
그림 Ⅵ-6.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 ····· 385
그림 Ⅵ-7.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만 9~24세) ····· 388
그림 Ⅵ-8.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 391
그림 Ⅵ-9.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매우 필요하다 비율) ····· 394
그림 Ⅵ-10.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정도(매우 그렇다 비율) ····· 399
그림 Ⅶ-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 436
그림 Ⅶ-2.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의 영역 ····· 440

그림 Ⅷ-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구축 및 지원 서비스 ····· 446
그림 Ⅷ-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 448
그림 Ⅷ-5. 가출/주거 취약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관점/인식의 변화 ····· 451
그림 Ⅷ-6.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예시) ····· 457
그림 Ⅷ-7. 효과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 분야 개선사항 ····· 463
그림 Ⅷ-8.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지원과정에 따른 기관 간 연계 및 역할(예시) ····· 465
그림 Ⅷ-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 과제 ····· 468
그림 Ⅷ-10. 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절차(안) ····· 469
그림 Ⅷ-1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 472
그림 Ⅷ-1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전달체계(안) ····· 473
그림 Ⅷ-1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로드맵 ····· 48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서 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성인기의 안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궁극적인 성과(outcomes)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성인기 이행 과정이 10대 후반~20대 초반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신자유주의하의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성인기 이행 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준비와 절차를 요구하면서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김은정, 2015;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Arnett, 2004; Kins & Beyers, 2010; Settersten & Ray, 2010; Swartz, 2008). 특히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하게 되는 관문인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많은 진로준비와 교육·훈련 등이 요구되면서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기간이 장기화되었고 청소년들은 의식주를 포함해 고등교육 및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가정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때 가정은 자녀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지지와 성취동기를 제공하기도 하며 직업, 자금 관리, 주택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조언과 안내도 제공한다(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성인기 이행 과정 중의 경험과 기회, 자원 등은 가정

1) 본 연구의 서론은 김희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어(Furstenberg, 2008; Swartz, 2008) 결국 자녀에 대한 가정의 전폭적인 지원 여부와 그 범위 및 내용은 청소년의 향후 성인기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

청소년의 원만한 성인기 이행이 점점 어려운 과업이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 특히 가정이 없거나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가정의 상당한 지원이 요구된다면 성인기 자립은 가정환경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힘든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다(Osgood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같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하는데 있어 가정의 다양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청소년들을 주목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학대나 부모와의 갈등 등을 주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 등에 잠시 의탁할 수 있으나 이후 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결국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많은 지원들을 가정으로부터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정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때, 가정의 구조적 결핍에 따른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핍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한 연구들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의 지원 없이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정과의 단절과 가족들로부터의 지원 부재를 경험하며 이에 따라 자립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2) 선행 연구들은 성인기 이행 지연(prolonged transition to adulthood)과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가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얻어진 물질적,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의 누적이 사회계층의 재생산에 차별적으로 기여함을 지적하고 있다(Bengtson, Biblarz, & Roberts, 2002; Bourdieu, 1997; Lareau, 2003; Swartz, 2008).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지원 하에 보다 장기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준비를 하는 동안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당장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학업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숙련 일자리에서 근로 경험을 시작하면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진로 계획이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마저 놓쳐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저소득, 고위험군의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김지연, 정소연, 2014). 다시 말해 가정 밖의 청소년들은 가정 복귀가 불가능하여 자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처한 여건 하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의 일자리만을 경험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본인의 욕구에 준하는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 시기에서의 적절한 준비 및 자립 지원이 없다면, 결국 이후 성인기에서의 삶의 질 역시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나아가 성인기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들 청소년은 심리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을 경험한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퇴소 후의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자립준비 미비로 인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등).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초점을 두어 자립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과 자립을 위한 요구들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자립하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견주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및 자립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조명하고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있어 결핍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록 가정에서의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으나 국가, 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인기 이행과정 및 자립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가능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가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가출을 더 이상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보다 가정폭력/학대와 같은 문제로 불가피하게 '가정 밖'으로 나온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나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는 지적[3]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 2017; 김지연, 정소연, 2014; 김지혜, 2013; 백혜정, 김승경, 박세경, 정경은, 2016; 백혜정, 방은령, 2009 등)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지칭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청소년 가출의 주된 사유[4]가 학대나 가족 간 갈등인 것을 볼 때 기존의 가출청소년을 일탈 및 비행을 저지르는 위험집단이 아닌, 가족에서 탈출, 또는 밀려난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놓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외, 2015;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2014).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궁극적 결말이 가정 복귀였다면 최근 들어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개입 방향성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백혜정, 방은령, 2009; 김지연, 정소연, 2014),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이 가정에서의 학대, 가족 내 갈등, 빈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가출'이란 용어가 주는 반사회적이고 이탈적인 이미지에 주목하고, '가출'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청소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7: 15-17),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발의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2018년 2월 현재). 또한 여러 언론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2017. 1. 24).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인권위 용어 개정 권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KR20170124167400004.HTML?input=1195m(2018.1.29 인출), 세계일보(2017. 1. 24). 인권위,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부를 것 권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24003505(2018.1.29 인출)

4) 2014년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청소년의 일회성 가출 사유 중 67%가 가족간 갈등(부모와의 갈등, 부부간 갈등 포함)이었으며 반복성 가출의 경우는 69.5%로 나타났다(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도 부모와 관련한 가출사유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진 외, 2014).

한편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원가정에서 부모의 양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청소년들이 함께 연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출생 후 유기나 가정해체, 빈곤 등의 여러 이유로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는 없더라도 대신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안양육체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복지사의 관리와 지원 속에서 생활하고 양육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가정 밖'의 가출청소년 또는 노숙 청소년들의 상황[5]과는 다르다. 즉, 가출청소년의 경우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입·퇴소가 빈번한 불안정한 생활 환경인 것에 비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과 같은 대안양육체계는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 자립하기까지 보호, 양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의 경우 시설퇴소(보호종결)이후 자립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이제는 교육,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졌고 대학입학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디딤씨앗통장(CDA),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영구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자립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24세까지 1년의 보호(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5년 초과는 불가능)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a).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 정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는 논외로 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은 대안양육체계를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여러 자립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우선 적용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보호, 양육,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하고 가출청소년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집밖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으로부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주요

5)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출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둠으로써 보다 그 원인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방은령, 2009 등).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 역시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고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동안의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이들의 증감이나 추세, 비행이나 범죄 우려, 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예, 쉼터 확대 등)과 생활 실태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원가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기초로 필요한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인기로의 삶을 준비하고 자립하는데 있어 당면하는 어려움과 실태를 조명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6]으로 지칭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및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6) '가정 밖 청소년' 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동안 학계/현장에서의 많은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의 청소년들을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가출,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빈곤, 가정해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9~24세 청소년,

②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상당 기간 동안 주거지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찜질방,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③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또 다른 유형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포함 여부에 있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원가정과 국가로부터 적절한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이들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와 조작적 정의, 그리고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보고서의 Ⅱ장 1절에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1) 선행연구 고찰

가출청소년 용어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변경에 대한 정책 및 현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필요한 준비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2) 관련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정책 및 서비스 현황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출청소년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국내외 자립지원 우수사례 분석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중 벤치마킹 또는 확산을 위해 일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로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립지원, 희망드림 비즈니스 등을, 해외사례로는 영국(센터포인트 등), 미국(전환생활 프로그램, 사샤 부르스 청소년 사업), 독일(오프로드키즈 재단, 갱웨이), 프랑스(근로 청소년 포아예 등)의 가출

및 노숙청소년 들을 위한 관련 법령과 우수 정책 및 민간사례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였다.

4)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학업/아르바이트 등 자립과 관련한 실태와 자립 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의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학계/현장/법·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그리고 현장실무자 설문조사 및 FGI[7] 등을 통해 이들 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한 당면과제들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중, 장기적 요구들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5) 일반 청소년과의 진로계획 비교

본 연구는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계획이나 이에 필요한 준비 없이 당장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에서 성인기 이행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들의 현재 상태와 진로와 관련한 실태를 상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과 진로 계획, 직업훈련 등에 대해 일반청소년들과 어떠한 인식 차이를 가지는지를 2차 자료(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비교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일 문항 비교를 위해 2차 자료의 비교 대상 조사항목을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7) 현장실무자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특히 이들의 자립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별도의 FGI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및 우수 사례 분석, 자립지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요구 조사, 일반청소년과의 학업 및 진로관련 계획 비교와 전문가대상 의견조사 및 현장 실무자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들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각 지원영역별 정책과제를 도출·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정 밖 청소년과 성인기 이행, 자립과 관련한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 고찰하여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진로 및 자립에 필요한 요소 등에 대한 내용들을 도출하여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가출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립지원 정책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및 확산이 가능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취약·위기 청소년관련 학계 및 정책 전문가, 청소년쉼터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자문결과는 본 연구 내용 뿐 아니라 청소년 및 현장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지 개발에 활용되었다.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개최시기
1차	연구내용 논의 및 조사영역 자문	학계 전문가	4/18
2차	설문조사 내용 검토 및 자문	현장 전문가	4/26
3차	설문/면접 조사내용 검토 및 자문	현장 전문가	5/14

3) 양적조사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s)[8]에 착안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양적 접근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일/아르바이트, 가정 밖 생활 경험, 심리·사회·정서적 측면, 고민/걱정거리, 건강과 같은 실태와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직업 선택 기준, 진로계획, 성인기 이행 인식, 자립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자립지원 요구 등을 조사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된 조사지는 예비조사와 원내 IRB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사에 활용되었다.

조사결과는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함께 성별, 연령, 가정 밖 생활기간, 생활시설유형 등의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교차분석(χ^2검정)과 평균비교 차이 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학대, 정서적 문제,

8) 혼합방법론 또는 통합방법론으로 지칭하며 이와 관련한 부연 설명은 'Ⅴ.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의 시작부분에 제시하였다.

자립의지,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의 비교는 희망교육 수준, 향후 진로 계획,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경험, 직업 선택 기준 등 일부 조사항목에 한해 동일하게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만 추출하여 수행하였으며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빈도와 비율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종사자들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과 필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생활하는 주요 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분석과 성별 및 종사경력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Ⅰ-2.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전국의 쉼터 및 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 해당 시설 현장 실무자(시설 종사자)
표집틀	• 전국의 쉼터(129개), 자립지원관(2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20개소) 명단과 이용 청소년 현황
표본수	• 상기 시설 이용 청소년 중 만 15세 이상 청소년 전수 • 상기 시설 종사자(선임종사자 또는 시설장 등 시설당 1인)
표집방법	• 전수조사
조사시기	• 2018년 6~9월

(2) 전문가 의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와 현장 및 정책 전문가 중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정리된 자립지원 영역과 해당 정책과제들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방법을 활용하였다.

4) 질적조사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는 연구주제를 추출하여 항목화 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재구성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단계를 제시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대상의 FGI의 녹취자료의 내용은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Ⅰ-3.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대상자 섭외	• 청소년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 이용 시설 종사자 추천 • 설문조사 시 면접 조사 참여 희망 청소년 등 섭외
참여자 수	• 30명(성별과 생활시설유형 고려)
면접방식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인터뷰 진행
시간 및 횟수	• 60분 내외
자료기록 및 녹취	• 면접결과는 녹취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훈련된 석사과정 이상의 유자격 면접원

5) 사례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사례들을 발굴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벤치마킹 또는 확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Ⅰ-4. 자립지원 우수사례 조사개요

주요 요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우수 정책 및 서비스 사례
조사대상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선정방법	전문가 자문 및 문헌 분석
조사내용	자립지원 내용 및 서비스 전달 관련 평가 및 표준화 등 관련 내용 중심
조사방법	문헌 분석 및 관계자 면담
조사시기	4~7월

6) 기타 연구방법

이외에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학계/현장/정책 전문가들과의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쉼터 현장의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본 연구 수행 및 정책과제 도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	가정 밖 청소년 용어의 법적 기반 및 정책 활용 가능성 협의	여성가족부	1/8
2	가정 밖 청소년 개념 및 정책 내용 협의	여성가족부	5/17
3	정책과제(안) 개발 협의	여성가족부	10/16
4	정책과제(안) 보완 및 수행관련 협의	여성가족부	11/27

○ 전문가 워크숍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1	가정 밖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 분석 과정 및 결과 타당성 검토와 시사점 도출	연구진, 질적연구전문가	10/12
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과제 도출	연구진,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10/16

○ 지역별 청소년쉼터 협의회(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 수렴(경남, 대전).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관련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 전문가 워크숍 등의 연구추진체계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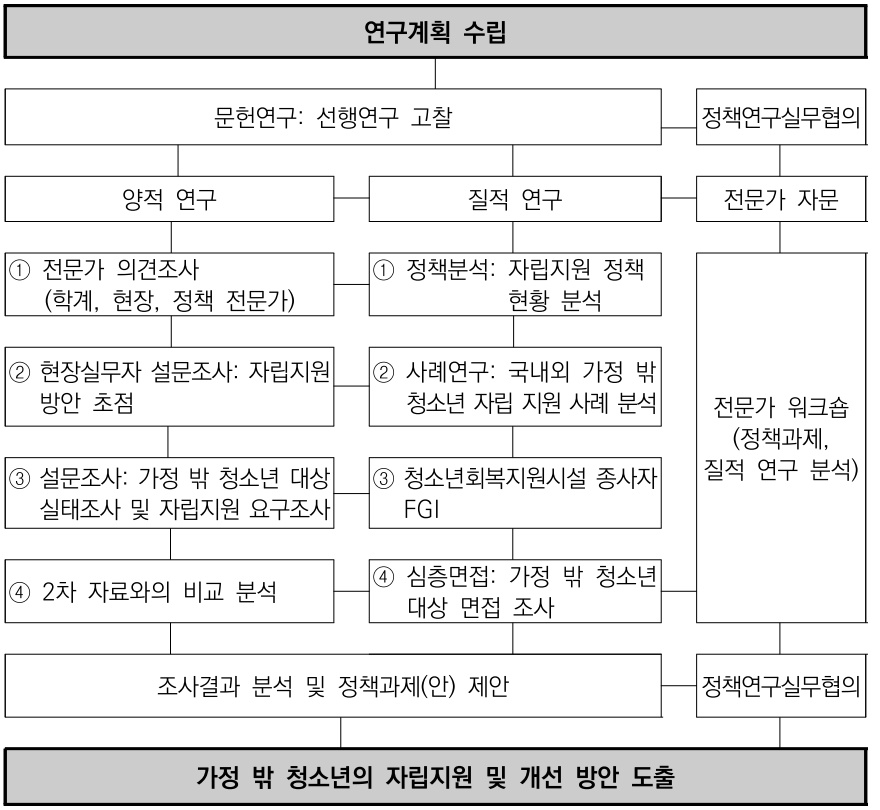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2.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9)]

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가출청소년의 개념

가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을 버리고 나감”[10)]으로 서술된다. 즉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가정 내 학대나 빈곤 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의에 의해 능동적으로 가정을 나온다는 개념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여기서 집을 나간다고 할 때 그 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가출의 기간은 최소 하룻밤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백혜정, 방은령, 2009:14). 또한 청소년의 사전적 정의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11)]이지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각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직은 가정 안에서 성인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출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가출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아직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최소

9) Ⅱ장 1절과 2절은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3절은 김희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2018.2.8 인출)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2018.2.8 인출)

하룻밤 이상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미성년을 의미하지만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가출은 문제행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소년법」 제 4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0세 이상의 소년"이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명시한 것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가출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여 경찰의 단속이나 언론 보도에서 가출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국가인권위원회, 2017.1.24.)는 점을 지적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출이 청소년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문제행동이라는 시각에 기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개입의 최종목표는 원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예, 김지연, 정소연, 2014; 전경숙, 이의정, 2012). 즉, 가출청소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을 단순한 사춘기적 반항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을 피해 가정에서 탈출하거나 양육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쫓겨나는 경우, 더 나아가 가정이 해체되어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을 문제행위로 보고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출청소년 정책의 최종목표가 될 경우 가출청소년들은 강제 귀가 조치를 통해 가정 내 학대나 방임에 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출사실을 숨기고 사회제도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가출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범죄의 피·가해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가출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정의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지연, 정소연, 2014:3-5, 전경숙, 이의정, 2012:13-15).

2) 인식의 전환: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전술하였듯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일정 기간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는 양육자의 허락 없이 집을 나온 문제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근대적인 시각이 강하게 작용하여 아직 가정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는 가정이 해체되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까지 포괄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실제로 현재 가출청소년으로 묶이는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가정 내 학대나 폭력 등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온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에 의해 쫓겨난 청소년, 가정해체 등을 이유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183-185; 백혜정 외, 2015:163).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이용시설인 쉼터 이용자 중에는 양육시설에서 나오거나 퇴소 연령이 되어 퇴소하고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도 일부 있어(전민경, 2016:46) 이들 역시 가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출청소년 범주로 묶이기도 한다. 그 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에는 보호자 및 가정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보호위탁이 의뢰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12]이나 쉼터에 의뢰되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가출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재 가출청소년 기준으로는 가출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있다는 이유로 가출청소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가출'

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8) 참조

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궁극적으로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을 보면 '가출(runaway)'과 '가정이 없는(homeless)'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13]이라는 시행령을 통해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을 포괄하여 전환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8~24세 청소년 중 '집이 없는 무업형(homeless NEET)' 청소년들이 향후 자립하여 납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및 일자리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다[14]. 이러한 정책들의 목적은 가정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이 안정된 가정이나 주거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향후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가출청소년의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쉼터의 유형화를 통해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정 복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보호를 통한 자립을 최종 목표로 삼는 지원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백혜정 외, 2015).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이 무조건적인 가정 복귀에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바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및 지원정책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으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문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가출청소년보다는 '가정 밖 청소년' 또는 '무가정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13) https://www.acf.hhs.gov/fysb/resource/rhy-act에서 2018년 1월 25일 인출
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ir-chance-fund-evaluation-interim-reports 에서 2018년 1월 25일 인출

전환을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책 방향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백혜정, 방은령, 2009:228). 이후 가출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김지연, 정소연, 2014:287-288).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5년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게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하고 관련 부처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15].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법무부를 대상으로 '가출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한편 권미혁 국회의원 등은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출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출 예방과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책이 주가 되고 이들의 상황에 맞는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것을 발의하였다(나눔일보, 2017.3.21.).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되어온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비록 적은 양이나마 가출청소년에 대해 범죄에 연루되거나 문제만 일으키는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시각이 보이기도 한다(울산매일, 2017.11.27.; 중앙일보, 2017.10.30.; 한겨레, 2017.1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해 일반인들은 여전히 비행과 범죄에 연루된, 또는 그러할

1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7. 1. 24).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가능성이 농후한 청소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법률 용어 개정안 발의는 일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즉 일선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교화와 선도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비행 및 탈선 청소년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보다 폭넓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그림 Ⅱ-1). 이를 위해 기존의 가출청소년이란 용어에 대한 변경을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 본격적인 시도로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 대상 범위를 재지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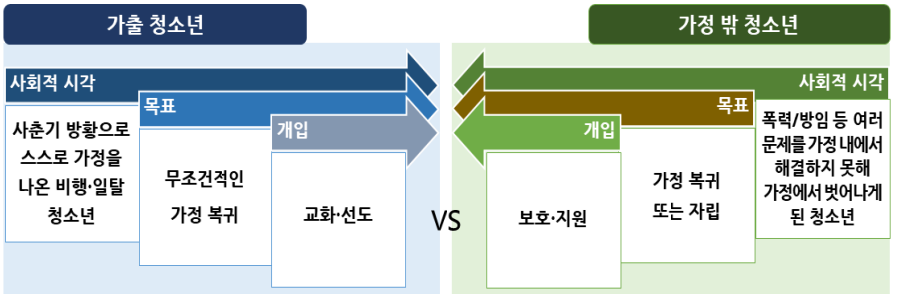


그림 Ⅱ-1.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인식의 변화

3) 가정 밖 청소년의 조작적 정의

국가의 정책적 대상으로서 기존의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의 한 부분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그 개념적 측면에서 가출청소년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정의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법」 제3조에서는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할 때에는 '가정'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로 아동의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함은 "가정이 없거나 그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또는 가정 내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및 대안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연고자 가정이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되어 생활하거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양육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139).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가정 밖 보호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종합대책 안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의 가정 이탈을 최소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 단 아동생활시설 이외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었다.

둘째, 가정이나 양육시설 외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이다.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다. 단 청소년치

료재활센터는 현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라는 명칭 아래 정서와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인 4박5일 또는 장기과정인 1~4개월 과정의 치료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의 보호자 개입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타 청소년복지시설과는 그 성격이 달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시설로 법무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자립생활관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12~22세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의뢰 청소년, 자립지원이 필요한 무의탁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이다[16]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어떠한 보호체계 안에 속하지 못한 채 거리나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혼자 또는 가출팸과 같은 무리를 만들어 노숙을 하거나 찜질방, 폐가, 원룸 등 다양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이 같은 경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로써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이다. 청소년의 경우 노숙인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대체한다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청소년, 상당 기간 동안 적절성이 매우 낮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6)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출,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빈곤, 가정해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9~24세 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노숙, 가출팸, 여인숙 등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아동과 법무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표 II-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
• 가출,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빈곤, 가정해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9~24세 청소년 •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상당 기간 동안 주거지로써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찜질방,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 대상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정의한다면 그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아동과의 차이점이다. 보호대상아동 역시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원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다. 가정 밖 청소년에서 의미하는 가정이 원가정이고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및 청소년은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보호대상아동은 9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고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안가정 형태의 환경

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적·정책적 제도 미흡으로 자립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에 비해 보호대상아동들은 시설보호 중에, 그리고 퇴소 후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현물·현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더불어 연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단 「아동복지법」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을 받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룹홈, 자립생활관 등에서 이탈되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노숙을 하는 등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된 범위는 표 Ⅱ-2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령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보호시설의 차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에는 이들을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Ⅱ-2.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 가출,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빈곤, 가정해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9~24세 청소년 •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상당 기간 동안 주거지로써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찜질방,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2.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가정 밖 청소년을 원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때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현황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하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은 12,448명, 위탁가정 아동은 12,896명,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은 2,758명으로(보건복지부, 2017b:334-343) 약 28,000여 명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자립생활관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은 2017년 5월 기준 118명(한국소년보호협회, 2017a)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한편 이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 대상으로서 9~24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거주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그들의 규모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원가정에서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개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번 가정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이탈-복귀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주기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상황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일단 확인 가능한 경찰청의 가장 최근 가출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표 Ⅱ-3),

9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2011년에 29,281명을 최고치로 점차 감소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1,762명, 21,852명으로 2만여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가출로 신고된 청소년 수를 집계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3.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22,287	28,124	29,281	28,996	24,753	23,605	21,762	21,852
남	8,825	10,742	11,579	12,051	10,570	10,171	9,104	9,038
여	13,462	17,382	17,702	16,945	14,183	13,434	12,658	12,814

* 출처: 여성가족부(2017c). 청소년쉼터 주간행사 보도자료.

표 II-4.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청소년쉼터 지원예산 및 이용청소년 수)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쉼터 수(개소)		81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일시	고정	8	8	8	8	15	16	18	18	20
	이동	2	2	2	5	6	6	8	10	10
단기	남	21	24	24	25	26	26	26	26	28
	여	26	25	24	24	24	24	26	25	25
중장기	남	9	10	10	11	11	16	17	18	18
	여	15	14	15	19	21	21	24	22	22
국비예산(백만원)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10,002	12,666	13,565
지원건수(건)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28,415	545,907	551,106	-
입소자수(명)		9,673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

* 출처: 여성가족부(2017c). 청소년쉼터 주간행사 보도자료.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수도 참고할 수 있는데,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에서 쉼터 수가 증가

하면서 가출청소년의 지원건수와 입소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원건수의 경우 중복 지원을 포함하여 계속 누적되는 숫자여서 이용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소자 수 역시 중복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출청소년 중 쉼터 비이용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을 시도해 보았다. 일 년에 원가정 이탈이 10일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적이거나 가정 이탈-복귀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가정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원가정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들을 모두 가정 밖 청소년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한다면 2016년 한 해 동안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17]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생 청소년들의 경우 원가정 이탈이 10일 이상이거나 가정 이탈-복귀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2%이다(표 Ⅱ-5).

표 Ⅱ-5. 가출 경험 청소년의 비율

구분	명	%
가출 경험 없음	14,563	97.3
일회성 단기(최근 일 년 가출 1회, 최근 가출 기간 10일 미만)	215	1.4
일회성 장기(최근 일 년 가출 1회, 최근 가출 기간 10일 이상)	18	0.1
반복성 단기(최근 일 년 가출 2회 이상, 최근 가출 기간 10일 미만)	151	1.0
반복성 장기(최근 일 년 가출 2회 이상, 최근 가출 기간 10일 이상)	19	0.1
합계	14,967	100.0

주: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황여정 외, 2016)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이에 근거하여 초중고생 중 약 1.2%는 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17)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이다 (원출처: 여성가족부, 201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38 (검색일: 2018.3.6.)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수치를 모집단 470여 만 명에 대입해 보면 약 56,00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동일 조사에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생활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22.8%의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 즉 원가정 이탈이 10일 이상이거나 가정 이탈-복귀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모집단이 확실하지 않아 비확률 표집을 실시한 후 가중치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황여정 외, 2016:18) 이 수치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중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18세 이하인 미성년의 경우를 찾아보면 거리노숙인(거리·일시보호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노숙인) 중에는 2명(0.13%),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 노숙인) 중에는 37명(0.4%), 쪽방주민 중에는 40명(0.6%)로 집계되었다(이태진 외, 2017:154,170,185). 이처럼 노숙인 중 미성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노숙 청소년들은 일반 노숙인과 다른 생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단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규모를 바탕으로 추산해 본다면 9~18세 청소년 중에는 약 56,000여 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게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사실과 이에 더하여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중에도 원가정에서 이탈되었으나 자립을 이루지 못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9~24세 청소년 중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이탈의 원인과 형태, 기간 및 횟수, 가정 이탈 이후의 생활형태 등이 저마다 달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들 중 다수가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적 특성

청소년들이 가정을 이탈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 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조사(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경험 청소년들이 가출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74.8%로, 다른 이유로 언급된 자유로운 삶(8.0%), 공부에 대한 부담감(4.7%), 학교 다니기 싫음(4.7%) 등과 응답비율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황여정 외, 2016:126).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예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능성이 높은 반복성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7.5%가 부모와의 갈등을 포함한 가족문제가 가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하였고 답답함, 충동, 의지할 곳 없음 등의 심리·정서 문제를 언급한 경우가 11.7%로 그 뒤를 이었다(백혜정 외, 2015:39-40). 가족문제 외에 심리·정서 문제를 가출의 주원인으로 꼽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보호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한 가정 이탈은 응답자의 실제 응답률보다 좀 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정 이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원가정 형태를 살펴보면 가정 내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및 재구성 가족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복 가출의 경험이 있고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한부모 가정은 35.5%, 재혼·별거·입양 등을 이유로 재구성된 가족과 생활한 경우는 23.9%로 이 둘을 합하면 친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청소년(31.8%)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백혜정 외,

2015:56). 김지연, 정소연의 연구(2014:133-136)에서는 가출횟수가 한 번인 청소년보다 2회 이상 반복 가출을 한 청소년들에게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더 높음을 지적함으로써 앞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31.8%, 중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3.8%로 나타났다(백혜정 외, 2015:57-58). 즉 가정 이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황 역시 좋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은 물리적인 측면이나 심리·정서적인 측면 모두에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주변인 10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직계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7%에 이르렀다(전민경, 2016:60). 또한 주변인 10명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을 나온 이후 가족으로부터 물리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32%,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전민경, 2016:79-80).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가 48%, 별로 없는 경우가 19.1%로 약 67%의 응답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전민경, 2016:57-58). 이러한 응답결과는 가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가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을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거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곳이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2) 학업적 특성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정을 나오기 직전에 학생신분이었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76.2%였으며 자퇴는 14.4%, 휴학은 6.0%, 졸업은 3.4%로 나타났다(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49). 졸업을 제외하고 자퇴와 휴학을 합하면 약 20.4%로 적어도 응답자 5명 중 한 명은 학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이탈되기 이전에 이미 학교에서도 이탈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9점으로 중앙값보다 낮았으며 특히 중장기쉼터 청소년은 일시쉼터 청소년보다 만족도 값이 유의하게 낮았다(남미애 외, 2012:76). 이러한 결과는 가정이탈의 가능성이 큰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출 이후에는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지는데 백혜정 등(2015:66)의 연구에서는 반복 가출청소년들의 49%가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학업을 지속하는 이들에 비해 가출 일수가 훨씬 많아 학업중단과 가정 이탈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백혜정 외, 2015:6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가정폭력과 학업중단, 가출 간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 즉 가정폭력 피해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동일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1.7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 2015:111). 또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77%는 가출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가출 위험은 가정폭력 피해와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 2015:113).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가정 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업은 향후 취업

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학업 중단으로 학력이 낮은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이 비록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 성인기에 진입하여 건강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로 및 경제 활동

가정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은 당장의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숙식 이외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거나 이후 자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근로 및 경제활동은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가정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반복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58%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식당 서빙을 비롯한 저임금·미숙련 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외, 2015: 5-75-76). 보다 최근 연구(황여정 외, 2016:238-239)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57.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직종으로는 요식업계나 배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로 용돈을 받을 처지가 아니거나(33.3%)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20.5%)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황여정 외, 2016:238). 이러한 결과들을 일반적인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18.1%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황여정 외, 2016:168)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경제활동은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은 대부분 단기적인 저임금·미숙련 노동으로 보다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력 취득

및 직업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근로를 통해 얻은 수입을 규모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획성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당장의 숙식을 해결할 비용도 여의치 않아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복잡한 채무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백혜정 외, 2016:182-183).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더욱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자립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4) 정서·인지·행동 문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미애 외(2012:68)의 연구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출 중 자살시도 경험이 35.7%로 나타났는데 같은 해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일 년 동안의 자살 시도율이 4.1%(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166)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우울과 큰 관련이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은 높고(백혜정, 방은령, 2009:166;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67-68) 자존감은 낮은(백혜정, 방은령, 2009:165)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분 및 자살, 충동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험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심각하였다(김지연, 정소연, 2014:144).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의 입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쉼터의 91.3%가 낮은 지능의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6.1%의 쉼터가 높은 공격성이 있는 입소자를, 그리고 76.5%와 47.38%의

쉼터가 각각 심한 우울 및 자살 시도를 한 입소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9.1%의 쉼터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백혜정 외, 2016:162-163).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들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이나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인지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인지·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행동문제와 관련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백혜정 등의 연구(2015:50-52)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폭력, 절도, 성경험 등의 문제 행동에 연루되는 경우가 보고되었는데 절도나 성매매 등은 돈을 벌거나 잠잘 곳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 밖 청소년과 유사성이 매우 높은 쉼터 청소년의 경우,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가 20.3%,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11.1%, 신체 및 언어적 위협을 당한 경우가 9.2%, 금품갈취 등을 당한 경우가 6.3%로 나타났다(황여정 외, 2016:217). 동일 조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들은 해당 항목의 피해 경험이 각각 6.9%, 2.9%, 1.8%, 1.0%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황여정 외, 2016:217) 가정 밖 청소년들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폭력의 가해 경험도 적지 않은데 남미애 등(2012:57-59)의 연구에서 가출 중 폭행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4%, 금품갈취 경험은 31.9%로 나타났다.

또한 쉼터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40.1%로 여자 청소년의 경험률(62.3%)이 남자 청소년의 경험률(54.4%)보다 높아(황여정 외, 2016:224)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성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및 흡연 경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1개월간 쉼터 청소년들의 50%가 음주 경험이, 58.7%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경험률(음주 18%, 흡연 5.9%)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황여정 외, 2016:230).

한편 가정 밖 청소년들의 비행 및 피·가해 경험을 가출 전후로 비교해 볼 때(백혜정, 방은령, 2009:144-149)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이들의 비행 및 피·가해 경험에 대한 노출은 가출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생활비 조달이나 노숙생활에서 오는 위험 등으로 인해 가출 횟수 및 기간이 더 많아지거나 길어질수록 비행 및 피·가해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유서구 외(2012:65-67)의 연구에서 가출팸 생활 전후의 비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가출팸 형성 이후 비행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팸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비행을 강요받거나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유서구 외, 2012:61, 64). 가출팸과는 반대로 쉼터에 입소한 이후에는 가출 중일 때 보다 비행 및 피·가해 경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현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남미애 외, 2012:56-69),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거주지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비행 및 범죄의 피·가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5) 또래관계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도 예외 없이 또래관계는 이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와의 어울림이나 이들의 부추김은 청소년에게 가출을 할 용기를 주기도 한다(김용길,

조윤오, 백혜정, 서보람, 정정숙, 2011:137). 또한 앞서도 언급한 가출팸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비행에의 노출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리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보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한다(유서구 외, 2012:124-12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또래관계가 청소년들이 가정을 나오는 계기, 그리고 가정 밖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에게 또래관계는 양날의 검과 같아 정서적 지지나 정보제공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동시에 비행 및 범죄로 이끌거나 착취·학대의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 일정 기간 이상 또래관계에 대한 관찰과 지도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6) 사회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을 이탈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9.7%로 가출청소년 중 소수만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여정 외, 2016:128-129).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탈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각각 12.3%와 4.2%로 가정 이탈 후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황여정 외, 2016:128-129).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이탈 후 쉼터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이유로 쉼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규율의 엄격함, 집단생활로 인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189-192; 백혜정 외, 2015:80-98).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거리 생활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쉼터 종사자들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로 인해 쉼터 생활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백혜정 외, 2015:87-96).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 중 특히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자립을 원하고 있어 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불과한 반면 자립을 원하는 이들은 72.6%로 나타났다(백혜정, 방은령, 2009:122). 또 다른 연구에서도 향후 가정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은 16.2%이며 53.4%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전혀 또는 별로 원하지 않았다(남미애 외, 2012:115). 이처럼 자립을 원하는 상황에서 쉼터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가장 지원받고 싶은 내용으로 역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요구가 상당함을 시사한다(김지연, 백혜정: 2017:21-22).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생활지원 뿐 아니라 향후 미래 준비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문제를 비롯하여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겪는 등 사회적 지원이 없는 한 자립의 길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자립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방해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1) 자립의 의미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다"[18]로, 타인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self-reliance),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부양, 지지할 수 있는 자기충족적인 상태(self-sufficiency)를 의미하며[19], 더불어 독립 생활(independent living)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Maluccio, Krieger, & Pine, 1990;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2006에서 재인용). 대상에 따라 그 의미에 초점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즉, "장애인의 자립(independent living)은 노동력을 활용한 사회활동의 의미보다 생활전반에서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청소년의 자립(self-reliance)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김지연, 백혜정, 2017: 11)로 정의되기도 한다.

기존의 자립에 대한 논의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독립과 더불어 '상호의존(inter-dependency)'이 강조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독립성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신뢰와 관계 등도 자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또한 그동안 자립이 주로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과업들을 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고 및 의사결정과 같은 심리적인 자립도 강조되고 있다(Ben-Ami & Baker, 2012). 실제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에는 교육, 지원,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2018.2.8. 검색)
19) Collins English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2018.2.8. 검색)

상담 등이 포함된다(Warrener, Koivunen, & Postmus, 2013). 특히, 경제적인 자립은 '생활기술'이 준비되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기술에는 자원관리 기술, 자신의 일상 통제 기술, 건강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신혜령, 2001; 김미라, 2008; 김남욱, 2008). 결국,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의 충족,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의존과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까지 포함한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라고 볼 수 있다(신혜령, 2001; 김정연 외, 2011). 따라서 자립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자립준비기술에 자립의지, 수행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직업기술 준비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박은선, 2004).

자립준비 또는 자립준비기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립준비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 및 돈 관리를 포함한 경제적 자립 준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와 같은 심리사회적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6. 자립준비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요소

	자립 준비 요소	세부내용
Pasztor(1986)	지식 및 행동의 기술	외모, 건강, 성, 돈, 음식, 집, 교통, 오락/여가, 지역자원, 직업, 가족연계, 친구/지역사회 요소
	감정의 기술	결정 내릴 때의 편안함.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적절한 표현, 과업수행의 만족감, 주도적 표현의 중요성, 지시를 따르는 편안감, 과제에 대한 가치평가, 자기신뢰감, 자아존중감, 타인과 협력의 중요성, 동기유발
Maluccio, Krieger, Pine(1990)	구체적 기술 (hard skill)	구직 및 직업 유지, 청구서 지불, 집 구하기 등
	무형의 응용기술 (soft skill)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분노조절
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1999)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관리기술, 진로기술, 돈 관리기술	
ACLSA(Ansell-Casey Life Skills Assessment)(2001)	요보호청소년의 일상생활 기술 사정 도구: 일상생활기술,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돈 관리, 자기관리, 사회적 발달, 구직 및 직장생활	

	자립 준비 요소	세부내용
이혜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2007)	자립생활기술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자금관리, 주거마련 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아성장과 사회성개발
김예성, 이경상(2015)	자립준비도	건강관리, 자아성장,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유지

주: 김예성, 이경상(2015)의 pp.12-13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이러한 자립에 대한 논의들과 자립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결국 자립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되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며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상태[20]로,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건강관리, 금전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원활한 대인관계,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립준비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자립준비 내용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들의 자립 및 성인기 이행 준비와 비교할 때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취약한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이 원가정의 전폭적 지원 하에 성인기 이행 및 자립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결핍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개인은 상술한 자립요소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며, 이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립 준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기 이행 시 필요한 여러 준비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은 결국 자립(self-reliance)과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제목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논하기에는 어패가 있다. 그러나 상당 수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이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안양육체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거나, 본 연구의 주요 대상처럼 가정 밖에서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과 거리를 오고가며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에 대한 논의는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21], 또는 가출했으나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기로 이행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마땅히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상 성인기 이행과 그 과정에서의 진로계획 및 준비 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지원이 결핍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안양육체계의 청소년들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고민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정과 준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의식주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충분한 준비 없는 자립 촉진 및 독려는 이들을 계속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의 일자리를 경험하면서 그대로 성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이들에 대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포함한 국가, 사회의 지원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양질의 직업을 구해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

21) 양육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을 위한 한 연구에서는, 자립을 "개인적 삶의 성실성과 온전성을 보여주는 개념이자 동시에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했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정책적, 성과적 개념"으로 다소 협의적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하며(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24),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의 자립을 "시설을 퇴소하여 독립하는 의미 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自活)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와 다면적인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김지연, 백혜정, 2017; 11)로 보기도 한다.

2) 자립과 성인기 이행 준비

선행연구들은 최초 가출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방은령, 2009; 백혜정 외, 2015). 그러나 여전히 아동보다는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가출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가출사유 중 원가정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가족과의 갈등' 응답률과 한 달 이상의 장기 가출 비율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다(황여정 외, 2016: 125~127). 따라서 자립에 대한 논의는 성인기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10대 중·후반 청소년들 중 가출 후 원가정 복귀 대신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 밖에서 안정적인 생활 및 지원 기반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 으로 보고, 이들의 자립 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자립준비 및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경쟁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한 성인기 이행의 지연은 서구사회를 포함해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성인기 삶을 준비하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더 많이 받으며, 다양한 이력을 만들어(예, 스펙 쌓기) 최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안선영 외, 2011).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의식주와 교육 및 훈련비용, 그리고 보다 좋은 이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예, 해외 연수)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부분 자신의 원가정, 부모의 몫이 되었다. 부모들이 이후 자녀의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성인기 삶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면서 결국 가족 자원(family resources)의 보유 및 활용 정도를 의미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Swartz, 2008).

실제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부유한 부모는 상대적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교육과 진로, 가정 형성, 그리고 첫 주택구입의 경쟁상황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한다(Swartz, 2008). 즉, 성인기 이행 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원에 있어 계층 간 차이가 있으며, 이 시기의 결정은 누적적으로 이후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Furstenberg, 2008). 일례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계획적인 출산을 할 확률이 낮고, 교육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조기에 학교 교육을 종결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불안정한 가정생활과 취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Aronson, 2008).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해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한 질적 조사를 수행한 한 연구는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 속에서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등 훨씬 일찍 성인기 이행 과업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이들에게는 일반청소년들처럼 성인기 이행을 위한 유예기를 가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며, 결국 비자발적으로 성인수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은기수 외, 2011).

이렇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한 성인기 이행 결과가 나타난다면(Swartz, 2008), 가정의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은 구조적으로 가족의 자원과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일반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경로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당장의 주거 마련이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리사회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최대한 유사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진로계획 및 준비 등도 이들을 위한 지원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needs assessment), 이를 토대로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선행연구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주거마련, 휴대폰 비용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보고하고 있는데(김지연, 정소연, 2014; 장주현, 김정애, 2015 등), 이러한 긴급한 욕구 뿐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인 자립준비에도 초점을 두는 균형 있는 자립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성장하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인기 삶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립지원은 이들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자립준비는 가정 밖의 상황에 처함에 따른 긴급한 경제적 요구와 주거마련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쉼터(단기쉼터)의 청소년들이 다른 취약·위기상황의 청소년들(학교 밖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로 관련 개입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유사한 맥락에서 시설퇴소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설보호 청소년이 진로성숙도의 태도영역(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과 능력영역(임금, 근무환경, 선호직업관련 지식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김미희, 2008).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의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준비도에 대한 연구(김예성, 이경상, 201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종사자와의 애착, 학교 성적 등이 이들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건강관리, 자아성장,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주거마련 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진로탐색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문제해결능력과 직업관,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 지원, 지역사회조직 참여, 서비스 연계 등은 진로준비행동에, 그리고 지역사회조직 참여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교육과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오수생, 변상해, 2012).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자립정보 제공, 물질적 지지가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설종사자와의 관계, 시설프로그램 참여도, 취업/자립에 관한 시설의 지원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미숙, 김형모, 2017). 시설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립준비와 자립생활기술 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회복력(resilience)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2010,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7, 정문진, 2011). 특히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은숙과 이태연(2015)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면서 시설퇴소 전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경험과 요구들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들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 질적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의 자립준비 경험과 관련하여 막연함과 같은 심리적 부담감, 자립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족, 지원받을 곳의 부재, 거주 공간 마련의 필요성, 퇴소 후 지속적인 지원 요구 등을 분석결과로 제시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절박하게 혼자 버텨나감'을 이러한 경험의 본질이라고 하였다(정문진, 김수정, 2016: 202). 퇴소를 앞둔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또 다른 질적 연구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문제, 주거지 문제, 자기 관리, 대인관계 문제, 진학문제 등과 함께 심리적 불안을 보였으

며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등록금 충당을 위한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보고하였다(장주현, 김정애, 2015).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비록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더라도 가족과의 유대는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녕, 2014).

드물게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이들이 자립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립의지를 갖기도 또 유지하기도 어려움을 지적하였다(김지연, 정소연, 2014). 또한 이 조사에서는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대포폰 등의 명의 양도 또는 도용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나 신용불량, 임금체불 및 작업장에서의 부당한 처우, 통신수단 부재 등의 문제를 조명하였고, 상당수 노숙청소년의 경우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저학력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의 자립지원 요구로 구직활동을 위한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과 명의도용 문제의 해결 및 처벌 강화, 그리고 합법적 일자리와 현실적인 직업훈련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김지연, 정소연,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출청소년이나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하여 심리·정서·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정서적 지지 등), 문제해결 능력, 진로계획,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준비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진로준비, 자립준비, 자립의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립을 앞두고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감, 채무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진학/취업문제, 자립에 대한 인식 부재, 자립의지 부족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이 이들의 심리적인 개인적 부분에서부터 주거지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다. 정리하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당장의 경제적 자립 지원 뿐 아니라 자립관련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심리적지지 및 주거 지원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Ⅲ장 정책 분석: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

1. 정책 분석틀
2. 자립지원 정책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Ⅲ 정책 분석: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현황 분석[22)]

1. 정책 분석틀

1) 사회정책 분석 기준

본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많은 정책 및 서비스를 모두 다루기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가출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 분석을 위해 주로 아동·청소년 가족분야를 포함한 사회정책(Social Policy) 분석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ell)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인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급여 형태(social provision),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finance)등을 활용하였다(Gilbert & Terrell, 1998; 김석향, 정익중, 김미주, 오은찬 2017에서 재인용).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자주 활용되었으며, 보육정책(이진숙, 전효정, 2010), 아동청소년복지사업(정은주, 한정은, 2014), 북한의 가정외 보호 아동정책(김석향 외, 2017), 미국의

22) Ⅲ장의 정책분석은 김희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신연희, 2013) 등의 연구들에서도 활용되었다. 가출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지연과 정소연(2014), 백혜영과 강현아(2016) 연구에서 정책 분석틀로 활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숙과 전효정의 연구(2010)에서는 보육정책 대상 기준(요보호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급여형태와 관련해서 현물인 보육서비스와 현금 급여인 보육료 지원 정도, 그리고 보육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국공립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과 보육재정의 공공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김지연과 정소연(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법 등 통합적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이에 더해 정책형성 및 변천과정과 정책평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지원정책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법과 정책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었으며(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등), 특히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초점을 둔 바 기존의 정책분석틀을 준용하되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현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외에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 유무에 따른 정책 수행은 그 추진력과 재원 확보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정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새로 추가한 법적 근거 외에 4가지 분석틀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맥락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자격조건의 규정이 핵심적인 내용이다(Gilbert & Terrell, 2007). 즉 급여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김석향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할당이라는 용어 대신 '대상'으로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립지

원 정책의 대상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 보다 보편적으로 일정 대상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아니면 제한된 서비스 및 급여(provision)로 인해 특정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자격조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된다(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둘째로, 급여 형태(social provision)는 크게 현금(benefit in cash)과 서비스 중심의 현물(benefit in kind)로 구분되며, 수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지, 또는 최소화할 것인지와 같은 자기결정권이 쟁점이 된다(이진숙, 전효정, 2010). 즉 앞에서도 언급한 정책의 효과성까지 감안할 때 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의 소비에 대해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인데(구인회 외, 2010),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시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지, 즉 공공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Gilbert & Terrell, 2007). 즉 수혜자들에게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전달체계와 영리·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구인회 외, 2010).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형태가 증가하면서(이진숙, 전효정, 2010), 민간에서 자생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반대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일례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처럼 민간에서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민간사업이 관련 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확대되거나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넷째, 재원(finance)은 실제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의 원천(source)으로 국가재

정에 따른 공적 재원과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나 기부금과 같은 민간 재원으로 구분된다(구인회 외, 2010; 신연희, 2013).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책연구의 특성상 공적 재원에 초점을 둔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분석틀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보호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가출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은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인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시설/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인 이들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들을 보호·양육하고, 또 이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설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주로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중심으로, 소년법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가정외 보호체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자립지원 총괄기구인 아동자립지원단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호종결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및 기관의 자립지원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에 따라 해당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해당 정책에 따라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띄기도 하나 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앞서 논의했지만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원만을 의미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분석 대상인 자립지원 정책은 원가정 및 부모의 별다른 지원 없이 성인이 되어 자립하는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지원과 생활교육, 진로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립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또 만 24세까지 안정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 공간 마련까지 포함한 정책 사업으로 한정하였다[23].

가정 밖 청소년 뿐 아니라 취약한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자신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주무부처의 해당 서비스를 주로 제공받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분석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및 자립지원단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에 있어 원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과 유사성이 있으나 비교적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들 부처의 사업들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책대상 중복 및 정부 부처 간 사업의 분절과 이로 인한 정책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쟁점이 있어 왔는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별로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자립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대상 및 범위, 급여형태와 내용, 전달체계, 재원을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쟁점과 한계, 특히 서비스 누락과 배제, 중복문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23)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한 유사 사업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 받은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이룸학교의 주 정책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가정 밖 청소년도 이용 가능)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간 머물 수 있는 곳으로(김지연, 백혜정, 2017), 장기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준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나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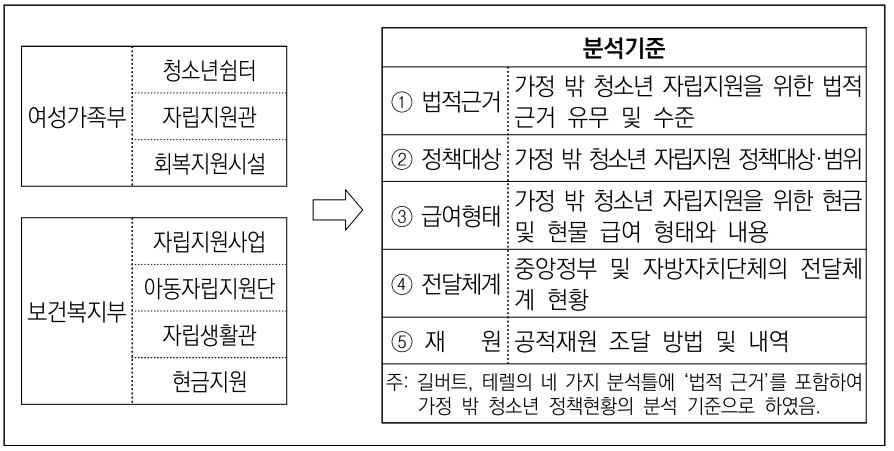


그림 Ⅲ-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분석틀과 내용

2. 자립지원 정책 현황[24)]

1) 여성가족부 정책

(1) 현황 및 법적 근거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생활보호, 상담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가족복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기준 전국에 130개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597). 청소년쉼터는 유형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먼저 일시쉼터는 고정형 20개소, 이동형(차량) 10개소로 보호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거나 노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거리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초기발견 및 개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533). 단기쉼터는 총 53개소로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제공하면서(최종 9개월 연장 가능)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를 결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18:533).

청소년 중장기쉼터는 전국에 총 40개소가 운영되는데 가정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및 자립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533). 청소년쉼터 관련법과 해당 조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로 대상과 시설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했으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8:677).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에 국비지원을 통해 2군데가 개소

24) 자립지원 정책 현황은 '2018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8)와 '2018 아동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2018a)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그림 Ⅲ-1의 정책분석틀에 맞추어 요약, 정리하였다.

준비 중으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2개 자립지원관과 함께 2018년말 기준으로 4개소가 운영 예정이다[2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들 중 가정에서의 감호위탁이 불가능한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해당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26]으로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당초 '사법형 그룹홈'으로도 불렸는데(천종호, 2013), 2016년 11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을 위한 전담시설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로 편입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관련된 법조항과 조문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으며, 이들 시설의 역할과 기능, 지원 내용을 모두 포괄한 내용으로 이외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Ⅲ-1.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시설유형별 법적 근거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관련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법조항	제1항(청소년쉼터)	제2항(청소년자립지원관)	제4항(청소년회복지원시설)
법조문 내용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출처: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31, 677, 685

25) 2018년 10월 담당 부처(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26) 그동안 부산·경남지역에만 위치해 있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8년에 지자체의 주도로 광주시에서 처음 설립을 앞두고 있다(매일경제, 2018.05.30.).

(2) 정책대상과 범위

청소년쉼터의 경우 일시 및 단기쉼터는 가출, 거리배회, 노숙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나 중장기쉼터의 경우에는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이 없거나 복귀할 수 없는, 중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만 9세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정하되, 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 입소대상 1순위는 9~19세 미만, 2순위는 19~24세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를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532). 이곳에서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가 가능한데 1회 1년에 한하여 최장 4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이다(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가정복귀가 불가능하고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중 특히 자립의지가 강하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이들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표Ⅱ-2에서 보듯이 연령범위 역시 만 20세 이하 가출청소년 입소를 우선으로 하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에 따로 제한은 없다(여성가족부, 2018:678).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10세 이상의 청소년들 중 가정에서의 감호위탁이 불가능한 이들은 위탁보호위원이 신병을 인수하여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천종호, 2013). 보호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회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702).

표 Ⅲ-2.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대상 자립지원 정책

관련시설	청소년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책 대상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학업 및 자립의지가 있거나,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소년법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연령범위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9~24세 -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경우 20세 미만이 입소 우선순위 - 만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 시설/기관 연계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용(보호)기간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중장기 보호(청소년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1회 1년에 한해 연장 가능)[27]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특별한 이용기간 제한 없음.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법원 결정에 따라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33, 677~678, 685, 702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 모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특히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이용가능하나 20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는 19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한편으로 19~20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즉, 20대 초기 청소년의 자립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고려할 때 대상자 선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선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백혜영, 강현아, 2016). 또한 보호기간이 연

27) 2017년에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더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쉼터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이 가정 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복귀가 어려운 사유로 가출한 경우 가출청소년 의사에 반하여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7c. 보도자료).

장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중장기쉼터의 경우 최대 4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최대 1년으로 충분한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인지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3) 급여 형태 및 내용

청소년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모두 기본적인 생존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원과 식사 등을 제공한다(표 Ⅲ-3). 중장기쉼터의 경우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독립생활을 위한 의식주 및 경제생활과 같은 기초생활관리와 정서적 지원과 상담서비스, 취업 및 학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7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김지연, 백혜정, 2017)를 시작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나 표 Ⅲ-3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중장기쉼터에 준하여 제공하고 이에 더해 장기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상담 및 연계와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기쉼터와 달리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18),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혜택 받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표 Ⅲ-3) 신병인수(身柄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이 감호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체·심리·정서적 회복과 학업 및 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 비행 예방 및 자립지원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천종호, 2013). 이러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의 경우 청소년 1인당 6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감호비용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표 Ⅲ-3. 여성가족부: 자립지원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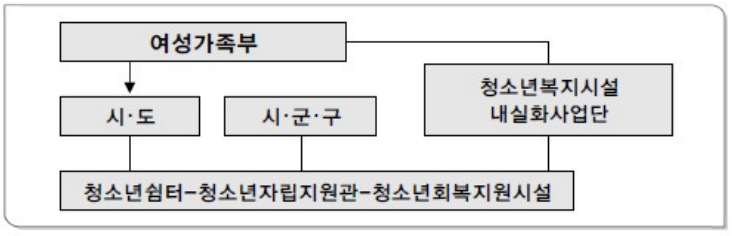
시설유형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내용	
청소년 중장기 쉼터	거주 공간 및 식사 제공	
	기초생활관리서비스	의식주 생활관리: 식사, 공동생활 규칙 준수 등
		경제 생활관리: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건강관리: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문화체험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 지원 등
	직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평가: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직업정보 탐색, 구직전략 세우기 등
		취업훈련: 인턴십 체험, 자격증 취득교육 등
		취업지도: 구직활동 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학업지원서비스	학력취득 위한 검정고시 준비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개인학습 지도
		학비 지원
	정서적지지 및 상담서비스	개별사례관리, 사례회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등)
		교육훈련: 성교육, 금전관리, 예절교육 등
청소년 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공	
	독립생활기술 훈련	소비지출 등 경제 생활관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독립생활지원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 서비스(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등)
		정기적인 사후 관리
		기본 생계위한 보조금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정서적지지 및 정기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및 연계	
	의료비 지원(쉼터 의료비 지원 수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보호 및 생활 지원	보호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관련 정부부처(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92, 680-681, 686

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모두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물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자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나 생활비 또는 용돈 등의 현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4)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달체계는 아래 그림 Ⅲ-2처럼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 현장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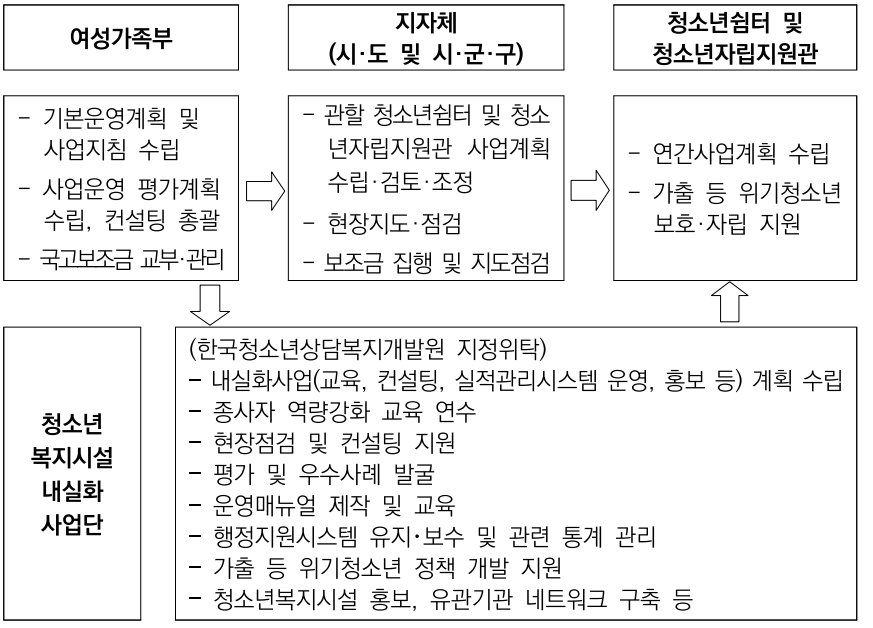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34

주: 청소년복지시설내실화사업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정위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등 담당

그림 Ⅲ-2.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그리고 현장의 시설들 간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Ⅲ-3), 여성가족부는 전반적인 사업운영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운영 평가 및 국가보조금 교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지도·점검과 보조금 집행·점검을 수행한다. 현장의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은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종사자 역량강화 및 현장 컨설팅, 평가 및 운영매뉴얼 제작, 행정지원시스템과 관련 정책개발 지원 등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34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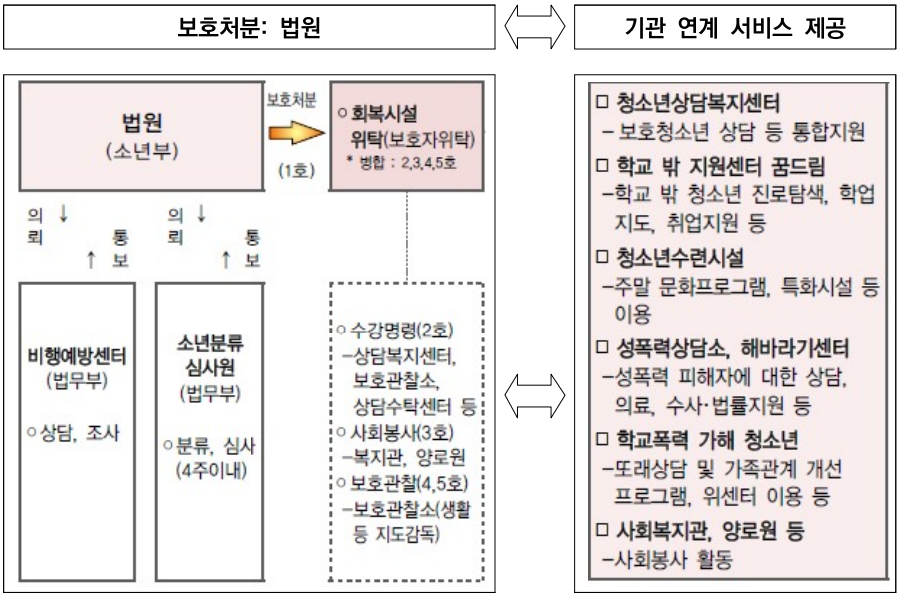
그림 Ⅲ-3.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지원 추진체계별 역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이러한 전달체계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요구되고 있다[28]. 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쉼터간의 연계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남미애 외, 2012; 백혜정 외, 2016), 타 부처의 정책 사업과 더불어 각 지역 내 다른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이

28)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많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하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궁극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충분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법무부와 연계되어 더욱 복잡한 상황인데(그림 Ⅲ-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도 부처별 연계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별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조정할 담당조직이 필요하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686.

그림 Ⅲ-4. 여성가족부: 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의 보호처분 현황 및 서비스 추진도

(5) 재원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비는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법인부담금,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에 근거하며 보조를 신청한 시설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복권기금에서 전입)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예산은 2018년 기준 '청소년 가출예방 및 운영 경비'로 88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15,570백만원이다(여성가족부, 2017b).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2018년 계획 기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불안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백혜영, 강현아, 2016). 또한 이 예산에는 실제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청소년쉼터 130개소, 거리상담 30개소, 야간보호 13개소)으로 14,390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이 403백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내실화 202백만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575백만원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어서(여성가족부, 2017b) 청소년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당 예산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Ⅲ-4.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포함) 운영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계획(A)	2018 계획(B)	증 감	
						(B-A)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666	10,001	12,571	13,565	15,570	2,005	14.8

* 출처: 여성가족부(2016~2017b).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주: 자립지원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청소년쉼터 전체 운영 예산임.

이에 쉼터 유형별 운영비를 살펴보면(표 Ⅲ-5) 중장기쉼터의 경우 144,940천원(37개소 기준)으로 이중 국비는 50%를 차지하는 72,470천원이다. 전체 금액 중 인건비 비중은 68.9%로 99,800천원, 사업비는 27.1%인 39,280천원, 운영비는 4%인 5,860천원이다. 전체 운영비인 144,940천원을 기준으로 중장기쉼터의 경우 월 1천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할당되는데, 청소년 중장기쉼터의 인력 배치가 4명(시설장 1명, 보호·상담원 2명, 행정취사원 1명)이라고 할 때, 비록 최근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들의 인건비와 사업비,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시설 특성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표 Ⅲ-5. 여성가족부: 쉼터유형별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예산배정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쉼터 유형별 연간운영비						일시쉼터 기능강화 지원		
	일시쉼터 (고정·이동)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거리 상담	야간 보호	건강 특화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총 사업비 (A+B+C)	217,400	144,940	181,170	289,870	326,110	144,940	64,078	49,900	16,000
국비(50%)	108,700	72,470	90,585	144,935	163,055	72,470	32,039	24,950	8,000
인건비(A)	149,700 68.9%	99,800 68.9%	124,750 68.9%	199,600 68.9%	224,550 68.9%	99,800 68.9%	49,900 77.9%	49,900 100.0%	
단가(연)	24,950	24,950	24,950	24,950	24,950	24,950	24,950	24,950	
지원인원	6	4	5	8	9	4	2	2	
사업비(B)	58,920 27.1%	39,280 27.1%	49,100 27.1%	78,560 27.1%	88,380 27.1%	39,280 27.1%	14,178 22.1%	0 0.0%	16,000 100.0%
운영비(C)	8,780 4.0%	5,860 4.0%	7,320 4.0%	11,710 4.0%	13,180 4.0%	5,860 4.0%			
운영개소수	30	5	30	23	4	37	30	13	3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사업안내. p. 551.

주: 거리상담 사업비는 거리상담 활동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하며, 쉼터 운영이나 야간보호사업에는 편성 불가능함.

또한, 청소년쉼터 역시 국비와 지방비 외에 법인부담금이나 후원금 같은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하나(여성가족부, 2018), 후원금의 경우 타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홍보와 인식 미흡 등으로 쉼터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29].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개소에 더해 올해 2개 시설이 개소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데 유보적일 수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그동안 법원을 통해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지급되는 월 60만원 수준의 교육비 명목의 비용을 제외하고 중앙부처를 통한 별도의 국고보조가 없었다[30]. 그러나 2016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동안 국가보조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및 미디어에서의 지원 요구에도 좌절되었던 국고지원이 2019년부터는 가능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8.8.28)[31].

29) 현장종사자들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에서 가출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개인 및 법인 대상의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0) 당초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국비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342회 법안 심사, '16.5.16), 또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지급되는 법원을 통한 월 60만원 미만의 교육비 명목의 비용은 별도 관리된다(여성가족부, 2018).

3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08.27.): 2019 여성가족부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849에서 2018년 10월 10일 인출.

2) 보건복지부 정책

(1) 현황 및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일찍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1993년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들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수행해 왔다(보건복지부, 2018a).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등으로, 자립에 필요한 거주지, 생활, 교육, 취업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과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자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시설아동대상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종사자 교육, 자립지원관련 일련의 과업을 담당할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까지 그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비교적 구체적이다(보건복지부, 2018a). 또한, 시행령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립전담종사자에 대한 교육, 자립정착금 지원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표 Ⅲ-6).

표 Ⅲ-6.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법적 근거

법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출처: 법제처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09.

특히 주목할 점은(표 Ⅲ-7 참조) 자산형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서비스와 같은 현물뿐 아니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통한 현금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의 법적 근거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현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 아동 관리와 후원자 발굴, 관련 교육과 연구 및 평가, 관련 업무 위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8a).

표 Ⅲ-7. 보건복지부: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산형성위한 법적 근거

법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09.

(2) 정책대상[32]과 범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사업의 주 대상은(표 Ⅲ-8)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복지시설과 대리양육/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32)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함께 상담 및 생활,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중심으로 다루었다(자립지원 중 주거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 영구임대 지원, 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p. 223~226 참조).

서 퇴소 또는 가정 위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으로 이들의 자립준비에서부터 보호종료 후의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지 뿐 아니라 자립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만 18세~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현금지원인 아동발달계좌 사업(디딤씨앗통장)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과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지원한다(표 Ⅲ-8 참조).

표 Ⅲ-8.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의 자립지원 정책

관련정책	자립지원 대상
자립지원 사업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 위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시행령 제38조)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된 만 18세~24세 이하 청소년
디딤씨앗통장 (CDA)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자립정착금	-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방이양사업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09~210, 216, 227, 240.

*주: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정책 사업에 포함시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표 Ⅲ-9에서 보듯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주거지원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청소년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세주택지원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되며 이후 약간의 이자가 발생하나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의 경우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 중 만 23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이외에도 영구임대 지원과 공동생활가정 입주 지원 등에도 보호종료 청소년 중 만 18세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도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기숙사에 우선 배정될 수도 있다.

표 Ⅲ-9.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정책 대상 예시

관련시설	지원대상	연령범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소년소녀 - 가정·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일반)·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교통사고유자녀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중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2년 단위 계약, 3회 재계약(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인 경우 지원가능)
영구임대 지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무주택세대주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기본 거주기간 :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입주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6개월 이내 보호종료 및 예정자 포함)	2년(연장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23~226.

(3) 급여형태 및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비교적 다양한 현물서비스와 현금이 지원된다. 특히 표 Ⅲ-10에서 보듯이 현물서비스와 관련해서 자립지원을 총괄하는 아동자립지원단 설치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 자립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전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와 보호종료 후 일련의 자립지원을 총괄하고(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자립관련 종사자 및 청소년 교육,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 각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표 Ⅲ-10.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내용

급여형태	사업	서비스/프로그램
현물	아동자립 지원단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취업형,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필요 내용 지원)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개발 보급,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아동자립교육 및 자립체험교육 훈련(자립체험관), 자립준비캠프, 아동자립 사후관리, 민간과 자립지원 자원연계, 자립지원사업 운영 평가, 각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등
	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주택 또는 전세임대, 영구임대 주택 지원, 공동생활가정 입주 지원 등
	아동자립 생활관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상담 및 정서 지원, 생활, 자립 지원 등 제공(전국 12개소)
현금	디딤씨앗통장 (CDA)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하며,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지자체), 정착금지급 후 사후관리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07~277에서 해당 내용 발췌

표 Ⅲ-11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로, 아동의 시설 입소 후 적응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동

의 성인기 자립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립한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동의 요구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만 15세부터는 본격적인 개인별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취업형과 진학형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진로준비를 하도록 하며 이후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를 점검하고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8a).

표 Ⅲ-1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단계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소(위탁) 상담	•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2단계	입소(위탁) 결정 후	• 건강, 정신, 심리, 학습 관련 통합사정 실시
3단계	시설(위탁가정)적응 기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단계	적응기간 경과 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센터)내 사례관리회의 - 자립·건강·심리·학습 등 관계자 참석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1, 4단계의 내용 반영 - 원가족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6단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5단계의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립지원]메뉴에 입력 * http://www.w4c.go.kr
7단계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연령·수요에 맞추어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단계	자립준비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9단계	보호종료 전 점검	•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 대학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족 관계 등
10단계	보호종료	
11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실시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11.

아동양육시설 등 대안양육체계에서는 미취학아동시기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인 수준에 맞는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프로그램

(Ready? Action!)[33]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자립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a). 비록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종사자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지적되고 있으나(정익중, 장혜림, 2015), 적어도 일정수준의 종사자 교육을 전제로 한 표준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가능케 하며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다른 서비스로 실제 자립생활을 경험할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립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이들이 최소한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Ⅲ-10). 오랜 기간 자립을 위한 현금준비가 가능하도록 국가(지자체)와의 1:1 매칭 펀드를 통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보호종료되는 만 18세 이후에 주거 마련 및 학비·취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1인당 최소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34].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장학금과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4) 전달체계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구분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자립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총괄하며,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실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아동자립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 등 운영지원과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지만 실제 자립지원 업무는 각 지역의 자립지원 전담기

33) Ready?: 미취학~보호종료 전까지, 보호종료 후 대비 자립준비 프로그램,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2018a).

34)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나, 인천시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기호일보 2018.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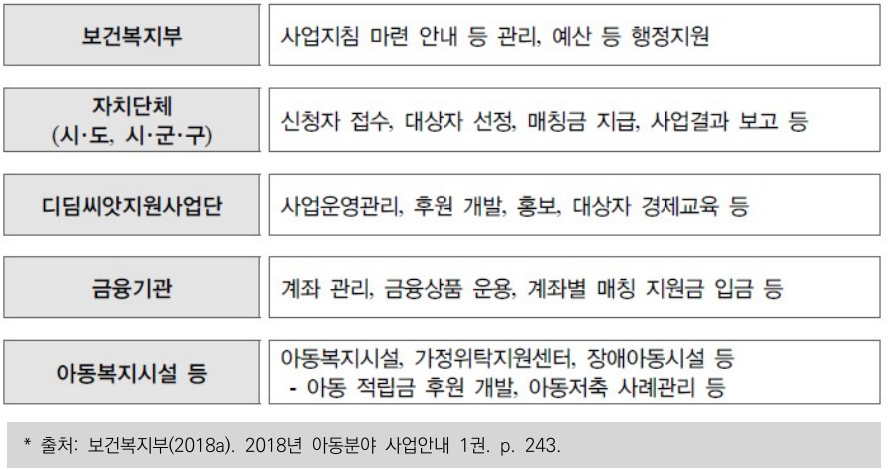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전반적으로 아동자립지원단과 전담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 아동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아동자립지원단 관리·감독
	아동자립지원단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 운영 평가 •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홍보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아동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계획 수립 업무협조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업무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 보호종료아동(중점사례관리 대상) 사후관리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입소(위탁)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 만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 •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 만 18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 위기대상은 중앙 및 시·도 전담기관 연계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15.

그림 Ⅲ-5. 보건복지부: 보호아동 자립지원 담당기관 체계

또한 현금서비스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아동발달지원계좌, CDA)의 전달체계를 보면(그림 Ⅲ-6),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 마련 및 관리와 예산 등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매칭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도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제 사업운영관리와 후원개발 및 대상자 경제교육과 같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의 특성상 금융기관과의 역할 역시 중요하며 계좌관리 및 지원금 입금 등 적립금 관리를 담당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243.

그림 Ⅲ-6.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전달체계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현물서비스 및 현금서비스 모두 관련 계획수립과 예산, 모니터링 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실제 사업운영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은 간접적으로 위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재원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에는 국비와 지자체 부담금,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재원이 모두 투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국비예산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의 경우 자립지원단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 지원금은 2015년 1,020백만원에서 2018년에 총 1,021백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표 Ⅲ-12) 차년도 예산안에는 보호종료 2년 내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생활할 주거공간 240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되었다[35].

표 Ⅲ-12.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2015~2018)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20	1,000	1,012	1,021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8호 p.1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의 경우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2017년에 173억원에서 2018년에는 196억원으로 약 13.3%p 증가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요보호 아동은 2.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대상자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b). 당초 3만원이었던 정부지원 금액은 2017년부터 4만원으로 확대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디딤씨앗통장 계좌에 4만원이 입금되면 국가에서 40,000원을 적립하여 총 80,000원이 되며, 이후 자립을 위한 기초 자산이 된다(보건복지부, 2018a)[36].

35) 연합뉴스 2018.8.28 [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6/0200000000AKR20180826059700002.HTML?input=1195m 2018.10.22. 인출.
36) 아동은 4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으나 국가는 4만원 한도로 적립하게 된다.

표 Ⅲ-13.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2009~2016)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 (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청소년백서. p. 182.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또 다른 현금서비스인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표 Ⅲ-14).

표 Ⅲ-14. 보건복지부: 지역별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2017년 지급(1인당)			2018년 계획(1인당)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500	500	500
부산	500	500	500	500	500	500
대구	300	300	300	300	300	300
인천	300	300	300	300	300	300
광주	500	500	500	500	500	500
대전	300	300	300	300	300	300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500	500	500
경기	500	500	500	500	500	500
강원	300	300	300	400	400	400
충북	500	500	500	500	500	500
충남	500	500	500	500	500	500
전북	500	500	500	500	500	500
전남	300	300	100	500	500	400
경북	500	500	300	500	500	300
경남	500	500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500	500	500

* 출처: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board?menuId=MENU00633&siteId=null 2018.10.22

이에 자립정착지원금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국비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권고되기도 하였으나(국민권익위원회, 2016; 국회예산정책처, 2016), 최근까지도 지자체간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의 복지재단과 장학재단, 영어교육 등을 통한 민간후원 등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학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자립지원단이 이러한 자원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7].

3. 소결 및 시사점

본장에서는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 정책을 법적근거, 정책대상, 급여형태 및 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의 정책 분석틀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관련 정책과 함께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운영비용 증가와 자립지원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복지시설로의 편입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시설보호의 긴 역사만큼이나 자립지원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아동복지 분야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립지원에 필요한 주거마련, 자립준비프로그램 제공, 아동발달계좌나 자립정착금과 같은 현금지원까지 비교적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로 자립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현물·현금서비

37)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참조(https://www.kohi.or.kr/board?menuId=MENU00565&siteId=null, 2018년 10월 22일 검색)

스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관련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내용 역시 좀 더 상세하게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매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 모두 20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경제적, 심리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연령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확충이 더욱 요구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도 지원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관련 급여형태 및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소년들 역시 아동발달계좌 및 자립정착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엄밀한 재정 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용돈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위한 기초자금의 부족으로 일탈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과 같은 금액으로 청소년기에 가입하게 되면 이후 목돈마련이 어려우므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나 시설 수준이 아닌 국비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표준화와 이를 명시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우 자립지원을 전담 총괄하는 기관이 비교적 체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및 계획수립에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타 정부부처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민간후원과의 연계까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재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지자체와 매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방이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립지원에서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비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재고하여야 한다.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가정외 보호 아동청소년이라고도 칭한다(예,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또 본 연구에서처럼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명칭과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주무부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지 못하며 자립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 동일 정책대상으로 본다고 할 때 한편에서는 서비스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정부 주무부처의 차이와 또 이로 인한 서비스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의 차이와 서비스 배제 및 누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Ⅳ장 사례 연구: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Ⅳ 사례 연구: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38]

1. 국내 사례

앞장에서는 국내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그중 벤치마킹 또는 확산을 위해 일부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1)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39]

(1) 사업의 개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주거지원, 개인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관리,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의 제공 등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종결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세 곳,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이며 이 사업의 예산은 현재 삼성전자 임직원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 간 지원하였으며 지원 종료 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한다. 또한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이 각 지역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운영

38) Ⅳ장 사례 연구의 1절은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2절 중 영국, 미국사례는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독일과 프랑스 사례는 이영란 연구원(순천향대 청소년연구센터)의 집필한 것을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보완하였다

39)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 홈페이지(http://adongbokji.or.kr/jarip/contents/sub0201_2.html 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지원, 관련 조사·연구진행, 교육교재 및 업무매뉴얼 개발, 종사자 교육 및 훈련사업 제공, 네트워크 형성, 사업 홍보 등이 포함된다.

(2) 사업내용 및 대상

① 자립준비 지원[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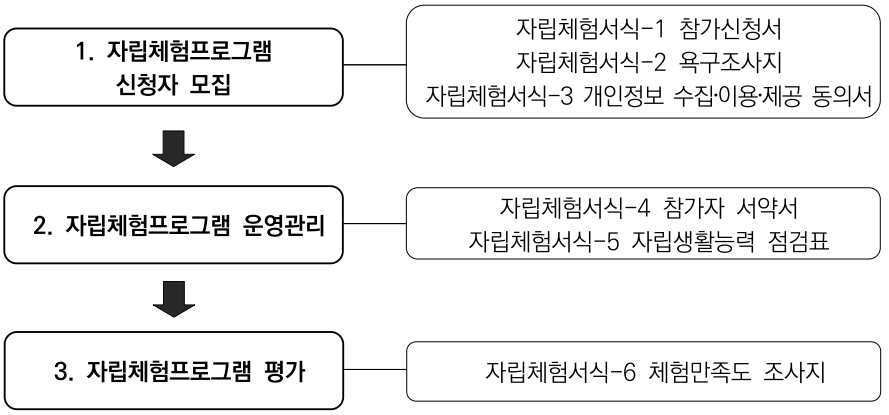
자립준비 지원은 자립준비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자립역량강화 학습지원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취업 및 자립생활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멘토링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게 멘토단을 구성하여 1년에 8회 이상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역량강화 학습지원은 학원 연계,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통해 자격 및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자립체험 지원[41]

자립체험 지원은 아동복지보호체계에서 퇴소예정인 만 15~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퇴소 전 자립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자립생활의 체험을 통해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자립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자립에 대한 준비와 동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체로 2박 3일에서부터 5박 6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며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립체험 지원은 크게 신청자 모집, 프로그램 실시, 평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Ⅳ-1).

40) 자립준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한국아동복지협회(2018). 보호아동·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41)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2016). 자립체험 지원단계 업무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출처: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2016). 자립체험 지원단계 업무매뉴얼. p. 4

그림 Ⅳ-1. 자립체험 지원 업무 흐름도

첫째, 신청자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모집하며 이들 참가 신청자들은 사전에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체험 참여자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자립체험 관련 사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단계에서는 체험관에 입소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활지침을 숙지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후로 자립생활능력 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자립생활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데 참여자는 만족도와 의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자료들은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에 활용된다.

③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은 아동복지보호체계에서 퇴소한 만 18~2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 1실의 원룸형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생활로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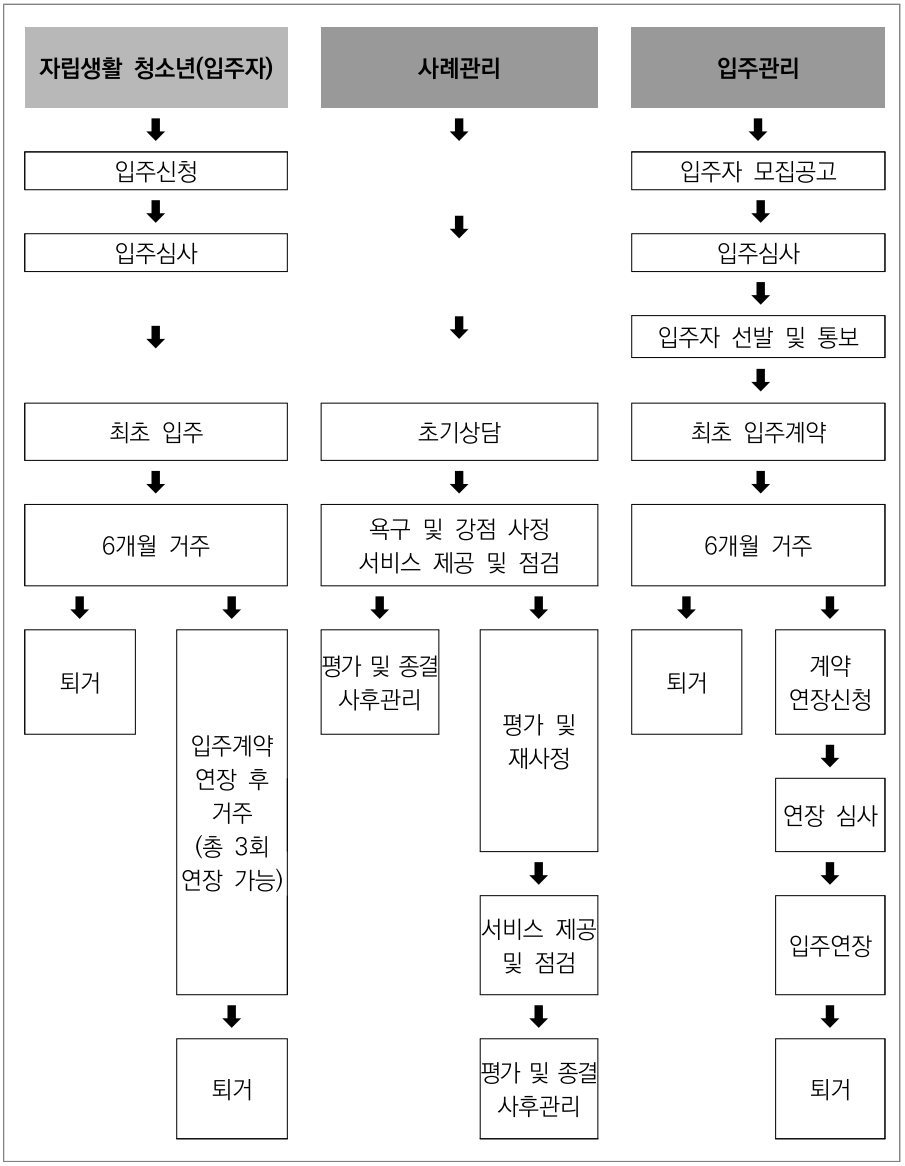
은 입주 심사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야 하며 이후 초기 상담을 거쳐 사례관리와 입주관리가 진행된다. 입주청소년은 6개월마다 실시되는 평가를 통과할 경우 6개월씩 총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장 2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은 그림 Ⅳ-2에 제시하였다. 각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사례관리와 입주관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2].

○ 사례관리 단계

가장 먼저 실시되는 초기 상담에서는 기본 인적 사항과 입소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원하는 도움과 지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욕구 및 강점 사정 단계에서는 각 개인별 서비스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각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욕구와 강점 및 자원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욕구 및 강점 사정이 완료된 후에는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서비스의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기목표는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는 최장기준인 2년을 기준으로, 단기목표는 3~6개월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크게 4가지 주요 생활영역, 즉 주거생활, 재정관리, 정서관리, 진로취업 영역에 대한 직·간접 서비스가 있으며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담당한다.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의 변화와 반응, 과업수행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반영해야 한다.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이전에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와 청소년의 변화 정도를 통해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퇴소한 이후에는 사례관리의 효과가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2) 자립생활 지원 중 사례관리와 입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2016). 자립생활 지원단계 업무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출처: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2016). 자립생활 지원단계 업무매뉴얼. p. 4

그림 Ⅳ-2. 자립통합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 업무 구조

○ 입주관리

각 생활관 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입주관리자는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안내문을 공지함으로써 입주 대상 청소년을 모집한다. 모집준비는 거주 중인 청소년이 퇴소 의사를 밝힐 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고 입주자를 결정한다. 입주자가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입주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입주기간 동안 입주관리자는 입주 청소년들의 내규 위반 여부, 관리비 연체 여부, 시설 파괴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와 동일하게 6개월마다 있는 심사를 통해 입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입주계약 기간 중이라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퇴거 기한을 통보하고 해당 기한 내에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운영 예시: 부산 자립지원센터

전술했듯이 이 사업은 세 지역, 즉 대구, 부산, 강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주거공간을 포함한 지원센터가 있다. 지역 운영기관별 주요 내용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지역 운영기관별 주요 내용

구분	강원	대구	부산
시설	생활관 30실, 체험관 2실	생활관 28실, 체험관 2실	생활관 10실, 체험관 2실
특징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 지향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모델 (오피스텔 일부 층을 매입하여 이용)	교육·자립체험 중심의 모델
서비스 내용	자립준비, 자립체험, 자립생활, 사후관리		

* 출처: 한국아동복지협회(2018).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공청회. p.84

그 중에서 부산의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센터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자립지원전담기관 근무자 4명(과장 1명, 팀장 2명, 대리 1명),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근무자 4명(대리 1명, 사회복지사 3명) 등이 상근하고 있다(박금식, 손주영, 박지영, 2017). 또한 이들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자립체험관 22개실과 생활관 10개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표 Ⅳ-2)(박금식 외, 2017). 2017년 사업계획을 보면 사례관리는 총 30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립준비로는 요리 교육 20회, 제과제빵 교육 10회, 바리스타 교육 20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박금식 외, 20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시설

구분	내용
지하 1층: 소교육장, 실습·훈련실	- 소교육장은 15명 수용, 소규모 교육 진행 - 요리, 제과제빵 등 직접 체험
1층: 건물 입구	- CCTV,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아동 안전지킴이
2층: 세미나실, 북카페	- 세미나실 80명 수용 - 다양한 정보 제공, 유용한 지식과 사회기술 전달 - 북카페 - 바리스타 체험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3층: 건물통합관리시스템, 상담실, 사무공간	- 개별·집단 상담실 - 욕구 사정 및 지지적 상담·개입을 통한 아동 강점 강화
4층~5층: 자립체험관 12개실	- 아동 1인 1실로 독립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생활 자립체험 공간 구성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싱크대, 주방기기, 청소기, 밥솥, 식기류 비치
6층~7층: 자립생활관 10개실	- 아동 1인 1실로 독립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자립생활관 입주를 통해 안정적 주거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기회 제공

* 출처: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내부자료로 박금식 외(2017)에서 재인용 p.49.

표 Ⅳ-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계획(2017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 rowspan="2">자립체험</td><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 colspan="2">4단계</td></tr>
<tr><td>• 대상: 15세 이상
• 인원: 110명
• 일정: 2박 3일
• 내용
- 자립기술 파악
- 자립동기 부여</td><td>• 대상: 15세 이상
• 인원: 110명
• 일정: 5박 6일
• 내용
- 자립관리능력 향상 교육
- 자기관리, 자립인식 확립 교육</td><td>• 대상: 15세 이상
• 인원: 150명
• 일정: 4박 5일
• 내용
- 자기계획 수립
- 주거경제 교육</td><td colspan="2">• 대상: 15세 이상
• 인원: 130명
• 일정: 4박 5일
• 내용
- 주거경제 교육
- 주택구입, 금전관리 능력 강화
- 최종점검 및 재사정</td></tr>
<tr><td colspan="5">공통: 8대 영역기술(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돈 관리 기술,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td></tr>
<tr><td>자립준비</td><td colspan="2">• 요리 교육(실습): 20회
• 제과제빵 교육(실습): 10회</td><td colspan="3">• 바리스타 교육(실습): 20회
• 진로체험(키자니아): 2회</td></tr>
<tr><td>사례관리</td><td colspan="5">• 대상: 30명(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 기간: 연중(1년간)
• 내용: 종합심리검사, 생필품지원, 자기관리 교육, 긴급지원, 취업지원, 문화체험지원</td></tr>
<tr><td rowspan="6">교육사업</td><td>자립준비 교육</td><td colspan="4">• 진로탐색「미래를 설계하자」: 연1회, 고등·연장아동
• 퇴소예정아동 자립준비캠프: 연1회, 고등·연장아동</td></tr>
<tr><td>진로 교육</td><td colspan="4">• 대학교 탐방: 연1회, 중3아동
• 취업전략 교육: 연9회, 고등학생
• 모의면접 실시: 연4회, 고등학생</td></tr>
<tr><td>역량강화 교육</td><td colspan="4">• 자기이해·관계기술 교육: 연1회, 고등학생
• 경제·금융 교육: 연2회, 고등학생</td></tr>
<tr><td>자격취득 교육</td><td colspan="4">• 꿈을 Job자 프로그램: 연2기(연중) 100명</td></tr>
<tr><td>서포터즈 교육</td><td colspan="4">• 강사양성 교육: 연1회
• 해바라기 서포터즈 강사파견: 연13회
• 변호사 서포터즈: 연 12회</td></tr>
<tr><td>실무자 역량 강화</td><td colspan="4">• 시설종사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연1회
• 양육기술 강화 교육: 연1회
• 사례관리 및 워크숍: 연3회</td></tr>
<tr><td>자산형성 지원</td><td colspan="5">• 아동발달지원(디딤씨앗통장)계좌 관리(신규가입아동 및 후원자 모집 등)</td></tr>
<tr><td>기타</td><td colspan="5">• 사업 홍보, 퇴소아동 사후관리, 자립지원계획 수립 관리, 긴급주거 지원
• 자립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td></tr>
</table>

* 출처: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내부자료로 박금식 외(2017)에서 재인용 p.52.

(4) 성과[43] 및 특성

이 사업을 통해 2014~2017년 3년간 총 1,613명의 시설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주거공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멘토링, 일상생활 기술 등을 지원받았다. 일상생활 기술로는 세탁, 음식관리, 쓰레기 분리 배출,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부동산 계약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자립생활훈련을 받은 아동은 총 933명,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한 청소년은 총 21명으로 집계되었다.

2)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립지원

법무부에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를 통하여 소년원 출원 후 돌아갈 가정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드림 비즈니스(취·창업보육훈련장), 희망드림 프로젝트, YES센터(사회정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드림 비즈니스(취·창업보육훈련장),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자립생활관[44]

① 사업의 개요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중간처우시설로서 전국 8개소가 그룹홈 형태로 설치·운영(표 Ⅳ-4) 중이다. 각 생활관의 정원은 12~20명으로 총 130명이 입소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있거나 만 23세가 될 때 퇴소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각 시설 당 4명(관장 1명, 실장 3명)이며 생활지도, 사회정착 지원, 행정·취사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04_pr/news/news_view.jsp?sno=44438.0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의 내용이며 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성과보고대회가 개최되었으나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44)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주요 내용은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kjpa.or.kr/sub.asp?cate1=2(2018년 6월 7일 인출)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등의 업무는 각 생활관의 특성에 따라 실장들이 나누어 담당한다(김지연, 백혜정, 2017:36). 자립생활관시설의 예시로 경기도에 있는 자립생활관을 보면 숙소 7실(2인1실) 외에 강당, 학습실, 세면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그림 Ⅳ-3).

표 Ⅳ-4. 청소년자립생활관 현황

시설	소재지	정원	설립지원기관
경기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4	재단/복권기금
부산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6	포스코/복권기금
대구	대구시 북구 읍내동	16	포스코/복권기금
광주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16	포스코/복권기금
대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12	가스공사
경기여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	20	가스공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8	복권기금
강원	강원도 춘천시 학곡리	18	복권기금

*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kjpa.or.kr/sub.asp?cate1=2&cate2=4)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그림 Ⅳ-3. 경기 자립생활관 내부 사진

② 사업내용 및 대상

이용대상은 만 12~22세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기관의 추천이나 의뢰받은 청소년, 자립지원이 필요한 무의탁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이다. 생활관 입주 시 청소년들은 입주생 카드, 초기 상담지, 자립계획서, 입주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숙식 및 상담 지원과 같은 기본지원 외에 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장체험지원, 재능기부자 연계지원 등이 제공되며(표 Ⅳ-5 참조), 입주 청소년들에게 입주비나 급식비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단 취사 및 세탁은 입소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일부 입소 청소년들은 취업활동지원의 일환으로 희망드림비지니스 프로그램에 실습생 등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관 퇴소 후 각자의 지역에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희망드림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관외 거주생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희망드림비지니스 및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표 Ⅳ-5.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기본지원	무료숙식 제공,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학업연계지원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지원(학원 및 과외 전문기관 연계)
취업활동지원	미용, 제과제빵, 컴퓨터 등 취업기술 지원(진로 및 직업전문기관 연계)
현장체험지원	문화체험, 스포츠체험, 봉사활동, 캠프지원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재능기부자 연계지원	음악, 그림, 사진 등 개인이 가진 특기를 발굴, 전문가 연계를 통한 대학진학 및 취업지원

*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③ 성과 및 특성

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정원 142명에 현원 118명으로 문화체험 활동 44회, 봉사활동 24회, 직업훈련 5명, 취업 19명, 중고등학교 진학 2명, 검정고시 5명 등의 실적이 보고되었다(한국소년보호협회, 2017a).

(2) 희망드림 비즈니스(취·창업보육훈련장)[45]

희망드림 비즈니스는 수익창출형 취·창업보육훈련장 프로그램인 희망드림 비지니스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실습을 경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운영수익은 전액 적립하여 청소년들의 창업보육 자금으로 활용된다. 희망드림 비지니스 프로그램으로 2018년 6월 현재 카페 6개소(의왕점, 화성점, 안양원점, 안산점, 대전점, 부천점), 매점(부산), 출판인쇄업(의왕점)이 운영되고 있다(그림 Ⅳ-4). 부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소년보호협회 직영으로 운영되지만 부천점은 소년원 출원생을 채용조건으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전과 부산의 경우에는 자립생활관과 같이 운영되면서 생활관 청소년들이 모두 훈련에 참여한다.



* 출처: 한국소년보호협회(2018). 한국소년보호협회 소개(내부자료).

그림 Ⅳ-4. 취·창업보육훈련장 사진

45) 희망드림 비즈니스 관련 내용은 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한국청소년보호협회, 2018)와 종사자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실적을 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48명이 취·창업보육훈련장에 채용되었으며, 2017년 한 해 누적 채용인원은 9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취·창업보육훈련장은 소년원생이나 자립생활관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실습 등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2017년에는 106명의 청소년이 실습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3) 희망드림 프로젝트[46]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출원생 중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 자립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7가지 영역을 지원한다.

① 장학: 중·고등학력 검정고시, 취업교육생, 대학 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모범 장학생을 발굴, 장학금 지급 및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 대학 진학자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등록금 차액 외에도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주거: 주거가 불안정한 출원생, 자립생활관 퇴소생에게 청년임대주택, 희망드림 하우스, 보증금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지원한다. 청년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연계를 통해 2년 단위로 총 6년간 주변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희망드림 하우스는 긴급지원 형식으로 장기 미임대 주택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없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보증금 임대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③ 취업: 안정적인 취업처 제공을 통해 직업경험 및 전문기술 습득, 사회성 함양, 사회정착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취·창업 보육훈련장, YES센터[47]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골프 매니지먼트, 용접,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분야에서 취업훈련이 가능하다.

④ 창업: 취·창업 보육훈련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응대 기법 향상, 기업가 정신 도모 등을 지원하다. 취업관련 사업

46) 희망드림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한국소년보호협회 내부자료(한국청소년보호협회, 201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47) YES센터는 출원생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센터로 이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yescenter2014.org/) 참조

과 마찬가지로 취·창업 보육훈련장, YES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⑤ 원호: 영유아 자녀를 둔 출원생에게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 보육 지원(아기사랑), 군입대자들의 군생활 적응 및 위문 지원(나라사랑), 재·출원생에게 시력검사 및 안경지원(눈사랑),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 지원(긴급지원), 기타 소년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⑥ 웨딩: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출원생 부부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장소 및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⑦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통하여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 등을 지원한다.

(4) 성공사례[48)]

① 수호의 사례

수호(22세)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에 합격, 호텔조리학과에 입학하였다. 학과에서는 과대표와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4.5점 만점에 4.13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2016년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단품요리' 부분에서 금상, '라이브 요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꿈은 퍼스트 쿡이 되어서 레스토랑을 창업하는 것이다.

② 민섭의 사례

열다섯 살부터 방황을 시작한 민섭은 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일자리를 얻었으나 1년 만에 그만두고 떠났다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소년보호협회의 문을 다시 두드렸고 협회는 그를 받아들여 현재는 경기도 화성에서 운영하는 상상드림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1월 바리스타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48) 여기에 제시된 성공사례는 2017년 희망드림 페스티벌 사례보고대회 발표집(한국소년보호협회, 2017b)에 수록된 사례이며 개인의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하였다.

2. 국외 사례

이 절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관련 법 및 정책, 우수 지원사례 등 국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성인기의 자립이 강조되는 서구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로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우수 지원사례로는 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1) 영국

(1) 관련법 및 정책

영국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 및 정책은 주거지 지원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4월 3일부로 시행되는 「노숙인 감소 법령 2017」(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2017)에 의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우선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 이들은 1) 임산부,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3) 나이,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자, 4) 「아동 법령 1989」 (Children Act 1989)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16~17세 무연고 청소년, 5) 16~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 종결된 21세 이하 청소년, 6) 16~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 종결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21세 이상인 자 7) 군복무의 결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 8) 수감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 9) 폭력 피해 등으로 거주지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 10) 기타 특별한 이유로 취약한 자, 11) 천재지변 등으로 거주지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자이다. 또한 28일에서 56일 정도 거주지가 불안정한 이들은 거주지 취약 위험이 있는

자로, 그 중 56일 이상 거주지가 불안정한 이들의 경우 거주지가 취약한 자로 분류되며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시행령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청소년 중에도 가정폭력이나 보호 종결, 무연고 청소년들 중 거주지가 취약한 이들은 거주지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거주지를 배정받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가정폭력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가정해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Centrepoint, 2018).

한편 「아동 및 가족 법령 2014」(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 따르면 가정을 떠나 사회적 돌봄을 받는 경우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도 아동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법령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원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데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그 사회적 돌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2) 자립지원 우수사례: 센터포인트(Centrepoint)[49]

영국사회는 앞서 언급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민간에서 설립한 봉사기관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센터포인트라 할 수 있다. 센터포인트는 1969년 창립된 이래 영국 런던, 맨체스터, 요크셔, 노스이스트 등에서 협력기부단체들과 함께 매년 9,200명 이상의 가정 밖(homeless)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49) 센터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s://centrepoint. org.uk/에서 2018년 4월 27일 인출).

① 운영 방침

○ 종사자 현황

센터포인트에는 전국에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에는 최일선의 활동가에서부터 상담가, 건강지원 전담가, 진로지도 전담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자원봉사자, 후원자, 홍보대사 등이 이들을 지원한다. 각 호스텔에서 활동하는 이들 외에 상위조직으로 선임경영팀(senior executive team)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 안에는 본부장, 기획·수행 책임자, 훈련·취업 책임자, 주거지·지원 책임자, 정책·홍보 책임자, 재정 책임자 등으로 나뉜다.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이들을 채용하고자 노력하며,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사기업이 아닌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급여 수준에 맞추고 있다. 선임경영팀의 연봉은 일인당 £60,000[50]정도이며 기관장의 연봉은 £130,000수준이다.

○ 입소 대상 및 경로

입소자들은 16~25세의 노숙 또는 노숙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지자체(주민센터)의 의뢰를 통해 입소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이 의뢰할 수는 없으며 노숙 중이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이들은 지자체에 문의한 후에 지자체를 통한 입소만 가능하다. 이들의 상당수는 가족해체, 학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을 경험한 경우이다. 또한 입소자 중 일부는 보호 종결된 자이거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입소자의 약 28%는 일명 “숨은 노숙자”로 일컬어지는 이들로 야간버스, 기차역, 친구 집 등을 전전한 이들이다.

○ 비용

입소자들은 매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연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 지불은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 가격을 반영하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비용 지불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재정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50) 2018년 11월 기준 1파운드(£)는 한화 약 1,450원에 해당된다.

○ 아웃리치

센터포인트는 자립기관이며 아웃리치 기관이 아니므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아웃리치는 스트리트링크(Streetlink)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 기금 마련 및 기부 정책

센터포인트는 기금 마련을 위해 개인 기부를 받고 있다. 물품 기부는 저장공간의 협소로 항상 받고 있지는 않으며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이나 중고 침구 및 가전제품, 속옷 등은 접수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부 가능한 음식물의 경우는 트러셀 트러스트(Trussell Trust)라는 별도의 음식 기부 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기부에 있어서 기프트 에이드(Gift Aid)라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부하는 방식이다. 즉, 센터포인트에 £100를 기부했을 경우 센터포인트에서는 4년 동안 정부에 25%를 추가로 더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125의 돈을 기부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프트 에이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1 중 76p(펜스)는 노숙 청소년들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1p는 운영에, 23p는 기금 마련에 활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지원 서비스

이 단체는 16~25세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훈련, 근로 현장 재적응을 위해 이들에게 숙소, 건강지원, 생활기술 등을 제공한다[51]. 이러한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51) 센터포인트는 노숙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도 주거지, 가족, 건강 영역 등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숙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노숙청소년들의 개인 재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 지원에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 숙소 지원

이들이 제공하는 숙소는 단기간 머물 수 있는 호스텔 뿐 아니라 장기 숙박이 가능한 거주지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숙소는 총 1,200여 개이며 최장 지원 기간은 사후 관리 6개월을 제외하고 2년이다.

○ 건강 지원

센터포인트 입소 청소년들은 한 달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며 이후 장·단기적인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 건강생활 워크숍, 영양 및 요리 워크숍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생활 전담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 학습 및 훈련

센터포인트에 입소한 청소년 중 40%는 학력이나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 이후 자립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다. 센터포인트에서는 단순한 숙소 제공 뿐 아니라 취업이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습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대일 수업 뿐 아니라 독립생활을 위한 예산 작성, 공과금 납부 등과 같은 생활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진로를 위해 직업 체험, 진로전문가 상담 및 직업기술 워크숍,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연극·패션·음악·춤·사진 등의 문화활동도 제공한다.

워크와이즈(Workwise)는 직업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6주 동안 워크숍, 일대일 지원,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직업 현장 간의 괴리감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독립(moving on)

센터포인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숙 청소년들에게 자립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자신감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통해 센터포인트를 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립을 위해 센터포인트를 퇴소한 이후 6개월 동안 사후지원이 제공되는데 이 지원 안에는 공과금 납부, 규모 있는 경제생활 꾸리기, 자신에게 알맞은 숙소 찾기, 보증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센터포인트에 입소한 청소년 중 88%가 자립을 통해 센터포인트를 퇴소하였다.

③ 성공사례

센터포인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 사례들을 게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사례들이지만 내용과 함께 제공되는 사진과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델 및 가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 에이든(Aidan)의 사례

에이든은 20살에 강제결혼의 위기에 놓이자 가출을 하게 되었다. 6개월의 난민생활 끝에 노숙인이 되었고, 이후 카디날 흄 센터(Cardinal Hume Centre)를 통해 센터포인트에 의뢰되었다. 2년 가까이 센터포인트에서 생활하면서 우울증 상담을 받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14주 유급 인턴십에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 아비(Abi)의 사례

아비는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18살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 집을 나온 이후 지인의 집과 노숙을 전전하다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때 한 노숙인의 도움으로 찬장을 주워 잠자리로 삼다가 크리스마스에 센터포인트에 입소하게 되었다. 센터포인트에서 생활기술, 요리,

예산 사용 등을 배우고 지원활동가로부터 정신건강의 도움을 얻었으며 대학에 지원하였다. 현재 아비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컵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존(John)의 사례

존은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아버지와 학대를 하는 어머니로 인해 네 살부터 불안정하고 문제 많은 아동기를 보내면서 15살부터는 야외 벤치나 빈 집 등에서 주기적인 노숙 생활을 시작하였다. 4년간의 노숙생활 끝에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센터포인트에 입소하면서 비로소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지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상담가들의 지원을 받아 개인적인 문제들과 정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기술 교실에서 예산 사용, 공과금 납부, 요리 등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존은 대학 입학을 위해 A레벨[52]을 준비 중이다.

2) 미국

(1) 관련법 및 정책[53]

①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령」(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

미국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면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령」(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이하 RHYA)이 대표적이다. RHYA는 1974년 제정된 소년법 및 비행 예방 법령(Juvenile Justice and

52) 영국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시험 제도이다.

53) 이 내용은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s://www.acf.hhs.gov/fysb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Delinquency Prevention Act)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내 아동 및 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에서 수행하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다. 또한 노숙 청소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정의도 이 법 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몇 차례에 걸쳐 재승인 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8년 3월에 재승인되었다.

② 「맥킨니-벤토 법령」(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이 법은 노숙(homeless) 청소년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법으로 1987년에 통과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숙 아동들에게 등하교시 무료 이동수단 제공, 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이 노숙 생활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권리, 예방접종 증서 및 거주 증명서와 같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지역교육청의 각 학교 내 담당자 필수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③ 종사자 훈련 및 기술 지원센터(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RHYTTAC)

미국 연방정부는 노숙 및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으로 종사자 훈련 및 기술 지원센터(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이하 RHYTTAC)를 지원하고 있다. RHYTTAC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훈련 및 기술

적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역량개발을 위해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유사한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RHYTTAC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련 현장 경험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훈련 및 지원기술 능력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 간 연계능력이 있는 등 몇 가지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양질의 훈련과 기술을 지원한다.

④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Grant Program: TLP)

미국 연방정부는 RHYA를 바탕으로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 기본 센터 프로그램, 전환생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들의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전환생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되는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가정복귀가 불가능하고 아직 자립이 어려운 16~22세까지의 청소년이 그 대상이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540일(약 18개월)까지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635일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다. 635일 이후에도 만 18세가 안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만 18세 생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방정부는 기금을 마련하여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 및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00여 기관에게 총 4,4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 2016년에는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환생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약 100여개 비영리 기관 및 시설에 2,000여 만 달러(한화 약 224억 원)가 지원되었다.

○ 참여자 특성

회계연도 기준 2014년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고 유지할 역량이 낮은 이들로 참여자의 80%가 주거지 문제에 당면해 있었으며 3분의 1(1/3)이 낮은 수입을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70%는 가족 역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29%는 가정 내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10%는 정신건강 문제를, 20%는 신체적 건강문제를 호소하였다.

○ 지원 서비스: 주거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거지는 세 가지 형태, 즉 그룹홈(모자 그룹홈 포함), 하숙집(host family home), 감독자가 있는 공동 숙소(supervised apartments)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숙소를 모두 갖추고 감독 수준을 달리하여 청소년들이 자립 준비 상태에 따라 점차 낮은 감독 수준의 숙소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어떤 형태의 모델을 채택하든지 프로그램은 대개 최대 20명까지의 청소년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숙소 중 그룹홈은 가장 흔한 형태이다. 보다 구조화된 환경에서 자립준비를 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은 식단계획, 음식준비, 집안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종사자는 그룹홈 내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각 청소년들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감독자가 있는 공동 숙소는 기관 소유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한다. 기관 소유 아파트는 개인별 공간을 제공하는데 종사자는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부지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 형태의 아파트는 한 곳에 모여 있기보다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숙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이 부담하기도 한다. 또한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방문하는데 초기에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방문하는 형태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정도에 따라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씩으로 점차 방문횟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해당 숙소에서 그대로 살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숙집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 감독자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숙집은 청소년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종사자의 협조 아래 지원과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각 주(州)마다의 하숙집 규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하숙집을 모집하고 관리 및 유지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하숙집 가정의 기본 환경에 대한 조회와 이들에 대한 연수는 필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숙집에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 지원 서비스: 생활기술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프로그램 진행과정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해야 하며 종사자는 개별 청소년들과 전환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가는 작업을 돕는다.

이를 위해 많은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자립능력을 측정하고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심사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심사 및 평가는 청소년의 입소 단계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케이시 생활기술 평가(Casey Life Skills Assessment)는 그 대표적인 도구로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사회발달, 근로 및 학업 기술, 재정관리와 같이 중요한 생활기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종사자는 각 영역의 측정정도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영역별 생활기술에 대한 지식단계 정도를 살피고 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생활기술 향상은 비형식적인 실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프로그램, 워크숍, 직접적인 의뢰, 보다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학습 기회와 서비

스를 지원받아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형식·비형식적인 생활기술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기본생활기술: 예산수립, 신용관리, 가사일, 식단계획, 요리, 소비교육
- 대인관계기술: 동료·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
- 교육기회[54]: 고교 졸업 및 고등학교과정 검정고시 학력취득 지원, 중등교육 이후의 훈련 및 직업 교육
- 취업준비 및 취업지원: 청소년들의 고용률 증진을 위해 진로상담,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 용모 및 복장지도 뿐 아니라 직장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건강지원: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건강검진·응급 치료와 같은 신체건강 지원서비스 등

(2) 자립지원 우수사례: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Sasha Bruce Youthwork: SBY)[55]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이하 SBY)은 워싱턴 DC 지역에서 노숙 청소년을 돕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약 1,500명의 청소년 및 5,000명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이다. 현재 미연방정부로부터 기금[56]을 지원받아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전환생활 프로그램 외에도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을 위한 아웃리치, 단기 숙소 제공 등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54)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령」에서는 전환생활 프로그램이 「맥킨니-벤토 법령」에 기반한 교육청 연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5)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sashabruce.org/에서 2018년 5월 9일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56) 2017년 회계연도에는 총 수입(8,379,136달러)의 84%(7,002,039달러)가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① 입소 대상 및 경로

입소 대상은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에서 명시한 대로 미국 내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아직 자립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연령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이다. 입소는 주로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제3자(가족, 사례 담당자, 지자체 등)의 의뢰를 통하여 가능하다. 입소자들은 학교 재학, 기간제 근로,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숙소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② 지원 서비스

○ 자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가정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보호 종결을 앞둔 17~20세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소자는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가족이나 사례 담당자의 의뢰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소자는 18개월까지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파트 형태의 숙소에 머무를 수 있다. 자립 준비가 된 개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 상담자가 숙소 및 공동 거주지 찾는 것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될 때까지 추후 지원을 제공한다.

○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18~21세 청소년에게 감독관이 있는 아파트 숙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소자는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지자체의 인적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의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12개월까지는 SBY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상담, 생활기술 훈련, 진로 지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도 제공한다.

○ 기타: 생활 및 노동기술

-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학업중단 중이지만 7학년 이상의 수학과 언어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위한 학업 지원 뿐 아니라 목공, 환경 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요도가 높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은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력과 자립을 입증하고 있다.
- 파워 프로그램(Power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나 HIV/AIDS 질환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패스 프로그램(Pas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증거기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인간관계 및 표현, 정체성 등에 있어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③ 성공 사례

○ 페이스(Faith)의 사례

페이스는 전환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업도 없이 매일을 의미 없이 보내었다. 전환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하워드(Howard) 대학

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등록하였으며 현재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 대니엘(Danielle)의 사례

대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우울과 학대에 노출된 상태였고 학업도 직업도 없는 상태로 병원을 드나들며 자포자기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일의 젊은 여성'(Young Ladies of Tomorrow)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BY 종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가정 내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전환생활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어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두 과목에 합격하였고 SBY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인 POWER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 대릴(Darryl)의 사례

대릴은 아버지와 함께 워싱턴 DC의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SBY로 인계되었다. 2010년 6월부터 SBY에서 3개월을 지낸 후 대릴은 노스캐롤라이나로 거처를 옮겨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았으나 여의치 않자 2012년 2월에서 2013년 4월까지 SBY의 전환생활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다. 대릴은 여기서 비로소 안정적인 주거지와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게 되었다.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SBY에서 18~24세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샤 브루스 유스빌드(Sasha Bruce YouthBuild)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직업기술과 생활기술을 배웠다. 이후 SBY 진로상담가의 도움으로 대형마트 체인점에서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아마추어 권투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3) 독일

(1) 관련법 및 정책[57]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1990년 동독에서 먼저 시행된 후 이듬 해 개정되었고 2017년 연방정부차원에서「아동·청소년강화법」(KJSG: 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으로 제정되었다(장주리, 2017). 아동·청소년 지원법은 독일 내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회와 국가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장주리, 2017). 본 법안의 목표 중 하나는 수요에 따른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강화와 취약가정 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이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취약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 및 보호에 있어서 각 지자체 청소년청(Jugendamt) 및 보건기관과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 지원법」에서는 14~25세를 청소년(young person)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Richtlinien des Kinder- und Jugendplans des Bundes: KJP-Richtlinien)은 12~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58].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 발달, 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각 지자체와 기초단체의 청소년청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 563개의 청소년청이 있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57) 이 내용은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s://www.acf.hhs.gov/fysb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58)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germany/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Westfahe)주와 바이에른(Bayern)주가 각각 186개소와 96개소로 가장 많은 청소년청을 두고 있다. 그 외 각 연방주는 주마다 평균 15-20개의 청소년청이 있다[59].

(2) 자립지원 우수사례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노선을 제시하는 한편, 제반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청은 교육부터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각 교육 및 사회기관을 넘나들며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청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민간재단 역시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 등에게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오프로드키즈 재단(Off Road Kids Foundation)[60]

1993년 설립 된 오프로드키즈 재단은 거리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립재단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쾰른과 도르트문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목표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최선의 풍요로운 전망"을 찾아주는 것이다[61].

매년 2,500명에 달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 즉 거리 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8세 이상 가정 밖 거리 청소년들은 이 수치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62]. 이들은 스스로 가정에서 가출한 경우, 혹은 위탁

59) https://www.jugendaemter.com/jugendaemter-in-deutschland/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60) 이 내용은 오프 로드 키즈 재단(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s://offroadkids.de/information/kurz-buendig/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61) "Die bestmögliche tragfähige Perspektive für jeden betreuten jungen Menschen"(https://offroadkids.de/information/kurz-buendig/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62) 독일청소년연구소 통계자료로 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2017/Strassenjugendliche_Endbericht.pdf에서 2018년 5월 30일 인출.

가정이나 청소년 보호기관 등으로부터 나온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단기간 내에 가정이나 소속 거주지로 보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300여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 2~3만 명으로 추정되는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거리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혹은 거주지의 방치나 학대, 성폭력 등으로부터 피신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제도적 장치 안에서 노숙인을 위한 보살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오프로드키즈 재단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독일 거리 청소년(Straßenkinder in Deutschland), 가출청소년(Ausreißer), 노숙청소년(Junge Obdachlose), 숨겨진 노숙청소년(Junge Menschen in verdeckter Obdachlosigkeit, Sofahopper)[63]으로 분류해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본 기관의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를린, 도르트문트, 함브르크, 퀼른 지역 오프로드키즈 재단의 숙소지원을 받은 거리청소년은 18세 미만 47명, 20세 미만 198명, 27세 미만 284명으로 전체 5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567명과는 별 차이가 없지만, 2015년 377명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숙소지원을 받은 거리 청소년들은 모두 4,89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2017년 오프로드키즈 거리청소년 전문가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18세 미만 443명, 20세 미만 4,182명, 27세 미만 5,396명으로 전체 10,021명으로 집계되었다[64].

오프로드키즈 재단은 가정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63) 숨겨진 거리 청소년은 일명 소파호퍼Sofa-Hopper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기저기 단기간 체류를 하며 남의 집 소파 등을 전전하며 쪽잠을 자는 거리 청소년을 의미한다.

64) 오프로드키즈 2017년 통계자료로 https://offroadkids.de/fileadmin/ork/PDFs/Jahresstatistik-Street work_2017.pdf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 위기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오프로드키즈 재단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기숙하는 청소년들(sofahopper)에게 다양한 지원을 비롯해서 거리청소년 전문가가 장기간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차원의 지원을 병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 길거리 보살핌+(STREETWORK+): 보건 프로그램

거리에서의 생활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 부족한 영향섭취, 신체 및 치위생 문제, 원하지 않은 임신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 오프로드키즈의 거리청소년 도움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보건적 위험을 설명하고, 의사로 구성된 보건팀과 함께 거리에서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프레잡(PREJOB): 교육지원 서비스

거리청소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은 어떠한 교육기관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레잡 서비스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방송통신교육기관인 플렉스 개방학교(Flex-Fernshule)와 연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65] 이와 함께 직업교육 및 실습·체험의 기회를 통한 직업찾기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아동기관(Kinderheim im Schwarzwald)

오프로드키즈 재단은 가정이나 혹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적합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경우 아동·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룹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슈바르츠발트 뒤른하임에 위치한 이 기관은 학업 및 직업교육

65) 플렉스 개방학교의 특징은 학업의 시작과 종료가 언제나 가능하고 모든 참여자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자료와 교육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며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본 학교는 실업학교 졸업(Hauptschule)과 실업고등학교(Realschule)의 졸업까지를 원칙으로 한다(https://www.flex-fernschule.de/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종료까지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관에 입소한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실업고등과정을 마치게 되고, 나아가 아비튜어(Abitur)[66]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 교육 매니지먼트 고등교육기관 (Hochschulinstitut für Pädagogikmanagement, IfPM)

이 교육기관은 오프더키즈 재단이 설립 한 아동·청소년 전문가양성 기관으로 베를린 스타인바이스 전문대학(Steinbeis-Hochschule Berlin)과 연계하여 교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다양한 교육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을 치루지 않았더라도 본 기관에서 청소년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수료 후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로드키즈 재단이 가정 밖 청소년 및 거리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책과 서비스를 마련해 주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전과 이론을 갖추게 하여 청소년관련 이슈를 더 확장시키고자 한다.

② 갱웨이(Gangway)[67]

○ 개요

갱웨이는 베를린을 기점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및 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리활동 사회단체(Strassensozialarbeit)이다. 1990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 75명의 가정 밖 청소년 및 거리 청소년 활동전문가가 2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목표는 "개인 고유의 인생을 자립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 이와 함께 갱웨이는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학교나 가정 혹은 같이 생활

66)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Gymnasium) 졸업시험으로 이를 통과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얻게 된다.
67) 이 절에 대한 내용은 갱웨이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gangway.de/en/selbstdarstellung/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하고 있는 동거집단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갱웨이의 슬로건인 “거리로부터, 거리를 위하여!(VON DER STRAßE, FÜR DIE STRASSE!)”는 갱웨이 단체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즉 작업 현장으로써 ‘거리’는 갱웨이의 일터로 탄력적이고 유동적이며 동기가 부여되는 곳이다. 혼자 남겨진 청소년, 폭력 피해자, 자포자기 청소년,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청소년, 혹은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모든 청소년은 사회에 재편입 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에서부터 갱웨이의 현장작업이 시작된다. 한마디로 거리의 아이들과 같이 ‘뒹굴며’ 거리에서 이들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바로 갱웨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활동 원리

거리활동가와 거리의 청소년은 6가지 원리로 같이 활동해 나간다. 6가지 원리는 ①나눔과 투명성, ②자발성과 수용, 낮은 기준, ③익명성과 비밀 유지, ④일상생활과 필요성 지향, ⑤찾아감을 통한 만남, ⑥탄력성과 연결, 지속성이다. 갱웨이의 전문팀은 중독, 마약, 교육, 청소년문화 등에 대해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거리의 청소년들이 삶의 전환기에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 대상

갱웨이의 구체적인 활동대상은 학업이나 직업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다양한 상담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입의 실패로 인해 거리청소년의 위험이 내재된 경우, 이미 거리청소년이 된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한다. 거리활동가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거리로 직접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 주요 사업

이 재단의 주요 사업은 거리 활동이다. 거리 활동 안에는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종합적인 개인 및 그룹상담, 프로젝트 연계, 지자체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 법률 자문 연계, 직업실습 연계, 추가 교육(Zusatzasbildung) 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일자리 찾기, 장·단기 거주지 연계, 국가 보조금과 수당 정보를 통한 생활지원마련 찾기, 난민출신 거리청소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포함된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은 18세 미만을 위한 미성년정책과 25세 미만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 가정, 즉 부모/법정대리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주거, 보건, 교육, 실업수당 및 자녀수당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Delon, 2007). 즉 아동·청소년 보호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또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대리인)들이 양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교육적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를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다면 각 구의 주민센터 및 구청은 미성년 청소년을 위한 민간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이들이 사회·교육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Delon, 2007). 또한 위탁가정 제도 역시 발달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기관과 위탁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교육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구청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되며 이후 지자체 공공기관과 꾸준한 협업을 해야 한다(Delon, 2007). 위탁가정 이외에도 민관의 협업으로 교육과 보건을 비롯하여 미성년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돌봄 보호망'에 포착되지 못하는 경우에 거리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보건부는 12~25세 이하 가출 위기·가출·가정 밖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안내 포인트와 청소년 청취(Points Accueil et Ecoute Jeunes, 이하 PAEJ)'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가출에서부터 가족 갈등, 폭력, 학업지속 어려움, 거주지 찾기 등 모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다[68]. 이와 함께 '청소년의 집(Maisons des Adolescents, 이하 MDA)'은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랑스 전역에 걸친 협회로 위의 PAEJ와 하는 일은 비슷하다[69].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자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18세 이상 성년이 되었을 때 주거문제, 교육기회의 선택, 구직문제 등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법령을 내놓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교육·사회적 돌봄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다[70].

(1) 가정 밖 청소년 관련 법안

① 2001년 7월 4일 법령(La loi du 4 juillet 2001)[71]

「2001년 7월 4일 법령」은 16~25세 청소년 자립 수당(Allocation

68) 안내포인트·아동청소년 들어주기 홈페이지 http://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 familles-enfance/lieux-d-accueil-et-d-ecoute-des-jeunes/article/points-accueil-et-ecoute-jeunes-paej에서 2018년 6월 3일 인출

69) 청소년의 집 홈페이지 http://www.anmda.fr/nc/les-mda/la-carte-de-france/에서 2018년 6월 3일/4일 인출. 이외 프랑스 전역에 걸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비영리협회가 있다. 본 장 '(3)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지원 우수사례' 참조.

70)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는 3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중 30%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 및 거리 아동·청소년을 언급할 때 난민(신청 준비자 및 신청완료 이후 대기자)과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프랑스는-불법이든 합법이든-프랑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권을 주고, 국가차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난민과 불법체류 배경 아동청소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71)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 내 법령 「La loi du 4 juilliet 2001」(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22631&categorieLien=id 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

d'autonomie pour les jeunes de 16 à 25 ans)에 관한 법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가정 및 사회로부터 격리 직전에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주는 혜택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학업중단 등을 이유로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 무직이나 단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법령은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지원(un accompagnement adapté)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령은 각 지자체에 위임되어 자체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자립 계약서 (le Contrat d'accès à l'autonomie, 이하 C.A.A.)」를 체결하여 긴밀하게 협업·운영하게 된다.

○ 자립 계약서(C.A.A.)[72]

자립 계약서(C.A.A.)는 무엇보다도 위기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전문가가 투입되고, 동시에 각 지역사회 사회복지센터의 서비스(les services sociaux des Unités territoriales)와 청소년지원 민간협회(les clubs de prévention), 청소년임시보호기관(les points accueil jeunes), 청소년 숙소 및 사회재적응 센터(les Centres d'hébergement et de réadaptation sociale), 청소년 직장인을 위한 숙소(les Foyers de jeunes travailleurs), 다양한 사회복지센터(les centres sociaux)가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을 하게 된다. 자립 계약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협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民官) 기관들의 다자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다자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시키기(mobiliser le Département)'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72) 이 내용은 프랑스 정부의 「자립 계약서」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www.ville.gouv.fr/IMG/pdf/dossier_presse_contrats_d_autonomie_Vfinale.pdf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자립 계약서 수당(Une allocation de 120 à 450 euros)[73]

CAA 청소년전문가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을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CAA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수당지급 심사는 각 기초단체 청소년복지관련 위원회에서 하는데 수당은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이 기간 동안 직업교육이나 기타 실업교육·실습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의 목표는 '인간의 보통권 법안(dispositifs de droit commun)'을 '사회편입 프로젝트(un projet d'insertion sociale)'의 일부로 간주하여 사회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일종의 긍정적 차별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수당은 18세 이상 실업교육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20유로[74](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서부터 최대 450유로(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까지 받을 수 있다.

② 기초단체 청소년수당 대책법안(Dispositif Départemental du Fonds d'aide aux jeunes, 이하 FAJ)[75]

기초단체 청소년수당 대책법안은 각 기초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안으로 장·단기 주거, 보건, 교통 등의 도움이 필요한 18~25세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프랑스 국적자 혹은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청소년은 각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지원 민관기관, 즉 지역사회관련 종사자(référent Mission locale), 기초단체 사회연대센터 종사자(référent des Maisons départementales des

73) 이 내용은 「청소년권리」저널(2002년 6월호, 216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s://www.cairn.info/revue-journal-du-droit-des-jeunes-2002-6-page-27.htm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74) 2018년 11월 기준 1유로는 한화 약 1,300원에 해당된다.

75) 본 내용은 프랑스 사회연대·보건부 사이트 내 「기초단체 청소년수당 대책법안」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http://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open-data/aide- et-action-sociale/les-fonds-d-aide-sociale-decentralises-faj-fsl/article/le-fonds-d-aide-aux-jeunes-faj에서 2018년 5월20일 인출). 또한 Dispositif는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책 마련안이다. 따라서 Dispositif란 단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꼭 시행되어져야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solidarités), 주거도움 관련 민간협회(associations habilitées), 기초단체 사회복지전문가(travailleur social des Circonscriptions départementales d'action sociale), 사회편입서비스 관련 종사자(professionnel des Espaces dynamique insertion et des services de prévention spécialisée)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상황과 지원을 청구한 다양한 기관의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 청소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로는 첫째, 숙식·교통·보건 등과 관련해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할 경우, 둘째, 청구 대상자가 직업교육·이사비용·직업과 관련된 품목 마련·직업실습 대기 등 구체적인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셋째, 보건 및 주거 등과 관련해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개인당 연 1,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연장 기간은 각 기초단체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역사회 기관, 사회복지 및 관련 기구(les autr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urs groupements et les organismes de protection sociale) 들은 이 FAJ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 2015년에는 90,60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 당 식비로 평균 146유로, 직업교육 및 실습관련해서 최대 328유로가 지원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 당 한 달 평균 지원은 193유로로 집계되었다[76].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① 주거 및 생활지원 정책[77]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 및 지자체-기초단체

76) 이 수치는 프랑스 사회연대 보건부 통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http://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

77) 주거 및 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은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 내「주거권」에 대한 법령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159413&categorieLien=cid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차원의 임대지원 정책과 비영리 민간기관 협회(Association)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1990년 5월 31일 기초단체 취약계층 주거활동 법안(la loi du 31 mai 1990, le plan départemental d'action pour le logement des personnes défavorisées)」은 '주거의 권리(le droit au logement)'를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관련한 '보편법(le droit commun)'으로 인정한 최초의 성문사례이다. 즉 인간은 "물, 에너지, 전화사용 등 최소한의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our accéder à un logement décent et indépendant ou de s'y maintenir et d'y disposer de la fourniture d'eau, d'énergie et des services téléphoniques)"는 주거권을 목적으로 입안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임대지원 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마련 정책을 비롯하여 26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18~26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Résidences Jeunes Travailleurs, 이하 RJT)'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프랑스 '국영신탁예금(Caisse de Depot)'의 '청소년 보금자리마련 기금'으로 운영되며 프랑스 전역에서 상호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RJT는 파리와 파리주변 지역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에 7,000개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78]. 프랑스 가족수당센터가 운영하는 '단기임대지원(Allocation au logement temporaire, 이하 ALT)'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름 그대로 단기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면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모색하거나 이미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숙소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거지원금의 형태로도 운영되는데, 본 정책의 특징은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지원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79]. ALT지

78) 직업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 사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s://www.aljt.com/ 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79) 프랑스 가족수당센터의 사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www.caf.fr/allocataires/caf-de-

원과 함께 '주거연대기금(le Fonds de solidarité logement, 이하 FSL)' 역시 26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이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나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에 일정 액수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의 주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며 지속적으로는 사회적 편입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동반(L'accompagnement social)과 같이 진행된다[80]. 이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이 단기간 머물면서 자립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거주정책 및 지원정책을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81].

○ 근로 청소년 포아예(Les foyers de jeunes travailleurs, 이하 FJT)[82]

FJT는 16~25세 청소년 중 직업교육이나 실습을 받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FJT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 '어떤 직업교육이라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주요 지원대상이지만, 각 숙소 방침에 따라 청소년 구직자와 대학생도 입소할 수 있다. 파리에는 46개의 숙소를 비롯해서 파리 위성도시에 129개가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걸쳐 446개의 숙소가 있다. 숙소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다.

○ 청소년 포아예(Les Foyers de jeunes)[83]

교육부, 주거부, 보건부, 노동부, 사회연대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연계되어 운영하는 청소년 포아예는 16~30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paris/actualites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80) 프랑스 주거연대기금 사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s://www.paris.fr/aidesaulogement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81) 가정 밖 및 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민간 협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수많은 '아쏘(Asso.)'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기관의 리스트는 http://www.infomie.net/spip.php?article60&lang=fr에서 찾을 수 있다.

82) 근로 청소년 포아예 사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annuaire.action-sociale.org/etablissements/readaptation-sociale/foyer-de-jeunes-travailleurs-non-transforme-en-residence-sociale-257.html 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83) http://www.jeunes.gouv.fr/interministeriel/logement-et-transports/trouver-un-logement/article/foyers-de-jeunes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있다. 특히 이제 막 취업한 사회인, 직업교육생, 구직자, 학생 등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숙소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지만 민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숙소와 거주 협회'(Association des résidences et des foyers jeunes, 이하 ARFJ)는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숙소와 거주지를 연결시켜 준다.

○ 지자체-기초단체 사업: 지역사회 보건프로그램(Mission Locale)[84]

각 기초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임무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은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지원(상담치료 및 정서지원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은 건강 및 심리상태에 대한 보건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6~25세 미만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임무 프로그램 보건 담당자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편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카드의 미비, 무연고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의료혜택부터 입원치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보건사항을 담당한다.

② 교육지원 정책: 청소년을 위한 보장 법령(le dispositif Garantie jeunes)[85]

본 법안은 「2016년-1855 12월 23일 구직과 자립, 청소년 보장을 위한 법령(Décret n° 2016-1855 du 23 décembre 2016 relatif au parcours contractualisé d'accompagnement vers l'emploi et l'autonomie et à la garantie jeunes)」으로 2017년 프랑스 전역에 걸쳐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84) 지역사회 임무 보건프로그램 사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s://www.mission-locale.fr/sante/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85) 청소년을 위한 보장 법령사이트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12/23/ETSD1629714D/jo에서 2018년 5월 27일 인출).

이 법령은 16~25세 미만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어떤 재정적이고 생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살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은 월 48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기간으로는 첫째, 직업교육 및 실습, 기타 교육을 받는 기간, 둘째, 직업을 갖고 있어도 5131-5법안에 따라 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셋째, 직업적, 사회적 보살핌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타 기관(관련 민간 협회 등)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 때 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령은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6-1088 노동권법안 46조」에 따라 25세 미만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용을 위한 생활지원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지원 우수사례

프랑스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앞서 기술한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 인프라가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원·보호시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알규 포아예(Foyer les Algues)[86]

○ 개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르아브르(Le Havre)에 위치한 알규 포아예는 1968년 가톨릭 수녀재단이 연고가 없거나 혹은 가정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17~21세의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소와 교육, 보건·정서적 보살핌을 제공

86) 이 협회에 대한 내용은 알규 포아예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http://foyer-les-algues.pagesperso-orange.fr/에서 2018년 6월5 일 인출).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21세 미만의 남자 청소년의 입소도 허용되었다. 이곳에서는 입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자립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알규 포아예는 다양한 분야의 민관 파트너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알규 포아예와 연계된 숙소제공 기관들은 알쎄안(Alcéane), 클라지 76(CLAJ 76), 에스토드라센(Estuaire de la Seine), 아비타 76(Habitat 76) 등이 있고 교육서비스 연계기관으로는 오토이 재단(Fondation d'Auteuil), 에스칼 포아예(Foyer Escale), 쟝 보스코 포아예(Foyer Jean Bosco), 아쥬르 부모센터(Centre Parental Azur), 레니즈 어린이집(Maison d'Enfants Les Nids) 등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인 아동·가족 기초단체 포아예(Foyer Départemental de l'Enfance et de la Famille)와 근로청소년 포아예(Foyer de jeunes travailleurs)도 연계·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거주지역의 임대 원룸 오피스텔이나 공공 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된다.

○ 입소 및 운영 방침

알규 포아예 입소절차는 발견된 길거리 청소년 혹은 입소희망 청소년이 각 지역의 교육·사회복지사 및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시작된다. 이 상담을 통해 해당 청소년의 기본 상황을 파악한 후 알규 포아예의 교육상담팀과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소희망 청소년에게 알규 포아예가 적합한지 혹은 타 기관이 더 적합한지 심의한 후 입소청소년의 의지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입소과정에서 청소년은 총 4회의 면접을 보게 된다. 입소 청소년들은 본 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협업에 따른 교육과 다양한 보살핌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입소 청소년은 자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첫 1개월 내 교육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자립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록한 소책자를 받게 된다. 입소 초기에 수립된 자립계획 및 목표는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가능하다. 또한 입소 이후는 2단계의 자립과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통합기간'으로 보통 기관에서 제안하는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기관에서 제안하는 집단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좀 더 스스로 관리하는 등 개인적 권한이 커지는 단계이다. 입소 청소년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해 교육지도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 수입과 지출, 통장 개설 및 관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②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Apprentis d'Auteuil[87)]

○ 개요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은 1866년 가톨릭 수도사재단이 창립한 오토이 고아원이 그 시작이며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재단은 29개의 기숙학교와 16개의 숙소, 다수의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72개의 기술자격증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 기관과 연계되어 단·장기간의 혜택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1년 기준으로 12~17세가 73%, 18~20세가 1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오토이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민관기관은 250여개로 2015년 31,0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재단 및 연계 기관이 제공하는 72개의 기술자격 교육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87) 이 협회에 대한 내용은 아프런티스오토이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https://www.apprentis-auteuil.org/adolescent-ou-jeune-adulte.html에서 2018년 6월 4일 인출).

○ 자립지원 서비스: 학업 및 직업훈련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재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 학교급별로 자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과 보다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농업·원예·기술·직업·일반 고등학교가 있으며 대학과정으로는 약 20개의 단과 대학이 있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훈련과정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농업·원예, 건축, 전기전자, 요식업, 산업·기계, 그래픽, 인적 서비스, 판매·회계·관리·IT 등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기숙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릴레이 아틀리에(ateliers relais)' 라는 임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16~25세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도제 시스템을 통한 직업훈련은 학교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훈련 기간을 마치면 수료증(diplôme)이 수여된다.

○ 자립지원 서비스: 숙소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은 16개의 근로 청소년 포아예(FJT)를 가지고 있으며 생 미터 근로 청소년 포아예(Foyer de jeunes travailleurs Saint-Mitre)도 그 중 하나이다. 마르세이유 부근에 위치한 이 시설에는 개별 주방과 욕실을 갖춘 34개의 방이 있으며 세탁실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입소대상은 17세 이상의 근로 청소년 및 학생이다. 또 다른 숙소인 생 부르노 사회 주택(résidence sociale Saint-Bruno)은 사회-직업 통합 과정에 등록된 18~30세 청년 가족(자녀가 한 명 있거나 무자녀 부부, 한부모)들이 자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숙소로 정원은 45명이다.

3. 소결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국내 자립지원 우수사례로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과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은 자립생활의 주요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욕구 및 강점·자원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서비스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자립에 필요한 영역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욕구 및 강점·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에서는 청소년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데, 단기 목표는 청소년의 변화와 반응, 과업수행결과 등을 관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의 달성 정도와 청소년의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사례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의 개인별·영역별 자립 준비 단계에 따라 개입과 관리·감독 수준에 단계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단계는 개인별·영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개입의 차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은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에서 관할하는데, 여기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지원서비스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원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8개의 자립생활관 역시 모두 한국소년보호협회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주로 하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은 전담총괄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기관별 서비스의 표준화를 이루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기관별 서비스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어느 기관을 가든지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므로 꼭 필요한 일이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인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은 이들을 총괄하는 상위의 기관이 없으므로 전담총괄기관의 설립을 통해 이들의 실정에 맞는 보다 세세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향후 기관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루려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에서 거주 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취·창업 지원을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되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외에도 자동차정비, 골프 매니지먼트, 용접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직업을 발굴해 내고 이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취업 훈련 및 경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거지원 역시 기숙사 형태의 일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임대주택이나 희망드림 하우스, 전월세 지원 등을 통해 개인공간의 확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해외 사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해외 지원 사례들의 특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모든 사례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은 주거지 및 일자리 확보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지원, 교육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센터포인트는 노숙 청소년들에게 단체숙식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립을 통한 퇴소준비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가 끝나면 숙소 구하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곳의 종사자들은 자립을 위해서는 거주지 확보가 기본이며 심신건강, 기본생활기술,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나아가 자립생활 이후 6개월까지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사후지원까지 제공한다.

미국 사례 역시 한 개인의 건강한 자립에는 단순히 공간적,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정서적 자립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신체 및 정서지원이 자립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서부터 가정 밖 생활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신체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이들에 대한 건강 및 정서적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립의지 고취 뿐 아니라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 감정 조절, 중독 등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음을 주지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는 거주 지원 뿐 아니라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 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 지원책 마련과 같이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모두 청소년들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후관리나 전문적인 상담 개입,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이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역의 전문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교육이다. 전자의 경우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한 명의 종사자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의 지원을 하기 보다 상담가, 건강지원 전담가, 진로지도 전담가 등으로 영역에 따라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종사자 훈련 및 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은 복합적이고 정도가 심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영역별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아웃리치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진로지도 전문가, 생활지원 전문가 등 고유한 전문 영역을 개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업화되고 전문적인 개입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3) 민관(民官)기관들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

영국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센터포인트의 입소는 지자체의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숙 청소년의 발견 및 아웃리치는 스트리트링크라는 단체에서 관할하며 이후 지자체를 통해 센터포인트에 입소하게 되면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음식 기부단체인 트러셀 트러스트 등과의 협력 체계는 기부물품이 필요에 따라 보다 골고루 분배되는데 기여한다. 즉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독일의 연방정부는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청을 두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비영리협회의 지원 효율화를 위해 협회와 지자체간 협력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서로 다른 민관 협회 간 협업을 통한 지원과 보호는 청소년 지원에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즉 다양한 민관기관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청소년 개개인에게 일상생활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다자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동원하기(mobiliser le Département)'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미국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수립 및 전달 과정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연방 정부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확보 및 자립정책 프로그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한다. 한편 민간단체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구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해당 청소년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의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원 기관들의 연계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로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후 학업·진로·취업 훈련, 심리상담지원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하며, 거주시설에서는 일상생활훈련과 자립계획수립 지원, 각 기관과의 연계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전담총괄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실시

영국에서는 중앙경영단의 운영으로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센터포인트는 영국 런던, 맨체스터, 요크셔, 노스이스트 등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마다 시설이나 종사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경영단이 본부에서 이들 지점들에 대한 시설 점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기금 모금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편차를 최소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쉼터를 들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협회는 각 개별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거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청소년쉼터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 개별 쉼터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나 쉼터의 편차를 최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소년쉼터는 국내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해 보아도 공공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백혜정 외, 2016), 지역 및 개별 쉼터 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소년쉼터 운영기준 강화와 모든 쉼터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총괄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평가 및 계획 수립

미국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 계획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케이시 생활기술 평가(Casey Life Skills Assessment)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측정하고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심사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평가와 더불어 자립 지원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자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자립준비 정도를 시작단계에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준비에 대한 개인별 평가는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는 종사자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립 진행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단계별 수정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자립의지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정책에 있어서 자립 계약서(C.A.A.)라는 개인별 자립 계획이 매우 중시된다. 이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 뿐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 민관 기관들의 종사자가 총체적으로 연계되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립 계획서는 청소년의 자립수당 신청 및 수령, 숙소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등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립 계약서에는 청소년과 관계자들의 서명이 포함되며 정기 평가를 거침으로써 청소년 뿐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은 경험과 환경, 심리상태 등에 따라 물리적, 심리적 자립준비 정도에 차이가 클 것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자립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립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자립정도와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자립준비 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고려해볼만 한다.

(6) 직업훈련의 다양화

프랑스의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 사례를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72개의 기술자격증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교육으로서의 훈련과정에서 지원하는 분야로는 농업·원예, 건축, 전기전자, 요식업, 산업·기계, 그래픽, 인적 서비스, 판매·회계·관리·IT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들 대상 직업 훈련은 몇 가지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학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특성과 재능을 반영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훈련과정 및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사점들은 사회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자립을 보다 당연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다. 그에 따라 18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은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도제식 직업훈련이 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우리나라만큼 학력위주의 사회는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다른 점들이 있으므로 해외의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사회적 책무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V장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소결 및 시사점

V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본 연구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조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단일 연구에 활용하는 일종의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88]에 착안하여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의 강점을 활용하고 각 방법론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여 조사 참여자들로부터 정량, 정성 자료들을 취합하여 '광범위한',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Tashakkori & Teddlie, 2003; Dovona-Ope, 2008, 김영천 2013: 546~54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의 여러 모형 중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를 우선적 또는 순차적 측면으로 고려하는 모형보다는(예,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할 경우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의 사전 또는 사후에 보완할 경우에는 우선적-순차적 모형)(김영천, 2013), 제한적 연구일정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요구 분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는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방식에 가깝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88) 혼합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단일 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활용되고 있다(김영천, 2013). 최근의 교육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많은 연구들, 특히 정책연구 분야에서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하면서 특정방법은 우선으로 하되, 다른 연구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상호보완 차원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활용하여 그 결과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89]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밖 생활 실태 및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15세 이상의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나, 지역 여건상 중장기쉼터의 부재로 일시 및 단기쉼터에도 오랜 기간 가정 밖 생활 청소년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들 시설의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다[90].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상기 시설이용 현황과 조사참여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일시/이동 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총 151개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 대상인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중 27개 시설이 조사거절 및 조사 불가능으로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시설은 124개였으며, 이들 시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청소년은 총 730명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와 조사 참여자 현황은 다음 표들과 같다.

89) Ⅴ장의 첫페이지에 전술한 혼합연구방법활용 내용(p.147)과 '1) 조사개요'는 김희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90) 현재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현장전문가 자문 결과 조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 표본 수는 750명에서 천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사전 컨택 결과, 실사기간(6~9월) 동안 조사 가능한 만 15세 이상 청소년 수가 상당히 적음에 따라 조사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730여명을 조사하였다.

표 V-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전국의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 해당 시설 현장 실무자(시설 종사자)
표집틀	• 전국의 쉼터(129개), 자립지원관(2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20개소) 명단과 이용 청소년 현황
표본수	• 상기 시설 이용 청소년 중 만 15세 이상 청소년 전수조사 • 상기 시설 종사자(선임종사자 또는 시설장 등) 시설당 1명
표집방법	• 전수조사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조사시기	• 2018년 6~9월
조사내용	• 가정 밖 청소년 생활 실태와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요구조사

표 V-2. 조사 참여 시설 및 청소년 현황

구분		시설 수	청소년 수	비율(%)
전체		124	730	100.0
청소년쉼터	일시/이동쉼터	15	67	9.2
	단기쉼터	55	366	50.1
	중장기쉼터	37	199	27.3
청소년자립지원관		2	13	1.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5	85	11.6

(2) 조사지 개발

① 조사영역 및 문항 구성

가정 밖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먼저 가정 특성과 가족관계, 방임과 학대, 사회적 지지, 가정 밖 생활 이유, 가정 밖 생활 경험과 기간, 학업관련 특성, 근로(아르바이트) 및 경제 활동, 정서·인지·행동 문제, 고민/걱정거리, 건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지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들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진로준비관련 실태 및 성인기 이행,

자립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직업과 관련된 생각과 태도/행동, 직업훈련 경험과 진로계획, 취업지원 경험, 자립의지, 그동안의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및 도움정도와 필요정도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들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실태 및 인식 등과 관련하여 2차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고려하여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일(아르바이트)과 학업관련, 심리·사회적 측면, 건강, 직업선택 및 직업훈련 조사 항목을 본 조사에 동일하게 포함시켰다. 조사결과는 2차 자료의 동일 연령대 청소년의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실태와 차이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Ⅴ-3.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에 포함된 2차 자료 동일 문항

영역	내용	2차 자료(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 내용
(가정 밖) 청소년 일반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심리사회정서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기술),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일(아르바이트)/취업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 유형,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진로 준비 관련 실태	진로/직업의식	진로선택 기준, 진로관
	진로계획	희망교육수준, 향후(3년 이내) 진로 계획, 장래 희망 직업
	직업훈련	직업훈련 경험 유무, 직업훈련 목적,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② 전문가 자문 및 예비조사 실시, IRB 준비위원회 심의

개발된 조사지 초안에 대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와 쉼터 및 자립생활관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영역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청소년의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 조사문항 이해도와 문항별 불편 정도 확인과 설문내용 로직과 가독성 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조사에 활용되었다. 예비조사는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 여 각각 2명씩 총 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집중도가 하락하는 시점의 문항과 문항 로직 및 지시문 등에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지 분량을 고려하여 조사문항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후 보완된 설문지는 청소년대상 조사임을 감안하여 설문지 디자인 및 편집 등을 차별화하여 청소년들의 조사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거의 최종 완성단계에 이른 설문지는 마지막으로 연구원 내 IRB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본 조사가 인간 대상 연구임에 따라 연구 위험성, 개인식별정보, 조사대상 모집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 내용을 작성하고 연구진의 생명윤리 준수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설문지 표지의 조사동의 여부 게재[91]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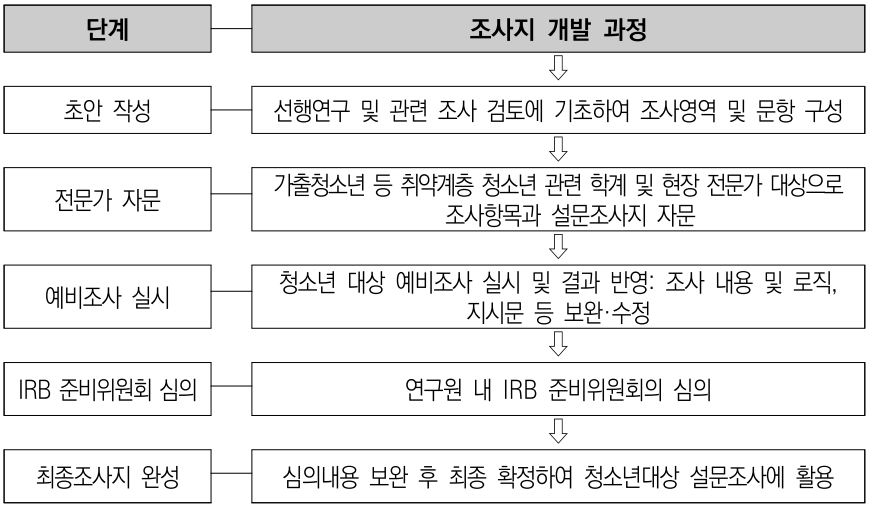


그림 V-1. 청소년 대상 설문지 개발 과정

91) 설문지 표지의 조사 동의와 관련하여 보완한 내용은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숙지 여부, 자발적인 조사 참여 및 조사 진행 중 중단 가능 고지, 조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③ 조사내용

설문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예비조사, 그리고 최종 개발된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원의 IRB준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마치고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 활용된 실제 조사항목과 세부항목,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4. 설문조사 내용과 출처

영역	내용	문항 번호	설문조사 내용	출처
가정 밖 청소년 일반	학업	1	학교 재학 여부, 학업 지속 여부	백혜정 외, 2015, 연구진 수정
		2	희망교육수준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일 (아르바이트) /취업	3-4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 유형, 근로형태	
			일(아르바이트)을 한 주된 이유, 현재 일의 향후 직업 도움 여부 등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연구진 수정
			구직(일/아르바이트) 시 어려움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연구진 수정
			가정 밖 생활 이유에 따른 어려움, 차별 경험 유무 및 이유, 일의 적법성	연구진 작성
	경제상태	5	현재 빚, 신용불량, 저축 여부	연구진 작성
	심리사회 정서	28, 32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29	외상 후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분노, 자살 시도 등 정서상태	2017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교육부 2017), 연구진 수정
		33(1)-(3)	사회적 역량(기술)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33(4)-(6)	자아존중감	
	고민/ 걱정거리	30	진로 및 가정 문제와 가정 밖 생활을 포함한 현재 고민/걱정거리	통계청 사회조사(2010), 연구진 수정
	건강	31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진로 준비 관련 실태	진로/ 직업 의식 및 행동	6	직업선택 기준	
		7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경험 유무/도움정도	연구진
		9(1)-(2)	진로관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9(3)-(5)	진로·직업 태도(③, ④), 진로준비행동(⑤)	한국청소년지표조사 Ⅳ(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영역	내용	문항 번호	설문조사 내용	출처
	직업훈련	8	직업훈련 경험, 목적, 계획,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직업훈련목적은 연구진 수정
	진로계획	10	향후(3년 이내) 진로 계획	
		11	장래 희망직업	
성인기 이행	성인기 이행 인식	12	현재 시기(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Reifman, Arnett, & Colwell (2007), 안선영 외(2011) 재인용
자립 지원 실태 및 요구	취업지원 경험	13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도움 정도	연구진 작성
	자립의지	14	자립하려는 의지 정도	조규필(2016), 연구진 수정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15-16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필요정도	백혜정 외 (2015,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진선미 외, 2016), 보건복지부 자립기술의 8대 영역(보건복지부, 2018a:219) 등 내용 참조, 연구진 수정
가정 밖 생활 경험 관련	가정 밖 생활 경험	17-18	가출 등 가정 밖 생활 경험 유무 및 빈도,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연구진 작성
		19-20	가정 밖 생활 기간, 주요 이유	
		21, 23	가정 밖 생활 장소, 가출 중 이용 서비스, 가출 팸 경험 여부	
	관련 시설 이용	22	가정 밖 생활 도움 위해 이용한 시설이나 기관과 도움 정도	
	향후 계획	24	가정 복귀 의향 또는 자립계획 유무	
사회적 지지 체계	가족관계	25	각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정도	연구진 작성
	가정 내 방임/학대	26	방임/학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 연구진 수정
	주변의 지지	27	가족(보호자), 친구, 시설 종사자의 사회·정서적 지지 정도	연구진 작성
배경 변인	개인특성		성별, 나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원가정)가족 유형, 부모 교육정도	연구진 작성, 성별, 연령 제외한 배경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7 참조(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3)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자료수집

본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생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시설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사 시 주의사항 숙지 등을 위한 면접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다[92]. 이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1차적으로 선발하여 현장 조사에 투입함으로써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표 Ⅴ-5. 지역별 청소년대상 조사 현황

	사례수(명)	비율(%)
전체	730	100.0
서울	89	12.2
부산	45	6.2
대구	31	4.2
인천	55	7.5
광주	21	2.9
대전	58	7.9
울산	26	3.6
경기	162	22.2
강원	15	2.1
충북	31	4.2
충남	52	7.1
전북	30	4.1
전남	31	4.2
경북	20	2.7
경남	40	5.5
제주	24	3.3

실사를 위한 사전접촉 시 전국에 위치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 주무부처

92) 면접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조사 참여 동의를 고지하도록 하였다.

및 본 연구원 발송 공문도 함께 활용하여 가능한 협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 조사대상자가 없는 시설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총 151개 시설을 접촉하여 124개 시설에서 조사[93]를 완료하였다(82.1%)[94]. 이들 시설에서 최종 조사 완료된 설문지는 청소년 대상 730부, 현장종사자 대상 124부였으며, 이렇게 조사 완료된 자료는 더블 펀칭 및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검수 작업 등을 거쳐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② 분석방법

조사결과는 통계처리하여 우선적으로 빈도, 비율(percentage), 평균값 산출 등의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의 성별,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정 밖 생활 기간, 생활시설 유형, 지역규모 등의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 확인을 위해 범주척도 변수는 교차분석(χ^2검정)을, 연속변수이거나 연속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평균비교(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고 일원분산분석(Anova)의 경우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과 가정 학대와의 관계, 그리고 심리·정서적 자립 관련 주요 요인인 정서적 문제, 자립의지,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 중 일부 동일 문항에 대해 2차 자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 시점과 표본의 구성 및 표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에 따른 차이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즉, 두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단순히 '가정 밖'으로 인한 차이라고

93) 현장조사자 대상 조사결과는 Ⅵ장 2절에 제시하였다.

94) 해당 시설에서도 조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설문조사지 표지에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 안내 여부, 자율적 조사 참여 중단 가능 숙지 여부,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해당 내용 숙지 후 동의한 청소년들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을 참고로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성 위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조사결과[95]

(1)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96]

가정 밖 청소년 조사 응답자는 전체 730명으로 그 중 남자 청소년은 52.6%, 여자 청소년은 47.4%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15~17세까지의 청소년은 58.9%, 만 18~24세까지의 청소년은 41.1%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3.2%로 과반수에 달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29.7%, 고등학교 졸업자는 17%정도였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9.3%였으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40.7%로 나타났다.

가정 밖 생활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는 응답은 23.1%, 1년 미만은 36.1%, 1년 이상은 40.8%였다. 가정 밖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시설 및 기관의 유형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일시쉼터의 청소년은 9.2%, 단기쉼터의 청소년은 50.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청소년은 29%,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이 11.6%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규모를 보면, 대도시 시설은 44.5%, 이외 기타지역의 시설은 55.5%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가정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6%, 보통수준은 30.3%,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3.1%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부 학력이

95) 조사결과 중 (1)일반적 특성, (7)~(10)의 진로준비, 성인기 인식, 자립지원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은 김희진 연구위원이, (2)~(6)의 가정 밖 청소년 생활실태, 지지체계, 심리·사회·정서적 측면 인식, 학업/근로 경험 등과 관련해서는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96) 응답자의 집단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의 전체적인 분포 정도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연령구분의 경우 대체로 만 17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차이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고졸인 비율은 65.2%, 모 학력이 고졸인 비율은 64.6%로 대졸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V-6. 청소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730	100.0
성별	남자	384	52.6
	여자	346	47.4
연령	만17세까지	425	58.9
	만18세부터	297	41.1
학교재학여부	재학	381	53.2
	비재학	213	29.7
	고교졸업	122	17.0
일 경험 유무	있다	433	59.3
	없다	297	40.7
가정 밖 생활 기간	한달미만	168	23.1
	1년 미만	263	36.1
	1년 이상	297	40.8
가정 밖 생활 시설유형	일시쉼터	67	9.2
	단기쉼터	366	50.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2	29.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5	11.6
가족유형	양친	369	50.5
	한부모	258	35.3
	기타	103	14.1
경제적 수준	상	121	16.6
	중	221	30.3
	하	387	53.1
부 학력	고졸	301	65.2
	대졸	161	34.8
모 학력	고졸	250	64.6
	대졸	137	35.4
지역규모	대도시	325	44.5
	기타지역	405	55.5

(2) 가정 밖 생활의 동기 및 실태

① 가정 밖 생활 경험 횟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가정 밖 생활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2~3회가 2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회 이상(25.2%)이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다(표 V-7).

표 V-7. 하룻밤 이상 가정 밖 생활 경험 횟수

단위: 빈도(%)

구분		처음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χ^2(df)
전체		196 (26.8)	202 (27.7)	100 (13.7)	48 (6.6)	184 (25.2)	730 (100.0)	
성별	남자	90 (23.4)	98 (25.5)	53 (13.8)	30 (7.8)	113 (29.4)	384 (100.0)	12.487* (4)
	여자	106 (30.6)	104 (30.1)	47 (13.6)	18 (5.2)	71 (20.5)	346 (100.0)	
연령	만17세까지	124 (29.2)	127 (29.9)	54 (12.7)	29 (6.8)	91 (21.4)	425 (100.0)	12.147* (4)
	만18세부터	68 (22.9)	72 (24.2)	45 (15.2)	19 (6.4)	93 (31.3)	297 (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8 (40.5)	51 (30.4)	22 (13.1)	10 (6.0)	17 (10.1)	168 (100.0)	49.981*** (8)
	1년 미만	71 (27.0)	73 (27.8)	39 (14.8)	20 (7.6)	60 (22.8)	263 (100.0)	
	1년 이상	56 (18.9)	77 (25.9)	39 (13.1)	18 (6.1)	107 (36.0)	297 (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10 (14.9)	10 (14.9)	8 (11.9)	7 (10.4)	32 (47.8)	67 (100.0)	36.034*** (12)
	단기쉼터	94 (25.7)	95 (26.0)	56 (15.3)	27 (7.4)	94 (25.7)	366 (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68 (32.1)	71 (33.5)	24 (11.3)	10 (4.7)	39 (18.4)	212 (100.0)	
	회복지원시설	24 (28.2)	26 (30.6)	12 (14.1)	4 (4.7)	19 (22.4)	85 (100.0)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1~3회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10회 이상은 남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가정 밖 생활 횟수가 많았다. 시설 유형별 차이도 보였는데 일시쉼터일수록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일수록 1~3회라는 응답이 많았다(표 Ⅴ-7).

② 가정 밖 생활 시작 연령

청소년들이 처음 가정을 나온 연령을 살펴보면 만 15~16세의 비율(39.7%)이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시작 연령이 다소 낮았고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인 경우 시작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8).

표 Ⅴ-8. 처음 집을 나온 연령 평균

구분		사례수(명)	처음 집을 나온 연령 평균(SD)	t/F(Scheffé)
전체		593	15.6(2.61)	
성별	남자	316	15.4(2.69)	-2.232*
	여자	277	15.8(2.50)	
연령	만17세까지	347	15.1(2.22)	-6.728***
	만18세부터	239	16.4(2.9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135	15.7(2.67)	4.731** b>c
	1년 미만[b]	209	15.9(2.27)	
	1년 이상[c]	248	15.2(2.82)	
시설유형	일시쉼터	49	15.9(2.72)	0.562
	단기쉼터	302	15.6(2.6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74	15.5(2.78)	
	회복지원시설	68	15.4(2.06)	
지역규모	광역시	260	15.8(2.53)	2.003*
	기타	333	15.4(2.66)	

*p<.05 **p<.01 ***p<.001

③ 가정 밖 생활 기간

청소년들의 가정 밖에서 생활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주일 미만은 10.4%, 1주일 이상~한 달 미만은 12.8%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한 달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표 V-9).

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1년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한 경우가 54.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일시쉼터 청소년 역시 47.8%가 가정 밖 생활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일시쉼터이용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 밖 생활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V-9. 가정 밖 생활을 모두 합한 기간

단위: 빈도(%)

구분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한달미만	한 달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χ^2(df)
전체		75 (10.4)	92 (12.8)	93 (12.9)	66 (9.2)	101 (14.0)	292 (40.6)	719 (100.0)	
성별	남자	43 (11.3)	57 (15.0)	49 (12.9)	33 (8.7)	46 (12.1)	151 (39.8)	379 (100.0)	6.190(5)
	여자	32 (9.4)	35 (10.3)	44 (12.9)	33 (9.7)	55 (16.2)	141 (41.5)	340 (100.0)	
연령	만17세까지	49 (11.7)	61 (14.5)	69 (16.4)	53 (12.6)	65 (15.5)	123 (29.3)	420 (100.0)	64.118*** (5)
	만18세부터	23 (7.9)	30 (10.3)	23 (7.9)	12 (4.1)	35 (12.0)	169 (57.9)	292 (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10 (14.9)	8 (11.9)	9 (13.4)	1 (1.5)	7 (10.4)	32 (47.8)	67 (100.0)	48.117*** (15)
	단기쉼터	36 (10.0)	51 (14.2)	46 (12.8)	47 (13.1)	54 (15.0)	125 (34.8)	359 (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 (10.0)	20 (9.6)	18 (8.6)	12 (5.7)	25 (12.0)	113 (54.1)	209 (100.0)	
	회복지원시설	8 (9.5)	13 (15.5)	20 (23.8)	6 (7.1)	15 (17.9)	22 (26.2)	84 (100.0)	

*p<.05 **p<.01 ***p<.001

④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가족들과 싸워서'(49.7%)이며,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24.5%)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V-2). 즉 상당수의 청소년들(74.2%)이 가정 문제로 가정 밖 생활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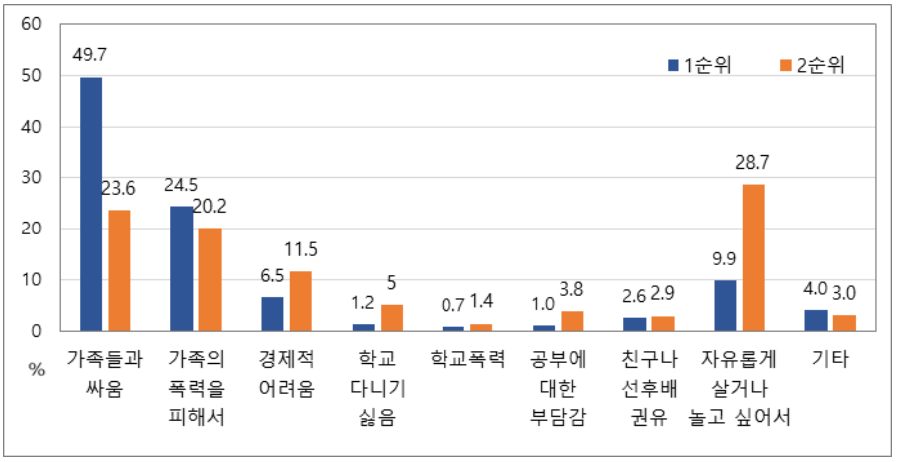


그림 V-2.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한편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가정에서 나왔다는 응답을 1순위로 꼽은 경우는 9.9%였으나 2순위로 꼽은 경우는 28.7%로 2순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가정에서 나왔다는 응답을 2순위로 꼽은 경우 '가족들과의 불화'를 1순위로 언급한 청소년이 68.4%,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4.7%로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경우 2순위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집을 나왔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83.1%였다(그림 V-3). 즉 단순히 놀기 위해 가정 밖 생활을 선택하는 청소년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을 나와 자유롭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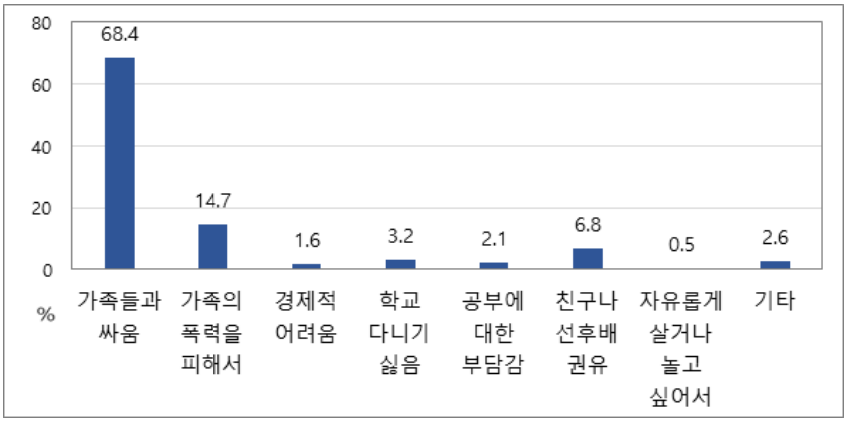


그림 Ⅴ-3.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의 2순위인 청소년들 중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1순위 비율

⑤ 가정 밖에서 생활했던 장소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생활했던 장소 중 가장 많이 이용했던 장소는 설문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인 쉼터 등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가정 밖 생활 전 알던 친구 및 선후배 집(47.2%)이었으며, 24시간 상점(34.3%), 고시원·모텔·원룸 등(32.2%), 노숙(30.3%), 가정 밖 생활 후 알게 된 친구 및 선후배 집(25.8%) 순이었다.

표 Ⅴ-10.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중복응답)

단위: 빈도(%)

구분	빈도(중복응답)	비율
전 체	729	100.0
1)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663	90.9
2) 친·인척집	108	14.8
3) (가정 밖 생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 집	344	47.2
4) (가정 밖 생활 후에 알게 된) 친구, 선·후배 집	188	25.8
5) 고시원, 모텔, 원룸 등	235	32.2
6) 노숙(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221	30.3
7)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학교	75	10.3
8) 24시간 상점(PC방, 찜질방, 코인노래방 등)	250	34.3
9) 기타	16	2.2

이외 추가 분석 결과, 청소년들 중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을 한 군데만 응답한 경우는 26.3%에 불과하였으며 두 군데를 응답한 경우는 23%, 세 군데 이상에서 생활했다는 응답은 50.7%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생활 후 여러 곳을 전전했음을 알 수 있다.

⑥ 가출 팸 경험 여부

가출 팸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7.9%가 경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일시쉼터(26.9%)와 회복지원시설(37.6%)에서 생활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표 V-11).

표 V-11. 가출팸 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df)
전체		131(17.9)	599(82.1)	730(100.0)	
성별	남자	64(16.7)	320(83.3)	384(100.0)	0.899 (1)
	여자	67(19.4)	279(80.6)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74(17.4)	351(82.6)	425(100.0)	0.247 (1)
	만18세부터	56(18.9)	241(81.1)	2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20(11.9)	148(88.1)	168(100.0)	5.490 (2)
	1년 미만	52(19.8)	211(80.2)	263(100.0)	
	1년 이상	59(19.9)	238(80.1)	297(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8(26.9)	49(73.1)	67(100.0)	39.031*** (3)
	단기쉼터	63(17.2)	303(82.8)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8(8.5)	194(91.5)	212(100.0)	
	회복지원시설	32(37.6)	53(62.4)	85(100.0)	

*p<.05 **p<.01 ***p<.001

일시쉼터에서 가출 팸 경험률이 높게 나온 것은 가출 팸 청소년들이 비교적 장기보호가 가능한 단기·중장기쉼터보다는 규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출입이 용이한 일시쉼터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일시쉼터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단기 및 중장기쉼터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⑦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사회적 지원기관이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용했을 당시 도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V-12),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생활형 쉼터(85.5%)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형 쉼터가 주요 조사대상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2. 집을 나온 후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경험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정도				
	전체	없다	있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경험 빈도
1) 생활형 청소년쉼터	730 (100.0)	106 (14.5)	624 (85.5)	8 (1.3)	26 (4.2)	182 (29.2)	408 (65.4)	624 (100.0)
2) 버스형 청소년쉼터	728 (100.0)	584 (80.2)	144 (19.8)	10 (6.9)	29 (20.1)	53 (36.8)	52 (36.1)	144 (100.0)
3) 청소년자립지원관	728 (100.0)	597 (82.0)	131 (18.0)	4 (3.1)	22 (16.8)	52 (39.7)	53 (40.5)	131 (100.0)
4) 청소년회복시설	730 (100.0)	548 (75.1)	182 (24.9)	7 (3.8)	22 (12.1)	67 (36.8)	86 (47.3)	182 (100.0)
5) 청소년전화 1388	730 (100.0)	463 (63.4)	267 (36.6)	21 (7.9)	36 (13.5)	99 (37.1)	111 (41.6)	267 (100.0)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30 (100.0)	472 (64.7)	258 (35.3)	19 (7.4)	36 (14.0)	108 (41.9)	95 (36.8)	258 (100.0)
7) 학교(Wee 클래스 포함)	730 (100.0)	429 (58.8)	301 (41.2)	43 (14.3)	53 (17.6)	102 (33.9)	103 (34.2)	301 (100.0)
8) 경찰서	730 (100.0)	422 (57.8)	308 (42.2)	71 (23.1)	63 (20.5)	89 (28.9)	85 (27.6)	308 (100.0)

조사대상 기관이었던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시설을 제외하면 경찰서(42.2%), Wee클래스 등 학교(41.2%), 청소년전화 1388(36.6%), 청소년상담복지센터(35.3%)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 대한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기관/서비스를 이용했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도움이 되었다(약간/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긍정 응답률(약간/매우 도움되었다)이 가장 높은 기관은 생활형 청소년쉼

터(94.6%)였으며, 그 뒤로 청소년회복시설(84.1%), 청소년자립지원관(80.2%), 청소년전화 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78.7%), 버스형 청소년쉼터(7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항목별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도 결코 낮지 않아(27.6%~65.4%)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 시설과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시설·서비스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도움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 집단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버스형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만 17세 이하보다는 18세 이상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광역시보다는 기타지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우세하였다.

⑧ 집을 나온 후의 계획

이번에 집을 나온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보면(표 V-13),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할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계획이 없는 응답이 26.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9.6%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시설이나 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적어 8.3%로 보고되었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집에 돌아가거나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립이나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이전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밖 생활이 길수록,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할수록 자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연령이 낮고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일시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연령이나 가정 밖 생활기간, 시설 유형 등에 따른 차이는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표 V-13. 집을 나온 후 생활 계획

단위: 빈도(%)

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립할 것이다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갈 것이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전체	χ^2(df)
전체		142(19.6)	334(46.0)	60(8.3)	190(26.2)	726(100.0)	
성별	남자	85(22.4)	167(43.9)	24(6.3)	104(27.4)	380(100.0)	8.052* (3)
	여자	57(16.5)	167(48.3)	36(10.4)	86(24.9)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98(23.2)	166(39.3)	37(8.8)	121(28.7)	422(100.0)	22.008*** (3)
	만18세부터	43(14.5)	168(56.8)	21(7.1)	64(21.6)	296(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달미만	53(31.5)	53(31.5)	14(8.3)	48(28.6)	168(100.0)	39.714*** (6)
	1년미만	50(19.1)	112(42.7)	25(9.5)	75(28.6)	262(100.0)	
	1년이상	37(12.6)	169(57.5)	21(7.1)	67(22.8)	294(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6(23.9)	20(29.9)	9(13.4)	22(32.8)	67(100.0)	117.114*** (9)
	단기쉼터	54(14.8)	166(45.6)	39(10.7)	105(28.8)	364(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3(10.9)	127(60.2)	11(5.2)	50(23.7)	211(100.0)	
	회복지원시설	49(58.3)	21(25.0)	1(1.2)	13(15.5)	84(100.0)	

*p<.05 **p<.01 ***p<.001

(3) 가정환경·사회적 지지체계

① 가정생활 시 가족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표 V-14와 같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어머니(36.9%)보다는 아버지(54.4%)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매우 나쁘다, 나쁘다)가 더 많았다. 그 외에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우는 31.5%,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는 17.7%로 나타났다. 즉 앞서 청소년들이 가출의 주된 이유로 가정 내 불화 및 폭력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그 중에서도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주된 갈등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생활을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V-14. 가족과의 관계

단위: 빈도(%)

구분	함께 살던 가족들과의 관계					전체 수
	해당사항 없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	114(15.7)	207(28.5)	188(25.9)	138(19.0)	80(11.0)	727(100.0)
2) 어머니	209(28.7)	137(18.8)	132(18.1)	149(20.5)	101(13.9)	728(100.0)
3) 형제자매	181(25.0)	99(13.7)	129(17.8)	210(29.0)	106(14.6)	725(100.0)
4) (외)조부모	309(42.7)	54(7.5)	74(10.2)	173(23.9)	114(15.7)	724(100.0)

참고로 가정 내 갈등 및 폭력을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1순위 또는 2순위로 언급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V-15),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다(매우 나쁘다 포함)고 응답한 청소년은 60.4%, 어머니와 관계가 나쁘다(매우 나쁘다 포함)고 응답한 청소년은 42%로 나타났다.

표 V-15. 가족과의 관계 (가정 내 갈등 및 폭력이 주된 이유1,2순위)

단위: 빈도(%)

구분	함께 살던 가족들과의 관계					전체 수
	해당사항 없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	81(13.4)	192(31.8)	173(28.6)	111(18.4)	47(7.8)	604(100.0)
2) 어머니	161(26.6)	132(21.8)	122(20.2)	121(20.0)	69(11.4)	605(100.0)
3) 형제자매	145(24.0)	90(14.9)	115(19.1)	179(29.7)	74(12.3)	603(100.0)
4) (외)조부모	258(42.9)	50(8.3)	67(11.1)	146(24.3)	80(13.3)	601(100.0)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54%)과 여자 청소년(54.7%)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31.5%)보다는 여자 청소년(42.8%)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가정 밖 생활이 일 년 이상인 경우가 한 달 미만인 경우보다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V-16).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족 간의 갈등은 가정 밖 생활의 원인 및 기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6.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단위: 빈도(%)

구분			해당사항 없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아버지	전체		114 (15.7)	207 (28.5)	188 (25.9)	138 (19.0)	80 (11.0)	727 (100.0)	2.15 (1.03)	
	성별	남자	42 (11.0)	107 (27.9)	100 (26.1)	74 (19.3)	60 (15.7)	383 (100.0)	2.26 (1.08)	4.610***
		여자	72 (20.9)	100 (29.1)	88 (25.6)	64 (18.6)	20 (5.8)	344 (100.0)	2.01 (0.95)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28 (16.8)	32 (19.2)	42 (25.1)	37 (22.2)	28 (16.8)	167 (100.0)	2.44 (1.06)	3.578* a>c
		1년 미만[b]	42 (16.0)	75 (28.5)	75 (28.5)	48 (18.3)	23 (8.7)	263 (100.0)	2.09 (0.98)	
		1년 이상[c]	44 (14.9)	100 (33.9)	71 (24.1)	51 (17.3)	29 (9.8)	295 (100.0)	2.04 (1.03)	
어머니	전체		209 (28.7)	137 (18.8)	132 (18.1)	149 (20.5)	101 (13.9)	728 (100.0)	2.41 (1.08)	
	성별	남자	107 (27.9)	63 (16.4)	58 (15.1)	88 (23.0)	67 (17.5)	383 (100.0)	2.58 (1.09)	7.533**
		여자	102 (29.6)	74 (21.4)	74 (21.4)	61 (17.7)	34 (9.9)	345 (100.0)	2.23 (1.03)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51 (30.5)	20 (12.0)	29 (17.4)	45 (26.9)	22 (13.2)	167 (100.0)	2.59 (0.99)	5.112** a>c
		1년 미만[b]	70 (26.6)	48 (18.3)	50 (19.0)	47 (17.9)	48 (18.3)	263 (100.0)	2.49 (1.12)	
		1년 이상[c]	87 (29.4)	69 (23.3)	53 (17.9)	56 (18.9)	31 (10.5)	296 (100.0)	2.23 (1.07)	

*p<.05 **p<.01 ***p<.001

주: 평균값 및 t/F검증은 '해당사항 없다' 응답자 사례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② 가정 학대 경험 정도

가정 학대와 관련한 세부 항목별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을 보면 표 V-17과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인 항목은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말이나 욕설을 듣는 경험(56.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미래 및 진로에 관심 없음(49.1%), 공부나 생활 비용을 대지 않음(48%), 별다른 관심이 없음(45.6%),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림(4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7. 가정 학대 관련 항목별 응답률

단위: 빈도(%)

구분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의견				전체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	177(24.3)	219(30.1)	222(30.5)	110(15.1)	728(100.0)
2)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254(34.9)	231(31.7)	151(20.7)	92(12.6)	728(100.0)
3)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232(31.9)	251(34.5)	161(22.1)	84(11.5)	728(100.0)
4)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253(34.8)	156(21.4)	150(20.6)	169(23.2)	728(100.0)
5)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186(25.6)	128(17.6)	182(25.1)	230(31.7)	726(100.0)
6) 나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159(21.8)	199(27.3)	238(32.7)	132(18.1)	728(100.0)
7) 나의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	185(25.4)	164(22.6)	256(35.2)	122(16.8)	727(100.0)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한 학대 정도가 하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18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일수록, 경제수준이 상이나 중보다는 하인 경우에 가정 내에서 학대 경험 정도가 높았다. 한편 시설유형별 분석에서는 쉼터 및 자립지원관 거주 청소년들이 회복지원시설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대 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18. 집단별 가정 학대 경험 정도

구분		N	평균(SD)	t/F(Scheffé)
전체		725	2.38(0.71)	
성별	남자	380	2.30(0.70)	10.153**
	여자	345	2.47(0.72)	
연령	만17세까지	422	2.34(0.71)	3.194
	만18세부터	295	2.44(0.7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168	2.21(0.65)	11.256*** c>a,b
	1년 미만[b]	262	2.34(0.70)	
	1년 이상[c]	293	2.52(0.73)	
시설유형	청소년일시쉼터[a]	66	2.36(0.74)	20.534*** a,b,c>d
	청소년단기쉼터[b]	362	2.53(0.66)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212	2.32(0.71)	
	회복지원시설[d]	85	1.89(0.66)	
가족 유형	양친[a]	367	2.35(0.65)	3.971* b>c
	한부모[b]	257	2.47(0.70)	
	기타[c]	101	2.26(0.73)	
경제적 수준	상[a]	120	2.15(0.74)	17.207*** c>a,b
	중[b]	220	2.26(0.70)	
	하[c]	384	2.52(0.68)	

*p<.05 **p<.01 ***p<.001

③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V-19),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매우 믿고 의지한다 포함)는 35.2%, 형제자매는 34.8%에 불과한 것에 비해 보호시설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는 74%에 달하였고 친구 및 선후배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68.6%나 되었다.

표 V-19.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전체 수
1) 부모님(보호자)	306(42.3)	163(22.5)	157(21.7)	98(13.5)	724(100.0)
2) 형제, 자매	338(47.4)	127(17.8)	173(24.3)	75(10.5)	713(100.0)
3) 친구(선후배)	110(15.1)	119(16.3)	320(43.8)	181(24.8)	730(100.0)
4) 보호시설 선생님	72(9.9)	118(16.2)	332(45.5)	208(28.5)	730(100.0)

이는 앞서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응답 및 가정 내 학대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모나 형제자매보다는 보호시설 선생님이나 친구 등 비혈연 관계를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이상일수록, 회복지원시설보다는 쉼터생활을 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표 V-20).

표 V-20.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모님(보호자)

단위: 빈도(%)

구분		부모님(보호자)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06 (42.3)	163 (22.5)	157 (21.7)	98 (13.5)	724 (100.0)	2.06 (1.09)	
성별	남자	137 (35.9)	80 (20.9)	93 (24.3)	72 (18.8)	382 (100.0)	2.26 (1.14)	5.293***
	여자	169 (49.4)	83 (24.3)	64 (18.7)	26 (7.6)	342 (100.0)	1.85 (0.98)	
연령	만17세까지	171 (40.6)	97 (23.0)	94 (22.3)	59 (14.0)	421 (100.0)	2.10 (1.09)	1.020
	만18세부터	131 (44.4)	66 (22.4)	61 (20.7)	37 (12.5)	295 (100.0)	2.01 (1.08)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49 (29.5)	35 (21.1)	51 (30.7)	31 (18.7)	166 (100.0)	2.39 (1.10)	9.985*** a>b,c
	1년 미만[b]	114 (43.5)	66 (25.2)	51 (19.5)	31 (11.8)	262 (100.0)	2.00 (1.05)	
	1년 이상[c]	143 (48.6)	62 (21.1)	53 (18.0)	36 (12.2)	294 (100.0)	1.94 (1.08)	
시설유형	일시쉼터[a]	25 (37.3)	14 (20.9)	16 (23.9)	12 (17.9)	67 (100.0)	2.22 (1.14)	19.951*** d>a,b,c
	단기쉼터[b]	176 (48.4)	86 (23.6)	64 (17.6)	38 (10.4)	364 (100.0)	1.90 (1.03)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c]	94 (44.5)	49 (23.2)	45 (21.3)	23 (10.9)	211 (100.0)	1.99 (1.05)	
	회복지원시설[d]	11 (13.4)	14 (17.1)	32 (39.0)	25 (30.5)	82 (100.0)	2.87 (1.00)	

*p<.05 **p<.01 ***p<.001

(4) 자신의 심리·사회·정서 인식

① 스트레스 인식 정도

가정 밖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 년 동안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가 62.5%에 달하였으며 가끔 경험하는 경우도 25.8%로 나타났다. 반면 느낀 적이 없거나 한두 번 경험한 경우는 11.8%에 불과하였다.

표 V-21. 스트레스 인식 정도

단위: 빈도(%)

구분		느낀 적이 없다	한 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전체	χ^2(df)
전체		29(4.0)	57(7.8)	188(25.8)	456(62.5)	730(100.0)	
성별	남자	16(4.2)	38(9.9)	124(32.3)	206(53.6)	384(100.0)	28.136*** (3)
	여자	13(3.8)	19(5.5)	64(18.5)	250(72.3)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15(3.5)	38(8.9)	106(24.9)	266(62.6)	425(100.0)	3.356 (3)
	만18세부터	14(4.7)	17(5.7)	81(27.3)	185(62.3)	2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1(6.5)	15(8.9)	46(27.4)	96(57.1)	168(100.0)	7.267 (6)
	1년 미만	10(3.8)	18(6.8)	72(27.4)	163(62.0)	263(100.0)	
	1년 이상	8(2.7)	23(7.7)	69(23.2)	197(66.3)	297(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1(1.5)	2(3.0)	19(28.4)	45(67.2)	67(100.0)	23.086** (9)
	단기쉼터	15(4.1)	27(7.4)	78(21.3)	246(67.2)	366(100.0)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7(3.3)	16(7.5)	61(28.8)	128(60.4)	212(100.0)	
	회복지원시설	6(7.1)	12(14.1)	30(35.3)	37(43.5)	85(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29(4.0)	57(7.8)	188(25.8)	456(62.5)	730(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27(4.3)	1,858(35.3)	2,669(50.8)	504(9.6)	5,260(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53.6%)보다는 여자 청소년(72.3%)에게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43.5%)보다 쉼터 청소년(60~68%)에게서 월등히 많았다. 한편 2017년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가정 내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는 응답이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62.5%인데 비해 가정 내 청소년들 중에는 9.6%에 불과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두 번 경험한 비율이 가정 밖 청소년에서는 7.8%, 가정 내 청소년에서는 35.3%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V-21).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②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최근 3개월 동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 괴로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22). 그 결과,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41.2%에 이르러 과거의 어려운 경험으로 힘들어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32.0%)보다는 여자 청소년(51.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V-22.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265 (36.4)	164 (22.5)	188 (25.8)	112 (15.4)	729 (100.0)	2.20 (1.09)	
성별	남자	171 (44.5)	90 (23.4)	81 (21.1)	42 (10.9)	384 (100.0)	1.98 (1.05)	-5.768***
	여자	94 (27.2)	74 (21.4)	107 (31.0)	70 (20.3)	345 (100.0)	2.44 (1.10)	
연령	만17세까지	159 (37.5)	97 (22.9)	107 (25.2)	61 (14.4)	424 (100.0)	2.17 (1.09)	-1.056

구분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만18세부터	103 (34.7)	66 (22.2)	78 (26.3)	50 (16.8)	297 (100.0)	2.25 (1.1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6 (39.3)	32 (19.0)	45 (26.8)	25 (14.9)	168 (100.0)	2.17 (1.11)	0.102
	1년 미만	87 (33.1)	65 (24.7)	77 (29.3)	34 (12.9)	263 (100.0)	2.22 (1.05)	
	1년 이상	110 (37.2)	67 (22.6)	66 (22.3)	53 (17.9)	296 (100.0)	2.21 (1.13)	
시설유형	일시쉼터[a]	29 (43.3)	19 (28.4)	7 (10.4)	12 (17.9)	67 (100.0)	2.03 (1.13)	4.771** b>d
	단기쉼터[b]	120 (32.8)	75 (20.5)	109 (29.8)	62 (16.9)	366 (100.0)	2.31 (1.10)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c]	76 (35.8)	46 (21.7)	59 (27.8)	31 (14.6)	212 (100.0)	2.21 (1.09)	
	회복지원시설[d]	40 (47.6)	24 (28.6)	13 (15.5)	7 (8.3)	84 (100.0)	1.85 (0.98)	

*p<.05 **p<.01 ***p<.001

③ 인터넷 과다 사용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19.9%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은 인터넷 등의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3). 이러한 응답률의 하위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광역시 청소년들이 기타 지역 청소년들 보다 많이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인 부정응답률(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인식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는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23.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30 (45.3)	254 (34.8)	118 (16.2)	27 (3.7)	729 (100.0)	1.78 (0.85)	
성별	남자	188 (49.0)	125 (32.6)	64 (16.7)	7 (1.8)	384 (100.0)	1.71 (0.81)	-2.353*
	여자	142 (41.2)	129 (37.4)	54 (15.7)	20 (5.8)	345 (100.0)	1.86 (0.88)	
연령	만17세까지	178 (42.0)	154 (36.3)	77 (18.2)	15 (3.5)	424 (100.0)	1.83 (0.85)	1.805
	만18세부터	147 (49.5)	99 (33.3)	39 (13.1)	12 (4.0)	297 (100.0)	1.72 (0.84)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77 (45.8)	50 (29.8)	35 (20.8)	6 (3.6)	168 (100.0)	1.82 (0.88)	0.772
	1년 미만	120 (45.6)	100 (38.0)	36 (13.7)	7 (2.7)	263 (100.0)	1.73 (0.79)	
	1년 이상	131 (44.3)	104 (35.1)	47 (15.9)	14 (4.7)	296 (100.0)	1.81 (0.87)	
시설유형	일시쉼터	29 (43.3)	20 (29.9)	13 (19.4)	5 (7.5)	67 (100.0)	1.91 (0.97)	2.486
	단기쉼터	157 (42.9)	130 (35.5)	68 (18.6)	11 (3.0)	366 (100.0)	1.82 (0.84)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97 (45.8)	77 (36.3)	28 (13.2)	10 (4.7)	212 (100.0)	1.77 (0.85)	
	회복지원시설	47 (56.0)	27 (32.1)	9 (10.7)	1 (1.2)	84 (100.0)	1.57 (0.73)	
지역규모	광역시	173 (53.2)	94 (28.9)	47 (14.5)	11 (3.4)	325 (100.0)	1.68 (0.84)	-2.970**
	기타	157 (38.9)	160 (39.6)	71 (17.6)	16 (4.0)	404 (100.0)	1.87 (0.84)	

*p<.05 **p<.01 ***p<.001

④ 분노 조절

최근 3개월 동안 화를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모두 40.8%로 나타났다(표 V-24). 즉 10명 중 4명 정도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분노 조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4. 분노조절

단위: 빈도(%)

구분		화를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236 (32.3)	196 (26.8)	209 (28.6)	89 (12.2)	730 (100.0)	2.21 (1.03)	
성별	남자	127 (33.1)	82 (21.4)	125 (32.6)	50 (13.0)	384 (100.0)	2.26 (1.06)	1.344
	여자	109 (31.5)	114 (32.9)	84 (24.3)	39 (11.3)	346 (100.0)	2.15 (0.99)	
연령	만17세까지	127 (29.9)	117 (27.5)	124 (29.2)	57 (13.4)	425 (100.0)	2.26 (1.03)	1.627
	만18세부터	106 (35.7)	77 (25.9)	82 (27.6)	32 (10.8)	297 (100.0)	2.13 (1.02)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57 (33.9)	40 (23.8)	54 (32.1)	17 (10.1)	168 (100.0)	2.18 (1.02)	0.962
	1년 미만	88 (33.5)	76 (28.9)	70 (26.6)	29 (11.0)	263 (100.0)	2.15 (1.01)	
	1년 이상	90 (30.3)	80 (26.9)	84 (28.3)	43 (14.5)	297 (100.0)	2.27 (1.05)	
시설유형	일시쉼터	20 (29.9)	15 (22.4)	21 (31.3)	11 (16.4)	67 (100.0)	2.34 (1.08)	2.462
	단기쉼터	112 (30.6)	90 (24.6)	113 (30.9)	51 (13.9)	366 (100.0)	2.28 (1.05)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74 (34.9)	67 (31.6)	50 (23.6)	21 (9.9)	212 (100.0)	2.08 (0.99)	
	회복지원시설	30 (35.3)	24 (28.2)	25 (29.4)	6 (7.1)	85 (100.0)	2.08 (0.97)	

*p<.05 **p<.01 ***p<.001

⑤ 무기력

청소년들의 무기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모든 일에 대한 재미없고 귀찮은 정도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4.4%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남자 청소년(37.2%)보다는 여자 청소년(52.3%)에게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다는 쉼터, 특히 단기쉼터 청소년에게서 많았다(표 V-25).

이러한 결과 역시 앞에서 언급한 분노조절과 마찬가지로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점에 해당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언급하고 있는 과거 경험과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등으로 인한 어려움, 가정 밖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이들이 겪는 무기력은 일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무기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작더라도 보다 많은 성공경험과 정서 및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V-25. 무기력 정도

단위: 빈도(%)

구분		모든 일이 재미없고 귀찮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207 (28.4)	199 (27.3)	227 (31.1)	97 (13.3)	730 (100.0)	2.29 (1.02)	
성별	남자	131 (34.1)	110 (28.6)	103 (26.8)	40 (10.4)	384 (100.0)	2.14 (1.01)	-4.456***
	여자	76 (22.0)	89 (25.7)	124 (35.8)	57 (16.5)	346 (100.0)	2.47 (1.01)	
연령	만17세까지	115 (27.1)	122 (28.7)	131 (30.8)	57 (13.4)	425 (100.0)	2.31 (1.01)	0.342
	만18세부터	89 (30.0)	75 (25.3)	94 (31.6)	39 (13.1)	297 (100.0)	2.28 (1.03)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48 (28.6)	51 (30.4)	48 (28.6)	21 (12.5)	168 (100.0)	2.25 (1.01)	0.509
	1년 미만	74 (28.1)	74 (28.1)	84 (31.9)	31 (11.8)	263 (100.0)	2.27 (1.00)	
	1년 이상	84 (28.3)	73 (24.6)	95 (32.0)	45 (15.2)	297 (100.0)	2.34 (1.05)	
시설유형	일시쉼터[a]	21 (31.3)	16 (23.9)	18 (26.9)	12 (17.9)	67 (100.0)	2.31 (1.10)	6.379*** b>d
	단기쉼터[b]	85 (23.2)	91 (24.9)	134 (36.6)	56 (15.3)	366 (100.0)	2.44 (1.0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68 (32.1)	68 (32.1)	52 (24.5)	24 (11.3)	212 (100.0)	2.15 (1.00)	
	회복지원시설[d]	33 (38.8)	24 (28.2)	23 (27.1)	5 (5.9)	85 (100.0)	2.00 (0.95)	

*p<.05 **p<.01 ***p<.001

⑥ 주의집중

최근 3개월 동안 공부나 오래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46.6%)보다는 여자 청소년(51.2%)에게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다는 쉼터, 특히 단기쉼터 청소년에게서 높았다(표 V-26).

표 V-26. 주의집중

단위: 빈도(%)

구분		공부나 오래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81 (24.8)	193 (26.4)	232 (31.8)	124 (17.0)	730 (100.0)	2.41 (1.04)	
성별	남자	110 (28.6)	95 (24.7)	119 (31.0)	60 (15.6)	384 (100.0)	2.34 (1.05)	-2.023*
	여자	71 (20.5)	98 (28.3)	113 (32.7)	64 (18.5)	346 (100.0)	2.49 (1.02)	
연령	만17세까지	100 (23.5)	116 (27.3)	136 (32.0)	73 (17.2)	425 (100.0)	2.43 (1.03)	0.564
	만18세부터	80 (26.9)	73 (24.6)	94 (31.6)	50 (16.8)	297 (100.0)	2.38 (1.0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50 (29.8)	42 (25.0)	49 (29.2)	27 (16.1)	168 (100.0)	2.32 (1.07)	1.161
	1년 미만	64 (24.3)	68 (25.9)	91 (34.6)	40 (15.2)	263 (100.0)	2.41 (1.02)	
	1년 이상	66 (22.2)	83 (27.9)	91 (30.6)	57 (19.2)	297 (100.0)	2.47 (1.04)	
시설유형	일시쉼터[a]	18 (26.9)	15 (22.4)	21 (31.3)	13 (19.4)	67 (100.0)	2.43 (1.09)	3.819** b>d
	단기쉼터[b]	76 (20.8)	93 (25.4)	129 (35.2)	68 (18.6)	366 (100.0)	2.52 (1.02)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56 (26.4)	66 (31.1)	54 (25.5)	36 (17.0)	212 (100.0)	2.33 (1.05)	
	회복지원시설[d]	31 (36.5)	19 (22.4)	28 (32.9)	7 (8.2)	85 (100.0)	2.13 (1.01)	

*$p<.05$ **$p<.01$ ***$p<.001$

⑦ 우울

최근 3개월 동안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났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40.9%)보다는 여자 청소년(63.3%)에게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다는 쉼터, 특히 단기쉼터 청소년에게서 높았다(표 V-27).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무기력이나 주의집중 관련 문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V-27. 우울

단위: 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90 (26.0)	164 (22.5)	226 (31.0)	150 (20.5)	730 (100.0)	2.46 (1.09)	
성별	남자	128 (33.3)	99 (25.8)	102 (26.6)	55 (14.3)	384 (100.0)	2.22 (1.06)	-6.501***
	여자	62 (17.9)	65 (18.8)	124 (35.8)	95 (27.5)	346 (100.0)	2.73 (1.05)	
연령	만17세까지	100 (23.5)	102 (24.0)	133 (31.3)	90 (21.2)	425 (100.0)	2.50 (1.07)	1.058
	만18세부터	87 (29.3)	60 (20.2)	90 (30.3)	60 (20.2)	297 (100.0)	2.41 (1.1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50 (29.8)	38 (22.6)	54 (32.1)	26 (15.5)	168 (100.0)	2.33 (1.07)	1.630
	1년 미만	60 (22.8)	63 (24.0)	84 (31.9)	56 (21.3)	263 (100.0)	2.52 (1.07)	
	1년 이상	78 (26.3)	63 (21.2)	88 (29.6)	68 (22.9)	297 (100.0)	2.49 (1.11)	
시설유형	일시쉼터	18 (26.9)	12 (17.9)	18 (26.9)	19 (28.4)	67 (100.0)	2.57 (1.17)	4.247**
	단기쉼터	81 (22.1)	74 (20.2)	131 (35.8)	80 (21.9)	366 (100.0)	2.57 (1.06)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64 (30.2)	54 (25.5)	52 (24.5)	42 (19.8)	212 (100.0)	2.34 (1.11)	
	회복지원시설	27 (31.8)	24 (28.2)	25 (29.4)	9 (10.6)	85 (100.0)	2.19 (1.01)	

*p<.05 **p<.01 ***p<.001

⑧ 자살 생각 및 계획

최근 3개월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6.9%이며 이 역시 남자 청소년(27.6%)보다는 여자 청소년(47.1%)에게서 월등히 많았다(표 V-28).

표 V-28. 자살 생각

단위: 빈도(%)

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283 (38.8)	178 (24.4)	159 (21.8)	110 (15.1)	730 (100.0)	2.13 (1.09)	
성별	남자	189 (49.2)	89 (23.2)	62 (16.1)	44 (11.5)	384 (100.0)	1.90 (1.05)	-6.230***
	여자	94 (27.2)	89 (25.7)	97 (28.0)	66 (19.1)	346 (100.0)	2.39 (1.08)	
연령	만17세까지	158 (37.2)	104 (24.5)	104 (24.5)	59 (13.9)	425 (100.0)	2.15 (1.07)	0.807
	만18세부터	123 (41.4)	74 (24.9)	52 (17.5)	48 (16.2)	297 (100.0)	2.08 (1.1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70 (41.7)	40 (23.8)	36 (21.4)	22 (13.1)	168 (100.0)	2.06 (1.08)	2.208
	1년 미만	90 (34.2)	63 (24.0)	65 (24.7)	45 (17.1)	263 (100.0)	2.25 (1.10)	
	1년 이상	121 (40.7)	75 (25.3)	58 (19.5)	43 (14.5)	297 (100.0)	2.08 (1.09)	
시설유형	일시쉼터	32 (47.8)	17 (25.4)	7 (10.4)	11 (16.4)	67 (100.0)	1.96 (1.12)	5.075**
	단기쉼터	123 (33.6)	87 (23.8)	85 (23.2)	71 (19.4)	366 (100.0)	2.28 (1.13)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89 (42.0)	51 (24.1)	52 (24.5)	20 (9.4)	212 (100.0)	2.01 (1.02)	
	회복지원시설	39 (45.9)	23 (27.1)	15 (17.6)	8 (9.4)	85 (100.0)	1.91 (1.01)	

*p<.05 **p<.01 ***p<.001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4.7%였다(표 V-29).

표 V-29. 자살 계획

단위: 빈도(%)

구분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56 (48.9)	192 (26.4)	104 (14.3)	76 (10.4)	728 (100.0)	1.86 (1.02)	
성별	남자	221 (57.6)	81 (21.1)	52 (13.5)	30 (7.8)	384 (100.0)	1.72 (0.97)	-4.157***
	여자	135 (39.2)	111 (32.3)	52 (15.1)	46 (13.4)	344 (100.0)	2.03 (1.04)	
연령	만17세까지	198 (46.7)	118 (27.8)	67 (15.8)	41 (9.7)	424 (100.0)	1.88 (1.00)	0.738
	만18세부터	154 (52.0)	73 (24.7)	35 (11.8)	34 (11.5)	296 (100.0)	1.83 (1.04)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89 (53.0)	43 (25.6)	18 (10.7)	18 (10.7)	168 (100.0)	1.79 (1.01)	1.300
	1년 미만	118 (45.2)	69 (26.4)	45 (17.2)	29 (11.1)	261 (100.0)	1.94 (1.03)	
	1년 이상	147 (49.5)	80 (26.9)	41 (13.8)	29 (9.8)	297 (100.0)	1.84 (1.00)	
시설유형	일시쉼터[a]	38 (57.6)	15 (22.7)	7 (10.6)	6 (9.1)	66 (100.0)	1.71 (0.99)	8.141*** b>d
	단기쉼터b	153 (41.8)	97 (26.5)	64 (17.5)	52 (14.2)	366 (100.0)	2.04 (1.08)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111 (52.4)	63 (29.7)	26 (12.3)	12 (5.7)	212 (100.0)	1.71 (0.89)	
	회복지원시설[d]	54 (64.3)	17 (20.2)	7 (8.3)	6 (7.1)	84 (100.0)	1.58 (0.92)	

*p<.05 **p<.01 ***p<.001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3)에서 지난 일 년 간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 계획 역시 남자(21.3%)보다는 여자 청소년(28.5%)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고 회복지원시설 청소년(15.4%)보다는 쉼터, 특히 단기쉼터(31.7%) 청소년에게서 높았다.

한편 자살 문항과 관련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17:41)에 따르면 동일 문항을 0~3점 척도로 하여 두 문항(자살생각, 자살계획)에 대한 응답 점수의 합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응답점수를 0~3점 척도로 환산하여 2점 이상인 경우를 보면 55.1%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으로 이들의 자살 욕구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⑨ 정서적 어려움(종합)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분노 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 생각 및 계획 항목들을 모두 합하여 정서적 어려움으로 명명하고 정서적 어려움과 가정 학대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변인 간의 관계 이전에 청소년의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반영하여 이 두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사용된 변인의 신뢰도는 가정학대 alpha= .793, 정서적 어려움 alpha= .843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가정학대의 경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했는데 특히 가정의 학대 경험 정도의 설명변량은 약 9%로 나타났다(표 V-30). 한편 해당 모델의 Durbin-Watson test 결과는 1.890, 분산팽창지수(VIF)는 1.019~1.081 수준으로 자기상관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721

변인	정서적 어려움 (DV)	성별	경제적 수준	가정 학대	B	β	R^2 변화량
(상수)					1.188		
성별	.20				.225***	.158	.040
경제적 수준	-.14	-.09			-.026	-.050	.016
가정 학대	.34	.12	-.25		.310***	.311	.089
						R^2= .145***	
평균	2.17	1.47	3.36	2.38		교정된 R^2= .142***	
표준편차	0.71	0.5	1.39	0.71		R = .381***	

*p<.05 **p<.01 ***p<.001

⑩ 현재 고민

청소년들이 현재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을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V-31), 경제적 어려움(55.2%)이 가장 많았고, 진로·진학 문제(54.1%), 향후 거취 문제(52.9%)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고민거리라는 응답률이 32.3%, 가족과의 불화가 고민거리라는 응답률은 30%였다.

표 V-31. 현재 고민거리

단위: 빈도(%)

구분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				전체 수 (%)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진로·진학 문제	124(17.0)	211(28.9)	220(30.1)	175(24.0)	730(100.0)
가족과의 불화	321(44.0)	190(26.0)	127(17.4)	92(12.6)	730(100.0)
경제적 어려움	129(17.7)	198(27.1)	201(27.5)	202(27.7)	730(100.0)
향후 거취(생활) 문제	159(21.8)	185(25.3)	187(25.6)	199(27.3)	730(100.0)
가정 밖(가출 등에 따른) 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	300(41.1)	194(26.6)	139(19.0)	97(13.3)	730(100.0)

표 V-32. 진로·진학 문제

단위: 빈도(%)

구분		진로·진학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24(17.0)	211(28.9)	220(30.1)	175(24.0)	730(100.0)	2.61(1.03)	
성별	남자	88(22.9)	116(30.2)	111(28.9)	69(18.0)	384(100.0)	2.42(1.03)	-5.405***
	여자	36(10.4)	95(27.5)	109(31.5)	106(30.6)	346(100.0)	2.82(0.98)	
시설유형	일시쉼터	16(23.9)	17(25.4)	20(29.9)	14(20.9)	67(100.0)	2.48(1.08)	3.443*
	단기쉼터	67(18.3)	106(29.0)	107(29.2)	86(23.5)	366(100.0)	2.58(1.0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6(12.3)	56(26.4)	68(32.1)	62(29.2)	212(100.0)	2.78(1.00)	
	회복지원시설	15(17.6)	32(37.6)	25(29.4)	13(15.3)	85(100.0)	2.42(0.96)	

*p<.05 **p<.01 ***p<.001

각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표 V-32 ~ 표 V-41), 사회적 편견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고민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앞서 정서 관련 항목에서도 일관되게 보인 경향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가 실제 어려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인식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생활의 개선을 위한 개입이 더욱 절실함을 시사한다. 한편 시설유형에서도 항목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보다는 쉼터 청소년들의 고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은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미만일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일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33. 가족과의 불화

단위: 빈도(%)

구분		가족과의 불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21(44.0)	190(26.0)	127(17.4)	92(12.6)	730(100.0)	1.99(1.06)	
성별	남자	186(48.4)	94(24.5)	59(15.4)	45(11.7)	384(100.0)	1.90(1.05)	-2.230*
	여자	135(39.0)	96(27.7)	68(19.7)	47(13.6)	346(100.0)	2.08(1.0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61(36.3)	48(28.6)	30(17.9)	29(17.3)	168(100.0)	2.16(1.10)	3.315* a>c
	1년 미만[b]	113(43.0)	72(27.4)	48(18.3)	30(11.4)	263(100.0)	1.98(1.04)	
	1년 이상[c]	145(48.8)	70(23.6)	49(16.5)	33(11.1)	297(100.0)	1.90(1.05)	
시설 유형	일시쉼터	31(46.3)	18(26.9)	6(9.0)	12(17.9)	67(100.0)	1.99(1.34)	3.590*
	단기쉼터	148(40.4)	93(25.4)	66(18.0)	59(16.1)	366(100.0)	2.10(1.11)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97(45.8)	58(27.4)	39(18.4)	18(8.5)	212(100.0)	1.90(0.99)	
	회복지원시설	45(52.9)	21(24.7)	16(18.8)	3(3.5)	85(100.0)	1.73(0.89)	

*p<.05 **p<.01 ***p<.001

표 V-34. 경제적 어려움

단위: 빈도(%)

구분		경제적 어려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29(17.7)	198(27.1)	201(27.5)	202(27.7)	730(100.0)	2.65(1.07)	
성별	남자	90(23.4)	103(26.8)	100(26.0)	91(23.7)	384(100.0)	2.50(1.09)	-4.123***
	여자	39(11.3)	95(27.5)	101(29.2)	111(32.1)	346(100.0)	2.82(1.0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33(19.6)	58(34.5)	42(25.0)	35(20.8)	168(100.0)	2.47(1.03)	3.602* c>a
	1년 미만[b]	46(17.5)	70(26.6)	69(26.2)	78(29.7)	263(100.0)	2.68(1.08)	
	1년 이상[c]	48(16.2)	70(23.6)	90(30.3)	89(30.0)	297(100.0)	2.74(1.06)	
시설유형	일시쉼터[a]	16(23.9)	19(28.4)	14(20.9)	18(26.9)	67(100.0)	2.51(1.13)	11.357*** a,b,c>d
	단기쉼터[b]	60(16.4)	98(26.8)	98(26.8)	110(30.1)	366(100.0)	2.70(1.07)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c]	25(11.8)	49(23.1)	74(34.9)	64(30.2)	212(100.0)	2.83(0.99)	
	회복지원시설[d]	28(32.9)	32(37.6)	15(17.6)	10(11.8)	85(100.0)	2.08(0.99)	

*p<.05 **p<.01 ***p<.001

표 V-35. 향후 거취(생활) 문제

단위: 빈도(%)

구분		향후 거취(생활)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59(21.8)	185(25.3)	187(25.6)	199(27.3)	730(100.0)	2.58(1.11)	
성별	남자	104(27.1)	95(24.7)	95(24.7)	90(23.4)	384(100.0)	2.45(1.12)	-3.583***
	여자	55(15.9)	90(26.0)	92(26.6)	109(31.5)	346(100.0)	2.74(1.07)	
시설 유형	일시쉼터[a]	22(32.8)	12(17.9)	14(20.9)	19(28.4)	67(100.0)	2.45(1.22)	14.102*** a,b,c>d
	단기쉼터[b]	70(19.1)	93(25.4)	93(25.4)	110(30.1)	366(100.0)	2.66(1.1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31(14.6)	50(23.6)	70(33.0)	61(28.8)	212(100.0)	2.76(1.03)	
	회복지원시설[d]	36(42.4)	30(35.3)	10(11.8)	9(10.6)	85(100.0)	1.91(0.98)	

*p<.05 **p<.01 ***p<.001

⑪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36). 청소년들의 대부분(80%)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65.7%였다. 즉 34.3%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표 V-36.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분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				전체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31(4.2)	115(15.8)	319(43.7)	265(36.3)	730(100.0)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73(10.0)	177(24.3)	270(37.0)	209(28.7)	729(100.0)

한편 각 항목별로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2017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가정 내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3.1%에 불과한데 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20%에 달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신체적 건강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표 V-37).

표 V-37. 신체적 건강

단위: 빈도(%)

구분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1 (4.2)	115 (15.8)	319 (43.7)	265 (36.3)	730 (100.0)	3.12 (0.82)	
성별	남자	13 (3.4)	41 (10.7)	160 (41.7)	170 (44.3)	384 (100.0)	3.27 (0.78)	5.200***
	여자	18 (5.2)	74 (21.4)	159 (46.0)	95 (27.5)	346 (100.0)	2.96 (0.83)	
연령	만17세까지	21 (4.9)	56 (13.2)	187 (44.0)	161 (37.9)	425 (100.0)	3.15 (0.83)	1.189
	만18세부터	10 (3.4)	59 (19.9)	127 (42.8)	101 (34.0)	297 (100.0)	3.07 (0.82)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8 (4.8)	21 (12.5)	73 (43.5)	66 (39.3)	168 (100.0)	3.17 (0.83)	0.454
	1년 미만	11 (4.2)	41 (15.6)	121 (46.0)	90 (34.2)	263 (100.0)	3.10 (0.81)	
	1년 이상	12 (4.0)	53 (17.8)	124 (41.8)	108 (36.4)	297 (100.0)	3.10 (0.83)	
시설유형	일시쉼터	3 (4.5)	7 (10.4)	23 (34.3)	34 (50.7)	67 (100.0)	3.31 (0.84)	1.572
	단기쉼터	17 (4.6)	59 (16.1)	161 (44.0)	129 (35.2)	366 (100.0)	3.10 (0.83)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9 (4.2)	40 (18.9)	88 (41.5)	75 (35.4)	212 (100.0)	3.08 (0.84)	
	회복지원시설	2 (2.4)	9 (10.6)	47 (55.3)	27 (31.8)	85 (100.0)	3.16 (0.7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31 (4.2)	115 (15.8)	319 (43.7)	265 (36.3)	730 (100.0)	3.12 (0.82)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0 (0.2)	154 (2.9)	2,752 (52.3)	2,343 (44.6)	5,260 (100.0)	3.41 (0.56)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표 V-38). 여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률이 43.9%로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 25.6%를 훨씬 웃돌았다. 또한 2017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와 비교해 볼 때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가정 내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4.2%에 불과한데 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34.3%로 나타나 후자의 정신 건강이 취약함을 시사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이 취약한 것은 그만큼 가정 내외의 여러 문제와 보호자의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표 V-38. 정신적 건강

단위: 빈도(%)

구분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73 (10.0)	177 (24.3)	270 (37.0)	209 (28.7)	729 (100.0)	2.84 (0.95)	
성별	남자	31 (8.1)	67 (17.5)	147 (38.4)	138 (36.0)	383 (100.0)	3.02 (0.93)	5.468***
	여자	42 (12.1)	110 (31.8)	123 (35.5)	71 (20.5)	346 (100.0)	2.64 (0.94)	
연령	만17세까지	45 (10.6)	109 (25.7)	155 (36.6)	115 (27.1)	424 (100.0)	2.80 (0.96)	-1.252
	만18세부터	28 (9.4)	67 (22.6)	111 (37.4)	91 (30.6)	297 (100.0)	2.89 (0.95)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20 (11.9)	33 (19.6)	60 (35.7)	55 (32.7)	168 (100.0)	2.89 (1.00)	2.333
	1년 미만[b]	29 (11.1)	72 (27.5)	99 (37.8)	62 (23.7)	262 (100.0)	2.74 (0.94)	
	1년 이상[c]	24 (8.1)	72 (24.2)	110 (37.0)	91 (30.6)	297 (100.0)	2.90 (0.93)	
시설유형	일시쉼터[a]	5 (7.5)	11 (16.4)	19 (28.4)	32 (47.8)	67 (100.0)	3.16 (0.96)	5.447** a>b
	단기쉼터[b]	43 (11.8)	101 (27.7)	130 (35.6)	91 (24.9)	365 (100.0)	2.74 (0.97)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c]	20 (9.4)	51 (24.1)	83 (39.2)	58 (27.4)	212 (100.0)	2.84 (0.93)	

구분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회복지원 시설[d]	5 (5.9)	14 (16.5)	38 (44.7)	28 (32.9)	85 (100.0)	3.05 (0.86)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73 (10.0)	177 (24.3)	270 (37.0)	209 (28.7)	729 (100.0)	2.84 (0.95)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8 (0.3)	207 (3.9)	2,804 (53.3)	2,231 (42.4)	5,260 (100.0)	3.38 (0.58)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⑫ 사회적 역량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세부 항목별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을 보면 표 V-39와 같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사회적 역량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1.1%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고 77.4%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한다는 응답은 71.6%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하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40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일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수준이 상이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한편 시설유형별 분석에서는 일시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단기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2017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평균점수(2.38점)는 가정 내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점수(3.17점)에는 훨씬 못 미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표 V-39. 사회적 역량

단위: 빈도(%)

구분	사회적 역량				전체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44(6.0)	94(12.9)	383(52.5)	209(28.6)	730(100.0)
2) 다른 사람과 협력(함께 하는 일)을 잘한다	34(4.7)	131(17.9)	383(52.5)	182(24.9)	730(100.0)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45(6.2)	162(22.2)	366(50.1)	157(21.5)	730(100.0)

표 V-40. 집단별 사회적 역량 정도

구분		N	평균(SD)	t/F(Scheffé)
전체		730	2.96(0.72)	
성별	남자	384	3.07(0.70)	19.887***
	여자	346	2.84(0.73)	
연령	만17세까지	425	2.99(0.73)	2.002
	만18세부터	297	2.92(0.72)	
일 경험	있다	433	3.02(0.69)	7.695**
	없다	297	2.87(0.7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68	2.94(0.78)	0.173
	1년 미만	263	2.98(0.71)	
	1년 이상	297	2.95(0.71)	
시설유형	청소년일시쉼터[a]	67	3.17(0.59)	2.954* a>b
	청소년단기쉼터[b]	366	2.90(0.73)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212	2.97(0.71)	
	회복지원시설[d]	85	3.03(0.78)	
가족 유형	양친	369	3.01(0.70)	2.331
	한부모	258	2.89(0.73)	
	기타	103	2.97(0.77)	
경제적 수준	상[a]	121	3.18(0.62)	10.628*** a>c
	중[b]	221	3.02(0.72)	
	하[c]	387	2.86(0.74)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730	2.38(0.71)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260	3.17(0.48)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⑬ 자존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대한 세부 항목별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을 보면 표 V-41과 같다. 청소년들 중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71.8%,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5.2%,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28.3%,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34.8%,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5%로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V-41. 자존감

단위: 빈도(%)

구분	자존감				전체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3(7.3)	153(21.0)	322(44.1)	202(27.7)	730(100.0)
2) 좋은 성품(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9(8.1)	195(26.7)	308(42.2)	168(23.0)	730(100.0)
3)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91(12.5)	164(22.5)	301(41.3)	173(23.7)	729(100.0)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존감에 대해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4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경제수준이 중이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분석에서는 일시쉼터 및 회복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단기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한편 2017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의 평균점수(2.38점)는 가정 내 청소년들의 평균점수(3.07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였다.

표 V-42. 집단별 자존감

구분		N	평균(SD)	t/F(Scheffé)
전체		729	2.83(0.80)	
성별	남자	384	2.95(0.75)	19.104***
	여자	345	2.69(0.82)	
연령	만17세까지	424	2.81(0.82)	0.500
	만18세부터	297	2.86(0.7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168	2.93(0.80)	1.860
	1년 미만[b]	262	2.81(0.80)	
	1년 이상[c]	297	2.78(0.80)	
시설유형	청소년일시쉼터[a]	67	3.05(0.72)	6.823* a,d>b
	청소년단기쉼터[b]	365	2.72(0.8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212	2.84(0.79)	
	회복지원시설[d]	85	3.09(0.76)	
가족 유형	양친	368	2.83(0.79)	0.662
	한부모	258	2.80(0.81)	
	기타	103	2.90(0.81)	
경제적 수준	상[a]	120	2.95(0.76)	6.127** a,b>c
	중[b]	221	2.93(0.77)	
	하[c]	387	2.73(0.82)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729	2.38(0.71)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260	3.07(0.43)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⑭ 삶의 만족도

자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V-43), 평균점수가 5.22점으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는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시설유형별 분석에

서는 시설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p<.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017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의 평균점수(5.22점)는 가정 내 청소년들의 평균점수(6.52점)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음을 시사하였다(표 V-43).

표 V-4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구분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사례수(명)	평균(SD)	t/F(Scheffé)
전체		730	5.22(2.58)	
성별	남자	384	5.56(2.75)	3.839***
	여자	346	4.84(2.33)	
연령	만17세까지	425	5.27(2.56)	0.581
	만18세부터	297	5.15(2.6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68	5.51(2.46)	1.442
	1년 미만	263	5.15(2.50)	
	1년 이상	297	5.10(2.72)	
시설유형	일시쉼터	67	5.15(2.45)	3.260*
	단기쉼터	366	4.95(2.6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2	5.61(2.48)	
	회복지원시설	85	5.44(2.58)	
경제적 수준	상[a]	121	6.02(2.73)	18.802*** a,b>c
	중[b]	221	5.70(2.33)	
	하[c]	387	4.68(2.57)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708	5.22(2.58)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260	6.52(1.61)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5) 학업 관련 현황 및 계획

① 학업 여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재학률을 살펴보았다(표 V-44).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향후 취업 등 경제적 자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재학률은 53.1%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48.6%)보다는 여자 청소년(57.9%)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V-44. 재학률

단위: 빈도(%)

구분		재학 여부		전체	χ^2(df)
		재학	비재학		
전체		381(53.1)	337(46.9)	718(100.0)	
성별	남자	183(48.7)	193(51.3)	376(100.0)	6.119* (1)
	여자	198(57.9)	144(42.1)	342(100.0)	
연령	만17세까지	282(67.8)	134(32.2)	416(100.0)	93.736*** (1)
	만18세부터	91(31.0)	203(69.0)	294(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06(63.9)	60(36.1)	166(100.0)	24.455*** (2)
	1년 미만	149(58.2)	107(41.8)	256(100.0)	
	1년 이상	124(42.2)	170(57.8)	294(100.0)	
시설유형	청소년일시쉼터	24(35.8)	43(64.2)	67(100.0)	14.408** (3)
	청소년단기쉼터	186(51.4)	176(48.6)	362(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8(61.5)	80(38.5)	208(100.0)	
	회복지원시설	43(53.1)	38(46.9)	81(100.0)	
지역규모	광역시	156(48.0)	169(52.0)	325(100.0)	6.114* (1)
	기타	225(57.3)	168(42.7)	393(100.0)	

*p<.05 **p<.01 ***p<.001

연령별 차이를 보면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67.8%,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31.0%가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연령이 만 18세인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 밖 생활 기간별 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미만인 경우의 재학률이 63.9%, 1년 미만 58.2%, 1년 이상 42.2%였다. 이는 가정 밖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학률은 감소함을 시사하지만 10명 중 4명 정도가 재학 중이라는 것은 가정 밖 생활을 하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생활시설 유형에 따른 재학률을 보면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경우 재학률이 61.5%인 반면 일시쉼터에 거주하는 경우는 35.8%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컸다. 이는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인 거처가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경향을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② 재학생 교급별 비율

재학생들의 교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65.7%)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25.3%, 대학교 8.2% 순이었다(표 V-45).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상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표 V-45. 재학생 교급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80	100.0
중학교	1학년	7	1.8
	2학년	12	3.2
	3학년	77	20.3
고등학교	1학년	78	20.5
	2학년	97	25.5
	3학년	75	19.7
대학교		31	8.2
기타		3	0.8

③ 비재학생 특성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표 V-46),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36.4%, 고졸 미만은 63.6%(고교 중퇴가 38.8%, 중졸 14.9%, 중학교 중퇴 8.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은 고교중퇴(44.3%), 여자 청소년은 고졸(3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46. 비재학생 학력 분포

단위: 빈도(%)

구분		초졸 이하	중학교 중퇴	중졸	고등학교 중퇴	고졸	(전문)대학교 중퇴	전문대졸	대졸	전체	χ^2(df)
전체		5 (1.5)	28 (8.4)	50 (14.9)	130 (38.8)	109 (32.5)	11 (3.3)	1 (0.3)	1 (0.3)	335 (100.0)	
성별	남자	2 (1.0)	12 (6.3)	34 (17.7)	85 (44.3)	54 (28.1)	4 (2.1)	1 (0.5)	0 (0.0)	192 (100.0)	15.552* (7)
	여자	3 (2.1)	16 (11.2)	16 (11.2)	45 (31.5)	55 (38.5)	7 (4.9)	0 (0.0)	1 (0.7)	143 (100.0)	
연령	만17세 까지	4 (3.0)	21 (15.8)	30 (22.6)	69 (51.9)	9 (6.8)	0 (0.0)	0 (0.0)	0 (0.0)	133 (100.0)	89.865*** (7)
	만18세 부터	1 (0.5)	7 (3.5)	20 (9.9)	61 (30.2)	100 (49.5)	11 (5.4)	1 (0.5)	1 (0.5)	202 (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3 (5.0)	2 (3.3)	8 (13.3)	25 (41.7)	18 (30.0)	2 (3.3)	1 (1.7)	1 (1.7)	60 (100.0)	27.455* (14)
	1년 미만	1 (0.9)	10 (9.3)	19 (17.8)	49 (45.8)	27 (25.2)	1 (0.9)	0 (0.0)	0 (0.0)	107 (100.0)	
	1년 이상	1 (0.6)	16 (9.5)	23 (13.7)	56 (33.3)	64 (38.1)	8 (4.8)	0 (0.0)	0 (0.0)	168 (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0 (0.0)	2 (4.8)	4 (9.5)	20 (47.6)	14 (33.3)	1 (2.4)	0 (0.0)	1 (2.4)	42 (100.0)	43.270** (21)
	단기쉼터	2 (1.1)	12 (6.9)	23 (13.1)	76 (43.4)	57 (32.6)	4 (2.3)	1 (0.6)	0 (0.0)	175 (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 (1.3)	8 (10.0)	15 (18.8)	16 (20.0)	34 (42.5)	6 (7.5)	0 (0.0)	0 (0.0)	80 (100.0)	
	회복지원시설	2 (5.3)	6 (15.8)	8 (21.1)	18 (47.4)	4 (10.5)	0 (0.0)	0 (0.0)	0 (0.0)	38 (100.0)	

*p<.05 **p<.01 ***p<.001

또한 시설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고졸 미만)이 50.1%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일시(61.9%) 및 단기쉼터(64.5%)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89.6%)이 가장 높았다.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재학생(비학생 중 학력이 고졸 이상인 청소년 제외) 중 검정고시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3.4%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력취득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88%)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7).

표 V-47. 비재학생 검정고시 계획

단위: 빈도(%)

구분		검정고시 계획				계획하는 검정고시 단계			
		있다	없다	전체	χ^2(df)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전체	χ^2(df)
전체		135 (63.4)	78 (36.6)	213† (100.0)		16 (12.0)	117 (88.0)	133 (100.0)	
성별	남자	73 (54.9)	60 (45.1)	133 (100.0)	11.005*** (1)	7 (9.6)	66 (90.4)	73 (100.0)	0.911 (1)
	여자	62 (77.5)	18 (22.5)	80 (100.0)		9 (15.0)	51 (85.0)	60 (100.0)	
연령	만17세까지	87 (70.2)	37 (29.8)	124 (100.0)	5.879* (1)	15 (17.2)	72 (82.8)	87 (100.0)	6.455* (1)
	만18세부터	48 (53.9)	41 (46.1)	89 (100.0)		1 (2.2)	45 (97.8)	46 (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26 (68.4)	12 (31.6)	38 (100.0)	1.283* (2)	2 (7.7)	24 (92.3)	26 (100.0)	0.803 (2)
	1년 미만	52 (65.8)	27 (34.2)	79 (100.0)		6 (11.5)	46 (88.5)	52 (100.0)	
	1년 이상	57 (59.4)	39 (40.6)	96 (100.0)		8 (14.5)	47 (85.5)	55 (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9 (34.6)	17 (65.4)	26 (100.0)	15.496** (3)	0 (0.0)	8 (100.0)	8 (100.0)	2.870 (3)
	단기쉼터	80 (70.8)	33 (29.2)	113 (100.0)		8 (10.0)	72 (90.0)	80 (100.0)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21 (52.5)	19 (47.5)	40 (100.0)		4 (19.0)	17 (81.0)	21 (100.0)	
	회복지원시설	25 (73.5)	9 (26.5)	34 (100.0)		4 (16.7)	20 (83.3)	24 (100.0)	

*p<.05 **p<.01 ***p<.001

†청소년들이 다녔다고 응답한 학교급 기준으로 '고등학교 중퇴'까지의 사례수(고교 졸업 이상의 사례는 본 분석에서 제외)

또한 남자 청소년(54.9%)보다는 여자 청소년(77.5%)이, 그리고 가정 밖 생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한 달 미만 68.4%, 1년 미만 65.8%, 1년 이상 59.4%)와 회복지원시설이나 단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회복지원시설 73.5%, 단기

70.8%,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52.5%, 일시 34.6%)에 검정고시 준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준비율을 34.6%로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원시설 유형에 따른 검정고시 준비율의 차이는 조사 당시 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보다 장기간의 자료축적이 이루어진 후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일시쉼터는 초단기간의 이용시설로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일면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성별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검정고시 준비율이 낮은 것은 앞서 재학률에서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낮은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학업중단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별 차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④ 희망교육수준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을 보면(표 V-48), 고졸 이하가 39%, 전문대졸이 23.6%, 대졸 이상이 37.4%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이 더 높았는데 이는 실제 재학률이나 학력취득률, 검정고시 준비율 등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재학 여부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고졸 이하 희망자 51.2%)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나 고교졸업자(고졸 이하 희망자 각각 31.8%, 39.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가정 밖 생활기간이 짧고 중장기쉼터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희망교육수준이 높았다.

한편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정 내 청소년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희망하는 경우가 2.9%, 초대졸의 경우 10.4%에 그쳐 가정 밖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동기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 학업을

이어가기에 열악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48. 희망 교육수준

단위: 빈도(%)

구분		희망교육수준				전체	χ^2(df)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이상		
전체		285 (39.0)	172 (23.6)	212 (29.0)	61 (8.4)	730 (100.0)	
성별	남자	178 (46.4)	80 (20.8)	102 (26.6)	24 (6.3)	384 (100.0)	19.673*** (3)
	여자	107 (30.9)	92 (26.6)	110 (31.8)	37 (10.7)	346 (100.0)	
연령	만17세까지	163 (38.4)	99 (23.3)	130 (30.6)	33 (7.8)	425 (100.0)	1.143 (3)
	만18세부터	117 (39.4)	72 (24.2)	81 (27.3)	27 (9.1)	297 (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3 (37.5)	30 (17.9)	57 (33.9)	18 (10.7)	168 (100.0)	6.769 (6)
	1년 미만	101 (38.4)	69 (26.2)	74 (28.1)	19 (7.2)	263 (100.0)	
	1년 이상	120 (40.4)	72 (24.2)	81 (27.3)	24 (8.1)	297 (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36 (53.7)	8 (11.9)	16 (23.9)	7 (10.4)	67 (100.0)	24.912** (9)
	단기쉼터	151 (41.3)	87 (23.8)	98 (26.8)	30 (8.2)	366 (100.0)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59 (27.8)	56 (26.4)	76 (35.8)	21 (9.9)	212 (100.0)	
	회복지원시설	39 (45.9)	21 (24.7)	22 (25.9)	3 (3.5)	85 (100.0)	
지역규모	광역시	132 (40.6)	60 (18.5)	111 (34.2)	22 (6.8)	325 (100.0)	13.877** (3)
	기타	153 (37.8)	112 (27.7)	101 (24.9)	39 (9.6)	405 (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285 (39.0)	172 (23.6)	212 (29.0)	61 (8.4)	730 (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10 (2.9)	400 (10.4)	2,920 (76.1)	409 (10.7)	3,840 (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6) 근로 경험

① 근로 경험 여부

가정 밖에서 생활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V-49), 전체 응답자의 59.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49. 근로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df)
전체		433(59.3)	297(40.7)	730(100.0)	
성별	남자	235(61.2)	149(38.8)	384(100.0)	1.190 (1)
	여자	198(57.2)	148(42.8)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202(47.5)	223(52.5)	425(100.0)	65.085*** (1)
	만18세부터	230(77.4)	67(22.6)	2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3(37.5)	105(62.5)	168(100.0)	68.388*** (2)
	1년 미만	145(55.1)	118(44.9)	263(100.0)	
	1년 이상	225(75.8)	72(24.2)	297(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45(67.2)	22(32.8)	67(100.0)	3.831 (3)
	단기쉼터	216(59.0)	150(41.0)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8(60.4)	84(39.6)	212(100.0)	
	회복지원시설	44(51.8)	41(48.2)	85(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433(59.3)	297(40.7)	730(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443(27.4)[1)]	3,816(72.6)	5,260(100.0)	
		2,992(56.9)[2)]	2,268(43.1)	5,260(100.0)	

*p<.05 **p<.01 ***p<.001

1)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2) 아르바이트 경험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집단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고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길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참고로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 및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과 비교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률에서는 가정 내 청소년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경험 비율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높았다.

② 근로의 종류 및 형태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431명을 대상으로 경함한 일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한 일은음식점에서의 서빙(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식점 주방보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식음료 만들기 및 판매 등 요식업에서 근무한 비율은 모두 합하면 근로경험자의 과반수(55.9%)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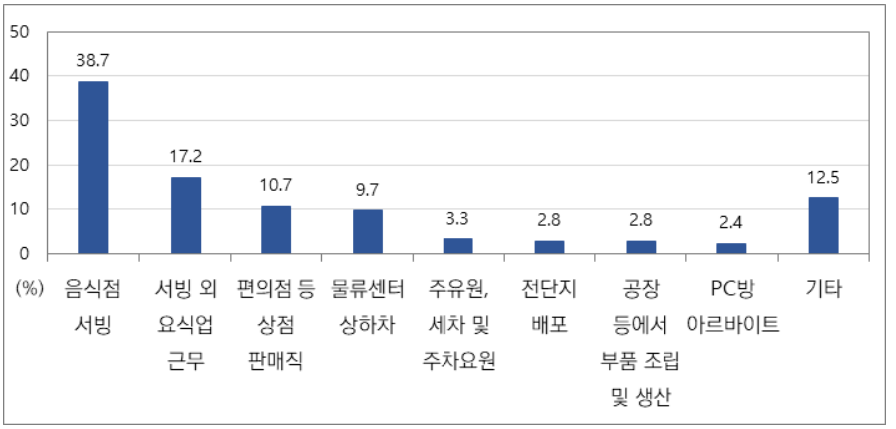


그림 Ⅴ-4. 경험한 일(아르바이트) 유형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을 포함한 상점에서의 판매직(10.7%), 물류센터 상하차(9.7%), 주유원, 세차 및 주차요원(3.3%), 전단지 배포(2.8%), 공장 등에서의 부품조립 및 생산(2.8%), PC방 아르바이트(2.4%)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 보다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웹디자인, 간호조무사, 태권도 사범, 전기공사, 과외교사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근로형태를 보면 대다수(91.2%)가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 특히 17세 이하에서, 그리고 가정 밖 생활 기간이 짧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표 Ⅴ-50)에서 보듯이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때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8.8%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에는 제시하

지 않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고졸 청소년 중에서 13%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집단에서는 고졸의 19.5%가 근무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고졸 학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결국 초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정규직 비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 밖 청소년 집단은 아직 졸업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가정 밖 청소년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간 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학력, 즉 대학 졸업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Ⅴ-50. 근로 형태

단위: 빈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χ^2(df)
전체		38(8.8)	395(91.2)	433(100.0)	
성별	남자	24(10.2)	211(89.8)	235(100.0)	1.325
	여자	14(7.1)	184(92.9)	198(100.0)	(1)
연령	만17세까지	10(5.0)	192(95.0)	202(100.0)	6.995**
	만18세부터	28(12.2)	202(87.8)	230(100.0)	(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1.6)	62(98.4)	63(100.0)	6.494*
	1년 미만	11(7.6)	134(92.4)	145(100.0)	(2)
	1년 이상	26(11.6)	199(88.4)	225(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6(13.3)	39(86.7)	45(100.0)	1.374
	단기쉼터	18(8.3)	198(91.7)	216(100.0)	(3)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0(7.8)	118(92.2)	128(100.0)	
	회복지원시설	4(9.1)	40(90.9)	44(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38(8.8)	395(91.2)	433(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88(35.5)	524(64.5)	812(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③ 근로의 주된 이유

청소년들의 근로의 주된 이유로는 용돈을 포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는 응답이 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5.1%), 학비를 벌기위해(3.2%)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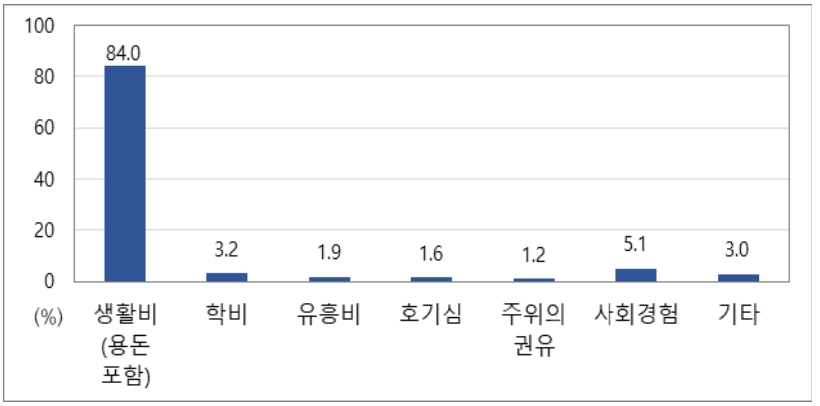


그림 V-5. 근로의 주된 이유

④ 직업선택 시 근로경험의 도움 정도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61.4%는 자신들의 경험이 향후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긍정응답률은 재학생 집단(66.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단순한 일이기 때문'(54.8%)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뒤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20.5%), '근로환경이 열악해서'(11.4%), '보수가 나빠서'(7.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6). 이러한 응답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종사했던 일들의 특성과 연관 지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V-51. 직업 선택 시 근로경험의 도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df)
전체		266(61.4)	167(38.6)	433(100.0)	
성별	남자	143(60.9)	92(39.1)	235(100.0)	0.073
	여자	123(62.1)	75(37.9)	198(100.0)	(1)
연령	만17세까지	125(61.9)	77(38.1)	202(100.0)	0.015
	만18세부터	141(61.3)	89(38.7)	230(100.0)	(1)
학교 재학	재학	120(66.1)	62(33.9)	183(100.0)	7.572*

구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df)
	비재학	75(51.7)	70(48.3)	145(100.0)	(2)
	고졸 이상	62(63.9)	35(36.1)	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40(63.5)	23(36.5)	63(100.0)	0.415 (2)
	1년 미만	91(62.8)	54(37.2)	145(100.0)	
	1년 이상	135(60.0)	90(40.0)	225(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26(57.8)	19(42.2)	45(100.0)	6.435 (3)
	단기쉼터	135(62.5)	81(37.5)	21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85(66.4)	43(33.6)	128(100.0)	
	회복지원시설	20(45.5)	24(54.5)	44(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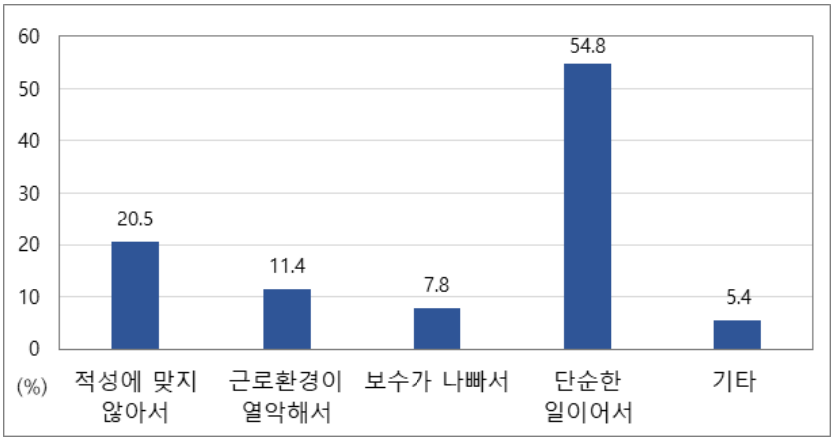


그림 Ⅴ-6. 구직 시 근로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

⑤ 구직 시 어려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구직 시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면(그림 Ⅴ-7),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은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전체 응답자의 43.6%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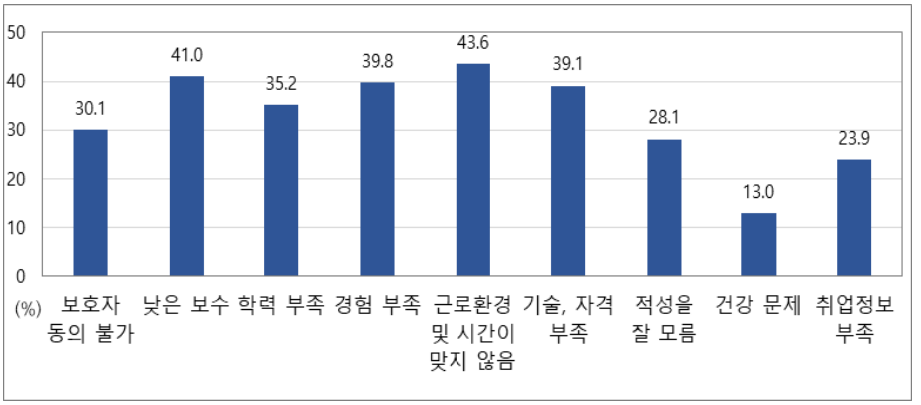


그림 V-7. 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

그 다음으로 '보수가 낮아서'(41.0%), '직장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39.8%), '기술이나 자격이 부족해서'(39.1%), '학력이 부족해서'(35.2%),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의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30.1%), '적성을 잘 몰라서'(28.1%), '취업정보가 부족해서'(23.9%), '건강이 나빠서'(1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표 V-52),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기술·정보·건강 부족을 제외하고 보호자 동의불가, 낮은 보수, 경험 부족, 환경 및 시간 부적합, 적성 모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성차를 보였다. 이처럼 성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표 V-52. 성별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단위: 빈도(%)

항목	성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남자	111(47.2)	65(27.7)	43(18.3)	16(6.8)	235(100.0)	1.85(0.95)	-2.955**
	여자	72(36.5)	54(27.4)	43(21.8)	28(14.2)	197(100.0)	2.14(1.07)	
보수가(돈이) 적어서	남자	73(31.1)	78(33.2)	76(32.3)	8(3.4)	235(100.0)	2.08(0.88)	-2.855**
	여자	43(21.8)	61(31.0)	79(40.1)	14(7.1)	197(100.0)	2.32(0.90)	
직장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남자	82(34.9)	67(28.5)	72(30.6)	14(6.0)	235(100.0)	2.08(0.94)	-2.089*
	여자	57(28.9)	54(27.4)	61(31.0)	25(12.7)	197(100.0)	2.27(1.02)	
근로 환경/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남자	73(31.1)	68(28.9)	75(31.9)	19(8.1)	235(100.0)	2.17(0.96)	-4.052***
	여자	35(17.8)	56(28.4)	68(34.5)	38(19.3)	197(100.0)	2.55(1.00)	
적성을 잘 몰라서	남자	91(38.9)	83(35.5)	52(22.2)	8(3.4)	234(100.0)	1.90(0.86)	-2.080*
	여자	57(28.9)	79(40.1)	50(25.4)	11(5.6)	197(100.0)	2.08(0.87)	

*p<.05 **p<.01 ***p<.001

한편 연령별 차이는 두 항목, 즉 보호자 동의 불가 및 낮은 보수에서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자 동의 불가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이 높은 이유로는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더라도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은 사회적 분위기 상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에 비해 이에 대한 수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표 V-53).

표 V-53. 연령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단위: 빈도(%)

항목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만17세까지	69 (34.2)	60 (29.7)	48 (23.8)	25 (12.4)	202 (100.0)	2.14 (1.03)	3.143**
	만18세부터	113 (49.3)	59 (25.8)	38 (16.6)	19 (8.3)	229 (100.0)	1.84 (0.99)	
보수가 (돈이) 적어서	만17세까지	58 (28.7)	79 (39.1)	59 (29.2)	6 (3.0)	202 (100.0)	2.06 (0.84)	-2.748**
	만18세부터	58 (25.3)	60 (26.2)	96 (41.9)	15 (6.6)	229 (100.0)	2.30 (0.92)	

*p<.05 **p<.01 ***p<.001

보수와 관련한 어려움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광역시(36.8%)보다는 비광역시 지역(44.2%)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대도시일수록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표 V-54).

표 V-54. 지역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적은 보수

단위: 빈도(%)

항목	지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보수가 (돈이) 적어서	광역시	62 (33.5)	55 (29.7)	61 (33.0)	7 (3.8)	185 (100.0)	2.07 (0.90)	-2.471*
	기타	54 (21.9)	84 (34.0)	94 (38.1)	15 (6.1)	247 (100.0)	2.28 (0.88)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항목에서는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표 V-55). 우선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항목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재학생(54.6%), 고교졸업자(54.1%), 학업중단(31%)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재학생은 학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55. 재학 여부에 따른 구직 시 어려움의 차이

단위: 빈도(%)

항목	재학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근로 환경/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재학[a]	44 (24.0)	39 (21.3)	74 (40.4)	26 (14.2)	183 (100.0)	2.45 (1.01)	11.678*** a,c>b
	비재학[b]	48 (33.1)	52 (35.9)	36 (24.8)	9 (6.2)	145 (100.0)	2.04 (0.91)	
	고졸자[c]	15 (15.6)	29 (30.2)	30 (31.2)	22 (22.9)	96 (100.0)	2.61 (1.01)	

*p<.05 **p<.01 ***p<.001

⑥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의 차별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1%로 조사되었으며 남자 청소년(15.7%)보다는 여자 청소년(25.3%)에게서 응답률이 높았다(표 V-56).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 이유를 살펴보면(그림 V-8, 표 V-57), '집을 나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31.0%)이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17.9%)와 '연락처가 없어서'(17.9%)가 그 뒤를 이었다. '연락처가 없어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과 그 연장선상에서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어서'라는 응답(14.3%)을 함께 고려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연락처 문제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32.2%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56.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일(아르바이트)을 구할 때 차별 경험 여부			
		있다	없다	전체	χ^2(df)
전체		87(20.1)	346(79.9)	433(100.0)	
성별	남자	37(15.7)	198(84.3)	235(100.0)	6.050* (1)
	여자	50(25.3)	148(74.7)	198(100.0)	
연령	만17세까지	35(17.3)	167(82.7)	202(100.0)	1.585 (1)
	만18세부터	51(22.2)	179(77.8)	230(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1(17.5)	52(82.5)	63(100.0)	1.329 (2)
	1년 미만	26(17.9)	119(82.1)	145(100.0)	
	1년 이상	50(22.2)	175(77.8)	225(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9(20.0)	36(80.0)	45(100.0)	0.742 (3)
	단기쉼터	42(19.4)	174(80.6)	21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5(19.5)	103(80.5)	128(100.0)	
	회복지원시설	11(25.0)	33(75.0)	44(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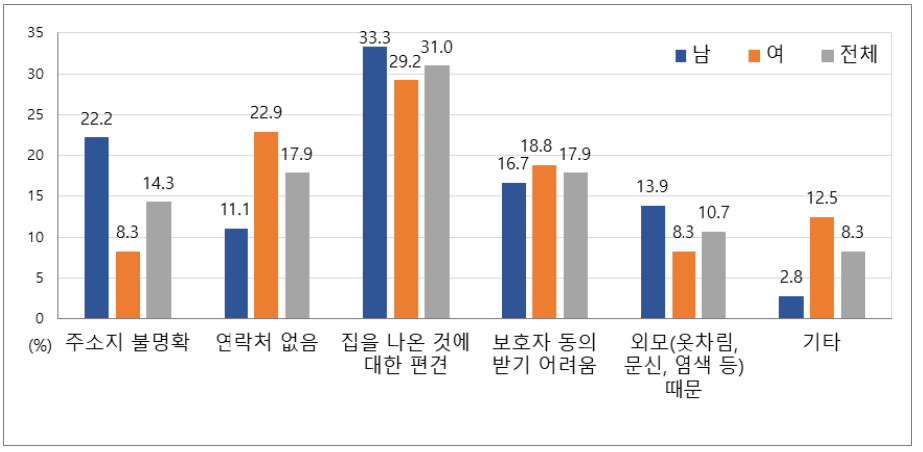


그림 V-8.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의 이유

표 V-57. 가정 밖 생활로 인한 구직 시 차별의 이유

단위: 빈도(%)

구분		주소지(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연락처가 없어서	집을 나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에	미성년자로 보호자(부모)의 동의받기 어려워서	외모(옷차림, 문신, 염색 등) 때문에	기타	전체	χ^2(df)
전체		12(14.3)	15(17.9)	26(31.0)	15(17.9)	9(10.7)	7(8.3)	84(100.0)	
성별	남자	8(22.2)	4(11.1)	12(33.3)	6(16.7)	5(13.9)	1(2.8)	36(100.0)	7.475 (5)
	여자	4(8.3)	11(22.9)	14(29.2)	9(18.8)	4(8.3)	6(12.5)	48(100.0)	
연령	만17세까지	3(9.4)	8(25.0)	7(21.9)	10(31.3)	2(6.2)	2(6.2)	32(100.0)	11.493* (5)
	만18세부터	9(17.6)	7(13.7)	19(37.3)	4(7.8)	7(13.7)	5(9.8)	51(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2(20.0)	1(10.0)	4(40.0)	2(20.0)	0(0.0)	1(10.0)	10(100.0)	2.908 (10)
	1년 미만	3(11.5)	5(19.2)	7(26.9)	5(19.2)	4(15.4)	2(7.7)	26(100.0)	
	1년 이상	7(14.6)	9(18.8)	15(31.3)	8(16.7)	5(10.4)	4(8.3)	48(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1(11.1)	1(11.1)	4(44.4)	0(0.0)	1(11.1)	2(22.2)	9(100.0)	12.361 (15)
	단기쉼터	6(14.6)	8(19.5)	10(24.4)	10(24.4)	5(12.2)	2(4.9)	41(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12.0)	5(20.0)	10(40.0)	2(8.0)	2(8.0)	3(12.0)	25(100.0)	
	회복지원시설	2(22.2)	1(11.1)	2(22.2)	3(33.3)	1(11.1)	0(0.0)	9(100.0)	

*p<.05 **p<.01 ***p<.001

⑦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불법이나 탈법 일자리를 경험한 청소년은 16%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12.8%)보다는 여자 청소년(19.7%), 만 17세 이하(12%)보다는 만 18세 이상(22.2%)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 밖 생활이 길수록(한 달 미만 6%, 1년 미만 14.9%, 1년 이상 22.9%), 그리고 단기(13.4%) 및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14.2%)보다는 일시쉼터(22.4%) 및 회복지원시설(27.4%)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불법/탈법 일자리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표 V-58). 일시쉼터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단기나 중장기쉼터보다는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법 또는 탈법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표 V-58.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df)
전체		117(16.0)	565(77.5)	47(6.4)	729(100.0)	
성별	남자	49(12.8)	311(81.2)	23(6.0)	383(100.0)	6.997* (2)
	여자	68(19.7)	254(73.4)	24(6.9)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51(12.0)	347(81.8)	26(6.1)	424(100.0)	13.914** (2)
	만18세부터	66(22.2)	211(71.0)	20(6.7)	2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0(6.0)	146(86.9)	12(7.1)	168(100.0)	24.939*** (4)
	1년 미만	39(14.9)	202(77.1)	21(8.0)	262(100.0)	
	1년 이상	68(22.9)	215(72.4)	14(4.7)	297(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5(22.4)	47(70.1)	5(7.5)	67(100.0)	14.589* (6)
	단기쉼터	49(13.4)	290(79.2)	27(7.4)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0(14.2)	169(79.7)	13(6.1)	212(100.0)	
	회복지원시설	23(27.4)	59(70.2)	2(2.4)	84(100.0)	

*p<.05 **p<.01 ***p<.001

⑧ 현재 경제적 상황

청소년들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빚과 신용불량 경험 정도, 저축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V-59). 그 결과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14.6%, 신용불량이거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9.1%,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20.8%로 나타났다.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평균 액수는 264.99만 원이며 최대 1,100만원까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11.6%)보다는 남자 청소년(17.3%)이 빚을 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18세 이상(23.4%)청소년,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이거나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빚을 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 액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았다.

신용불량 경험과 관련해서도 역시 18세 이상인 경우,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이거나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서 경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길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빚이나 신용불량 경험이 높은 이유는 미성년일 경우 금융거래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저축을 하는 경우 평균 저축액은 112.15만 원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저축을 한 청소년도 보고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할수록 저축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이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안에는 다른 시설보다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고 시설 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저축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59. 경제적 상황

단위: 빈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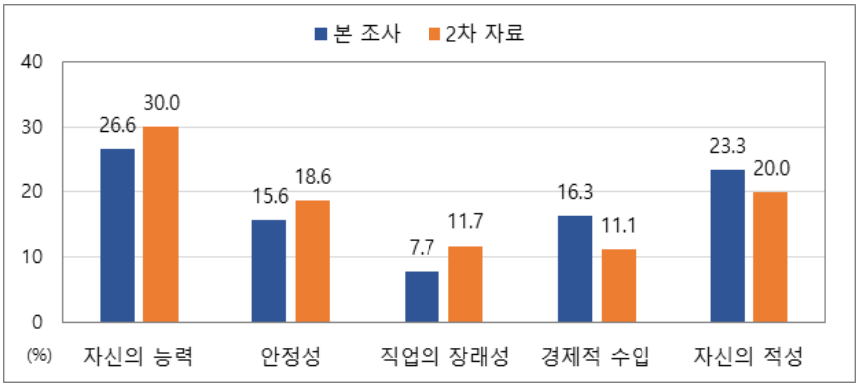
구분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액수	한다	안 한다	금액	있다	없다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전체		106 (14.6)	621 (85.4)	264.99	151 (20.8)	576 (79.2)	112.15	66 (9.1)	661 (90.9)
성별	남자	66 (17.3)	315 (82.7)	254.40	70 (18.4)	311 (81.6)	125.52	42 (11.0)	339 (89.0)
	여자	40 (11.6)	306 (88.4)	282.46	81 (23.4)	265 (76.6)	101.13	24 (6.9)	322 (93.1)
	χ^2(df)/t	4.834*(1)		-0.443	2.796(1)		0.744	3.670(1)	
연령	만17세까지	37 (8.7)	387 (91.3)	103.95	71 (16.7)	353 (83.3)	100.72	15 (3.5)	408 (96.5)
	만18세부터	69 (23.4)	226 (76.6)	346.75	79 (26.8)	216 (73.2)	124.09	51 (17.2)	245 (82.8)
	χ^2(df)/t	29.759***(1)		-4.663***	10.609**(1)		-0.711	39.112***(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a]	23 (13.9)	143 (86.1)	233.18	31 (18.7)	135 (81.3)	77.88	11 (6.6)	156 (93.4)
	1년 미만[b]	29 (11.1)	233 (88.9)	144.14	46 (17.6)	216 (82.4)	101.04	16 (6.1)	245 (93.9)
	1년 이상[c]	54 (18.2)	243 (81.8)	345.40	74 (24.9)	223 (75.1)	131.51	39 (13.1)	258 (86.9)
	χ^2(df)/ F(Scheffé)	5.743(2)		4.386* c>b	5.176(2)		0.855	9.890**(2)	
시설 유형	일시쉼터	17 (25.4)	50 (74.6)	375.63	7 (10.4)	60 (89.6)	159.17	16 (23.9)	51 (76.1)
	단기쉼터	53 (14.6)	310 (85.4)	233.34	65 (17.9)	299 (82.1)	102.75	28 (7.7)	337 (92.3)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30 (14.2)	182 (85.8)	286.07	66 (31.1)	146 (68.9)	126.48	17 (8.1)	194 (91.9)
	회복지원시설	6 (7.1)	79 (92.9)	133.67	13 (15.5)	71 (84.5)	29.00	5 (6.0)	79 (94.0)
	χ^2(df)/ F(Scheffé)	10.159*(3)		1.322	21.478***(3)		0.737	19.922***(3)	

*p<.05 **p<.01 ***p<.001

(7) 진로준비 실태

①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향후 직업 선택 시(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 당시 기준)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그림 Ⅴ-9),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자신의 능력(26.6%)과 적성(23.3%)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과반수가 다른 외부적 요소보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수입(16.3%), 안정성(15.6%), 직업의 장래성(7.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차 자료인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신의 능력(30.0%)을 1순위로 꼽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적성(20.0%), 안정성(18.6%), 직업의 장래성(11.7%)으로 대체로 가정 밖 청소년과 비슷한 응답률과 경향을 보였으나,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직업의 장래성을 응답한 비율이 가정 밖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본 조사: 7.7%, 2차 자료: 11.7%).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주: 응답률 5% 이하 항목 제외(단위: %)

그림 Ⅴ-9.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본 조사/2차 자료)

표 Ⅴ-60.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본 조사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본 조사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전 체	729(100.0)	5,260(100.0)	725(100.0)	5,260(100.0)
1) 자신의 능력	194(26.6)	1,577(30.0)	88(12.1)	685(13.0)
2) 사회적 지위	18(2.5)	190(3.6)	19(2.6)	256(4.9)
3) 대중적 인기	15(2.1)	47(0.9)	16(2.2)	124(2.4)
4) 안정성	114(15.6)	977(18.6)	147(20.3)	1,077(20.5)
5) 직업의 장래성	56(7.7)	615(11.7)	38(5.2)	858(16.3)
6) 의사결정성	9(1.2)	16(0.3)	16(2.2)	68(1.3)
7) 경제적 수입	119(16.3)	586(11.1)	175(24.1)	1,106(21.0)
8) 창의성 발휘	1(0.1)	67(1.3)	17(2.3)	164(3.1)
9) 자신의 적성	170(23.3)	1,052(20.0)	156(21.5)	678(12.9)
10) 자아성취	29(4.0)	115(2.2)	33(4.6)	196(3.7)
11) 사회에 대한 기여도	3(0.4)	13(0.2)	15(2.1)	37(0.7)
12) 기타	1(0.1)	6(0.1)	5(0.7)	7(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직업 선택 시 2순위 고려사항으로(표 Ⅴ-60) 경제적 수입(24.1%)과 자신의 적성(21.5%), 안정성(20.3%), 자신의 능력(12.1%)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선택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및 적성 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향후 취업 독려 시 소득수준과 직업안정성 역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2차 자료 역시 비슷한 응답을 보여 경제적 수입(21.0%), 안정성(20.5%), 직업의 장래성(16.3%), 자신의 능력(13.0%)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1순위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 일반 청소년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보다 직업의 장래성을 장래 직업 선택 시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선택 시 직업의 장래성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재의

가정 밖 생활의 경제적 문제와 불안정성으로 대체로 가정 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보다 장기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질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성인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직업의 장래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경변인별로 가정 밖 청소년의 응답을 살펴보면(표 V-61), 자신의 능력을 직업 선택 시 1순위로 응답한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31.3%)이 여자 청소년(21.4%)보다 10%정도 더 많았고, 만 17세까지의 청소년이 25.4%, 만 18세부터의 응답자는 28%로 3%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32.1%, 1년 미만인 청소년은 27.9%, 1년 이상인 청소년은 22.2%로 가정 밖 생활이 한 달 미만인 청소년이 직업선택 시 1순위로 자신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응답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V-61.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배경변인

단위: 빈도(%)

구분		1순위(자신의 능력)		2순위(경제적 수입)	
		전체수	응답자 수(%)	전체수	응답자 수(%)
		729	194(26.6)	725	175(20.0)
성별	남자	384	120(31.3)	380	89(23.4)
	여자	345	74(21.4)	345	86(24.9)
연령	만17세까지	425	108(25.4)	423	109(25.8)
	만18세부터	296	83(28.0)	294	65(22.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68	54(32.1)	166	40(24.1)
	1년 미만	262	73(27.9)	261	61(23.4)
	1년 이상	297	66(22.2)	296	73(24.7)
시설유형	일시쉼터	67	20(29.9)	66	16(24.2)
	단기쉼터	366	95(26.0)	364	92(25.3)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1	54(25.6)	210	51(24.3)
	회복지원시설	85	25(29.4)	85	16(18.8)

② 직업/진로관련 활동 참여 경험

최근 1년 동안 직업박람회나 각 기관/시설에서 직업 및 진로탐색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V-62), 전체 응답자의 54.9%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여자 청소년이 60.1%, 남자 청소년이 50.3%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재학 중인 청소년(60.4%)의 참여 경험이 비재학(51.2%)이거나 졸업(48.4%)한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최근 1년 동안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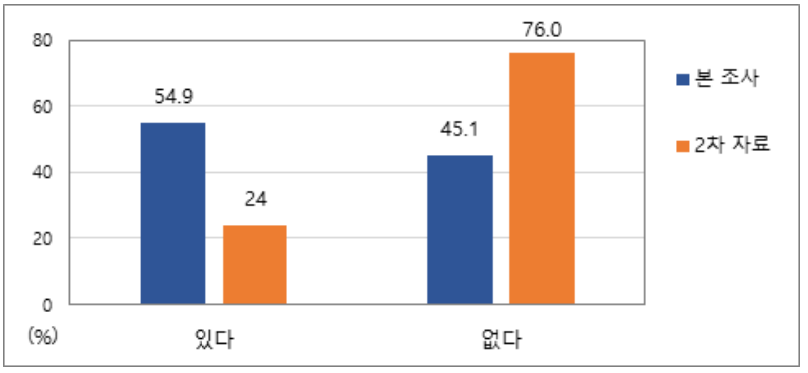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χ^2(df)
전체		401(54.9)	329(45.1)	730(100.0)	
성별	남자	193(50.3)	191(49.7)	384(100.0)	7.140**(1)
	여자	208(60.1)	138(39.9)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244(57.4)	181(42.6)	425(100.0)	3.364(1)
	만18세부터	150(50.5)	147(49.5)	297(100.0)	
학교재학 여부	재학	230(60.4)	151(39.6)	381(100.0)	7.788*(2)
	비재학	109(51.2)	104(48.8)	213(100.0)	
	고교졸업	59(48.4)	63(51.6)	122(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27(40.3)	40(59.7)	67(100.0)	24.905***(3)
	단기쉼터	197(53.8)	169(46.2)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42(67.0)	70(33.0)	212(100.0)	
	회복지원시설	35(41.2)	50(58.8)	85(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401(54.9)	329(45.1)	730(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261(24.0)	3,999(76.0)	5,260(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또한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에게서 67%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단기쉼터(53.8%), 청소년회복지원시설(41.2%), 일시쉼터(40.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비교적 오랜 기간 가정 밖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설과 기관에서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직업/진로관련 활동 경험은 24%로 가정 밖 청소년 응답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관련 활동 경험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0).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생활하고 있는 시설/기관을 통한 경험이 많았고 불가피하게 자립에 당면하여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0.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경험(본 조사/2차 자료)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 관련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V-63) 긍정적인 응답(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비율이 80.9%로 나타나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 관련 활동의 도움 정도를 성별, 연령, 일 경험 여부, 가정 밖 생활기간,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으나,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직업/진로 관련 활동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인 것 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없었다. 생활시설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일시쉼터 청소년 80.8%, 단기쉼터 청소년 75.6%,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 85.8%,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91.4%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도움 정도가 다소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63. 직업/진로 관련 활동의 도움 정도

단위: 빈도(%)

		직업/진로 관련 활동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29(7.3)	47(11.8)	249(62.4)	74(18.5)	399(100.0)	2.92(0.77)	
성별	남자	15(7.8)	22(11.5)	120(62.5)	35(18.2)	192(100.0)	2.91(0.78)	-0.271
	여자	14(6.8)	25(12.1)	129(62.3)	39(18.8)	207(100.0)	2.93(0.76)	
연령	만17세까지	14(5.7)	34(13.9)	157(64.3)	39(16.0)	244(100.0)	2.91(0.72)	-0.760
	만18세부터	14(9.5)	11(7.4)	89(60.1)	34(23.0)	148(100.0)	2.97(0.83)	
일경험 유무	있다	21(8.9)	30(12.8)	145(61.7)	39(16.6)	235(100.0)	2.86(0.80)	-1.997*
	없다	8(4.9)	17(10.4)	104(63.4)	35(21.3)	164(100.0)	3.01(0.72)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4(4.7)	8(9.3)	53(61.6)	21(24.4)	86(100.0)	3.06(0.73)	2.534
	1년 미만	12(8.4)	22(15.4)	88(61.5)	21(14.7)	143(100.0)	2.83(0.78)	
	1년 이상	13(7.6)	17(10.0)	108(63.5)	32(18.8)	170(100.0)	2.94(0.77)	
시설 유형	일시쉼터	3(11.5)	2(7.7)	15(57.7)	6(23.1)	26(100.0)	2.92(0.89)	2.128
	단기쉼터	14(7.1)	34(17.3)	120(60.9)	29(14.7)	197(100.0)	2.83(0.76)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8.5)	8(5.7)	89(63.1)	32(22.7)	141(100.0)	3.00(0.79)	
	회복지원시설	0(0.0)	3(8.6)	25(71.4)	7(20.0)	35(100.0)	3.11(0.53)	

*p<.05, **p<.01, ***p<.001

③ 직업훈련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앞서 조사한 진로/직업 관련 활동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36.5%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4).

표 V-64. 직업훈련 경험

단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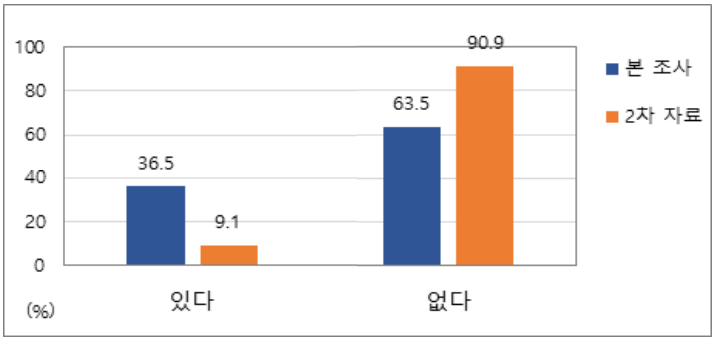
		있다	없다	전체	χ^2(df)
전체		266(36.5)	463(63.5)	729(100.0)	
성별	남자	140(36.6)	243(63.4)	383(100.0)	0.001 (1)
	여자	126(36.4)	220(63.6)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138(32.5)	287(67.5)	425(100.0)	6.695* (1)
	만18세부터	124(41.9)	172(58.1)	296(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57(34.1)	110(65.9)	167(100.0)	13.117** (2)
	1년 미만	78(29.7)	185(70.3)	263(100.0)	
	1년 이상	131(44.1)	166(55.9)	297(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6(23.9)	51(76.1)	67(100.0)	18.593*** (3)
	단기쉼터	126(34.4)	240(65.6)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00(47.4)	111(52.6)	211(100.0)	
	회복지원시설	24(28.2)	61(71.8)	85(100.0)	
경제적 수준	상	35(28.9)	86(71.1)	121(100.0)	11.228** (2)
	중	68(30.9)	152(69.1)	220(100.0)	
	하	163(42.1)	224(57.9)	387(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266(36.5)	463(63.5)	729(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478(9.1)	4,781(90.9)	5260(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연령과 가정 밖 생활기간, 생활시설 유형,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률이 41.9%로 더 어린 청소년보다 약 10%정도 더 높았고,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44.1%로

한 달 미만(34.1%), 1년 미만인 청소년(29.7%)보다 직업훈련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 생활 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이 47.4%로 시설유형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기쉼터(34.4%), 회복지원시설(28.2%), 일시쉼터(2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일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더 많았다(상: 28.9%, 중: 30.9%, 하: 42.1%).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1. 직업훈련 경험(본 조사/2차 자료)

한편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경험률은 9.1%여서 가정 밖 청소년 조사의 응답률인 36.5%와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V-11). 본 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이 가정 밖 생활을 하고 있어 시설을 통한 훈련경험이 많을 수 있으며, 또 앞서 진로/직업관련 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지원 없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을 받는 목적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V-12), 응답자의 37.6%가 '취업·창업을 위해', 그리고 31.6%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의 3분의 2가 실제 구직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러 이유 중 '취업·창업을 위해' 직업훈련

을 받은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고, 여자 청소년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V-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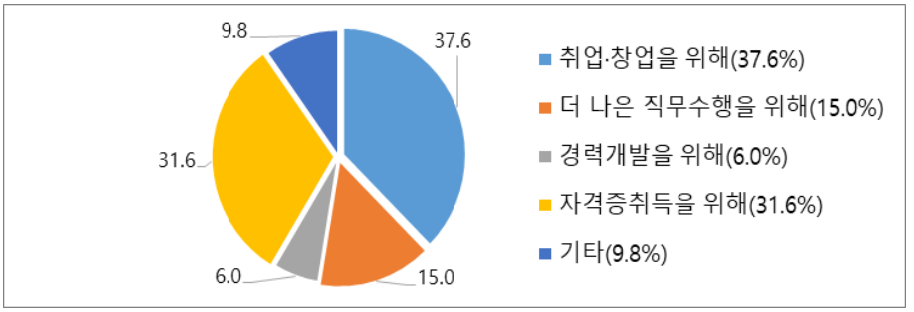


그림 V-12.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표 V-65.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단위: 빈도(%)

		취업·창업을 위해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력개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타	전체	χ^2(df)
전체		100(37.6)	40(15.0)	16(6.0)	84(31.6)	26(9.8)	266(100.0)	
성별	남자	57(40.7)	21(15.0)	12(8.6)	33(23.6)	17(12.1)	140(100.0)	11.674* (4)
	여자	43(34.1)	19(15.1)	4(3.2)	51(40.5)	9(7.1)	126(100.0)	
연령	만17세까지	44(31.9)	22(15.9)	10(7.2)	47(34.1)	15(10.9)	138(100.0)	4.116 (4)
	만18세부터	54(43.5)	17(13.7)	6(4.8)	37(29.8)	10(8.1)	124(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25(43.9)	9(15.8)	2(3.5)	14(24.6)	7(12.3)	57(100.0)	4.751 (8)
	1년 미만	26(33.3)	12(15.4)	7(9.0)	27(34.6)	6(7.7)	78(100.0)	
	1년 이상	49(37.4)	19(14.5)	7(5.3)	43(32.8)	13(9.9)	131(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8(50.0)	1(6.3)	1(6.3)	5(31.3)	1(6.3)	16(100.0)	5.077 (12)
	단기쉼터	48(38.1)	21(16.7)	7(5.6)	40(31.7)	10(7.9)	12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6(36.0)	15(15.0)	7(7.0)	29(29.0)	13(13.0)	100(100.0)	
	회복지원시설	8(33.3)	3(12.5)	1(4.2)	10(41.7)	2(8.3)	24(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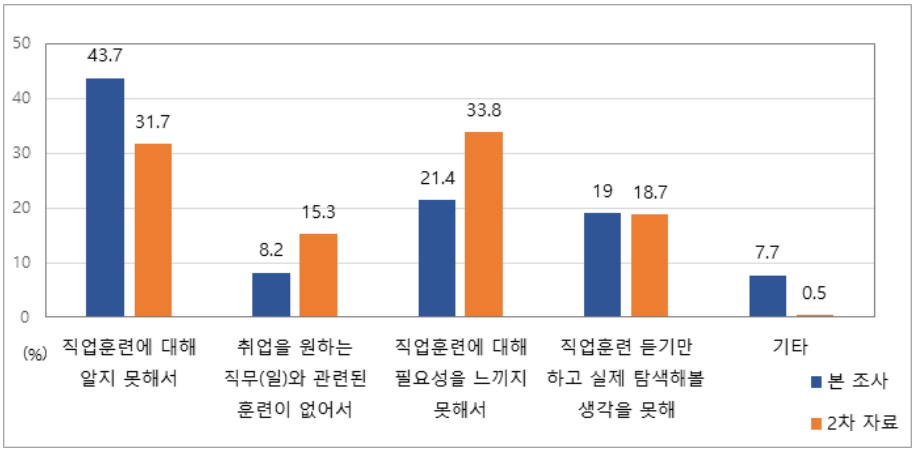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기타 이유를 범주화하여 살펴보면(표 V-66), 경험이나 체험이 목적이라는 응답은 9명(34.6%)정도 나타났고, 학교에서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명, 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나 기관에서 권유하는 이유로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은 6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외에 4명의 청소년이 생계나 학비를 위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직업탐색과 자립을 위한 목적인 경우는 2명으로 나타났다.

표 V-66. 직업훈련 받은 목적: 기타

구분	빈도	비율(%)
경험/체험	9	34.6
학교에서 받음	5	19.2
기관 프로그램/기관 권유	6	23.1
수당받기위해/생계/학비	4	15.4
직업탐색/자립위해	2	7.7
전체	26	100.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V-66), 직업훈련 받은 목적:기타,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항목이 43.7%로 과반수 가까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제고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1.4%,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해'가 19%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탐색기회 제공 및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원하는 직무(일)와 관련된 훈련이 없어서'가 8.2%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약 7%p정도 높았으며,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역시 남자 청소년의 응답이 약

5.5%p정도 높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직무관련 훈련이 없어서'라는 이유와 '직업훈련에 대해 들었으나 탐색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3.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본 조사/2차 자료)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그림 V-13), 직업훈련 받은 목적:기타,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3.8%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가정 밖 청소년 조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는 31.7%의 청소년이 응답했으나, 동일 조사 항목에 대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43.7%가 응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직업훈련 정보 접근성 제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해'는 18.7%, '취업을 원하는 직무(일)와 관련된 훈련이 없어서'는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67.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빈도(%)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취업을 원하는 직무(일)와 관련된 훈련 부재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직업훈련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 못해	기타	전체	χ^2(df)
전체		186(43.7)	35(8.2)	91(21.4)	81(19.0)	33(7.7)	426(100.0)	
성별	남자	104(47.1)	15(6.8)	53(24.0)	39(17.6)	10(4.5)	221(100.0)	10.435* (4)
	여자	82(40.0)	20(9.8)	38(18.5)	42(20.5)	23(11.2)	205(100.0)	
연령	만17세까지	117(44.0)	24(9.0)	52(19.5)	51(19.2)	22(8.3)	266(100.0)	2.306 (4)
	만18세부터	67(42.9)	11(7.1)	39(25.0)	29(18.6)	10(6.4)	156(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45(43.7)	12(11.7)	16(15.5)	23(22.3)	7(6.8)	103(100.0)	12.633 (8)
	1년 미만	80(46.2)	14(8.1)	31(17.9)	31(17.9)	17(9.8)	173(100.0)	
	1년 이상	60(40.3)	9(6.0)	44(29.5)	27(18.1)	9(6.0)	149(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25(49.0)	4(7.8)	13(25.5)	6(11.8)	3(5.9)	51(100.0)	11.364 (12)
	단기쉼터	102(44.3)	17(7.4)	51(22.2)	45(19.6)	15(6.5)	230(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42(42.0)	9(9.0)	14(14.0)	23(23.0)	12(12.0)	100(100.0)	
	회복지원시설	17(37.8)	5(11.1)	13(28.9)	7(15.6)	3(6.7)	45(100.0)	
2차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조사	186(43.7)	35(8.2)	91(21.4)	81(19.0)	33(7.7)	426(100.0)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505(31.7)	727(15.3)	1,606(33.8)	887(18.7)	25(0.5)	4,75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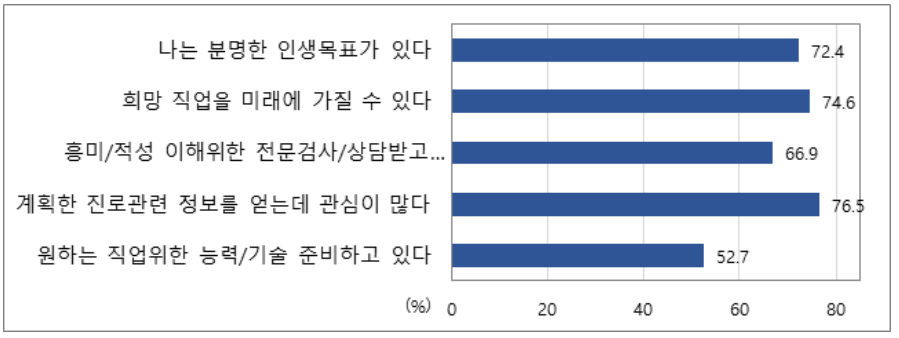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7명 정도에게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시간 부족과 학교 재학으로 인한 이유가 각각 5명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는 청소년들은 각각 5명, 4명 정도로 나타났다.

④ 진로관련 태도·행동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72.4%,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74.6%, '계획한 진로관련 정보 습득에 관심이 많다'는 76.5%로 세 항목 모두 응답자의 2/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그림 V-14, 표 V-68). 특히 진로관련 정보 습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유사한 맥락의 조사항목인 자신의 흥미나 성격, 적성 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항목에도 높은 수준의 응답률(66.9%)을 나타내 진로관련 정보 습득과 적성 검사 및 상담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친 비율(%) 기준

그림 V-14. 진로관련 태도·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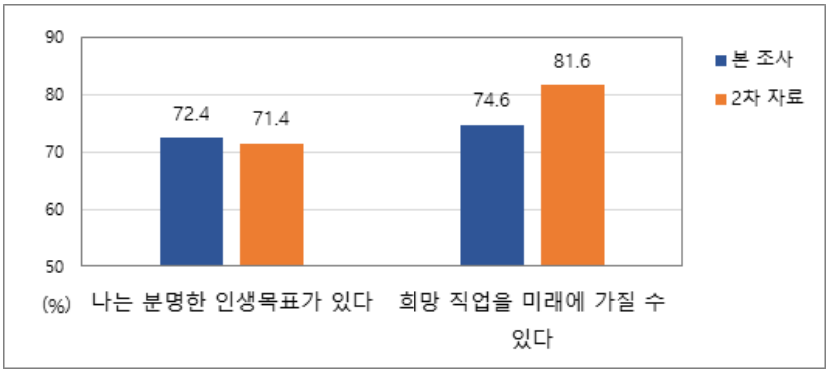
그러나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52.7%의 응답률을 보여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위한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체적인 준비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68.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단위: 빈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 (%)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35 (4.8)	167 (22.9)	345 (47.3)	183 (25.1)	730 (100.0)
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4.1)	155 (21.3)	358 (49.1)	186 (25.5)	729 (100.0)
3) 나의 흥미나 성격, 적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63 (8.6)	179 (24.5)	321 (44.0)	167 (22.9)	730 (100.0)
4)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32 (4.4)	139 (19.0)	355 (48.6)	204 (27.9)	730 (100.0)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104 (14.3)	241 (33.1)	244 (33.5)	140 (19.2)	729 (100.0)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해당 조사결과를 살펴보면(그림 V-15), '분명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은 71.4%로 가정 밖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은 81.6%로 가정 밖 청소년의 응답률(7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가정 밖 청소년보다 미래에 희망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5. 진로관련 태도·행동(본 조사/2차 자료)

각 항목별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 연령과 생활시설 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69).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그보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보다 인생목표가 있다는 항목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일시쉼터의 청소년이 단기쉼터의 청소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V-69.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인생목표가 있다

단위: 빈도(%)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SD)	t/F (Scheffé)
전체		35(4.8)	167(22.9)	345(47.3)	183(25.1)	730(100.0)	2.93(0.82)	
성별	남자	20(5.2)	83(21.6)	175(45.6)	106(27.6)	384(100.0)	2.96(0.84)	1.035
	여자	15(4.3)	84(24.3)	170(49.1)	77(22.3)	346(100.0)	2.89(0.79)	
연령	만17세까지	26(6.1)	105(24.7)	189(44.5)	105(24.7)	425(100.0)	2.88(0.85)	-2.021*
	만18세부터	9(3.0)	59(19.9)	152(51.2)	77(25.9)	297(100.0)	3.00(0.7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3.6)	36(21.4)	87(51.8)	39(23.2)	168(100.0)	2.95(0.77)	1.526
	1년 미만	17(6.5)	68(25.9)	114(43.3)	64(24.3)	263(100.0)	2.86(0.86)	
	1년 이상	12(4.0)	63(21.2)	143(48.1)	79(26.6)	297(100.0)	2.97(0.80)	
시설 유형	일시쉼터[a]	3(4.5)	8(11.9)	33(49.3)	23(34.3)	67(100.0)	3.13(0.80)	3.589* a>b
	단기쉼터[b]	18(4.9)	102(27.9)	168(45.9)	78(21.3)	366(100.0)	2.84(0.8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12(5.7)	37(17.5)	103(48.6)	60(28.3)	212(100.0)	3.00(0.83)	
	회복지원시설[d]	2(2.4)	20(23.5)	41(48.2)	22(25.9)	85(100.0)	2.98(0.77)	
경제적 수준	상[a]	5(4.1)	18(14.9)	57(47.1)	41(33.9)	121(100.0)	3.11(0.80)	3.915* a>c
	중[b]	11(5.0)	51(23.1)	104(47.1)	55(24.9)	221(100.0)	2.92(0.82)	
	하[c]	19(4.9)	98(25.3)	184(47.5)	86(22.2)	387(100.0)	2.87(0.81)	
2차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35(4.8)	167(22.9)	345(47.3)	183(25.1)	730(100.0)	2.93(0.82)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5(1.1)	1,453(27.6)	3,101(59.0)	650(12.4)	5260(100.0)	2.83(0.64)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두 번째 항목인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유의미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표 V-70).

표 V-70.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미래 희망직업 가질 가능성 있다

단위: 빈도(%)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SD)	t/F (Scheffé)
전체		30(4.1)	155(21.3)	358(49.1)	186(25.5)	729(100.0)	2.96(0.79)	
성별	남자	12(3.1)	81(21.1)	183(47.8)	107(27.9)	383(100.0)	3.01(0.79)	1.610
	여자	18(5.2)	74(21.4)	175(50.6)	79(22.8)	346(100.0)	2.91(0.80)	
연령	만17세까지	22(5.2)	97(22.9)	204(48.1)	101(23.8)	424(100.0)	2.91(0.82)	-2.027
	만18세부터	8(2.7)	58(19.5)	149(50.2)	82(27.6)	297(100.0)	3.03(0.76)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5(3.0)	36(21.6)	90(53.9)	36(21.6)	167(100.0)	2.94(0.74)	1.822
	1년 미만	16(6.1)	62(23.6)	118(44.9)	67(25.5)	263(100.0)	2.90(0.85)	
	1년 이상	9(3.0)	57(19.2)	149(50.2)	82(27.6)	297(100.0)	3.02(0.77)	
시설유형	일시쉼터	1(1.5)	13(19.4)	34(50.7)	19(28.4)	67(100.0)	3.06(0.74)	2.029
	단기쉼터	17(4.6)	93(25.4)	168(45.9)	88(24.0)	366(100.0)	2.89(0.82)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5.7)	35(16.5)	107(50.5)	58(27.4)	212(100.0)	3.00(0.82)	
	회복지원시설	0(0.0)	14(16.7)	49(58.3)	21(25.0)	84(100.0)	3.08(0.64)	
2차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조사	30(4.1)	155(21.3)	358(49.1)	186(25.5)	729(100.0)	2.96(0.79)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3(1.0)	918(17.5)	3,579(68.0)	711(13.6)	5,260(100.0)	2.94(0.59)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셋째로 '나의 흥미나 성격·적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항목의 경우 성별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표 V-71),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흥미나 성격, 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1.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흥미/성격/적성 이해위한 검사와 상담 욕구

단위: 빈도(%)

		나의 흥미나 성격, 적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SD)	t/F (Scheffé)
전체		63(8.6)	179(24.5)	321(44.0)	167(22.9)	730(100.0)	2.81(0.89)	
성별	남자	41(10.7)	110(28.6)	166(43.2)	67(17.4)	384(100.0)	2.67(0.89)	-4.448***
	여자	22(6.4)	69(19.9)	155(44.8)	100(28.9)	346(100.0)	2.96(0.86)	
연령	만17세까지	34(8.0)	115(27.1)	185(43.5)	91(21.4)	425(100.0)	2.78(0.87)	-0.919
	만18세부터	28(9.4)	64(21.5)	131(44.1)	74(24.9)	297(100.0)	2.85(0.91)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0(6.0)	45(26.8)	79(47.0)	34(20.2)	168(100.0)	2.82(0.82)	0.811
	1년 미만	29(11.0)	63(24.0)	114(43.3)	57(21.7)	263(100.0)	2.76(0.92)	
	1년 이상	24(8.1)	71(23.9)	127(42.8)	75(25.3)	297(100.0)	2.85(0.89)	
시설유형	일시쉼터	4(6.0)	17(25.4)	23(34.3)	23(34.3)	67(100.0)	2.97(0.92)	1.523
	단기쉼터	34(9.3)	97(26.5)	161(44.0)	74(20.2)	366(100.0)	2.75(0.88)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9.9)	38(17.9)	102(48.1)	51(24.1)	212(100.0)	2.86(0.90)	
	회복지원시설	4(4.7)	27(31.8)	35(41.2)	19(22.4)	85(100.0)	2.81(0.84)	

*p<.05 **p<.01 ***p<.001

넷째,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는 항목의 경우도 성별차이가 컸는데(표 V-72),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 및 가정 밖 생활기간과 생활시설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72.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계획한 진로관련 정보 습득 관심 많다

단위: 빈도(%)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32(4.4)	139(19.0)	355(48.6)	204(27.9)	730(100.0)	3.00(0.80)	
성별	남자	19(4.9)	82(21.4)	192(50.0)	91(23.7)	384(100.0)	2.92(0.80)	-2.735**
	여자	13(3.8)	57(16.5)	163(47.1)	113(32.7)	346(100.0)	3.09(0.80)	
연령	만17세까지	18(4.2)	92(21.6)	198(46.6)	117(27.5)	425(100.0)	2.97(0.81)	-0.978
	만18세부터	14(4.7)	46(15.5)	153(51.5)	84(28.3)	297(100.0)	3.03(0.79)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6(3.6)	33(19.6)	80(47.6)	49(29.2)	168(100.0)	3.02(0.80)	0.241
	1년 미만	16(6.1)	49(18.6)	124(47.1)	74(28.1)	263(100.0)	2.97(0.84)	
	1년 이상	10(3.4)	57(19.2)	150(50.5)	80(26.9)	297(100.0)	3.01(0.77)	
시설유형	일시쉼터	2(3.0)	17(25.4)	31(46.3)	17(25.4)	67(100.0)	2.94(0.80)	0.866
	단기쉼터	17(4.6)	74(20.2)	179(48.9)	96(26.2)	366(100.0)	2.97(0.81)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3(6.1)	32(15.1)	99(46.7)	68(32.1)	212(100.0)	3.05(0.85)	
	회복지원시설	0(0.0)	16(18.8)	46(54.1)	23(27.1)	85(100.0)	3.08(0.68)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항목은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V-73), 중장기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직업관련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3.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 원하는 직업위한 능력/기술 준비하고 있다

단위: 빈도(%)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F (Scheffé)
전체		104(14.3)	241(33.1)	244(33.5)	140(19.2)	729(100.0)	2.58(0.96)	
성별	남자	50(13.1)	119(31.1)	143(37.3)	71(18.5)	383(100.0)	2.61(0.93)	1.112
	여자	54(15.6)	122(35.3)	101(29.2)	69(19.9)	346(100.0)	2.53(0.98)	
연령	만17세까지	63(14.9)	148(34.9)	133(31.4)	80(18.9)	424(100.0)	2.54(0.96)	-1.206
	만18세부터	39(13.1)	91(30.6)	108(36.4)	59(19.9)	297(100.0)	2.63(0.95)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22(13.1)	57(33.9)	61(36.3)	28(16.7)	168(100.0)	2.57(0.92)	0.399
	1년 미만	41(15.6)	89(34.0)	80(30.5)	52(19.8)	262(100.0)	2.55(0.98)	
	1년 이상	40(13.5)	94(31.6)	103(34.7)	60(20.2)	297(100.0)	2.62(0.96)	
시설유형	일시쉼터[a]	11(16.4)	19(28.4)	24(35.8)	13(19.4)	67(100.0)	2.58(0.99)	6.789*** c>d
	단기쉼터[b]	62(17.0)	131(35.9)	110(30.1)	62(17.0)	365(100.0)	2.47(0.97)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23(10.8)	50(23.6)	82(38.7)	57(26.9)	212(100.0)	2.82(0.95)	
	회복지원시설[d]	8(9.4)	41(48.2)	28(32.9)	8(9.4)	85(100.0)	2.42(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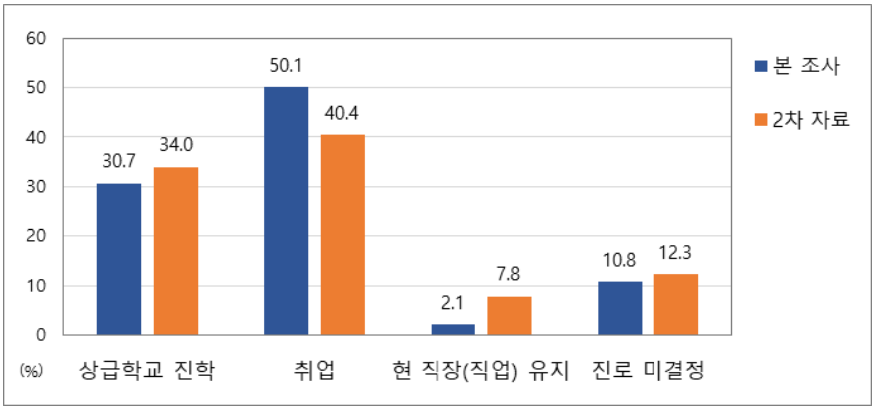
*p<.05 **p<.01 ***p<.001

⑤ 향후(3년 이내) 진로 계획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50%가 취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6, 표 V-74). 만 15세 이상이면서 가정 밖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여건상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이 30.7%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고려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과 상급학교 진학 외에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10.8%였으며, 창업 2.2%, 현 직장 유지 2.1%, 이직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16). 3년 내 취업을 진로계획으로 응답한 비율은 40.4%, 상급학교 진학은 34.0%로 나타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비해 취업은 더 낮은 비율로,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을 더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6. 향후(3년 이내) 진로 계획(본 조사/2차 자료)

표 V-74.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

단위: 빈도(%)

		상급 학교 진학	취업	창업	가업	이직	현 직장 (직업) 유지	기타	진로 미결정	전체	χ^2(df)
전체		220 (30.7)	359 (50.1)	16 (2.2)	2 (0.3)	10 (1.4)	15 (2.1)	17 (2.4)	77 (10.8)	716 (100.0)	
성별	남자	97 (25.9)	208 (55.6)	10 (2.7)	2 (0.5)	2 (0.5)	9 (2.4)	6 (1.6)	40 (10.7)	374 (100.0)	19.519** (7)
	여자	123 (36.0)	151 (44.2)	6 (1.8)	0 (0.0)	8 (2.3)	6 (1.8)	11 (3.2)	37 (10.8)	342 (100.0)	
연령	만17세까지	159 (38.2)	180 (43.3)	9 (2.2)	1 (0.2)	3 (0.7)	2 (0.5)	12 (2.9)	50 (12.0)	416 (100.0)	51.132*** (7)
	만18세부터	56 (19.2)	179 (61.3)	7 (2.4)	1 (0.3)	7 (2.4)	13 (4.5)	5 (1.7)	24 (8.2)	292 (100.0)	
학교 재학	재학	142 (38.2)	173 (46.5)	6 (1.6)	0 (0.0)	2 (0.5)	1 (0.3)	9 (2.4)	39 (10.5)	372 (100.0)	45.799*** (14)
	비재학	54 (25.4)	106 (49.8)	5 (2.3)	2 (0.9)	4 (1.9)	10 (4.7)	5 (2.3)	27 (12.7)	213 (100.0)	
	고교졸업	21 (17.9)	72 (61.5)	4 (3.4)	0 (0.0)	4 (3.4)	4 (3.4)	3 (2.6)	9 (7.7)	117 (100.0)	
일 경험	있다	104 (24.2)	232 (54.0)	9 (2.1)	2 (0.5)	10 (2.3)	15 (3.5)	12 (2.8)	46 (10.7)	430 (100.0)	36.953*** (7)
	없다	116 (40.6)	127 (44.4)	7 (2.4)	0 (0.0)	0 (0.0)	0 (0.0)	5 (1.7)	31 (10.8)	286 (100.0)	
시설 유형	일시쉼터	18 (27.3)	37 (56.1)	0 (0.0)	0 (0.0)	0 (0.0)	2 (3.0)	1 (1.5)	8 (12.1)	66 (100.0)	37.526* (21)
	단기쉼터	106 (29.4)	177 (49.2)	4 (1.1)	1 (0.3)	5 (1.4)	7 (1.9)	9 (2.5)	51 (14.2)	360 (100.0)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66 (31.6)	113 (54.1)	6 (2.9)	1 (0.5)	4 (1.9)	5 (2.4)	2 (1.0)	12 (5.7)	209 (100.0)	
	회복지원 시설	30 (37.0)	32 (39.5)	6 (7.4)	0 (0.0)	1 (1.2)	1 (1.2)	5 (6.2)	6 (7.4)	81 (100.0)	
2차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조사	220 (30.7)	359 (50.1)	16 (2.2)	2 (0.3)	10 (1.4)	15 (2.1)	17 (2.4)	77 (10.8)	716 (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1,786 (34.0)	2,125 (40.4)	41 (0.8)	2 (0.0)	190 (3.6)	411 (7.8)	47 (0.9)	645 (12.3)	5,246 (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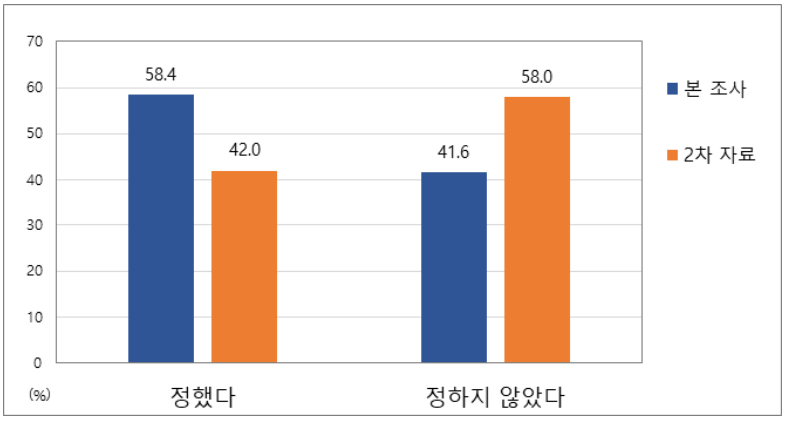
주: 일부 '0'cell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성별, 연령, 학교재학 및 일 경험 유무, 생활시설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표 V-74), 3년 이내 취업 계획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55.6%)이 여자 청소년(44.2%)보다, 또 만 18세 이상 청소년(61.3%)이 더 낮은 연령 청소년(43.3%)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여자 청소년(36.0%)이 남자 청소년(25.9%)보다, 또 만 17세까지의 청소년(38.2%)이 그 이상 연령의 청소년(19.2%)보다 더 많이 응답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다른 집단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고교졸업인 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 청소년보다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재학: 10.5%, 비재학: 12.7%, 졸업: 7.7%).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3년 이내 진로에 대해 취업(54.0%)이 상급학교 진학(24.2%)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이 각각 40.6%와 44.4%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시설 유형 중에서는 3년 이내 취업을 생각한다는 응답이 모든 유형의 쉼터 생활 청소년에게서 과반수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에 비해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9.5%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급학교 진학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년 이내 진로계획과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 검정고시준비나 복학과 같은 학업관련 된 응답이 7명이었고,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시험이 3명, 입대가 2명 등의 기타 응답이 나타났다.

⑥ 장래 희망 직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58.4%가 정했다고 응답했는데,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들이 동일한 질문에 42.0%의 응답률을 보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17).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원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이른 경제적 자립을 염두에 둔 응답이라고 추측된다.



* 2차 자료: 2017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15세 이상 청소년 데이터)

그림 V-1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본 조사/2차 자료)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표 V-75),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남: 52.9%, 여: 64.5%).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을 중간이거나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상: 69.4%, 중: 52.0%, 하: 58.4%).

표 V-75.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

단위: 빈도(%)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전체	χ^2(df)
전체		426(58.4)	304(41.6)	730(100.0)	
성별	남자	203(52.9)	181(47.1)	384(100.0)	10.054** (1)
	여자	223(64.5)	123(35.5)	346(100.0)	
연령	만17세까지	240(56.5)	185(43.5)	425(100.0)	1.229 (1)
	만18세부터	180(60.6)	117(39.4)	297(100.0)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95(56.5)	73(43.5)	168(100.0)	1.357 (2)
	1년 미만	149(56.7)	114(43.3)	263(100.0)	
	1년 이상	181(60.9)	116(39.1)	297(100.0)	
경제적 수준	상	84(69.4)	37(30.6)	121(100.0)	9.724** (2)
	중	115(52.0)	106(48.0)	221(100.0)	
	하	226(58.4)	161(41.6)	387(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42(62.7)	25(37.3)	67(100.0)	3.070 (3)
	단기쉼터	202(55.2)	164(44.8)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30(61.3)	82(38.7)	212(100.0)	
	회복지원시설	52(61.2)	33(38.8)	85(100.0)	
2차 자료 비교†	가정 밖 청소년 조사	426(58.4)	304(41.6)	730(100.0)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207(42.0)	3,052(58.0)	5260(100.0)	

*p<.05 **p<.01 ***p<.001

†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방식과 큰 표본 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두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없이 응답률만을 참고적으로 제시함.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의 희망 직업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보다 개방형으로 직업을 묻고 그 결과를 큰 틀에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표 V-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군으로 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분야는 연예인, 디자이너와 같은 예술/디자인/방송으로 전체 응답자 425명 중 54명(12.7%)가 이러한 직업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용사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은 이·미용 직업분야가 10.4%였고, 요리사나 바리스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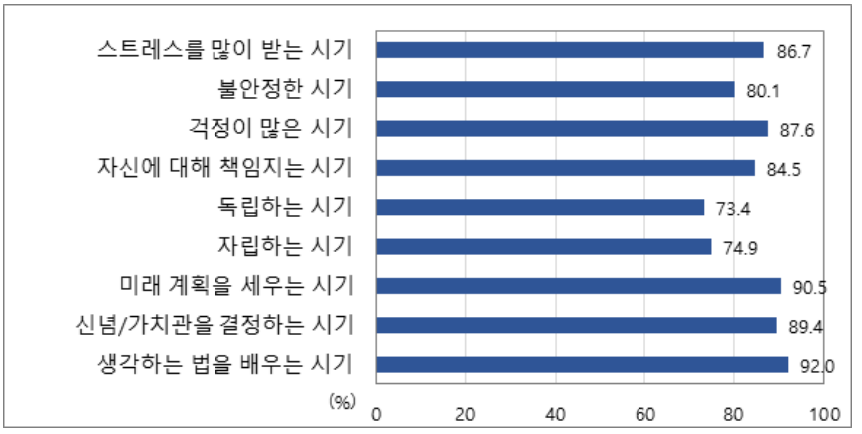
같은 음식/식품 서비스직이 9.4%, 직업군인, 경찰, 119구급대원 등 군인/경찰/공무원이 8.5%,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상담/심리/사회복지 분야가 8%,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통이 7.8%, 학교 교사 및 유치원/보육 교사 등이 7.3%로 이들 분야를 희망직업으로 응답한 비율이 64.1%로 과반이 훨씬 넘었다.

표 V-76. 장래 희망 직업

구분		빈도	비율(%)
분야	세부내용		
예술/디자인/방송	연예인, 디자이너, 방송국pd, 댄서 등	54	12.7
이·미용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등	44	10.4
음식/식품 서비스직	요리사, 제빵사, 바리스타 등	40	9.4
군인/경찰/공무원	직업군인, 경찰, 119구급대원, 일반공무원 등	36	8.5
상담/심리/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34	8.0
의료계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심리사 등	33	7.8
교사/강사	학교 교사, 유치원·보육 교사, 학원강사 등	31	7.3
창업	청년창업, 카페/제과점 창업, 기타 사업 등	18	4.2
사무직	사무직 회사원	13	3.0
항공/숙박 서비스직	승무원, 호텔리어 등	14	3.3
작가/일러스트레이터	소설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등	14	3.3
운동선수	농구 등 운동 선수, 국가대표 선수	12	2.8
컴퓨터/정보통신	프로그래머, 정보보안전문가, 웹디자이너 등	12	2.8
수의사/사육종사자	사육사, 애견미용사, 수의사 등	12	2.8
건축설계/건설 관련	건축설계사, 토목기사 등	11	2.6
연구원/과학자	과학자, 연구원 등	11	2.6
기타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7	1.6
	사서, 조경 및 원예기술사 등 기능전문직	7	1.6
	전기기술자, 자동차 정비사 등	6	1.4
	운전사, 화물배달 등 운송업	3	0.7
	기타(프로게이머, 회계사, 번역가 등)	13	3.0
	소계	34	8.0
전체		425	100.0

(8)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반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면서 원가정의 지원 없이 성인기 이행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성인기 이행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Reifman, Arnett & Colwell, 2007)[97] 중 가정 밖 청소년들과 특히 관련 있어 보이는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9개 조사항목 중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하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90.5%,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87.6%,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8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18).



주: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친 비율(%) 기준

그림 V-18.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기에 대한 인식

97) 전체 조사항목은 총 31개이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본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하는 시기이다’(73.4%),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74.9%)에 대해서는, 청소년 중 2/3가 응답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시기를 독립 또는 자립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77). 그러나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제시된 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성급히 자립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심리·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자립준비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Ⅴ-77.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기(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전체 수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32 (4.4)	65 (8.9)	377 (51.7)	255 (35.0)	3.17 (0.77)	729(100.0)
불안정한 시기이다	40 (5.5)	105 (14.4)	373 (51.2)	211 (28.9)	3.04 (0.81)	729(100.0)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32 (4.4)	58 (8.0)	380 (52.1)	259 (35.5)	3.19 (0.76)	729(100.0)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18 (2.5)	95 (13.0)	357 (49.0)	259 (35.5)	3.18 (0.74)	729(100.0)
독립하는 시기이다	33 (4.5)	161 (22.1)	352 (48.3)	183 (25.1)	2.94 (0.81)	729(100.0)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37 (5.1)	146 (20.0)	353 (48.4)	193 (26.5)	2.96 (0.82)	729(100.0)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13 (1.8)	56 (7.7)	366 (50.3)	293 (40.2)	3.29 (0.68)	728(100.0)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16 (2.2)	61 (8.4)	385 (52.8)	267 (36.6)	3.24 (0.69)	729(100.0)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12 (1.6)	46 (6.3)	358 (49.1)	313 (42.9)	3.33 (0.67)	729(100.0)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표 V-78), 9개의 조사항목 중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78. 성별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빈도(%)

조사항목	성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남자	24 (6.3)	38 (9.9)	212 (55.4)	109 (28.5)	383 (100.0)	3.06 (0.80)	-4.236***
	여자	8 (2.3)	27 (7.8)	165 (47.7)	146 (42.2)	346 (100.0)	3.30 (0.71)	
불안정한 시기이다	남자	29 (7.6)	65 (17.0)	194 (50.7)	95 (24.8)	383 (100.0)	2.93 (0.85)	-3.861***
	여자	11 (3.2)	40 (11.6)	179 (51.7)	116 (33.5)	346 (100.0)	3.16 (0.75)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남자	26 (6.8)	36 (9.4)	212 (55.4)	109 (28.5)	383 (100.0)	3.05 (0.81)	-5.066***
	여자	6 (1.7)	22 (6.4)	168 (48.6)	150 (43.4)	346 (100.0)	3.34 (0.67)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남자	15 (3.9)	55 (14.4)	194 (50.7)	119 (31.1)	383 (100.0)	3.09 (0.78)	-3.335***
	여자	3 (0.9)	40 (11.6)	163 (47.1)	140 (40.5)	346 (100.0)	3.27 (0.69)	
독립하는 시기이다	남자	24 (6.3)	90 (23.5)	182 (47.5)	87 (22.7)	383 (100.0)	2.87 (0.83)	-2.586**
	여자	9 (2.6)	71 (20.5)	170 (49.1)	96 (27.7)	346 (100.0)	3.02 (0.77)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남자	26 (6.8)	76 (19.8)	190 (49.6)	91 (23.8)	383 (100.0)	2.90 (0.84)	-2.076*
	여자	11 (3.2)	70 (20.2)	163 (47.1)	102 (29.5)	346 (100.0)	3.03 (0.79)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남자	11 (2.9)	21 (5.5)	201 (52.5)	150 (39.2)	383 (100.0)	3.28 (0.70)	-2.297*
	여자	1 (0.3)	25 (7.2)	157 (45.4)	163 (47.1)	346 (100.0)	3.39 (0.63)	

*p<.05 **p<.01 ***p<.001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보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성인기 이행 시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불안정한 시기이다',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등 모든 조사항목의 인식정도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성인기 이행 시기(10대 후반~20대 초반)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로 나타났다(표 Ⅴ-79). 조사대상 청소년 중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성인기 이행 시기를 자신에 대한 책임과 독립 및 자립하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이는 높은 연령의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임박한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Ⅴ-79. 연령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빈도(%)

조사항목	연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만17세 까지	10 (2.4)	65 (15.3)	213 (50.2)	136 (32.1)	424 (100.0)	3.12 (0.75)	-2.481*
	만18세 부터	7 (2.4)	30 (10.1)	139 (46.8)	121 (40.7)	297 (100.0)	3.26 (0.73)	
독립하는 시기이다	만17세 까지	29 (6.8)	111 (26.2)	197 (46.5)	87 (20.5)	424 (100.0)	2.81 (0.84)	-5.768***
	만18세 부터	4 (1.3)	45 (15.2)	153 (51.5)	95 (32.0)	297 (100.0)	3.14 (0.71)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만17세 까지	27 (6.4)	106 (25.0)	199 (46.9)	92 (21.7)	424 (100.0)	2.84 (0.84)	-5.028***
	만18세 부터	10 (3.4)	38 (12.8)	149 (50.2)	100 (33.7)	297 (100.0)	3.14 (0.76)	

*p<.05 **p<.01 ***p<.001

또한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밖 생활기간에 길수록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시기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 시기이다'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0).

표 V-80.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빈도(%)

조사항목	가정 밖 생활기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한 달 미만[a]	7 (4.2)	20 (11.9)	94 (56.0)	47 (28.0)	168 (100.0)	3.08 (0.75)	3.983* c>a
	1년 미만[b]	14 (5.3)	22 (8.4)	134 (51.1)	92 (35.1)	262 (100.0)	3.16 (0.79)	
	1년 이상[c]	11 (3.7)	16 (5.4)	150 (50.5)	120 (40.4)	297 (100.0)	3.28 (0.73)	
독립하는 시기이다	한 달 미만[a]	10 (6.0)	50 (29.8)	72 (42.9)	36 (21.4)	168 (100.0)	2.80 (0.84)	5.054** c>a
	1년 미만[b]	13 (5.0)	57 (21.8)	130 (49.6)	62 (23.7)	262 (100.0)	2.92 (0.81)	
	1년 이상[c]	10 (3.4)	53 (17.8)	149 (50.2)	85 (28.6)	297 (100.0)	3.04 (0.77)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한 달 미만[a]	14 (8.3)	45 (26.8)	79 (47.0)	30 (17.9)	168 (100.0)	2.74 (0.85)	9.142*** b,c>a
	1년 미만[b]	12 (4.6)	52 (19.8)	129 (49.2)	69 (26.3)	262 (100.0)	2.97 (0.80)	
	1년 이상[c]	11 (3.7)	49 (16.5)	143 (48.1)	94 (31.6)	297 (100.0)	3.08 (0.79)	

*p<.05 **p<.01 ***p<.001

넷째로,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은 생활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불안정한 시기이다'와 '자립하는 시기이다'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81). 구체적으로 집단 간 사후검증결과, 성인기 이행시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에 대해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는 일시쉼터의 청소년이 다른 시설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독립하는 시기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의 경우에는 집단 간 사후검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1. 시설유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빈도(%)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일시쉼터[a]	3 (4.5)	6 (9.0)	26 (38.8)	32 (47.8)	67 (100.0)	3.30 (0.82)	3.569* a,c>d
	단기쉼터[b]	14 (3.8)	29 (7.9)	203 (55.5)	120 (32.8)	366 (100.0)	3.17 (0.73)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8 (3.8)	19 (9.0)	102 (48.1)	83 (39.2)	212 (100.0)	3.23 (0.76)	
	회복지원시설[d]	7 (8.3)	11 (13.1)	46 (54.8)	20 (23.8)	84 (100.0)	2.94 (0.84)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일시쉼터[a]	5 (7.5)	9 (13.4)	31 (46.3)	22 (32.8)	67 (100.0)	3.04 (0.88)	4.161** c>d
	단기쉼터[b]	12 (3.3)	31 (8.5)	198 (54.1)	125 (34.2)	366 (100.0)	3.19 (0.72)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9 (4.2)	9 (4.2)	103 (48.6)	91 (42.9)	212 (100.0)	3.30 (0.74)	
	회복지원시설[d]	6 (7.1)	9 (10.7)	48 (57.1)	21 (25.0)	84 (100.0)	3.00 (0.81)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일시쉼터[a]	5 (7.5)	17 (25.4)	25 (37.3)	20 (29.9)	67 (100.0)	2.90 (0.92)	4.850** b,c>a
	단기쉼터[b]	5 (1.4)	46 (12.6)	188 (51.4)	127 (34.7)	366 (100.0)	3.19 (0.7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3 (1.4)	25 (11.8)	96 (45.3)	88 (41.5)	212 (100.0)	3.27 (0.72)	
	회복지원시설[d]	5 (6.0)	7 (8.3)	48 (57.1)	24 (28.6)	84 (100.0)	3.08 (0.78)	
독립하는 시기이다	일시쉼터	5 (7.5)	15 (22.4)	32 (47.8)	15 (22.4)	67 (100.0)	2.85 (0.86)	2.627*
	단기쉼터	12 (3.3)	88 (24.0)	178 (48.6)	88 (24.0)	366 (100.0)	2.93 (0.78)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 (4.2)	41 (19.3)	94 (44.3)	68 (32.1)	212 (100.0)	3.04 (0.83)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회복지원 시설	7 (8.3)	17 (20.2)	48 (57.1)	12 (14.3)	84 (100.0)	2.77 (0.80)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일시쉼터	2 (3.0)	6 (9.0)	32 (47.8)	27 (40.3)	67 (100.0)	3.25 (0.75)	2.861*
	단기쉼터	6 (1.6)	31 (8.5)	192 (52.6)	136 (37.3)	365 (100.0)	3.25 (0.68)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2 (0.9)	10 (4.7)	101 (47.6)	99 (46.7)	212 (100.0)	3.40 (0.63)	
	회복지원 시설	3 (3.6)	9 (10.7)	41 (48.8)	31 (36.9)	84 (100.0)	3.19 (0.77)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일시쉼터	2 (3.0)	3 (4.5)	38 (56.7)	24 (35.8)	67 (100.0)	3.25 (0.68)	3.492*
	단기쉼터	9 (2.5)	30 (8.2)	208 (56.8)	119 (32.5)	366 (100.0)	3.19 (0.68)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 (0.5)	17 (8.0)	99 (46.7)	95 (44.8)	212 (100.0)	3.36 (0.65)	
	회복지원 시설	4 (4.8)	11 (13.1)	40 (47.6)	29 (34.5)	84 (100.0)	3.12 (0.81)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일시쉼터	2 (3.0)	3 (4.5)	39 (58.2)	23 (34.3)	67 (100.0)	3.24 (0.68)	4.462**
	단기쉼터	6 (1.6)	28 (7.7)	191 (52.2)	141 (38.5)	366 (100.0)	3.28 (0.67)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 (0.5)	10 (4.7)	89 (42.0)	112 (52.8)	212 (100.0)	3.47 (0.61)	
	회복지원 시설	3 (3.6)	5 (6.0)	39 (46.4)	37 (44.0)	84 (100.0)	3.31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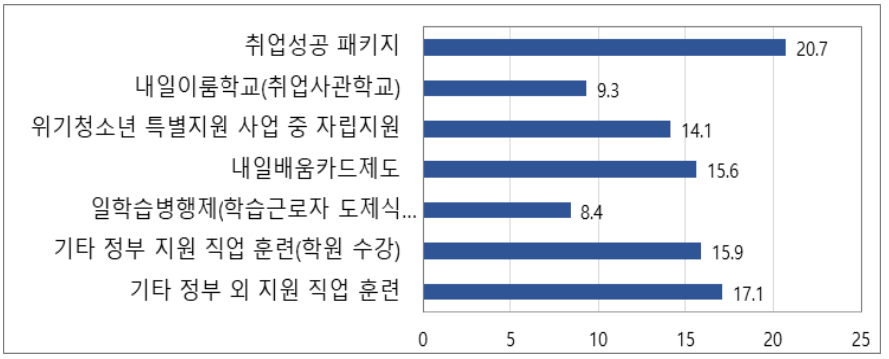
*p<.05 **p<.01 ***p<.001

성인기 이행시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9개 조사항목 중 특히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 시기이다'의 경우, 성, 연령, 가정 밖 생활기간 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자 청소년이 남자보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더 낮은 연령대 청소년보다, 그리고 가정 밖 생활이 더 긴 청소년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독립 및 자립하는 시기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시설유형별 차이는 성인기 이행과 관련한 7개 조사항목에서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별과 생활시설 유형에 따라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9) 취업·자립지원 경험

① 취업지원 경험

본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해 경험했던 프로그램이나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그림 V-19, 표 V-82), 경험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성공 패키지'가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조사대상자 중 1/5의 청소년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 지원 직업훈련(학원수강)'(17.1%), '기타 정부 지원 직업훈련(학원수강)'(15.9%), '내일배움카드제도'(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개 항목 모두 80% 또는 그 이상 취업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장 낮은 경험율을 보인 내용은 '일학습병행제'로 8.4%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에서 2017년에 여성가족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된 '내일이룸학교' 역시 9.3%로 낮은 경험율을 보였다.



주: 취업 지원 받은 경험이 '있다'의 비율(%) 기준

그림 V-19. 취업지원 경험 내용과 비율

표 V-82. 취업지원 경험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없다	있다	전체
1) 취업성공 패키지	578(79.3)	151(20.7)	729(100.0)
2)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661(90.7)	68(9.3)	729(100.0)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지원 (취업 관련 훈련비 등의 지원)	626(85.9)	103(14.1)	729(100.0)
4)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	615(84.4)	114(15.6)	729(100.0)
5) 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 도제식 교육훈련)	667(91.6)	61(8.4)	728(100.0)
6)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612(84.1)	116(15.9)	728(100.0)
7)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지원 직업 훈련(학원수강)	604(82.9)	125(17.1)	729(100.0)

이러한 취업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경험유무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V-83), 주로 학교재학 여부와 가정 밖 생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에 차이를 보인 조사항목은 '취업성공 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제도'로 두 항목 모두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그보다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83. 연령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연령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취업성공 패키지	만17세까지	371(87.5)	53(12.5)	424(100.0)	44.317*** (1)
	만18세부터	199(67.0)	98(33.0)	297(100.0)	
내일배움카드제도	만17세까지	382(90.1)	42(9.9)	424(100.0)	26.969*** (1)
	만18세부터	225(75.8)	72(24.2)	297(100.0)	

*p<.05 **p<.01 ***p<.001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일학습병행제'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V-84).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

배움카드제도', '기타 정부지원 직업훈련', '기타 정부 외 지원 직업훈련'에서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에게서 가장 경험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재학 청소년, 재학 청소년 순이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지원'에 대해서만 학교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 18.3%로 고교 졸업 청소년(17.2%)와 재학 중 청소년(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84. 학교재학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학교재학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취업성공 패키지	재학	339(89.2)	41(10.8)	380(100.0)	76.972*** (2)
	비재학	164(77.0)	49(23.0)	213(100.0)	
	고교졸업자	64(52.5)	58(47.5)	122(100.0)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재학	356(93.7)	24(6.3)	380(100.0)	8.301* (2)
	비재학	187(87.8)	26(12.2)	213(100.0)	
	고교졸업자	106(86.9)	16(13.1)	122(100.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지원(취업관련 훈련비 등의 지원)	재학	339(89.2)	41(10.8)	380(100.0)	7.519* (2)
	비재학	174(81.7)	39(18.3)	213(100.0)	
	고교졸업자	101(82.8)	21(17.2)	122(100.0)	
내일배움카드제도 (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	재학	349(91.8)	31(8.2)	380(100.0)	47.502*** (2)
	비재학	173(81.2)	40(18.8)	213(100.0)	
	고교졸업자	81(66.4)	41(33.6)	122(100.0)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재학	330(87.1)	49(12.9)	379(100.0)	7.355* (2)
	비재학	176(82.6)	37(17.4)	213(100.0)	
	고교졸업자	94(77.0)	28(23.0)	122(100.0)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재학	329(86.6)	51(13.4)	380(100.0)	11.166** (2)
	비재학	173(81.2)	40(18.8)	213(100.0)	
	고교졸업자	90(73.8)	32(26.2)	122(100.0)	

*p<.05 **p<.01 ***p<.001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제도', '기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서 나타났는데, 가정 밖 생활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한달 미만,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Ⅴ-85).

표 Ⅴ-85. 가정 밖 생활 기간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가정 밖 생활 기간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취업성공 패키지	한 달 미만	138(82.1)	30(17.9)	168(100.0)	25.672*** (2)
	1년 미만	229(87.4)	33(12.6)	262(100.0)	
	1년 이상	209(70.4)	88(29.6)	297(100.0)	
내일배움카드제도 (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	한 달 미만	146(86.9)	22(13.1)	168(100.0)	15.223*** (2)
	1년 미만	235(89.7)	27(10.3)	262(100.0)	
	1년 이상	232(78.1)	65(21.9)	297(100.0)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한 달 미만	137(82.0)	30(18.0)	167(100.0)	6.323* (2)
	1년 미만	232(88.5)	30(11.5)	262(100.0)	
	1년 이상	241(81.1)	56(18.9)	297(100.0)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가정 밖 생활시설 유형에 따른 취업지원의 집단 간 차이는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만 나타났는데(표 Ⅴ-86),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25.5%의 경험율을 보였고, 단기쉼터 20.8%, 일시쉼터 17.9%, 회복지원시설 10.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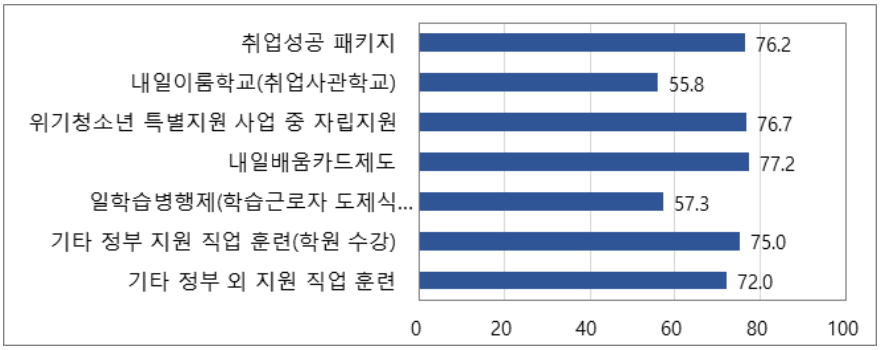
표 Ⅴ-86. 시설유형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시설유형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취업성공 패키지	일시쉼터	55(82.1)	12(17.9)	67(100.0)	8.358* (3)
	단기쉼터	290(79.2)	76(20.8)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58(74.5)	54(25.5)	212(100.0)	
	회복지원시설	75(89.3)	9(10.7)	84(100.0)	

*p<.05 **p<.01 ***p<.001

이렇게 정부 및 정부 외 취업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그림 V-20, 표 V-87).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을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가 77.2%로 도움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지원(취업 관련 훈련비 등의 지원)'이 76.7%, '취업성공 패키지'가 76.2%,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은 75.0%,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 지원 직업 훈련(학원수강)' 72.0%로 나타났다.



주: 취업지원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는 응답률(%) 기준

그림 V-20. 취업지원 경험 도움 정도

앞서 경험률이 가장 낮았던 '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 도제식 교육훈련)'와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의 도움 정도 역시 각각 57.3%, 55.8%로 다른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원들과 더불어 '일학습병행제'와 '내일이룸학교'에 대해서도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87. 취업지원 도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1) 취업성공 패키지	7 (4.6)	29 (19.2)	62 (41.1)	53 (35.1)	151 (100.0)	3.07 (0.85)
2)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10 (14.7)	20 (29.4)	19 (27.9)	19 (27.9)	68 (100.0)	2.69 (1.04)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 지원(취업 관련 훈련비 등의 지원)	8 (7.8)	16 (15.5)	40 (38.8)	39 (37.9)	103 (100.0)	3.07 (0.92)
4)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	8 (7.0)	18 (15.8)	36 (31.6)	52 (45.6)	114 (100.0)	3.16 (0.94)
5) 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 도제식 교육훈련)	4 (6.6)	22 (36.1)	19 (31.1)	16 (26.2)	61 (100.0)	2.77 (0.92)
6)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 (학원 수강)	7 (6.0)	22 (19.0)	44 (37.9)	43 (37.1)	116 (100.0)	3.06 (0.90)
7)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지원 직업 훈련(학원수강)	6 (4.8)	29 (23.2)	47 (37.6)	43 (34.4)	125 (100.0)	3.02 (0.88)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의 도움정도에 대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V-88), 시설유형에 따라서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일학습병행제',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 지원 직업 훈련'의 5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일시쉼터의 청소년이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지원에 대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상기 프로그램/지원 외에 일부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 내 프로그램이나 직업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표 V-88. 시설유형에 따른 취업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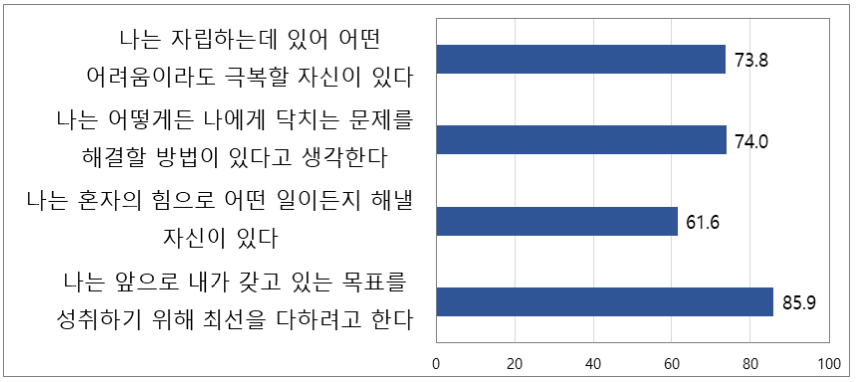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취업성공 패키지	일시쉼터	0(0.0)	1(8.3)	2(16.7)	9(75.0)	12(100.0)	3.67(0.65)	3.712*
	단기쉼터	5(6.6)	20(26.3)	30(39.5)	21(27.6)	76(100.0)	2.88(0.89)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3.7)	6(11.1)	26(48.1)	20(37.0)	54(100.0)	3.19(0.78)	
	회복지원시설	0(0.0)	2(22.2)	4(44.4)	3(33.3)	9(100.0)	3.11(0.78)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일시쉼터	0(0.0)	2(20.0)	2(20.0)	6(60.0)	10(100.0)	3.40(0.84)	3.318*
	단기쉼터	8(23.5)	12(35.3)	8(23.5)	6(17.6)	34(100.0)	2.35(1.0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5.3)	5(26.3)	8(42.1)	5(26.3)	19(100.0)	2.89(0.88)	
	회복지원시설	1(20.0)	1(20.0)	1(20.0)	2(40.0)	5(100.0)	2.80(1.30)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도제식 교육훈련)	일시쉼터[a]	0(0.0)	0(0.0)	1(20.0)	4(80.0)	5(100.0)	3.80(0.45)	3.291* a>b,d
	단기쉼터[b]	3(10.7)	12(42.9)	8(28.6)	5(17.9)	28(100.0)	2.54(0.92)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0(0.0)	8(38.1)	7(33.3)	6(28.6)	21(100.0)	2.90(0.83)	
	회복지원시설[d]	1(14.3)	2(28.6)	3(42.9)	1(14.3)	7(100.0)	2.57(0.98)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 (학원 수강)	일시쉼터	0(0.0)	1(10.0)	3(30.0)	6(60.0)	10(100.0)	3.50(0.71)	2.918*
	단기쉼터	5(10.0)	13(26.0)	19(38.0)	13(26.0)	50(100.0)	2.80(0.95)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4.7)	5(11.6)	17(39.5)	19(44.2)	43(100.0)	3.23(0.84)	
	회복지원시설	0(0.0)	3(23.1)	5(38.5)	5(38.5)	13(100.0)	3.15(0.80)	
기타 정부 외 (후원자, 시설)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일시쉼터[a]	0(0.0)	0(0.0)	2(20.0)	8(80.0)	10(100.0)	3.80(0.42)	4.025** a>b,d
	단기쉼터[b]	3(5.8)	17(32.7)	18(34.6)	14(26.9)	52(100.0)	2.83(0.9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c]	2(4.3)	8(17.0)	20(42.6)	17(36.2)	47(100.0)	3.11(0.84)	
	회복지원시설[d]	1(6.3)	4(25.0)	7(43.8)	4(25.0)	16(100.0)	2.88(0.89)	

*p<.05 **p<.01 ***p<.001

주: 일부 '0'cell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자립의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취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립의지 척도(조규필, 2016)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립의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그림 V-21, 표 V-89),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 8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조사대상 청소년들 대부분이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각각 73.8%, 74.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는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61.6%로 나타나 이들의 자립의지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주: 긍정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률(%) 기준

그림 V-21. 자립의지 항목별 긍정응답 비율

표 V-89. 자립의지

단위: 빈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 (%)
1)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40(5.5)	151(20.7)	416(57.0)	123(16.8)	730(100.0)
2)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35(4.8)	155(21.2)	418(57.3)	122(16.7)	730(100.0)
3) 나는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44(6.0)	236(32.3)	330(45.2)	120(16.4)	730(100.0)
4)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20(2.7)	83(11.4)	397(54.5)	229(31.4)	729(100.0)

자립의지 척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 분석과 추가 심화분석을 위해 먼저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alpha= .86으로 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수행한 조규필(2016) 연구에서의 alpha= .8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립의지 척도를 신뢰할만한 척도로 간주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V-90),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립의지가 더 높았으며,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다른 배경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90. 자립의지: 배경변인별 차이

		자립의지		
		사례수(명)	평균(SD)	t/F(Scheffé)
전체		730	2.89(.64)	
성별	남자	383	2.95(.64)	2.377*
	여자	346	2.84(.63)	
연령	만17세까지	424	2.89(.63)	-.288
	만18세부터	297	2.91(.65)	
일 경험 여부	있다	432	2.94(.63)	2.319*
	없다	297	2.83(.65)	
가정 밖 생활 기간	한 달 미만	168	2.85(.62)	.690
	1년 미만	262	2.89(.64)	

		자립의지		
		사례수(명)	평균(SD)	t/F(Scheffé)
	1년 이상	297	2.92(.65)	
시설유형	일시쉼터	67	2.83(.70)	1.750
	단기쉼터	365	2.86(.6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2	2.93(.62)	
	회복지원시설	85	3.00(.57)	
경제적 수준	상	120	3.00(.63)	2.452
	중	221	2.90(.61)	
	하	387	2.86(.65)	

*p<.05 **p<.01 ***p<.001

자립의지가 가정 밖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V-91), 대졸이상을 희망교육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의 자립의지가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을 나온 이후 앞으로의 생활계획에 따른 자립의지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자립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다른 시설로 갈 계획이 있다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한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자립의지를 보인 청소년에게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91. 자립의지: 희망교육과 향후 계획

		자립의지		
		사례수(명)	평균(SD)	F(Scheffé)
희망교육	고졸이하	284	2.85(.63)	3.779*
	전문대졸	172	2.83(.65)	
	대졸이상	273	2.98(.62)	
향후계획	원가정 복귀[a]	142	2.86(.64)	12107*** b>c,d
	자립할 계획[b]	334	3.03(.57)	
	타 시설/기관으로 갈 것[c]	59	2.75(.71)	
	특별한 계획 없음[d]	190	2.71(.66)	

*p<.05 **p<.01 ***p<.001

전문가 의견조사 및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 정책 환경적인 측면과 실천차원에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고양과 동기 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Ⅵ장에서 상세 제시). 정책과 현장의 제반 여건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 개인의 자립의지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은 매우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자립의지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Ⅴ-92). 자립의지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정서적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이 두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92. 자립의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1_심리사회적 적응

N=725

변인	자립의지 (DV)	정서적 어려움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적응	B	β	R^2 변화량
(상수)					3.237		
정서적 어려움	-.177				.027	.030	.031
삶의 만족도	.279	-.462			.028**	.113	.049
심리사회적 적응	.438	-.390	.451		.374***	.399	.120
					R^2= .201		
평균	2.89	2.16	5.22	2.89	교정된 R^2= .197		
표준편차	0.64	0.70	2.59	0.68	R = .448		

*p<.05 **p<.01 ***p<.001

정서적 어려움은 과거 경험에 따른 괴로움, 분노 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 생각 등의 항목들의 평균값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는데, 사용된 변인의 신뢰도는 자립의지는 α=.861, 정서적 어려움 α=.843, 심리사회적

적응 α=.882였다. 해당 모델의 Durbin-Watson test 결과는 1.964였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00~1.429 수준이어서, 자기 상관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의지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적응의 설명변량은 약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이 이들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실제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도움 정도[98]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V-93).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도움 정도를 응답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당 항목인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대인관계 훈련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α=.846), 이번에는 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를 통제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와 자립의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V-93. 자립의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2_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

N=257

변인	자립의지 (DV)	심리사회적 적응	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	B	β	R^2 변화량
(상수)				1.261		
심리사회적 적응	.473			.418***	.426	.224
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	.291	.355		.136*	.141	.017
				R^2= .241		
평균	2.87	2.87	3.03	교정된 R^2= .235		
표준편차	0.66	0.67	0.68	R = .491		

*p<.05 **p<.01 ***p<.001

98) 이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p.269에 제시된다.

해당 모델의 Durbin-Watson test 결과는 2.193로 2근처의 값이고, VIF 역시 1.144로 자기 상관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원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지원 도움의 설명변량은 약 2%에 미치지 못하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움 정도/만족도 등은 이들의 자립의지 고양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③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본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지원 응답률이 각각 60.3%, 60.1%로 가장 많이 경험한 자립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그림 V-22, 표 V-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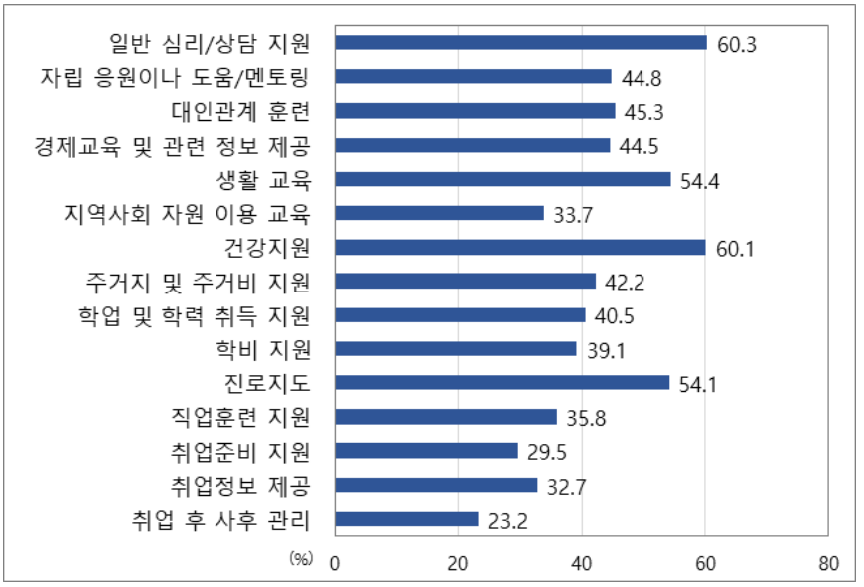


그림 V-22.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비율

그 다음으로 살림 및 조리, 청소와 세탁 등에 대한 생활교육이 54.4%,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를 포함한 진로지도가 54.1%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경험하였다. 그러나 취업 후 사후관리(23.2%), 취업준비 지원(29.5%) 등은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는데, 직업훈련 지원(35.8%), 취업정보 제공(32.7%) 등과 더불어 직업/취업 관련 지원 경험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및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향후 경제적 자립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전제로 직업/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Ⅴ-94.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단위: 빈도(%)

구분	경험여부		전체 (%)
	없다	있다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290(39.7)	440(60.3)	730(100.0)
2)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멘토링	403(55.2)	327(44.8)	730(100.0)
3) 대인관계 훈련	398(54.7)	330(45.3)	728(100.0)
4)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405(55.5)	325(44.5)	730(100.0)
5) 생활 교육	333(45.6)	397(54.4)	730(100.0)
6)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483(66.3)	246(33.7)	729(100.0)
7) 건강지원	290(39.9)	437(60.1)	727(100.0)
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421(57.8)	307(42.2)	728(100.0)
9)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433(59.5)	295(40.5)	728(100.0)
10) 학비 지원	443(60.9)	285(39.1)	728(100.0)
11) 진로지도	335(45.9)	395(54.1)	730(100.0)
12) 직업훈련 지원	468(64.2)	261(35.8)	729(100.0)
13) 취업준비 지원	515(70.5)	215(29.5)	730(100.0)
14) 취업정보 제공	491(67.3)	239(32.7)	730(100.0)
15) 취업 후 사후 관리	561(76.8)	169(23.2)	730(100.0)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유무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V-95). 항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성별생활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이외에 학교재학, 일 경험 유무, 가정 밖 생활기간,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비스 경험유무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직업훈련 지원, 취업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같은 세가지 서비스 항목은 연령, 학교재학, 일 경험 유무, 가정 밖 생활기간, 시설유형, 가족유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별 차이를 보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보면(표 V-95), 자립에 대한 응원/멘토링, 직업훈련 지원, 취업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험률이 그보다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표 V-95. 연령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연령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만17세까지	253(59.5)	172(40.5)	425(100.0)	8.616** (1)
	만18세부터	144(48.5)	153(51.5)	297(100.0)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만17세까지	295(69.6)	129(30.4)	424(100.0)	5.802* (1)
	만18세부터	181(60.9)	116(39.1)	297(100.0)	
직업훈련 지원	만17세까지	287(67.7)	137(32.3)	424(100.0)	6.738** (1)
	만18세부터	173(58.2)	124(41.8)	297(100.0)	
취업준비 지원	만17세까지	325(76.5)	100(23.5)	425(100.0)	19.294*** (1)
	만18세부터	182(61.3)	115(38.7)	297(100.0)	
취업정보 제공	만17세까지	307(72.2)	118(27.8)	425(100.0)	13.293*** (1)
	만18세부터	176(59.3)	121(40.7)	297(100.0)	
취업 후 사후 관리	만17세까지	342(80.5)	83(19.5)	425(100.0)	8.666** (1)
	만18세부터	211(71.0)	86(29.0)	297(100.0)	

*p<.05 **p<.01 ***p<.001

둘째로,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 중 학교 재학 여부와 관련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V-96).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은 비재학 청소년들에게서, 그리고 학비 지원은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직업훈련 지원, 취업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직접적으로 직업 및 취업관련 서비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게서 다른 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V-96.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학교재학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재학	253(66.8)	126(33.2)	379(100.0)	30.437*** (2)
	비재학	93(43.7)	120(56.3)	213(100.0)	
	고교졸업자	75(61.5)	47(38.5)	122(100.0)	
학비 지원	재학	214(56.3)	166(43.7)	380(100.0)	8.321* (2)
	비재학	145(68.4)	67(31.6)	212(100.0)	
	고교졸업자	74(60.7)	48(39.3)	122(100.0)	
직업훈련 지원	재학	261(68.7)	119(31.3)	380(100.0)	8.805* (2)
	비재학	130(61.0)	83(39.0)	213(100.0)	
	고교졸업자	67(54.9)	55(45.1)	122(100.0)	
취업준비 지원	재학	287(75.3)	94(24.7)	381(100.0)	15.742*** (2)
	비재학	148(69.5)	65(30.5)	213(100.0)	
	고교졸업자	69(56.6)	53(43.4)	122(100.0)	
취업정보 제공	재학	271(71.1)	110(28.9)	381(100.0)	7.396* (2)
	비재학	136(63.8)	77(36.2)	213(100.0)	
	고교졸업자	72(59.0)	50(41.0)	122(100.0)	
취업 후 사후 관리	재학	305(80.1)	76(19.9)	381(100.0)	9.639** (2)
	비재학	162(76.1)	51(23.9)	213(100.0)	
	고교졸업자	81(66.4)	41(33.6)	122(100.0)	

*p<.05 **p<.01 ***p<.001

셋째로,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V-97),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일반 심리/상담 지원, 직업훈련 지원, 취업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같은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7. 일 경험 유무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일 경험 유무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일반 심리/상담 지원	없다	131(44.1)	166(55.9)	297(100.0)	4.015* (1)
	있다	159(36.7)	274(63.3)	433(100.0)	
직업훈련 지원	없다	205(69.0)	92(31.0)	297(100.0)	5.079* (1)
	있다	263(60.9)	169(39.1)	432(100.0)	
취업준비 지원	없다	226(76.1)	71(23.9)	297(100.0)	7.413** (1)
	있다	289(66.7)	144(33.3)	433(100.0)	
취업정보 제공	없다	217(73.1)	80(26.9)	297(100.0)	7.659** (1)
	있다	274(63.3)	159(36.7)	433(100.0)	

*p<.05 **p<.01 ***p<.001

넷째로,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V-98), 전체 15개 자립관련 서비스 조사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한 청소년들이 한달 미만이나 1년 미만의 가정 밖 생활을 한 청소년들보다 10개 모든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가정 밖 생활이 길어지면서 청소년쉼터나 관련 기관 등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등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경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별로는 집단 간 차이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 심리/상담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멘토링, 생활교육, 건강지원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 밖 생활기간이 길수록(한 달 미만 → 1년 미만 → 1년 이상) 경험률이 더 많았다

표 Ⅴ-98.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가정 밖 생활기간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일반 심리/상담 지원	한 달 미만	76(45.2)	92(54.8)	168(100.0)	8.642* (2)
	1년 미만	114(43.3)	149(56.7)	263(100.0)	
	1년 이상	99(33.3)	198(66.7)	297(100.0)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한 달 미만	99(58.9)	69(41.1)	168(100.0)	6.330* (2)
	1년 미만	155(58.9)	108(41.1)	263(100.0)	
	1년 이상	147(49.5)	150(50.5)	297(100.0)	
생활 교육	한 달 미만	85(50.6)	83(49.4)	168(100.0)	6.811* (2)
	1년 미만	128(48.7)	135(51.3)	263(100.0)	
	1년 이상	118(39.7)	179(60.3)	297(100.0)	
건강지원	한 달 미만	83(49.4)	85(50.6)	168(100.0)	16.459*** (2)
	1년 미만	113(43.0)	150(57.0)	263(100.0)	
	1년 이상	92(31.3)	202(68.7)	294(100.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한 달 미만	107(64.1)	60(35.9)	167(100.0)	14.074** (2)
	1년 미만	172(65.6)	90(34.4)	262(100.0)	
	1년 이상	152(51.2)	145(48.8)	297(100.0)	
학비 지원	한 달 미만	105(62.9)	62(37.1)	167(100.0)	9.031* (2)
	1년 미만	175(66.5)	88(33.5)	263(100.0)	
	1년 이상	161(54.4)	135(45.6)	296(100.0)	
직업훈련 지원	한 달 미만	108(64.3)	60(35.7)	168(100.0)	11.520** (2)
	1년 미만	187(71.4)	75(28.6)	262(100.0)	
	1년 이상	171(57.6)	126(42.4)	297(100.0)	
취업준비 지원	한 달 미만	117(69.6)	51(30.4)	168(100.0)	15.295*** (2)
	1년 미만	207(78.7)	56(21.3)	263(100.0)	
	1년 이상	189(63.6)	108(36.4)	297(100.0)	
취업정보 제공	한 달 미만	111(66.1)	57(33.9)	168(100.0)	13.749** (2)
	1년 미만	198(75.3)	65(24.7)	263(100.0)	
	1년 이상	180(60.6)	117(39.4)	297(100.0)	
취업 후 사후 관리	한 달 미만	124(73.8)	44(26.2)	168(100.0)	12.309** (2)
	1년 미만	221(84.0)	42(16.0)	263(100.0)	
	1년 이상	214(72.1)	83(27.9)	297(100.0)	

*p<.05 **p<.01 ***p<.001

학업/학력 취득 지원, 학비 지원, 직업훈련 지원, 취업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와 같이 보다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인 집단이 가장 경험률이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가정 밖 생활 한 달 미만 청소년이 1년 미만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섯째로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15개 모든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99).

표 Ⅴ-99.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시설유형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일반 심리/상담 지원	일시쉼터	34(50.7)	33(49.3)	67(100.0)	15.877** (3)
	단기쉼터	154(42.1)	212(57.9)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62(29.2)	150(70.8)	212(100.0)	
	회복지원시설	40(47.1)	45(52.9)	85(100.0)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 또는 멘토링	일시쉼터	41(61.2)	26(38.8)	67(100.0)	14.806** (3)
	단기쉼터	222(60.7)	144(39.3)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5(44.8)	117(55.2)	212(100.0)	
	회복지원시설	45(52.9)	40(47.1)	85(100.0)	
대인관계 훈련	일시쉼터	43(64.2)	24(35.8)	67(100.0)	13.758** (3)
	단기쉼터	216(59.3)	148(40.7)	364(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6(45.3)	116(54.7)	212(100.0)	
	회복지원시설	43(50.6)	42(49.4)	85(100.0)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일시쉼터	44(65.7)	23(34.3)	67(100.0)	16.102** (3)
	단기쉼터	218(59.6)	148(40.4)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4(44.3)	118(55.7)	212(100.0)	
	회복지원시설	49(57.6)	36(42.4)	85(100.0)	
생활 교육	일시쉼터	42(62.7)	25(37.3)	67(100.0)	25.105*** (3)
	단기쉼터	178(48.6)	188(51.4)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69(32.5)	143(67.5)	212(100.0)	
	회복지원시설	44(51.8)	41(48.2)	85(100.0)	

조사항목	시설유형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일시쉼터	47(70.1)	20(29.9)	67(100.0)	10.781* (3)
	단기쉼터	259(71.0)	106(29.0)	36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3(58.0)	89(42.0)	212(100.0)	
	회복지원시설	54(63.5)	31(36.5)	85(100.0)	
건강지원	일시쉼터	39(59.1)	27(40.9)	66(100.0)	25.861*** (3)
	단기쉼터	151(41.5)	213(58.5)	364(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59(27.8)	153(72.2)	212(100.0)	
	회복지원시설	41(48.2)	44(51.8)	85(100.0)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일시쉼터	48(71.6)	19(28.4)	67(100.0)	24.809*** (3)
	단기쉼터	222(60.8)	143(39.2)	36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4(44.5)	117(55.5)	211(100.0)	
	회복지원시설	57(67.1)	28(32.9)	85(100.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일시쉼터	47(70.1)	20(29.9)	67(100.0)	17.500** (3)
	단기쉼터	236(64.8)	128(35.2)	364(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06(50.0)	106(50.0)	212(100.0)	
	회복지원시설	44(51.8)	41(48.2)	85(100.0)	
학비 지원	일시쉼터	51(76.1)	16(23.9)	67(100.0)	41.750*** (3)
	단기쉼터	242(66.1)	124(33.9)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91(43.1)	120(56.9)	211(100.0)	
	회복지원시설	59(70.2)	25(29.8)	84(100.0)	
진로지도	일시쉼터	39(58.2)	28(41.8)	67(100.0)	27.453*** (3)
	단기쉼터	186(50.8)	180(49.2)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66(31.1)	146(68.9)	212(100.0)	
	회복지원시설	44(51.8)	41(48.2)	85(100.0)	
직업훈련 지원	일시쉼터	46(68.7)	21(31.3)	67(100.0)	15.793** (3)
	단기쉼터	253(69.3)	112(30.7)	36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13(53.3)	99(46.7)	212(100.0)	
	회복지원시설	56(65.9)	29(34.1)	85(100.0)	
취업준비 지원	일시쉼터	50(74.6)	17(25.4)	67(100.0)	13.722** (3)
	단기쉼터	271(74.0)	95(26.0)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9(60.8)	83(39.2)	212(100.0)	
	회복지원시설	65(76.5)	20(23.5)	85(100.0)	
취업정보 제공	일시쉼터	46(68.7)	21(31.3)	67(100.0)	9.488* (3)
	단기쉼터	260(71.0)	106(29.0)	366(100.0)	

조사항목	시설유형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취업 후 사후 관리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25(59.0)	87(41.0)	212(100.0)	8.028* (3)
	회복지원시설	60(70.6)	25(29.4)	85(100.0)	
	일시쉼터	49(73.1)	18(26.9)	67(100.0)	
	단기쉼터	295(80.6)	71(19.4)	366(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50(70.8)	62(29.2)	212(100.0)	
	회복지원시설	67(78.8)	18(21.2)	85(100.0)	

*p<.05 **p<.01 ***p<.001

15개 모든 자립관련 서비스에서 모든 시설 유형 중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시설유형 중 대체로 일시쉼터 및 단기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험률이 낮았는데, 이 역시 쉼터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응원/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에서 일시 및 단기쉼터 청소년보다 경험률이 높았으나 취업준비 지원에서는 이들 쉼터보다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로 가족 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V-100), 8개의 자립지원 항목에서 기타 가정유형의 청소년의 경험률이 양친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양친가정 청소년 순으로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가정 유형의 청소년이 자립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00. 가족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조사항목	가족유형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생활 교육	양친	182(49.3)	187(50.7)	369(100.0)	7.709* (2)
	한부모	116(45.0)	142(55.0)	258(100.0)	
	기타	35(34.0)	68(66.0)	103(100.0)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양친	259(70.4)	109(29.6)	368(100.0)	17.415*** (2)
	한부모	174(67.4)	84(32.6)	258(100.0)	
	기타	50(48.5)	53(51.5)	103(100.0)	
학비 지원	양친	240(65.2)	128(34.8)	368(100.0)	13.570** (2)
	한부모	157(60.9)	101(39.1)	258(100.0)	
	기타	46(45.1)	56(54.9)	102(100.0)	
진로지도	양친	180(48.8)	189(51.2)	369(100.0)	7.165* (2)
	한부모	120(46.5)	138(53.5)	258(100.0)	
	기타	35(34.0)	68(66.0)	103(100.0)	
직업훈련 지원	양친	249(67.7)	119(32.3)	368(100.0)	9.200* (2)
	한부모	166(64.3)	92(35.7)	258(100.0)	
	기타	53(51.5)	50(48.5)	103(100.0)	
취업준비 지원	양친	271(73.4)	98(26.6)	369(100.0)	11.832** (2)
	한부모	186(72.1)	72(27.9)	258(100.0)	
	기타	58(56.3)	45(43.7)	103(100.0)	
취업정보 제공	양친	258(69.9)	111(30.1)	369(100.0)	13.603** (2)
	한부모	180(69.8)	78(30.2)	258(100.0)	
	기타	53(51.5)	50(48.5)	103(100.0)	
취업 후 사후 관리	양친	298(80.8)	71(19.2)	369(100.0)	19.392*** (2)
	한부모	201(77.9)	57(22.1)	258(100.0)	
	기타	62(60.2)	41(39.8)	103(100.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표 V-101), 일반 심리 및 상담 지원, 생활교육, 건강지원, 학비 지원 등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학비지원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0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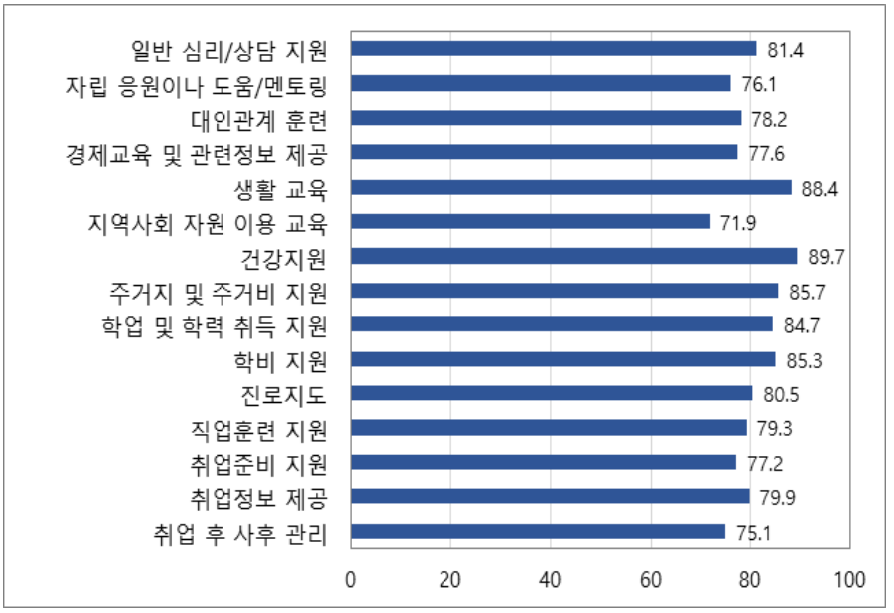
조사항목	경제적 수준	없다	있다	사례수(명)	χ^2(df)
일반 심리/상담 지원	상	52(43.0)	69(57.0)	121(100.0)	7.228* (2)
	중	101(45.7)	120(54.3)	221(100.0)	
	하	136(35.1)	251(64.9)	387(100.0)	
생활 교육	상	60(49.6)	61(50.4)	121(100.0)	9.370** (2)
	중	116(52.5)	105(47.5)	221(100.0)	
	하	156(40.3)	231(59.7)	387(100.0)	
건강지원	상	51(42.1)	70(57.9)	121(100.0)	14.813** (2)
	중	109(49.3)	112(50.7)	221(100.0)	
	하	129(33.6)	255(66.4)	384(100.0)	
학비 지원	상	85(70.2)	36(29.8)	121(100.0)	12.536** (2)
	중	145(65.9)	75(34.1)	220(100.0)	
	하	212(54.9)	174(45.1)	386(100.0)	

*p<.05 **p<.01 ***p<.001

④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본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 중 상기한 15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그림 V-23, 표 V-102),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70%가 넘게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이나 질병치료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88.4%),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85.7%), 학비 지원(85.3%),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84.7%), 일반 심리/상담 지원(81.4%), 진로지도(80.5%)의 순으로 80%를 넘는 도움정도를 나타냈다. 가장 도움정도가 낮은 지원 항목은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으로 71.9%, 취업 후 사후관리 75.1%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보였다.



주: 자립지원 서비스가 도움되었다(약간 도움되었다, 매우 도움되었다)는 응답률(%) 기준

그림 Ⅴ-23.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표 V-102. 자립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자립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정도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명)	평균값 (SD)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18(4.1)	64(14.5)	249(56.6)	109(24.8)	440(100.0)	3.02(0.75)
2)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19(5.8)	59(18.0)	161(49.2)	88(26.9)	327(100.0)	2.97(0.83)
3) 대인관계 훈련	17(5.2)	55(16.7)	173(52.4)	85(25.8)	330(100.0)	2.99(0.80)
4) 경제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	13(4.0)	60(18.5)	178(54.8)	74(22.8)	325(100.0)	2.96(0.76)
5) 생활 교육	13(3.3)	33(8.3)	197(49.6)	154(38.8)	397(100.0)	3.24(0.74)
6)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15(6.1)	54(22.0)	111(45.1)	66(26.8)	246(100.0)	2.93(0.85)
7) 건강지원	9(2.1)	36(8.2)	212(48.5)	180(41.2)	437(100.0)	3.29(0.70)
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11(3.6)	33(10.7)	121(39.4)	142(46.3)	307(100.0)	3.28(0.80)
9)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8(2.7)	37(12.5)	131(44.4)	119(40.3)	295(100.0)	3.22(0.77)
10) 학비 지원	12(4.2)	30(10.5)	121(42.5)	122(42.8)	285(100.0)	3.24(0.80)
11) 진로지도	20(5.1)	57(14.4)	192(48.6)	126(31.9)	395(100.0)	3.07(0.81)
12) 직업훈련 지원	15(5.7)	39(14.9)	124(47.5)	83(31.8)	261(100.0)	3.05(0.83)
13) 취업준비 지원	10(4.7)	39(18.1)	105(48.8)	61(28.4)	215(100.0)	3.01(0.81)
14) 취업정보 제공	12(5.0)	36(15.1)	131(54.8)	60(25.1)	239(100.0)	3.00(0.78)
15) 취업 후 사후 관리	14(8.3)	28(16.6)	79(46.7)	48(28.4)	169(100.0)	2.95(0.89)

이러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주요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서비스에 한 해 성별, 학교재학 여부, 생활시설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103 ~ 표 V-105). 특히 진로지도/직업훈련 지원/취업준비 지원/취업정보 제공/취업 후 사후관리의 경우 앞서 기술한 경험여부와 달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은 없었다. 지원서

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립지원 서비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표 V-103), 일반 심리/상담 지원, 건강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직업훈련 지원의 4개 서비스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3. 성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성별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일반 심리/상담 지원	남자	11(4.7)	42(18.0)	129(55.4)	51(21.9)	233(100.0)	2.94(0.77)	-2.283*
	여자	7(3.4)	22(10.6)	120(58.0)	58(28.0)	207(100.0)	3.11(0.72)	
건강지원	남자	5(2.3)	28(12.7)	106(48.0)	82(37.1)	221(100.0)	3.20(0.74)	-2.702**
	여자	4(1.9)	8(3.7)	106(49.1)	98(45.4)	216(100.0)	3.38(0.65)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남자	7(4.5)	24(15.6)	64(41.6)	59(38.3)	154(100.0)	3.14(0.84)	-3.295**
	여자	4(2.6)	9(5.9)	57(37.3)	83(54.2)	153(100.0)	3.43(0.72)	
직업훈련 지원	남자	8(5.8)	27(19.4)	70(50.4)	34(24.5)	139(100.0)	2.94(0.82)	-2.469*
	여자	7(5.7)	12(9.8)	54(44.3)	49(40.2)	122(100.0)	3.19(0.84)	

*p<.05 **p<.01 ***p<.001

학교재학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립관련 서비스들이 있었다.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과 학비 지원에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도움 정도가 학교 비재학중이거나 졸업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Scheffé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 심리/상담 지원, 생활 교육, 건강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항목에서도 대체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서비스 도움정도가 비재학 청소년이나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04.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학교재학 여부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재학	5(2.2)	30(13.2)	131(57.5)	62(27.2)	228(100.0)	3.10(0.70)	3.477*
	비재학	9(6.9)	24(18.3)	71(54.2)	27(20.6)	131(100.0)	2.89(0.81)	
	고교졸업자	4(5.4)	7(9.5)	43(58.1)	20(27.0)	74(100.0)	3.07(0.76)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재학[a]	3(1.8)	26(15.4)	95(56.2)	45(26.6)	169(100.0)	3.08(0.70)	4.561* a>c
	비재학[b]	5(5.4)	19(20.4)	51(54.8)	18(19.4)	93(100.0)	2.88(0.78)	
	고교졸업자[c]	5(8.5)	15(25.4)	28(47.5)	11(18.6)	59(100.0)	2.76(0.86)	
생활 교육	재학	4(1.9)	15(6.9)	107(49.5)	90(41.7)	216(100.0)	3.31(0.68)	3.477*
	비재학	6(5.6)	12(11.2)	56(52.3)	33(30.8)	107(100.0)	3.08(0.80)	
	고교졸업자	3(4.4)	5(7.4)	30(44.1)	30(44.1)	68(100.0)	3.28(0.79)	
건강지원	재학	0(0.0)	18(7.9)	106(46.5)	104(45.6)	228(100.0)	3.38(0.63)	3.623*
	비재학	5(3.9)	13(10.2)	64(50.0)	46(35.9)	128(100.0)	3.18(0.77)	
	고교졸업자	4(5.4)	4(5.4)	37(50.0)	29(39.2)	74(100.0)	3.23(0.79)	
주거비 및 주거비 지원	재학	1(0.6)	15(9.3)	68(42.2)	77(47.8)	161(100.0)	3.37(0.68)	3.715*
	비재학	7(8.0)	15(17.0)	29(33.0)	37(42.0)	88(100.0)	3.09(0.96)	
	고교졸업자	3(5.6)	3(5.6)	21(38.9)	27(50.0)	54(100.0)	3.33(0.82)	
학비 지원	재학[a]	6(3.6)	9(5.4)	72(43.4)	79(47.6)	166(100.0)	3.35(0.75)	4.306* a>c
	비재학[b]	3(4.5)	10(14.9)	29(43.3)	25(37.3)	67(100.0)	3.13(0.83)	
	고교졸업자[c]	3(6.3)	11(22.9)	17(35.4)	17(35.4)	48(100.0)	3.00(0.92)	

*p<.05 **p<.01 ***p<.001

시설유형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표 V-105), 일반 심리/상담 지원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에게서 도움 정도가 다른 시설유형에서보다 높았고, 대인관계 훈련과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에서는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청소년에게서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타 시설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다만 사후검증결과 유의미한 집단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5.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도움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일반 심리/상담 지원	일시쉼터	0(0.0)	3(9.1)	25(75.8)	5(15.2)	33(100.0)	3.06(0.50)	3.168*
	단기쉼터	11(5.2)	36(17.0)	126(59.4)	39(18.4)	212(100.0)	2.91(0.75)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7(4.7)	18(12.0)	75(50.0)	50(33.3)	150(100.0)	3.12(0.79)	
	회복지원시설	0(0.0)	7(15.6)	23(51.1)	15(33.3)	45(100.0)	3.18(0.68)	
대인관계 훈련	일시쉼터	1(4.2)	4(16.7)	12(50.0)	7(29.2)	24(100.0)	3.04(0.81)	4.225**
	단기쉼터	11(7.4)	29(19.6)	81(54.7)	27(18.2)	148(100.0)	2.84(0.81)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4(3.4)	12(10.3)	59(50.9)	41(35.3)	116(100.0)	3.18(0.75)	
	회복지원시설	1(2.4)	10(23.8)	21(50.0)	10(23.8)	42(100.0)	2.95(0.76)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일시쉼터	0(0.0)	6(31.6)	7(36.8)	6(31.6)	19(100.0)	3.00(0.82)	3.885*
	단기쉼터	8(5.6)	11(7.7)	57(39.9)	67(46.9)	143(100.0)	3.28(0.83)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1.7)	8(6.8)	46(39.3)	61(52.1)	117(100.0)	3.42(0.70)	
	회복지원시설	1(3.6)	8(28.6)	11(39.3)	8(28.6)	28(100.0)	2.93(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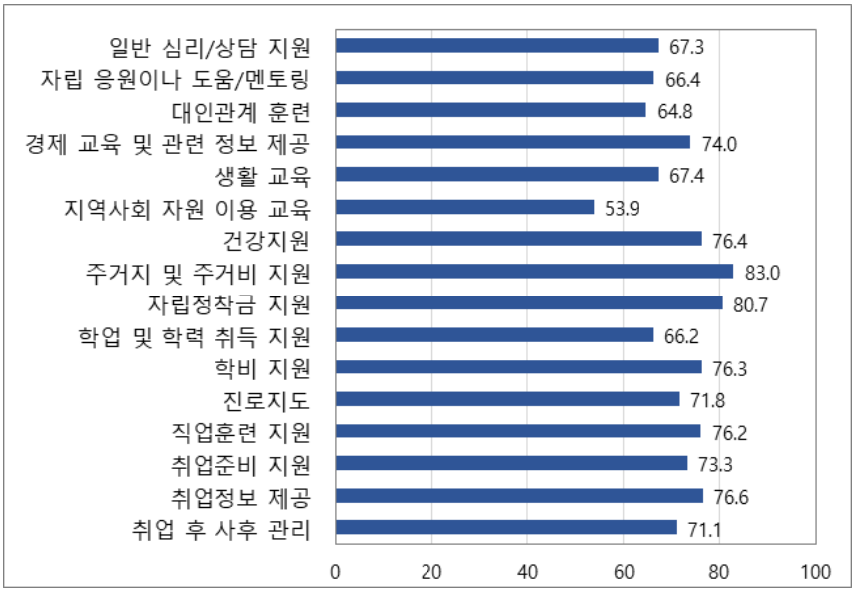
*p<.05 **p<.01 ***p<.001

(10) 자립지원 서비스 요구

① 자립지원 서비스 유형별 필요 정도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정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자립지원관련 서비스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상기한 자립지원서비스 외에 자립정착금 지원을 포함한 총 1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그림 V-24, 표 V-106),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83%,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두 항목 모두 8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취업정보 제공

(76.6%), 건강지원(76.4%), 학비지원(76.3%), 직업훈련 지원(76.2%),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74.0%), 취업준비 지원(73.3%), 진로지도(71.8%), 취업 후 사후관리(71.1%) 등에 대해 70%가 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 기준

그림 Ⅴ-24.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필요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인 항목은 지역사회 자원이용 교육(53.9%)이었으며, 대인관계 훈련(64.8%), 자립관련 응원이나 멘토링(66.4%),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66.2%) 등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요구 우선순위가 주거지원과 경제적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심리사회적 지원(대인관계 훈련, 사회적 지지, 멘토링 등)에 대해서도 60%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지원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V-106.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서비스의 필요 정도				전체 수 (%)	평균값 (SD)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103(14.1)	136(18.6)	288(39.5)	203(27.8)	730(100.0)	2.81(1.00)
2)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108(14.8)	137(18.8)	262(35.9)	223(30.5)	730(100.0)	2.82(1.03)
3) 대인관계 훈련	115(15.8)	142(19.5)	247(33.8)	226(31.0)	730(100.0)	2.80(1.05)
4)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91(12.5)	99(13.6)	275(37.7)	265(36.3)	730(100.0)	2.98(1.00)
5) 생활 교육	111(15.2)	127(17.4)	260(35.6)	232(31.8)	730(100.0)	2.84(1.04)
6)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149(20.4)	188(25.8)	248(34.0)	145(19.9)	730(100.0)	2.53(1.03)
7) 건강지원	80(11.0)	92(12.6)	239(32.7)	319(43.7)	730(100.0)	3.09(1.00)
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67(9.2)	57(7.8)	240(32.9)	366(50.1)	730(100.0)	3.24(0.94)
9) 자립정착금 지원	72(9.9)	69(9.5)	239(32.8)	349(47.9)	729(100.0)	3.19(0.97)
1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125(17.1)	121(16.6)	219(30.0)	264(36.2)	729(100.0)	2.85(1.09)
11) 학비 지원	82(11.2)	91(12.5)	237(32.5)	320(43.8)	730(100.0)	3.09(1.00)
12) 진로지도	95(13.0)	111(15.2)	258(35.4)	265(36.4)	729(100.0)	2.95(1.02)
13) 직업훈련 지원	78(10.7)	96(13.2)	257(35.2)	299(41.0)	730(100.0)	3.06(0.98)
14) 취업준비 지원	94(12.9)	101(13.8)	256(35.1)	279(38.2)	730(100.0)	2.99(1.02)
15) 취업정보 제공	79(10.8)	92(12.6)	261(35.8)	298(40.8)	730(100.0)	3.07(0.98)
16) 취업 후 사후 관리	100(13.7)	111(15.2)	252(34.6)	266(36.5)	729(100.0)	2.94(1.03)

② 배경변인별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관련 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대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별, 학교재학, 시설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연령이나 일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집단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V-107) ~ (표 V-113)과 같다. 먼저, 모든 자립관련 서비스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표 V-107). 구체적으로 16개 모든 항목에서 여자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여자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표 V-107. 성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성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일반 심리/상담 지원	남자	68(17.7)	88(22.9)	144(37.5)	84(21.9)	384(100.0)	2.64(1.01)	-5.075***
	여자	35(10.1)	48(13.9)	144(41.6)	119(34.4)	346(100.0)	3.00(0.94)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남자	70(18.2)	74(19.3)	139(36.2)	101(26.3)	384(100.0)	2.71(1.05)	-3.252**
	여자	38(11.0)	63(18.2)	123(35.5)	122(35.3)	346(100.0)	2.95(0.99)	
대인관계 훈련	남자	74(19.3)	84(21.9)	125(32.6)	101(26.3)	384(100.0)	2.66(1.07)	-3.887***
	여자	41(11.8)	58(16.8)	122(35.3)	125(36.1)	346(100.0)	2.96(1.00)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남자	64(16.7)	61(15.9)	149(38.8)	110(28.6)	384(100.0)	2.79(1.04)	-5.369***
	여자	27(7.8)	38(11.0)	126(36.4)	155(44.8)	346(100.0)	3.18(0.92)	
생활 교육	남자	70(18.2)	69(18.0)	137(35.7)	108(28.1)	384(100.0)	2.74(1.06)	-2.842**
	여자	41(11.8)	58(16.8)	123(35.5)	124(35.8)	346(100.0)	2.95(1.00)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남자	97(25.3)	106(27.6)	115(29.9)	66(17.2)	384(100.0)	2.39(1.04)	-3.992***
	여자	52(15.0)	82(23.7)	133(38.4)	79(22.8)	346(100.0)	2.69(0.99)	
건강지원	남자	55(14.3)	53(13.8)	139(36.2)	137(35.7)	384(100.0)	2.93(1.03)	-4.616***
	여자	25(7.2)	39(11.3)	100(28.9)	182(52.6)	346(100.0)	3.27(0.93)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남자	46(12.0)	38(9.9)	138(35.9)	162(42.2)	384(100.0)	3.08(1.00)	-4.788***
	여자	21(6.1)	19(5.5)	102(29.5)	204(59.0)	346(100.0)	3.41(0.85)	
자립정착금 지원	남자	45(11.7)	45(11.7)	132(34.4)	162(42.2)	384(100.0)	3.07(1.00)	-3.450***
	여자	27(7.8)	24(7.0)	107(31.0)	187(54.2)	345(100.0)	3.32(0.91)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남자	72(18.8)	67(17.5)	119(31.1)	125(32.6)	383(100.0)	2.78(1.10)	-2.026*
	여자	53(15.3)	54(15.6)	100(28.9)	139(40.2)	346(100.0)	2.94(1.08)	
학비 지원	남자	58(15.1)	52(13.5)	129(33.6)	145(37.8)	384(100.0)	2.94(1.06)	-4.309***
	여자	24(6.9)	39(11.3)	108(31.2)	175(50.6)	346(100.0)	3.25(0.91)	
진로지도	남자	63(16.4)	71(18.5)	134(35.0)	115(30.0)	383(100.0)	2.79(1.05)	-4.685***
	여자	32(9.2)	40(11.6)	124(35.8)	150(43.4)	346(100.0)	3.13(0.95)	
직업훈련 지원	남자	56(14.6)	66(17.2)	136(35.4)	126(32.8)	384(100.0)	2.86(1.03)	-5.973***
	여자	22(6.4)	30(8.7)	121(35.0)	173(50.0)	346(100.0)	3.29(0.87)	
취업준비 지원	남자	65(16.9)	56(14.6)	146(38.0)	117(30.5)	384(100.0)	2.82(1.05)	-4.707***
	여자	29(8.4)	45(13.0)	110(31.8)	162(46.8)	346(100.0)	3.17(0.95)	

조사항목	성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취업정보 제공	남자	55(14.3)	60(15.6)	132(34.4)	137(35.7)	384(100.0)	2.91(1.04)	-4.491***
	여자	24(6.9)	32(9.2)	129(37.3)	161(46.5)	346(100.0)	3.23(0.88)	
취업 후 사후 관리	남자	65(17.0)	66(17.2)	130(33.9)	122(31.9)	383(100.0)	2.81(1.07)	-3.669***
	여자	35(10.1)	45(13.0)	122(35.3)	144(41.6)	346(100.0)	3.08(0.97)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의 필요정도에서 나타났다(표 V-108).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더 낮은 연령대 청소년보다 이러한 5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08. 연령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연령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일반 심리/상담 지원	만17세까지	66(15.5)	92(21.6)	163(38.4)	104(24.5)	425(100.0)	2.72(1.00)	-2.914**
	만18세부터	37(12.5)	42(14.1)	121(40.7)	97(32.7)	297(100.0)	2.94(0.98)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만17세까지	70(16.5)	84(19.8)	154(36.2)	117(27.5)	425(100.0)	2.75(1.03)	-2.430*
	만18세부터	36(12.1)	51(17.2)	106(35.7)	104(35.0)	297(100.0)	2.94(1.00)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만17세까지	59(13.9)	68(16.0)	161(37.9)	137(32.2)	425(100.0)	2.88(1.01)	-3.156**
	만18세부터	30(10.1)	30(10.1)	111(37.4)	126(42.4)	297(100.0)	3.12(0.96)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만17세까지	41(9.6)	39(9.2)	145(34.1)	200(47.1)	425(100.0)	3.19(0.96)	-2.127*
	만18세부터	24(8.1)	17(5.7)	91(30.6)	165(55.6)	297(100.0)	3.34(0.91)	
자립정착금 지원	만17세까지	48(11.3)	47(11.1)	148(34.9)	181(42.7)	424(100.0)	3.09(0.99)	-3.502***
	만18세부터	23(7.7)	19(6.4)	88(29.6)	167(56.2)	297(100.0)	3.34(0.91)	

*p<.05 **p<.01 ***p<.001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에서의 차이는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자립에 대한 응원/도움/멘토링, 대인관계 훈련,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지원서비스에서 나타났다(표 V-109). 사후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들에게서 요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재학중인 청소년, 비재학중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서비스는 비재학중인 청소년에게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필요도를 보여, 이들이 복학이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109. 학교재학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학교 재학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일반 심리/상담 지원	재학[a]	54(14.2)	69(18.1)	151(39.6)	107(28.1)	381(100.0)	2.82(1.00)	3.035* c>b
	비재학[b]	35(16.4)	48(22.5)	75(35.2)	55(25.8)	213(100.0)	2.70(1.03)	
	고교졸업자[c]	14(11.5)	14(11.5)	54(44.3)	40(32.8)	122(100.0)	2.98(0.95)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재학[a]	57(15.0)	62(16.3)	143(37.5)	119(31.2)	381(100.0)	2.85(1.03)	4.736** c>b
	비재학[b]	37(17.4)	48(22.5)	74(34.7)	54(25.4)	213(100.0)	2.68(1.04)	
	고교졸업자[c]	12(9.8)	21(17.2)	40(32.8)	49(40.2)	122(100.0)	3.03(0.99)	
대인관계 훈련	재학[a]	57(15.0)	63(16.5)	140(36.7)	121(31.8)	381(100.0)	2.85(1.03)	6.353** c>b
	비재학[b]	43(20.2)	54(25.4)	57(26.8)	59(27.7)	213(100.0)	2.62(1.10)	
	고교졸업자[c]	10(8.2)	22(18.0)	46(37.7)	44(36.1)	122(100.0)	3.02(0.94)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재학[a]	49(12.9)	46(12.1)	143(37.5)	143(37.5)	381(100.0)	3.00(1.01)	4.504* c>b
	비재학[b]	29(13.6)	35(16.4)	89(41.8)	60(28.2)	213(100.0)	2.85(0.99)	
	고교졸업자[c]	11(9.0)	14(11.5)	39(32.0)	58(47.5)	122(100.0)	3.18(0.96)	
생활 교육	재학	56(14.7)	56(14.7)	143(37.5)	126(33.1)	381(100.0)	2.89(1.03)	3.012*
	비재학	36(16.9)	49(23.0)	71(33.3)	57(26.8)	213(100.0)	2.70(1.04)	
	고교졸업자	16(13.1)	20(16.4)	41(33.6)	45(36.9)	122(100.0)	2.94(1.03)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재학[a]	72(18.9)	62(16.3)	119(31.2)	128(33.6)	381(100.0)	2.80(1.10)	7.153*** b>a,c
	비재학[b]	21(9.9)	31(14.6)	69(32.5)	91(42.9)	212(100.0)	3.08(0.98)	
	고교졸업자[c]	27(22.1)	26(21.3)	29(23.8)	40(32.8)	122(100.0)	2.67(1.15)	

*p<.05 **p<.01 ***p<.001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을 경험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나타났다(표 V-110). 일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

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0. 일 경험 유무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일 경험 유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t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없다	34(11.4)	23(7.7)	117(39.4)	123(41.4)	297(100.0)	3.11(0.97)	3.149**
	있다	33(7.6)	34(7.9)	123(28.4)	243(56.1)	433(100.0)	3.33(0.92)	
자립정착금 지원	없다	40(13.5)	30(10.1)	109(36.8)	117(39.5)	296(100.0)	3.02(1.02)	3.796***
	있다	32(7.4)	39(9.0)	130(30.0)	232(53.6)	433(100.0)	3.30(0.91)	

*p<.05 **p<.01 ***p<.001

주거비 지원의 경우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라 필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V-111), 가정 밖 생활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한 달 미만인 청소년보다 주거마련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1. 가정 밖 생활기간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가정 밖 생활 기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한 달 미만[a]	17(10.1)	18(10.7)	67(39.9)	66(39.3)	168(100.0)	3.08(0.95)	3.595* c>a
	1년 미만[b]	26(9.9)	18(6.8)	85(32.3)	134(51.0)	263(100.0)	3.24(0.96)	
	1년 이상[c]	24(8.1)	20(6.7)	88(29.6)	165(55.6)	297(100.0)	3.33(0.92)	

*p<.05 **p<.01 ***p<.001

16개의 지원 서비스 중 일반 심리/상담지원, 생활교육, 지역사회 자원이용 교육,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을 제외한 12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생활시설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건강지원, 학비지원, 직업훈련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서비스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실제 자립에 직면하여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다른 집단의 청소년보다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112. 시설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일시쉼터[a]	13(19.4)	9(13.4)	27(40.3)	18(26.9)	67(100.0)	2.75(1.06)	4.600** c>d
	단기쉼터[b]	60(16.4)	75(20.5)	125(34.2)	106(29.0)	366(100.0)	2.76(1.05)	
	중장기/자립지원관[c]	19(9.0)	34(16.0)	80(37.7)	79(37.3)	212(100.0)	3.03(0.95)	
	회복지원시설[d]	16(18.8)	19(22.4)	30(35.3)	20(23.5)	85(100.0)	2.64(1.04)	
대인관계 훈련	일시쉼터	12(17.9)	16(23.9)	19(28.4)	20(29.9)	67(100.0)	2.70(1.09)	5.017**
	단기쉼터	65(17.8)	76(20.8)	127(34.7)	98(26.8)	366(100.0)	2.70(1.05)	
	중장기/자립지원관	23(10.8)	33(15.6)	70(33.0)	86(40.6)	212(100.0)	3.03(1.00)	
	회복지원시설	15(17.6)	17(20.0)	31(36.5)	22(25.9)	85(100.0)	2.71(1.04)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일시쉼터[a]	13(19.4)	9(13.4)	22(32.8)	23(34.3)	67(100.0)	2.82(1.11)	5.865*** c>a,d
	단기쉼터[b]	52(14.2)	49(13.4)	139(38.0)	126(34.4)	366(100.0)	2.93(1.02)	
	중장기/자립지원관[c]	15(7.1)	21(9.9)	82(38.7)	94(44.3)	212(100.0)	3.20(0.89)	
	회복지원시설[d]	11(12.9)	20(23.5)	32(37.6)	22(25.9)	85(100.0)	2.76(0.98)	
건강지원	일시쉼터[a]	7(10.4)	9(13.4)	28(41.8)	23(34.3)	67(100.0)	3.00(0.95)	3.209* c>b
	단기쉼터[b]	42(11.5)	47(12.8)	111(30.3)	166(45.4)	366(100.0)	3.10(1.02)	
	중장기/자립지원관[c]	17(8.0)	21(9.9)	73(34.4)	101(47.6)	212(100.0)	3.22(0.92)	
	회복지원시설[d]	14(16.5)	15(17.6)	27(31.8)	29(34.1)	85(100.0)	2.84(1.0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일시쉼터[a]	5(7.5)	9(13.4)	21(31.3)	32(47.8)	67(100.0)	3.19(0.94)	9.008*** a,b,c>d
	단기쉼터[b]	39(10.7)	30(8.2)	105(28.7)	192(52.5)	366(100.0)	3.23(0.99)	
	중장기/자립지원관[c]	9(4.2)	8(3.8)	76(35.8)	119(56.1)	212(100.0)	3.44(0.76)	
	회복지원시설[d]	14(16.5)	10(11.8)	38(44.7)	23(27.1)	85(100.0)	2.82(1.01)	
자립정착금 지원	일시쉼터[a]	7(10.4)	5(7.5)	23(34.3)	32(47.8)	67(100.0)	3.19(0.97)	9.083*** a,b,c>d
	단기쉼터[b]	42(11.5)	40(11.0)	105(28.8)	178(48.8)	365(100.0)	3.15(1.02)	
	중장기/자립지원관[c]	11(5.2)	8(3.8)	76(35.8)	117(55.2)	212(100.0)	3.41(0.79)	
	회복지원시설[d]	12(14.1)	16(18.8)	35(41.2)	22(25.9)	85(100.0)	2.79(0.99)	

조사항목	시설유형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학비 지원	일시쉼터[a]	10(14.9)	15(22.4)	18(26.9)	24(35.8)	67(100.0)	2.84(1.08)	9.773*** c>a,b
	단기쉼터[b]	47(12.8)	43(11.7)	118(32.2)	158(43.2)	366(100.0)	3.06(1.03)	
	중장기/자립지원관[c]	9(4.2)	19(9.0)	72(34.0)	112(52.8)	212(100.0)	3.35(0.82)	
	회복지원시설[d]	16(18.8)	14(16.5)	29(34.1)	26(30.6)	85(100.0)	2.76(1.09)	
진로지도	일시쉼터	10(14.9)	10(14.9)	20(29.9)	27(40.3)	67(100.0)	2.96(1.08)	3.498*
	단기쉼터	55(15.0)	62(16.9)	121(33.1)	128(35.0)	366(100.0)	2.88(1.05)	
	중장기/자립지원관	17(8.1)	24(11.4)	84(39.8)	86(40.8)	211(100.0)	3.13(0.91)	
	회복지원시설	13(15.3)	15(17.6)	33(38.8)	24(28.2)	85(100.0)	2.80(1.02)	
직업훈련 지원	일시쉼터[a]	10(14.9)	13(19.4)	21(31.3)	23(34.3)	67(100.0)	2.85(1.06)	3.670* c>a
	단기쉼터[b]	43(11.7)	45(12.3)	125(34.2)	153(41.8)	366(100.0)	3.06(1.01)	
	중장기/자립지원관[c]	15(7.1)	24(11.3)	74(34.9)	99(46.7)	212(100.0)	3.21(0.91)	
	회복지원시설[d]	10(11.8)	14(16.5)	37(43.5)	24(28.2)	85(100.0)	2.88(0.96)	
취업준비 지원	일시쉼터[a]	12(17.9)	10(14.9)	22(32.8)	23(34.3)	67(100.0)	2.84(1.10)	4.318** c>d
	단기쉼터[b]	49(13.4)	53(14.5)	122(33.3)	142(38.8)	366(100.0)	2.98(1.03)	
	중장기/자립지원관[c]	16(7.5)	24(11.3)	83(39.2)	89(42.0)	212(100.0)	3.16(0.90)	
	회복지원시설[d]	17(20.0)	14(16.5)	29(34.1)	25(29.4)	85(100.0)	2.73(1.10)	
취업정보 제공	일시쉼터[a]	8(11.9)	13(19.4)	19(28.4)	27(40.3)	67(100.0)	2.97(1.04)	4.104** c>d
	단기쉼터[b]	42(11.5)	43(11.7)	128(35.0)	153(41.8)	366(100.0)	3.07(1.00)	
	중장기/자립지원관[c]	16(7.5)	21(9.9)	79(37.3)	96(45.3)	212(100.0)	3.20(0.90)	
	회복지원시설[d]	13(15.3)	15(17.6)	35(41.2)	22(25.9)	85(100.0)	2.78(1.00)	
취업 후 사후 관리	일시쉼터[a]	10(14.9)	10(14.9)	25(37.3)	22(32.8)	67(100.0)	2.88(1.04)	3.851** c>d
	단기쉼터[b]	58(15.9)	55(15.1)	123(33.7)	129(35.3)	365(100.0)	2.88(1.06)	
	중장기/자립지원관[c]	18(8.5)	30(14.2)	71(33.5)	93(43.9)	212(100.0)	3.13(0.95)	
	회복지원시설[d]	14(16.5)	16(18.8)	33(38.8)	22(25.9)	85(100.0)	2.74(1.03)	

*p<.05 **p<.01 ***p<.001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요구는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일반 심리/상담 지원과 생활 교육을 제외한 14개 지원서비스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서비스 필요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았다(표 V-113). 이러한 결과는 원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청소년에게서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16개 자립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 외에 기타 응답으로 교통비 지원과 자살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기술한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한 청소년은 직업훈련 수당을 받는 경우 기초수급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V-113.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조사항목	경제적 수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일반 심리/상담 지원	상	19(15.7)	18(14.9)	51(42.1)	33(27.3)	121(100.0)	2.81(1.01)	3.834*
	중	40(18.1)	45(20.4)	85(38.5)	51(23.1)	221(100.0)	2.67(1.03)	
	하	43(11.1)	73(18.9)	152(39.3)	119(30.7)	387(100.0)	2.90(0.97)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상[a]	22(18.2)	21(17.4)	46(38.0)	32(26.4)	121(100.0)	2.73(1.05)	5.206** c>b
	중[b]	42(19.0)	47(21.3)	72(32.6)	60(27.1)	221(100.0)	2.68(1.07)	
	하[c]	43(11.1)	69(17.8)	144(37.2)	131(33.9)	387(100.0)	2.94(0.98)	
대인관계 훈련	상[a]	23(19.0)	31(25.6)	38(31.4)	29(24.0)	121(100.0)	2.60(1.05)	5.611** c>a
	중[b]	37(16.7)	46(20.8)	84(38.0)	54(24.4)	221(100.0)	2.70(1.02)	
	하[c]	55(14.2)	65(16.8)	124(32.0)	143(37.0)	387(100.0)	2.92(1.05)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상[a]	21(17.4)	19(15.7)	48(39.7)	33(27.3)	121(100.0)	2.77(1.04)	6.230** c>a
	중[b]	33(14.9)	28(12.7)	91(41.2)	69(31.2)	221(100.0)	2.89(1.01)	
	하[c]	37(9.6)	52(13.4)	136(35.1)	162(41.9)	387(100.0)	3.09(0.96)	
생활 교육	상	22(18.2)	17(14.0)	51(42.1)	31(25.6)	121(100.0)	2.75(1.04)	3.501*
	중	45(20.4)	34(15.4)	80(36.2)	62(28.1)	221(100.0)	2.72(1.08)	
	하	44(11.4)	76(19.6)	129(33.3)	138(35.7)	387(100.0)	2.93(1.00)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상[a]	31(25.6)	32(26.4)	42(34.7)	16(13.2)	121(100.0)	2.36(1.01)	3.262* c>a
	중[b]	48(21.7)	59(26.7)	72(32.6)	42(19.0)	221(100.0)	2.49(1.03)	
	하[c]	70(18.1)	96(24.8)	134(34.6)	87(22.5)	387(100.0)	2.61(1.03)	
건강지원	상[a]	16(13.2)	22(18.2)	38(31.4)	45(37.2)	121(100.0)	2.93(1.04)	4.890** c>a
	중[b]	31(14.0)	28(12.7)	73(33.0)	89(40.3)	221(100.0)	3.00(1.05)	
	하[c]	33(8.5)	42(10.9)	128(33.1)	184(47.5)	387(100.0)	3.20(0.94)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상[a]	17(14.0)	14(11.6)	39(32.2)	51(42.1)	121(100.0)	3.02(1.05)	7.240** c>a
	중[b]	25(11.3)	18(8.1)	77(34.8)	101(45.7)	221(100.0)	3.15(0.99)	
	하[c]	25(6.5)	25(6.5)	124(32.0)	213(55.0)	387(100.0)	3.36(0.87)	

조사항목	경제적 수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평균 (SD)	F (Scheffé)
자립정착금 지원	상[a]	18(14.9)	15(12.4)	39(32.2)	49(40.5)	121(100.0)	2.98(1.06)	8.455*** c>a,b
	중[b]	29(13.2)	25(11.4)	70(31.8)	96(43.6)	220(100.0)	3.06(1.04)	
	하[c]	25(6.5)	29(7.5)	130(33.6)	203(52.5)	387(100.0)	3.32(0.87)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상[a]	29(24.0)	18(14.9)	36(29.8)	38(31.4)	121(100.0)	2.69(1.15)	4.442* c>a
	중[b]	40(18.2)	43(19.5)	68(30.9)	69(31.4)	220(100.0)	2.75(1.09)	
	하[c]	55(14.2)	60(15.5)	115(29.7)	157(40.6)	387(100.0)	2.97(1.06)	
학비 지원	상[a]	20(16.5)	17(14.0)	38(31.4)	46(38.0)	121(100.0)	2.91(1.09)	9.438*** c>a,b
	중[b]	31(14.0)	33(14.9)	79(35.7)	78(35.3)	221(100.0)	2.92(1.03)	
	하[c]	31(8.0)	41(10.6)	120(31.0)	195(50.4)	387(100.0)	3.24(0.94)	
진로지도	상[a]	23(19.0)	20(16.5)	42(34.7)	36(29.8)	121(100.0)	2.75(1.08)	5.675** c>a
	중[b]	31(14.0)	42(19.0)	75(33.9)	73(33.0)	221(100.0)	2.86(1.03)	
	하[c]	41(10.6)	49(12.7)	140(36.3)	156(40.4)	386(100.0)	3.06(0.98)	
직업훈련 지원	상[a]	20(16.5)	18(14.9)	41(33.9)	42(34.7)	121(100.0)	2.87(1.07)	9.754*** c>a,b
	중[b]	29(13.1)	39(17.6)	76(34.4)	77(34.8)	221(100.0)	2.91(1.02)	
	하[c]	29(7.5)	39(10.1)	140(36.2)	179(46.3)	387(100.0)	3.21(0.91)	
취업준비 지원	상[a]	21(17.4)	22(18.2)	39(32.2)	39(32.2)	121(100.0)	2.79(1.08)	8.661*** c>a,b
	중[b]	34(15.4)	37(16.7)	81(36.7)	69(31.2)	221(100.0)	2.84(1.04)	
	하[c]	39(10.1)	42(10.9)	135(34.9)	171(44.2)	387(100.0)	3.13(0.97)	
취업정보 제공	상[a]	20(16.5)	24(19.8)	40(33.1)	37(30.6)	121(100.0)	2.78(1.06)	12.955*** c>a,b
	중[b]	30(13.6)	29(13.1)	87(39.4)	75(33.9)	221(100.0)	2.94(1.01)	
	하[c]	29(7.5)	39(10.1)	133(34.4)	186(48.1)	387(100.0)	3.23(0.91)	
취업 후 사후 관리	상[a]	20(16.5)	25(20.7)	39(32.2)	37(30.6)	121(100.0)	2.77(1.06)	8.098*** c>a,b
	중[b]	37(16.7)	39(17.6)	80(36.2)	65(29.4)	221(100.0)	2.78(1.05)	
	하[c]	43(11.1)	46(11.9)	133(34.5)	164(42.5)	386(100.0)	3.08(0.99)	

*p<.05 **p<.01 ***p<.001

2. 면접조사[99)]

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는 성별과 지역, 각 관련 시설·기관별 할당을 통해 만 15세 이상 청소년 3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설문조사를 위한 섭외 과정에서 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통해 접촉 가능한 일부 거리 청소년들이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의 답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여 면접 내용을 심화시켰다. 면접내용은 가정 밖 생활경험, 학업·근로 경험, 진로 및 자립과 관련한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 욕구, 그리고 관련 시설·기관이용 경험, 자립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면접 조사 기간은 2018년 8~9월이었으며, 1인당 면접시간은 1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면접진행은 연구진을 포함하여 훈련된 석사과정 이상의 면접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면접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면접의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면접 내용은 연구 목적만으로 활용되며, 참여자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면접내용이 녹음 될 것임을 알리고 면접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모두 녹음 후 전사되었고 질적자료 분석과정 및 결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 전문가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99) 2절 면접조사 내용 중 1) 조사개요는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2) 면접결과는 공동연구진인 김은정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다.

(2) 면접지 개발

면접지는 앞서 설문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 특히 질적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면접의 주요 내용은 표 V-114와 같다. 면접의 주요 내용들은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V-114. 면접 조사 내용

영역	면접 조사 내용
가정 밖 생활	- 가정 밖 생활 경험 및 청소년쉼터 포함 관련 시설 경험
학업 관련	- 현 학업상황 및 학력, 그와 관련된 지원받은(가족, 기관, 친구 등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지원) 경험 - 앞으로의 학업 계획 - 어려운 점, 지원받고 싶은 부분 - 학력이 나에게 주는 의미(필요성,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
근로 (아르바이트) 경험	- 구직 경험: 구직 경로와 구직 시 어려웠던 점, 그와 관련된 지원받은 경험 - 일 경험: 했던 일의 종류(직종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정규직 및 불법 여부), 최장 근무 기간, 일하는 이유, 소득 정도, 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와 관련된 지원받은 경험 - 가정 밖 생활(가출 생활)이 구직 및 근로에 미치는 영향(차별 경험 여부 등), 그와 관련된 지원받은 경험 - 향후 구직 및 근로 계획: 청소년으로서 구직 및 근로에서 어려웠던 점 - 향후 지원받고 싶은 부분
진로 관련	- 희망 직업 그와 관련된 계획 - 진로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경험 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 향후 진로 계획 및 지원받고 싶은 부분
현재 경제 상태	- 빚, 신용불량, 저축(가장 길게 저축한 기간 및 저축 방법 등) 여부 및 그 정도 -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이 된 이유와 그로 인해 어려운 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원받은 경험 - 빚, 신용불량 청산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지원받고 싶은 부분
자립 관련	- 자립 동기 유무와 그 이유 - 내가 생각하는 자립: 자립에 필요한 조건(심리정서적 독립·안정, 주거, 학력, 근로 및 수입, 정서 안정) - 독립 또는 자립 생활 경험 여부 - 자립 결정 및 생활 시 어려운 점, 자립 관련 지원받은 경험 - 향후 지원받고 싶은 부분

(3) 분석방법

면접 결과가 수합된 이후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연구 주제를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이후 추출된 연구 주제를 항목화 하였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면접 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발췌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 주제는 '가족', '기관생활', '현재 학업 상황', '학업 지속 의지',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 '자립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을 위한 준비' 등 12개 항목이었다. 각 항목 별로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나온 요소들을 묶어서 각 연구 주제의 하위 구성 요소를 형성하였다. 표 V-115는 연구 주제 항목과 각 연구 주제의 하위 구성 요소를 열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Strauss와 Cobin(1990)의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재구성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의 단계를 도식화하여 살펴보았다.

표 V-115. 연구 주제 항목 및 각 연구 주제 구성 요소

연구 주제 항목	각 연구 주제 구성 요소	
가족	- 양육체계의 부재 - 가족불화	- 가정폭력
기관생활	- 지도교사 - 또래관계	- 운영 프로그램 - 집단생활의 어려움
현재 학업 상황	- 학업 수행에 대한 무관심 - 학업 수행의 어려움	- 교사의 지원 부재 - 또래 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속 의지	- 진학 희망 - 진학 비희망	- 학업 지속 관련 지불 유예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 일의 의미 - 열악한 근무환경 - 불법적인 일에 연루됨	- 기초수급과 노동 간 충돌 - 근로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저축	- 저축 못함 - 과소비 -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 도움을 받아서 저축 시작함 - 재정관리 도움 필요
빚	- 빚 없음	- 소액 대출

연구 주제 항목	각 연구 주제 구성 요소	
	- 가족의 빚 - 핸드폰 관련 빚	- 학자금 대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 긍정적 평가: 재미있음/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게 됨. - 부정적 평가: 직접체험 기회 낮음/관심 직업 관련 프로그램 부재/취업 전망 불투명/비효과적인 학습방법/지역적 한계)	
자립의 의미	- 혼자서 앞가림 할 수 있는 것/타인의 도움 없이 사는 것 -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립 시기	- 잘 모르겠음 - 시설에서 나간 후	- 법적 청소년 시기가 지난 후 - 지금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 돈 - 주거	- 취업
자립을 위한 준비	- 하지 않고 있음 - 진학 준비	- 취업 프로그램 참여

(4) 면접 참여자

면접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면 우선 연령은 15세에서 23세까지 포함되었다. 이중 민법상으로는 성년으로,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19세~24세 연령대의 면접자는 모두 10사례(남 3, 여 7)였다. 한편, 면접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4명, 여성 16명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18명,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이 12명이었다. 이들이 가정을 떠나 기관생활을 포함한 가정 밖 생활을 하게 된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6년 6개월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1년 미만은 18명이고, 1년 이상은 12명이었다. 1년 이상 11명 중 7명(63.6%)이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정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정불화 및 폭력·학대, 자유 추구, 친구 권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가정 관련 요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속기관 별로는 청소년 단기쉼터 4명, 중장기쉼터 10명, 일시쉼터 4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7명, 청소년자립지원관 4명이었다.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V-116과 같다.

표 V-116.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조사 참여자 개요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소속기관	가출(기관 입소 시기)	가출이유	기관생활 기간	기관생활 이력
1	남	16	고교 재학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중 2	가정폭력	1년 이상 2년 미만	청소년쉼터
2	남	18	고교 재학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초 6	부 소개	5년 이상	청소년쉼터
3	여	22	중학교 중퇴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초 5~6	모가 보육원 보냄	1년 이상	청소년쉼터, 위탁교육
4	여	21	고졸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4세부터 보육원 생활 후 퇴소, 최근 부와 연락됨		3년 이상	보육원, 쉼터, 임대주택, 자립지원
5	남	21	고졸	경기	일시쉼터	19세	여자 친구와 함께 살려고	5년 이상	청소년쉼터 임대주택
6	남	21	중학교 중퇴	경기	일시쉼터	13-14세	가정폭력	5년 이상	청소년쉼터
7	여	19	대학 재학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N/A	가정불화/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8	여	18	대학 재학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8세	가정불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청소년쉼터
9	여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5세	가정불화/ 부모가 반강제로 내보냄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10	여	18	고졸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6세	부가 보냄	2년 이상	청소년쉼터
11	남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단기쉼터	15	가정불화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12	남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단기쉼터	15	가정불화/ 집이 답답함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13	여	20	고교 중퇴	경기	일시쉼터	초 2-3	가정불화/ 스스로 나옴	3년 이상	청소년쉼터, 모와 거주
14	여	20	고졸	경기	일시쉼터	16-17	친구 소개	5년 이상	청소년쉼터, 친구와 거주
15	여	16	고교 재학	광역시	회복지원 시설	15(중 2)	가정불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리생활, 회복지원시설
16	여	17	고교 재학	광역시	회복지원 시설	N/A	재판 결과	6개월 미만	보육원, 거리생활, 회복지원시설
17	남	16	고교 재학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5(중 2)	가정불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청소년쉼터, 거리생활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소속기관	가출(기관 입소 시기)	가출이유	기관생활 기간	기관생활 이력
18	여	18	고교 재학	서울	단기쉼터	18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19	여	17	고교 재학	서울	단기쉼터	17	가정불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청소년쉼터
20	남	23	대학 중퇴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N/A	부모 이혼 후 자신이 나옴	6개월 미만	자취, 거리생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21	여	21	고교 재학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부모 사망		1년 이상 2년 미만	청소년쉼터, 자취, 친구집, 자립지원
22	여	18	고졸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8	가정폭력	6개월 이상	친구집, 청소년쉼터
23	남	17	고졸	경남	회복지원 시설	N/A	형사재판 중	6개월 미만	소년원, 자취, 친구집, 회복지원시설
24	남	15	중졸	경남	회복지원 시설	15 (가출 아님)	형사재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25	남	16	고교 중퇴	경남	회복지원 시설	16 (가출 아님)	형사재판 중	6개월 미만	회복지원시설
26	여	18	고교 재학	경남	회복지원 시설	16	가정불화/ 형사재판중	1년 6개월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27	여	18	고교 중퇴	경남	회복지원 시설	18	형사재판중	6개월 미만	회복지원시설
28	여	22	고교 중퇴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8	가정불화	3년 이상	자취, 청소년쉼터
29	여	17	고교 재학	광역시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7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청소년쉼터
30	남	17	고교 중퇴	경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5	가정폭력	2년 이상 3년 미만	청소년쉼터

주: 학력 구분을 범주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대학에는 일반대학, 방송통신대 등이,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출석인정)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졸에는 검정고시도 포함됨. 기관 생활기관 역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음.

2) 면접결과

(1) 가정 밖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

① 가족

청소년기는 가족 등의 1차 집단을 벗어나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 집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및 청년들은 서구사회처럼 일정 연령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 즉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청년기까지 1차 집단의 보호 하에서 성장하는 것이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면접 참여자들은 이와는 달리 청소년기, 또는 아동기부터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생활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를 받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과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즉 가족 내 양육 체계의 부재, 가족간 불화, 그리고 가정 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양육체계의 부재·가정불화 및 폭력

가정 내 보호자의 부재 및 무관심, 방임으로 인한 양육 체계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 머물기보다는 가정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 내 구성원의 부재 및 약한 연대로 인하여 가정은 면접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성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음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빈곤 및 양육 체계 부재 등 가정의 취약한 상황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주요 요인이 된다.

> 사례11: 아빠가 잠시 감옥은 아닌데 어디 들어가서 아는 형 집에 2달 정도 있던 것 같아요.
> 사례10: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아빠가 저희를 키울게 안 되고 해서. 집도 없어지고

해 가지고 그리로 복지관에서.
면접자: 부모님이 보내신 거네요?
사례10: 예.

이처럼 가정 밖으로 나오는 행동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된다. 이들의 가출 과정을 보면 집을 나온 후 일정 기간 길거리 및 기관생활을 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왔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완전히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이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만한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거나 기타 보호 제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원초집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양육체계의 부재는 가족 간 불화로부터 연유되기도 한다. 부모의 부재 하에 조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된 경우라든지, 부모 중 한 쪽에게 과중하게 양육의 책임이 지워졌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조부모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 때 스트레스 및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가족 전체가 공유하게 되면서 가족 성원들은 갈등과 불화, 폭력을 겪게 된다. 결국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갈등과 불화로 인한 부적응을 겪으면서 가족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사례2: 원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엄청 어릴 때였는데 엄청 어려서 4살까지 같이 있다가 5살 때부터 제가 형이랑 어디 시설에 보냈어요. 거기에서 5학년까지 있다가 아버지가 데리고 오셔서 할아버지 집에 맡겼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갈수록 이게 지나보니까 형이랑 할아버지랑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형도 가출하고 저 혼자 남게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랑 갈등이 좀 있었어요.

사례7: 가정불화로 좀 깊이 얘기하면 원래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래 할아버지랑 잘 살았는데, 폭력적이셨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매일 매일 싸우셨는데 그 상황에서 아빠가 사업을 했다가 주식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망해가지고 빚이 2억 이상 됐대요. 할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했는데 빚 때문에 집도 팔고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것저것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많이 심각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빠는 따로

살고 엄마랑 매일 매일 같이 살았는데 저는 거의 집에서 적응을 못하다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 가출 결심의 원인 요소는 보호자의 폭력이다. 사례 22는 가정 폭력이 가출의 주요 원인이 됨을 잘 드러내 준다.

사례22: 엄마가 화나면 때린 적도 많았는데 술 먹고 때리고 엄마가 기억 못 하고 그런 일이 늘어가지고. 엄마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삼촌이랑 같이 자랐거든요. 삼촌도 때리고 협박을 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삼촌도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중략) (쉼터 들어가려고 부모님 동의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는 갈 데 없는데 애나 가는 거라고. 처음에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동의서 받으려고 한 달에서 한 달 넘게 계속 싸웠어요.

면접자: 왜 동의를 안 해 주셨는지. 맞고 하는 걸 힘들어 하는 걸 알았는데 왜 안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례22: 사람들 인식이 제가 밖에서 나와서 살면 엄마가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애가 나간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볼까봐 그런 것도 있고.

이처럼 면접 참여자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곳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친족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 체계가 아닌 대안적 환경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기관 생활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 체계가 아닌 대안적 환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대안 생활환경으로서의 기관에서의 삶을 분석해 보았다. 면접 참여자들은 보육원 생활을 했었거나 가족을 떠나 거리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 및 회복지원시설 등을 다니면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들이 기관생활을 한 기간은 최단 2개월에서 최장 6년 6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한 경우는 12사례(40%)였다.

사례3: 그래서 엄마가 호적을 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엄청 싸웠어요. 나는 엄마랑 딱히 친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나한테 그만큼 스트레스 줬으니까

집을 나왔고 그래서 그때 나와서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가지고 엄마랑 있다가 여기 단기 보호하는데 있잖아요. 가기 싫다고 했어요. 집을 한 달, 2주 있다가 집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내가 친이모라고 생각했던 분 있었잖아요. 그 이모가 빚 엄청 있었어요. 그 이모도 가정이 있는지 몰랐고. 그 이모가 와서 쟤 보육원에 보내든지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어렸잖아요. 싫다고 나는 보육원 가기 싫다고. 보육원에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다시 가야 되냐고 얘기했죠. 이모가 저한테 그러면 지금 다 버리고 산에 가서 죽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고 자살 생각도 많았어요. 꾹 참고 그때 그냥 이모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벌써 알아 놓은 게 있는 거죠. 여기 ○○동에 있는 단기랑 중장기랑 자립관이랑.

사례 3은 아버지가 사망 한 이후에 어머니도 부재한 상태에서 이모가 양육하였으나 5학년이 될 때까지 호적이 없는 상태로 성장하였다. 키울 능력이 안 된 이모는 사례 3을 보육원에 보냈다. 이후 새엄마(입양으로 추정: 위 인터뷰에서는 '엄마'로 지칭)와 생활하다가 갈등을 빚은 후 결국 단기쉼터로 가게 되었다. 사례 3은 단기쉼터에서 중장기쉼터로 이전하였으며 지금은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밖에서의 생활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 기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기관생활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기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현재의 생활에 대해 0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30명 중 27명이 7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사례5 : 처음에 집을 안 나왔을 때 만났다가 그러다가 지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집을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면접자: 몇 살 정도인가요?

사례5 : 19살에서 20살 되기 직전. 19살 말 때에 나와 가지고 그때 졸업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가고 막무가내로 있다가 상담도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상담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말하기에는 이미 그때는 집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일부러 비밀이 보장이 되는 곳으로 상담을 받고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맞게 행동을 했더니 어느 정도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괜찮아지고 친구 사이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례 5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는 가족 내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이 막상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숙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의 존재는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사례 3은 기관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만족도 9)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사례3: (여기 생활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오래, 저는 봤잖아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도 많이 봤지만 부모님 같아요. 나한테, 제가 갈등 때릴 때도 많지만 붙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같아요. 시설도 좋고 내가 나쁜 길로 안 빠지게 해주시니까.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지내니, 안 보이면 어떻게 지내길래 안 보이니.

이처럼 기관 선생님(시설 종사자)은 면접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례 3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기관 선생님들에게서 부재한 엄마의 모습을 찾고 있다(“진짜 엄마 같아요”). 또한 규율 부재의 상황에서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자신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기관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역시 이들이 기관 생활에 만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사례 19는 기관 내에서 바리스타 및 원예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기관생활은 이들의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식 제공과 같은 물리적 도움을 통한 주거 및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및 훈육을 통한 심리적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용돈을 제공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업을 지원하기도 하며,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기반 여건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관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도난, 욕설, 싸움과 같이 쉼터 생활에서 개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언급하면서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중장기쉼터와 비교하여 단기쉼터 내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불만족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7 : 여기(중장기쉼터) 만족도는 9(10점 중 9점)인데요. 그런데 이게 쉼터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있을 때는 엄청 그랬어요.

면접자: 여기만 9인 거예요? 단기 때는 뭐가 힘들었어요? 간단하게.

사례7 : 말 그대로 거기는 중장기랑 다른 점이 단기는 길거리에 나앉은 애들 누구나 다 받아주는 데고 중장기는 좀 잘하는 애들 추천받아서 들어오고. 저 규칙도 세고 그냥 막 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는 소년원 갔다 온 애들이나 성매매한... 정말 분위기가 참 그래요.

사례 7은 단기쉼터의 청소년들은 중장기쉼터 청소년들과 달리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결심이 아직 서지 않은 입소자가 대다수여서 같이 지내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중장기나 단기를 막론하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18: 시설이나 그런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생활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관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규율 및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있었다. 외박이나 통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면접 참여자 각자의 개인적인 불만은 매우 다양해서 공통점을 추출하기는 어려웠다. 외박이나 통금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규율을 통해서 통제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집단 활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기관 측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렴하여 각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주목하여 이러한 점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만족스럽다고 평가받는 부분을 확충하여 좀 더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2) 학업

① 현재 학업 상황

면접 참여자들의 학력 분포는 중학교 재학 3명, 고등학교 재학 10명,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8명, 대학 재학 2명, 학교 자퇴 7명이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면접 참여자에게 학교생활을 질문하였을 때 답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별 관심 없음'과 '공부의 어려움'이었다.

사례1 : 공부가 안 돼요. 할 생각이 안 들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사례15: 저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아직은 확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공부 그런 쪽으로는. 원래 어릴 때 공부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할머니랑 살다보니까.

사례22: 저는 학교 다니면서 딱히 부모님도 공부에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도 그렇고 해서 따로 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있었어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학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따라

서 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면접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공부에 별 다른 관심이 없거나 학습 부족으로 인하여 '학생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의 가정은 면접 참여자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거나 학교생활 자체에 별 다른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학교 측에서도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별로 가지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제대로 탐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의 입장에서 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례15: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방황 할 시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싶고. 그런 시기였는데 담임 선생님을 너무 거친 분을 만나서. 여자 분이었는데 분명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은데 나만 잡는 느낌. 그런 느낌도 너무 심했고. 확실히 중학교 때부터 친구랑 노는 게 재미있는 걸 알아버려서.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어려움, 교사의 지원 부재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면접 참여자들 중 9명(30%)이 현재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퇴나 퇴학을 했다 하더라도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을 뿐 학업 수행의 의지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25: 대학교까지 가고 싶어요. 의류디자인하고 싶어 가지고.
면접자: 의류디자인이면 옷 디자인 말하는 거죠? 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례25: 어릴 때부터 미술을 많이 배워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는 안 다니고

싶어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하기 싫어요. 1:1로 검정고시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1:1로 검정고시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례25: 학교 샘들보다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검정고시 합격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학교 샘들은 약간 이기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하는 것.

가정 밖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학교의 규율 및 통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업 수행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학교 밖에서나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례 25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학교 밖) 선생님'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학교 밖에서 기관 선생님이 1:1로 학업 수행에 도움을 주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다("학교 샘들보다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학업 수행에 있어서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력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및 고졸의 학력을 취득하였다(사례 20, 23, 24). 또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면접 참여자들도 최소한 '고졸'학력은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 제고 및 학업 지속을 위해서 학교 이외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맺기 어려운 점도 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힘든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또래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가족을 떠나 기관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쉼터에서 만나는 또래들과 달리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사례10: 쉼터에 있는 걸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담임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좀 크게. 그럴 때 불편하기도 하고.

이들은 자신이 기관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숨기고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으나 그 상황이 이들의 심리발달과 교우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무심한 교사들의 언급이나 행동은 이들이 교우 관계를 맺는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근데 담임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좀 크게. 그럴 때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교사나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 학업 지속 의지

앞으로 학업을 지속할 의지와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30명 중 10명(33.3%)이 "자신은 대학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례 9처럼 '지금 공부 하는 게 싫고 성인이 돼서도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싫어서'라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할 것이며 자신이 살아가는데 학력이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접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례 1: 취업 쪽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자: 대학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있고?
사례 1: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사례 2: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냥 일찍 일하기도 쉽고 빨리 돈 벌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대학을 가려는 생각이 없는 면접 참여자들도 모두 중·고등학교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고졸 학력까지는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학력은 고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취업을 빨리 하여 자기 나름의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자립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 진학이 불필요하고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비교적 확고한 반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 이는 대학 진학에 뜻이 없고 취업 의지가 분명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가고 싶지만 학비조달의 문제 때문에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는 경우나 현재 대학 재학 중이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들은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속의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사례에 따라서는 국가장학금 등으로 학비를 해결하더라도 기타 생활비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즉 학업을 하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진학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학업 지속이 힘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갈 생각이 있다고는 하나 학업 수행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고 상황에 따라 그냥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가고' 등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 내 학력 중시 풍토를 알고 있어서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수행할 의지 및 동기는 별로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24: (학력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많이 필요해요. 요즘 다 학력을 보니까. 회사가도 중졸이면 다 안 받아줄 거잖아요. (중략)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용사. 엄마랑 같이 일하려고요.

(중략)

면접자: 보니까 미용사 준비하는 친구랑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대학을 꼭 안 가도 되더라고요. 미용사 쪽은. 그런데도 본인은 왜 대학에 가고 싶어요?

사례24: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보고 싶은 거죠.

면접자: 같은 말 아니에요?

사례24: 한번 가보고 싶은 건데 굳이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면접자: 미용사가 되기 위한 진로교육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사례24: 아니요.

사례 24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학 진학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례 24는 실제로 대학 진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취업 쪽으로도 특별한 생각과 계획이 없다. 사실 청소년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사례 24는 진로 탐색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기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발달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업 정체성을 포함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면 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10대 청소년기는 대학 준비기로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즉 학생으로서의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의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진로를 탐색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학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진학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취업으로도 확실히 진로를 정하지 않은 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 이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향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화 과정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사회화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향후 어떻게 진로를 정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축적되어 그 결과가 가시적이 된다면 그 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적 자립 관련 준비

① 근로 경험

○ 일의 의미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받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들이 일을 시작한 것은 대부분 15세 이상이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일자리를 구하거나 경험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면접 참여자들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한 일은 '전단지 붙이기'였는데 이들은 일의 강도와 보수 면에서 매우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외에 이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뷔페식당 밑 준비, 패스트푸드점 근무, 편의점, 베이커리, 공장, 미용실, 물류센터, 식당 서빙, 식당 주방보조, 택배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는 공고를 보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등이었다. 면접 참여자들이 일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친구나 선배를 언급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선생님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신체적 노동은 필요하지만 숙련된 경험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직으로 저임금의 일이었다. 그 결과 면접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직종을 바꾸면서 단기적으로만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옮기고 다시 그만 둔 청소년의 이야기이다.

사례 7: 이모님들이 틱틱대고 알려주고. 처음에 설거지 많이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설거지가 너무 많은 거지. 뜨거운 물에 해야 하고. 맨날 그만큼 손 상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베이커리 그만두고.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공장 한 번 뛰고 나서 공장은 아닌 것 같다. 면접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만큼 경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데도 많고... (중략) 나중에 (베이커리) 다시 할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돈 먼저 벌고 싶고. 그래서 돈을 벌면서 저축도 조금씩 하면서 그러면서 빵 쪽으로 갈까, 다시.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담당 업무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그 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은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된다. 더구나 보수나 근로 환경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사례 7 인터뷰 참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력을 인정받기도 힘들고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좋은 직종으로 옮기기도 힘들어 계속해서 저임금 비숙련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구직활동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선호되는 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는데 이는 다른 일에 비해서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고 인간관계 및 위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선호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재미나 보람을 찾거나 진로 탐색과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일하는 목적에 대한 답변은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한 것이고, 일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이 생애발달 단계 상 일의 의미를 성찰하고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거나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면접 참여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의 근무 환경은 결코 좋은 편이라 할 수 없다. 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할 수 있는 일의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일을 장시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100] 위반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사례26: 그 때 9시에 가 가지고 8시까지 했는데 4만원 밖에 안 줬어요. 점심도 10분 먹고 계속 서 있었어요.
면접자: 9시에 가서 8시까지 했는데 4만원을 받았다고요? 그 당시 시급이 얼마였어요?
사례26: 모르겠어요. 최저시급이라고 했는데 4만 얼마 주던데.
면접자: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뭐라 안했어요? 그렇게 돈 받아도 어디에 신고하지 않았네요. 신고했으면 일한 만큼 받았을 텐데.
사례26: 그 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사례 26은 야간 뿐 아니라 주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야간, 주휴일 근무 및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 기준법의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때 당장 돈이 필요해서'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로서의 연령적 한계와 취약한 경제 상황은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해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들은 일을 할 때 사용자가 대기업(패스트

100) 청소년의 근로관련 법령 중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근로 가능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푸드, 편의점)일 때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소규모 사업장(식당, 베이커리, pc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더구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했던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청소년 고용이 많은 직종은 그 직종의 성격상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세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4대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다. 면접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4대 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4대 보험 자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4대 보험에 들지 않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자: 일할 때에 계약서 같은 거는 작성은 했어요?
사례23: 여기는 안 했어요.
면접자: 왜 안 해요?
사례23: 사장님은 (하자고 하면) 할 겁니다, 4대 보험하고 다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 하고 저하고 반반해 가지고 월급에서 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면접자: 그래서 4대 보험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구나?
사례23: 예.

4대 보험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례 23처럼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자신도 일정 부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취약한 경제상황에서 경제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편 시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18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관철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해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사례18: 주급을 받는 때는 딜레이가 되는. 생활비를 해야 하는데.
면접자: 내가 달라고 해야 하잖아요?
사례18: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어려웠어요.

사례 18뿐 아니라 많은 면접 참여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서의 불리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두려워 더더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소 중 절반 이상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8.3.9.).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52.1%,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청소년 고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및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한겨레, 2017.11.5.)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 결과를 보면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 비율이 2017년 8월 기준 49.8%로 2013년(24.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청년일보, 2017.11.6.). 이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적발은 400건으로 57.6%, 임금 미지급 적발은 28건(4.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쳤다(청년일보, 2017.11.6.). 그러므로 앞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후 재발이 방지되었는가를 조사하는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 보호 의식을 사업장에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근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부분이 근로 환경 및 임금 등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요청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별로 피해 청소년이 원하면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18.3.9.).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엇이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숙지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례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16의 경우는 성매매 경험자로 성매매가 다른 일에 비해 편하고 보수도 높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16: 식당 같은 데는 안 해봤고요. 불법적인 일은 했어요. 성매매요. 작년 3월 달 이어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그때 저는 성매매도 몰랐고요. 언니가 있단 말이에요. 언니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때 앱을 몰랐고요. 열심히 뭘 해요. 그랬다가 제가 뭐하냐고 그랬더니 조건 만남 그런 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자: 어쨌든 그 일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 일은?

사례16: 아예 안 했어요. 편의점 알바 하루 했다. 대타로.

면접자: 그런데 다른 알바 같은 거 해볼 생각 안 했어요? 밖에서 생각하면 돈이 필요했을 텐데?

사례16: 돈 버는 걸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그 개인의 잘못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고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비해 장시간 힘들게 일하는 청소년 고용 직종의 특성은 부분적이나마 이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그

특성상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세고, 그러한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에 있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8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례8: 패스트푸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미성년자가 제일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리로 가서 일하고. 남자 아이들은 배달도 하고 다하는데 여자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한번은 어떤 언니가 전단지 알바 갔다 온다고 했어요. 갔는데 어떤 흰색 차에 타라고 했대요. 언니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와서 얘기 했는데 (흰 차를) 탔으면 어디로 갔을지.

우리 사회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근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는 이들의 구직 및 근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앞에서 언급한 사례 16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이며 임신을 한 지금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취업 및 진로 탐색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 노출에 대한 위험이 크고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그만큼 근로 현장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취업 및 근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성 인지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초 수급을 받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사례 15는 주거수당을 포함, 50~60만원의 기초수급을 받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15: 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맨날 맨날 노니까 뭔가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가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직업훈련 학원을 다녔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연계되어 있던 건데 기초수급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기본수당을 준대요. 기초수급을 받으니까 기본수당을 못 준다는 거예요. 다닐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해지는 느낌.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때는 알바도 하면 안 되는 줄 몰랐거든요. 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기초수급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사장님이. 기초수급 때문에.

면접자: 기초수급은 알바해도 못 받아요?

사례15: 그거는 알바를 하고 나서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기초수급이 끊긴다고 들었어요. (중략) 가장 확실한 건 기초수급이랑 알바비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알바가 진짜 괜찮지 않고서는, 기초수급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내가 알바 할 이유가 많지 않은 거네요?

사례15: 지금은 알바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기초수급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있지요.

사례 15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다가 기초 수급비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도 기초수급과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기초수급을 받는 것이 이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적인 일의 경험을 쌓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복지의 혜택으로 인하여 일을 통한 자립의지나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복지 혜택 제공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잠시 논외로 하고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과 관련한 주제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만약 이들이 하는 일의 금전적 보상이 기초수급 액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근무 환경이 양호하다면 이들의 선택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초수급을 받기보다는 일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진로를 준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기초수급관련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최선인지가 충분히 숙지된 후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은 경우도 드물게 발견되었다. 사례 1이 그러한 경우이다. 사례 1은 16세이지만, 이미 '요리'쪽으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진로를 정한 상태이다. 쉼터에서 지원하는 요리 관련 학원을 1년 동안 다녔으며 아르바이트도 주방 보조 등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요리 관련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며 틈틈이 쉼터에서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한다.

면접자: 소질이 있나 보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요리사 자격증 같은 것 따야 되나? 딸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어떤 것?
사례 1: 한식.
면접자: 한식만 하나 딸 거예요?
사례 1: 한식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고.
면접자: 보통 몇 개 정도 있어요?
사례 1: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복어.
면접자: 진짜 관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자격증 따려면 학원 같은 것 다녀야 되잖아요?
사례 1: 학원 안 다니고 저희 밥 해주시는 이모님한테 배워도 돼 가지고.
면접자: 이모님이 자격증이 계세요?
사례 1: 예.
면접자: 보통 조리학원 같은 것 가면 얼마 정도 들어요?
사례 1: 50-60만원. 몇 회 해 가지고 되게 비싸요.
면접자: 만약에 그걸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기꺼이 내가 받아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례 1: 지원해 주시면 해야지요.
면접자: 지금 한식은 이모님한테 배워서 해도 되지만 나중에 혹시 아까 말한 일식, 중식,

복어 이런 것들은 또 따야 되는데.
사례 1: 그런 건 또 따로 배워야 돼요.
면접자: 내가 돈 벌어서 배운다 또는 그걸 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사례 1: 예.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좀 견딜 수는 있으니까. 조금씩.

사례 1은 요리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기술과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층 심화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례 30도 사례 1처럼 자신의 진로를 '랩'으로 정하고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원래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었으나 실용음악과에 가면 랩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에 갈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쳐다도 안 보던'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는 한편, 랩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과 30처럼 어느 정도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정한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심화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확충된다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현재 경제 상태

○ 저축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저축 상황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빚/신용 불량 경험이 있는가이다. 먼저 저축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직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13명으로 43%에 달했다.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들어오는 돈이 애초에 너무 적어서

저축할 만한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에 '사고를 쳐서 그 변상에 다 들어간다' 거나 '가족들에게 줘서 (내겐)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할 형편이 안 된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소비가 심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사례26: 알바해서 저축. 그거 받고 있거든요. 사모님이 추천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거 제가 모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쓰고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쓰시고.
면접자: 1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사례26: 잘 모르겠어요. 장학금인가? 할머니가 쓰고 있어요. 화나기는 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거 모으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 제가 손녀이기는 한데 약간 좀 얻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면접자: 지난 주에 (용돈) 받는 것 모아 놓는 거에요?
사례12: 오늘 쓸 것 같은데. 되게 밖에다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례25: 남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면접자: 30만원은 어디에 써요? 받으면 얼마 써요?
사례25: 거의 다 담배 값인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면접자: 나머지 20만원은 어디에 써요?
면접자: 주말마다 피씨방 가고 가끔 축구 볼 때 치킨도 뿜빠이 해서 시켜 먹고.

이들은 주중에는 시설에서 통금 시간과 외박 금지 등 제한된 생활을 하다 주말에 통제가 풀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용돈 쓰는 것으로 풀고 있었다. 시설 내 규율에 대한 불만을 주말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면서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면서도 이들은 희미하게나마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비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실제로 시설의 선생님들이 이들의 용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는 소비생활과 저축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들이 저축을 하는 등 규모 있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게끔 도와주는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도움을 받아 통장을 만들고 선생님에게 관리를 맡기는 사례도 여럿(사례 12, 14, 15, 16, 21, 22) 있었다.

사례22: 저는 쉼터에서 지내니까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서. 쉼터 들어가면 **은행에서 연계가 돼서 거기서 통장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나중에 자립통장이랑 용돈통장 만들어 가지고 자립통장으로 돈 다 모으고 용돈 통장으로 한 달 용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로 쓰는 거에요. (중략) (용돈 통장의 돈으로) 뭘 해요?
사례22: 놀러 가는 데 한 번 쓰면 출혈이 커요.
면접자: 그 나머지는 자립통장으로 저축하고 있는 것? 이 저축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례22: 들어오면서.
면접자: 이 자립 통장은 뭐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사례22: 나중에 여기서 어쨌든 나가야 하니까 그 때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고 필요한 것 생활용품 살 때 쓸 수도 있고 그러려고.

사례 22는 선생님이 자신의 돈을 용돈통장과 자립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돈의 씀씀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선생님이 관리하는 시스템 하에서 몇몇 면접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쓰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재정 관리관련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여기에서 더 나아가 통장을 개설 한 후 스스로 돈을 관리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15: 디딤돌 통장이라고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모으고 있지요. 50만원 안에서 한 달에 넣으면 나라에서 4만원인가 보태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개념이고 20살인가 19살인가 되면 찾을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면접자: 그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례15: 그거는 어릴 때에 중학교 들어갈 때 만들었는데 할머니도 그렇고 원래 가정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여기 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와서 알게 됐지요.

면접자: 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해 봤어요?
사례15: 대학 갈 때 써야지요.

사례 15나 사례 22는 재정적 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꾸려갈 있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었다.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각자 자신의 경제생활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자립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빚·신용불량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빚·신용불량' 경험이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소액 대출이다. 소액 대출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씀씀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카드 값을 연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빚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친구 등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 대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업자에게 빌린다. 이런 개인업자는 '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라는 호칭이 암시하듯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개인업자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소개 받게 된다.

사례25: 형들한테 빌려서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면접자: 형들한테 빌리는데 이자를 먹여요? 친한 형들 아니고?
사례25: 생판 모르는 형들.
면접자: 한 번 빌리면 얼마 정도 빌리는데요?
사례25: 30만원 빌리면 60만원 이렇게 줄 때 있다고.
면접자: 60만원까지 이자가 된다고요?
사례25: 연체 이자까지 해가지고 계속 올려요. 날짜 지날 때 마다.
면접자: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사례25: 여러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연락 오는 것. 밖에도 잘 못 돌아다니고.

면접자: 찾아오고 그랬어요?

사례25: 예.

면접자: 그 사람들이 돈 만지는 사람들이면, 전문적인 사람들이면 60만원은 적은 액수일 텐데?

사례25: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소하게 빌려주는. 자기들이 토토해 가지고 걷은 돈으로 돈 돌리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들이 빚을 진 경우에 원금은 50~1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날짜에 갚지 못하고 연체되거나 연체된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면접자: 옛날에 혹시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사례15: 그렇죠.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애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언니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그게 기간에 줬는데 못 갚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중략) 확실히 애들 사이에서 소액대출이라고 많이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들은 급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빌리고 엄청 쪼아대 가지고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면접자: 협박하기도 하고?

사례15: 페이스 북이라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욕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확실히 불법적인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건. 그러니까 뭔가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애들도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도 않고 이게 신고를 해 봤자 거기 가서 진술서 쓰고 나오는 게 끝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별로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막아내다가 결국 그게 터지는 거예요.

면접자: 이자가 자꾸 커지니까 갚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나 봐요.

사례15: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쪼아대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쪽으로 막고 이쪽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막히니까.

면접자: 주변에 그런 친구 봤어요?

사례15: 그렇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친구도 봤고. 그 부분이 애들 사이에서 심각하기는 하죠.

미성년자의 경우 빌리는 돈의 액수도 크지 않고, 또한 돈을 못 갚는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대출업체와 연관되기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로 활동하는 소액 대출업자와 연관되는 일이 많다. 소액 대출업자는

비공식적으로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돈을 빌린 청소년들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개인업자로부터의 협박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막을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빚은 점점 커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례 25는 부모가 원금을 갚아 줬지만 사례 15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사례 15가 입소한 센터의 선생님이 개입하여 돈을 빌려 준 소액업자(사례 15는 친구라고 지칭)에게 연락하여, 시일을 두고 갚도록 주선해 주었다. 사례 15는 자신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알려 주었고 제공받은 기초수급비로 돈을 갚을 수 있었다. 사례 15, 25 모두 지금은 빚을 해결한 상태이다. 사례 15와 25는 모두 부모 또는 센터 선생님 등 개인의 도움을 통해 빚을 해결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경찰은 청소년들의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사례 15와 25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빚을 지거나 빚으로 인해 협박이나 위협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 때 소액 대출은 손쉽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소액 대출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자립

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면접 참여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취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내일 배움 카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 학교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접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참여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진로상담, 근로자 인권교육, 제과제빵, 요리, 바리스타, 미용, 자동차 정비, 원예, 건축·설계 등으로 다양하였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재밌었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음에서는 이를 열거하여 향후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강사의 강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직업 체험'을 해 볼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었다.

면접자: 그러면 사회복지나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사례14: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겠지요.
면접자: 어떤 일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14: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접자: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 관련 일을 해본 적은 없고요?
사례14: 예. 봉사만.
면접자: 봉사는 어떤 것 해봤어요?
사례14: 요양원 가는 것하고 유치원.
면접자: 그 봉사는 누가 연결시켜줘서 하게 됐어요?
사례14: 제가 다 전화해봐서 찾았어요.

사례 14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나 유아교육 교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 직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여성 면접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직종에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할 뿐 실제 이들 직종의 업무와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는 매우 적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향후 청소년들이 해당 직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와 수행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직종들은 대학 진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설 내 청소년 중에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대학 진학(희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제공도 이들이 원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취업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제도 등 보조금을 받으면서 직업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청 경로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직무에 대한) 최신 정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훈련비가 적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 중 정책제안 도출을 위해 '훈련비가 적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훈련비가 적다고 느끼는 것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은 고기집 서빙과 같은 단순 업무이다. 참여자들은 1년 이상 특정 직무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들이면서 소득 감소를 감내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받는 편이 향후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소개하는 직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교육의 경우 수강생 및 배출 인력이 너무 많아서 자격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시장에서 이미 포화상태가 된 직종은 진출해 봐도 별 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시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직업의 전망을 향후 한국 사회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변화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면접 참여자 중에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12: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있는데... 물리치료사. 그런 거나 버스기사. 버스기사 그거는 쉼터 선생님 지인 분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 옆에서 구경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면접자: 직업체험이네요?
사례12: 네. 그런 직업들을 버스기사는 버스 탈 때마다 볼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면접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궁금증이 있네요?
사례12: 예. 물리치료사는 관심이 있는데.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관련 복지나 사업에의 수요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도 관절염, 낙상 등 노인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그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한국사회의 방향과 적절히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리치료사-고령화 사회'는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다변화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례에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너무 옛날 것이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직무 수행 방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례29: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이다 보니까 상담을 원할 때에 가는데 왕복 2시간 반이 걸려서 시간 때문에 잘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면접자: 비슷한 기관이 ○○구 근처에는 없어요?
사례29: 예.

사례 29는 해당 지역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거주지로부터 교육·훈련 장소로

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거주자들은 그만큼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적 한계는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시설·기관 자체와도 관련을 가진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편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서 해당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장기간 거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생활 개선 및 자립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관련 시설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녀가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취업관련 교육·훈련 및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참여자 중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례가 3사례나 되었다. 여성 면접 참여자 16사례 중 3사례로 18.8%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들은 아이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다. 사례 14는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줬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취업 준비에 커다란 난관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였다. 한편 사례 16은 현재 임신 8개월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여건상 무리라고 말하였다. 사례 14와는 달리 사례 16은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취업을 하여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개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모는 대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모가

일반적인데 청소년 비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혼모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사회적 편견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성될 필요가 있다.

② 자립에 대한 생각과 준비

'자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나온 답변은 '혼자서 앞가림 할 수 있는 것', '타인의 도움 없이 사는 것',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경제생활을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례 16은 자립을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대조를 이룬다.

면접자: 내가 생각하는 자립은 뭐에요? 자립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자립 같아요?
사례16: 마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면접자: 어떤?
면접자: 어떤 곳에서 자립을 하든지 동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네.

사례 16의 이야기는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대개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서, 스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이 '자립' 하더라도 주변 이웃들과 사회적 교류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질문하였을 때 공통적인 답변은 '거주, 수입, 취업'이었다. 그 외에도 '학력'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 '헝그리 정신'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자립에서 경제적 자립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립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자신은 부모님과 계속해서 살 것'이라는 답변에서부터 '지금 당장'이라는 답변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답변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 중 하나는 면접 참여자의 연령이 15세에서 23세까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립을 그다지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고 혼자서 살려는 마음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크다. 사례 25는 15세로 자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의지 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막상 자신은 아직 자립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으며 부모님과 같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면접자: 이러나 저러나 뭘 해도 다 돈이네요. 어쨌든 본인에게 경제력이 생기면 자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25: 예.
면접자: 그런 점에서 지금 본인은 자립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사례25: 아니요.
면접자: 언제쯤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25: 성인되면.
면접자: 지금 당장 자립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례25: 없어요.
면접자: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사례25: 아니요.
면접자: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사례25: 잘 모르겠어요.
면접자: 받고 싶은 지원 있어요? 자립하기 위해서?
사례25: 자립을 안 할 거예요.
면접자: 나이 계속 들더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사례25: 예.
면접자: 그게 하고 싶어요?
사례25: 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접 참여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 자립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을 뿐더러 자립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면접 참여자들이 자립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립에 대해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립의 시기를 먼 미래로 여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막연하게 '20세가 되면 자립할 것이다'라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 들어가면' 등으로 답변하는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과 자립에 대해 별다르게 준비를 하지 않는 태도는 20세 이상의 면접 참여자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 막연하게 자립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모습은 다음의 사례 24의 예에서 잘 나타나 있다.

면접자: 그러면 자립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례24: 뭔지 몰라요.
면접자: 스스로 선다?
사례24: 뭔지 모르겠어요.
면접자: 어찌 됐든 본인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남에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사례24: 딱히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면접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겠네요? 자립하기 위해서?
사례24: 예.
면접자: 자립할 계획도 없어요?
사례24: 예.
면접자: 받고 싶은 지원 같은 것도 없고요?
사례24: 20살 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립을 지금 생각하면 바쁠 게 없잖아요.

사례 24는 현재 15세이다. 따라서 자립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 할 뿐이며 구체적으로 준비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립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례 24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은 청소년에게 가정 밖 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자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진학·진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신이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충분히 탐색하도

록 하는 것이 당장의 자립 관련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연령이 높은, 특히 20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립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20세 전후의 연령층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101)]

1) 설문조사

(1) 가정생활 및 가정 밖 생활의 동기 및 실태

가정 밖 청소년들은 평균 15.6세에 처음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부분(73.2%)은 2회 이상, 약 40%는 일 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하였다. 또한 일시쉼터 청소년의 47.8%가 일 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 밖 생활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는 역시 가족 간 갈등과 가정 폭력이었다. 실제로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정 내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밖 생활 기간과 부모와의 불화 및 가정 내 학대 경험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 밖 청소년들 중 향후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응답이 19.6%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73.7%)의 청소년들은 가정을 나온 후 최소 두 군데 이상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가출팸을 경험한 경우도 17.9%였다. 특히 일시쉼터 청소년들에게서 가출팸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시쉼터에서의 장기간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들을 단기 및 중장기쉼터로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를 비롯한 지원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났고 보호시설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는

101) 3절 소결 및 시사점 중 1)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김희진 연구위원과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2) 면접조사는 공동연구진인 김은정 교수가 집필하였다.

74%에 달하였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 시설/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시설/서비스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도움 정도가 큼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2) 자신의 심리·사회·정서 인식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만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분노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계획, 건강상태, 사회적 역량,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그 비율이 높아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내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높은 반면 자존감이나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3) 학업 관련 현황 및 계획

전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재학률은 53.1%, 학업중단율은 29.8%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은 17.0%였다. 이들의 재학률은 가정 밖 생활이 길어질수록,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보다는 일시쉼터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낮았다. 반대로 학업중단율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인 경우에, 그리고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경우에 낮았다. 이와 더불어 비재학생 중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청소년은 63.4%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가정 밖 생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회복지원시설이나 단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검정고시 준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준비율을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가정 밖 생활 기간과 학업중단율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가정 밖 생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학업을 중단하였더라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밖 생활이 반드시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재학률이 높고 학업중단율이 낮은 반면 일시쉼터 청소년의 재학률 및 검정고시 준비율이 낮다는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별 간 비교에서는 재학률이나 검정고시 준비율, 희망교육수준 등이 남자에 비해 여자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학업 지원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여자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4) 근로 경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고 비재학중인 경우,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 경험률이 높았다. 이들이 주로 경험한 근로는 서빙을 비롯하여 비숙련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으로 38.6%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근로경험이 향후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중 54.8%가 단순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35%~44%의 청소년들은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거나 낮은 보수, 기술이나 자격, 학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1%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이나 탈법 일자리를 경험하기도 하며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을 경험하는 등의 곤란을 겪기도 한다. 특히 가정 밖 생활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와 부모 대신 보호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성인의 지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진로준비 실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자신의 능력(26.6%)과 적성(23.3%), 경제적 수입(16.3%), 안정성(15.6%), 직업의 장래성(7.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자료와의 비교결과, 가정 밖 청소년은 2차 자료의 일반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하였으나,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가정 밖 생활의 경제적 문제와 불안정성으로 대체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진로관련 활동 참여경험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54.9%가 경험하였으며, 학교재학 중인 청소년(60.4%)의 참여 경험이 비재학(51.2%)이거나 졸업(48.4%)한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이 다른 시설유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경험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36.5%가 직업훈련을 경험했으며,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인 청소년,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생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에게서 더 직업훈련을 많이 경험했다. 응답자의 43.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직업훈련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장기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보다 직업관련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관련 활동 경험과 직업훈련 경험은 2차 자료의 청소년들보다 두 세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현재 생활시설을 통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자립에 당면하여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은 특히 진로와 관련된 정보 습득과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더 받고 싶어 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래의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4.6%가 긍정응답을 보여 2차 자료에서의 81.6%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약 50%가 향후 3년 이내에 취업할 계획이었는데, 이 수치는 2차 자료의 청소년들보다(40.4%)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비율은 58.4%였는데 이 역시 2차 자료의 청소년(42.0%)들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2차 자료의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보다 진로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당수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미래 희망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덜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직업은 예술/디자인/방송계통, 이·미용 분야, 요리사/바리스타, 군인/경찰/공무원, 상담/심리/사회복지 분야, 간호사/간호조무사, 학교교사/보육교사 등이 전체 64.1%로 나타나 직업훈련 및 자격 취득 기회 제공시 청소년들의 이러한 희망 직업과 향후 전망 직업 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6)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라고 인식

하는 정도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각각 92%, 90.5%, 87.6%, 86.7%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에 대해서는 각각 73.4%, 74.9%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가정 밖 생활기간에 길수록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시기를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독립하는 시기이다', '자립하는 시기이다'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7) 취업·자립지원 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2.8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가정 밖 생활 이후 계획에서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의지가 다른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립의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 중 '목표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85.9%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61.6%로 나타나 이들의 자립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의 필요성 보여준다. 또한 자립의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조명해 주고 있다.

취업관련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배움카드제도, 일학습병행제, 기타 정부지원 등)을 받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중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경험률이 20.7%로 가장 높았다. 취업관련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도움정도가 전반적으로 70%로 긍정적이었으나 일학습병행제와 내일이룸학교는 각각 57.3%, 55.8%로 다른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진로계획과 희망을 고려한 취업관련 지원의 접근성과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정도를 보면 일반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지원 경험률이 각각 60.3%, 60.1%로 가장 많았고 살림 및 조리, 청소와 세탁 등에 대한 생활교육이 54.4%,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를 포함한 진로지도가 54.1%였다. 그러나 취업 후 사후관리(23.2%), 취업준비 지원(29.5%) 등은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였는데, 직업훈련 지원(35.8%), 취업정보 제공(32.7%) 등과 더불어 직업/취업 관련 지원 경험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들의 향후 경제적 자립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전제로 직업/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시설유형 중 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의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88.4%),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85.7%), 학비 지원(85.3%) 등의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움정도가 낮은 지원 항목은 지역사회 자원이용 교육으로 71.9%, 취업 후 사후관리 75.1% 등이었다. 자립관련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보면,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83.0%,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이용 교육(53.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그리고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립지원 욕구가 더 많았다. 또한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생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실제 자립에 당면하여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다른 집단의 청소년보다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면접조사

본 연구의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 내 보호자의 부재 및 무관심 그리고 폭력 및 방임 등 양육 체계의 부재를 통해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에게 가정은 보호와 지원의 제공처가 아닌 부정적이고 피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의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업수행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적응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부적응 생활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이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며 취업 쪽으로도 특별한 생각과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소극적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일을 통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지만 청소년이란 신분적 한계로 인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고 돈벌이가 되는 일을 찾다보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벌이에 맞게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빚을 대신 지기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숙식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의 존재는 면접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기여한다. 기관생활에 대한 일부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이들이 기관생활에 적절히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심리 상담, 빚 청산과 저축 등을 통한 재정 관리, 학업 지도,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종사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를 대신해 면접 참여자들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단체생활을 통해 기관에서 맺는 또래

관계가 학교에서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또래관계를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의 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V-25와 같다. 이 그림은 Strauss와 Cobin(1990)의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가 서로 인과 관계로 맺어지거나 상호 연결되면서 분석 결과 간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trauss, Cobin, 1990). 인과적 조건으로는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중심현상은 기관생활, 중재적 조건은 기관의 지원 및 지지, 상호작용은 자립을 위한 시도, 그리고 결과는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이다. 물론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가는 것도, 또 이 단계를 거친다고 모두가 자립에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각 단계마다 청소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있으며 이에 부딪혀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자립의 의지가 꺾기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은 이들의 자립 과정 각 단계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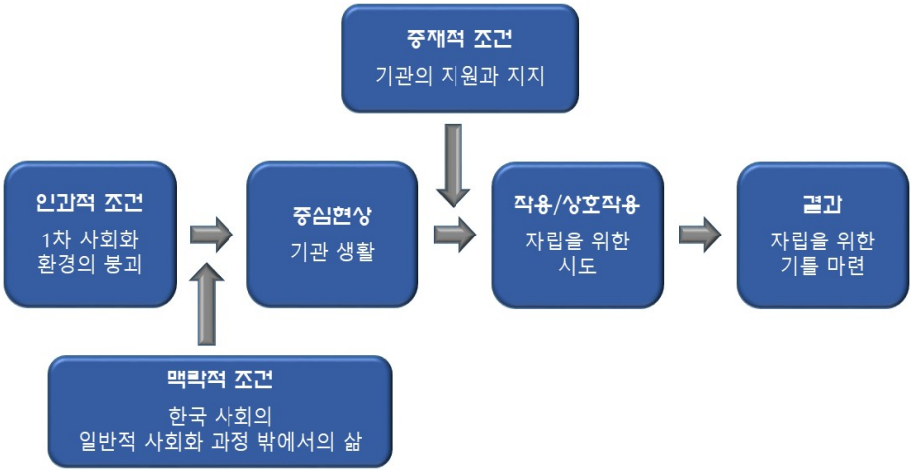


그림 Ⅴ-25. 자립 관련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1) 1차 사회화 과정의 붕괴 및 기관 생활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

가정 내 보호자의 부재 및 무관심 그리고 폭력 및 방임으로 인한 양육 체계의 부재는 면접 참여자들을 가정 밖으로 나오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가정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숙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의 존재는 면접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관생활에 대한 면접 참여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기관이 청소년들의 다음 단계의 생애 발달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관 만족도가 높은 주요 이유는 기관에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상담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과 기관 내 대인관계(종사자와의 관계, 또래 관계)이다. 기관의 지도 교사(시설 종사자)는 면접 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통해 훈육 및 진로 지도를 한다. 훈육 및 지도의 범위는 심리상담 뿐 아니라 학업 지도, 소비생활 통제 및 저축의 장려, 그리고 진로 탐색에 이른다. 이처럼 교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를 대신해 면접 참여자

들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맺는 또래 관계도 학교에서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또래관계를 대체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갈등하거나 협력하면서 유대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양육체계의 부재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안적 양육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아직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폭력·방임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정 불화나 폭력·방임, 양육체계의 부재 등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청소년들은 가정 내 피해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십대 청소년들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연령 이외에도 성별, 학업 수준, 진로발달단계, 심리상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 인구의 다양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 소재 시설/기관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 거주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 지방 소재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 모색을 위한 취업 활로를 개척하기도 힘들다. 또한 기관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 소재 기관의 확충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반화된 사회화 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곧 학생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정의 지원을 받으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외의 사회화 과정, 즉 진학 대신 취업을 하거나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

첫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학업 수행에서의 어려움, 규율 및 통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이 쉽지 않음을 호소한다.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어려움, 교사의 지원 부재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와 기관 관계자 간의 연계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 또래관계에서 가정이 아닌 시설 거주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학교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 의지가 실제적인 학업

수행 및 진학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지원시설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지도는 학교수업과 달리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업지도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학업지도나 동기부여 방법이 숙련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지도 및 동기부여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습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연계하여 지도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향후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 의지가 분명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취업 의지는 분명하지만 취업과 관련 준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실제적으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인터뷰 분석 결과, 사례에 따라서는 국가장학금 등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비를 해결하더라도 생활비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진학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학업 지속이 힘든 청소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이나 양질의 아르바이트 알선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취업 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시사점

첫째, 직업 관련 프로그램 경험 및 효과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해당 직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와 수행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의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체험의 기회가 충분치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시설 내 청소년들 중에는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면서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직종들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들은 대학 진학과 연계되어 있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는 대학 진학(희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직업의 취업 전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일례로 고령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산업 관련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중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최신 경향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와 달리 업무 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최신의 업무 내용 및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

(4) 청소년 근로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

첫째,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뿐 아니라 근로현장에 있으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요구를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의식을 사업장에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

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위반 업소 적발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인권 및 근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문제 제기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은 현재의 열악한 청소년 근로조건 및 환경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정정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센 청소년 직종의 특성상 취업현장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선호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나마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로 들어서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욕구를 염두에 두고 취업 준비 및 알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관련시설(예, 미혼모 보호시설) 연계와 자녀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성 인지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5) 자립관련 지원 및 자립 준비 정책을 위한 시사점

첫째, 청소년들 중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하여 취업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예방·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계급여 지급에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계급여 지원이라는 복지 정책이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계급여 지원을 받으면서도 일할 의욕을 갖고 구직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지원기간과 취업기간 사이에 중복기간을 두어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생계급여 지원 을 받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로 관련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 확충과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개별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확충된다면 서로 다른 진로 발달 수준을 가진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진로 탐색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미래를 위한 대비로써 '저축과 규모 있는 재정관리'는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 및 회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제활동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한다든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경제생활을 적절히 파악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및 편법 대출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액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행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소액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소액 대출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액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을 빌린 청소년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체계적인 절차를 상대해야 하는 개인소액 업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 행태도 감소시킬 수도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대출업을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⑹ 자립관련 정책의 방향

자립관련 정책은 청소년의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생애발달단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들이 가정 밖 시설에 있다고 하여 자립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며, 투여되는 지원 대비 가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취업관련 진로 뿐 아니라 진학·진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자신이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연령이 높은, 특히 20세 전후의 후기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립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취업관련 관심 및 수요를 조사하고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청소년 자립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개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은 자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변 이웃들과 사회적 교류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마을', 즉 '공동체'의 구축은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제Ⅵ장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4. 소결 및 시사점

Ⅵ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조사[102)]

1.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 변경 및 범위, 자립지원 내용과 선결조건, 그리고 정책과제 중요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과 이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와 현장 및 정책 전문가 중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가장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25명을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pool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용어와 범위, 자립지원 내용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1차 조사결과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립지원 영역과 해당정책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학계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전문 분야로 하는 학계 전문가 14명, 실천/현장 전문가 8명, 법과 정책분야 전문가

102) Ⅵ장의 1절 전문가 의견조사와 2절 현장종사자 설문조사는 김희진 연구위원, 3절은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4절은 김희진 연구위원과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3명[103]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전문분야와 종사경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학계와 실천, 또는 실천과 정책분야 등에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

표 Ⅵ-1. 전문가의견조사 참여자 현황

번호	ID	성별	전문분야/소속·직위	직위	종사경력
1	학계1	여	시설보호청소년 포함 아동복지관련 연구	교수	12년
2	학계2	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연구	교수(前정책연구기관 연구원)	10개월 (교수경력만)
3	학계3	여	가출청소년 포함 청소년복지관련 연구	정책연구기관 연구원	11년8개월
4	학계4	남	청소년교육관련 연구	교수	13년11개월
5	학계5	남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연구	교수	23년6개월
6	학계6	여	가출청소년관련 연구	교수	18년6개월
7	학계7	여	가출, 비행 등 위기청소년관련 연구	교수(前정책연구기관 연구위원)	4년8개월 (교수경력만)
8	학계8	여	가출청소년 포함 취약계층청소년관련 연구	교수	21년
9	학계9	남	청소년학 관련 연구	교수	20년
10	학계10	여	가출청소년 포함 취약계층 청소년관련 연구	교수(前정책연구기관 연구원)	22년5개월
11	학계11	여	가출청소년관련 연구	정책연구기관 연구원	4년7개월
12	학계12	여	가출청소년 포함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	교수	9년
13	학계13	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연구	교수	18년6개월
14	학계14	여	청소년관련 연구	교수	22년5개월
15	실천1	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쉼터소장	18년
16	실천2	남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부장	15년
17	실천3	여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소장	19년6개월
18	실천4	여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소장	11년4개월
19	실천5	남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부장	12년1개월
20	실천6	여	소년보호관련 협회	팀장	13년6개월
21	실천7	여	시설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단	前자립지원단장	25년
22	실천8	여	(현) 보호종료아동 대상 아동자립단	주임	5년
23	법/정책1	여	인권 및 아동청소년교육관련 법무법인	변호사	4년3개월
24	법/정책2	남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변호사	2년10개월
25	법/정책3	남	법무부 꿈키움센터	소장(前법무부사무관)	33년3개월

103) 관련 분야 정책전문가 섭외 시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법/정책 분야 전문가는 다른 분야보다 적은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Ⅵ-2. 응답자 성별, 연령 빈도

구 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9	36.0
	여자	16	64.0
연령	20대	5	20.0
	30대	9	36.0
	40대	9	36.0
	50대 이상	2	8.0

전체 응답자 25명 중 남자는 9명, 여자는 16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5명, 30대 9명, 40대 9명, 50대 이상은 2명이었다. 관련 분야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4년 5개월로 나타났고, 학계는 15년 2개월, 현장은 13년 5개월, 법/정책분야는 13년 4개월로 나타났다.

표 Ⅵ-3. 관련 분야 종사기간

전체	분야별		
	학계	현장	법·정책
14년 5개월	15년 2개월	13년 5개월	13년 4개월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용어와 그 범위,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내용과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및 기관에서의 필요 내용, 자립지원 시 경험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Ⅵ-4와 같으며,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4. 전문가 의견조사 (1차 조사) 내용

영역	조사 내용
'가정 밖' 청소년 용어와 그 범위	가출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 내용/기술, 지원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별 의견
자립지원관련 기관/시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시설/기관(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시설)에 필요한 내용

(1) 가정 밖 청소년 용어와 범위

① 가출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가출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을 줄이고 이들을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서 전향시키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학, 취약·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학계와 현장, 법·정책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전문가 25명 중 이러한 용어 변경에 대해 동의하거나 긍정적 의견을 보인 전문가는 20명이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5명 정도로 나타났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단순 가출 뿐 아니라 가정폭력, 방임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을 기존의 일탈이나 비행의 인상을 주는 '가출'이라는 용어로 인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낙인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정 '밖'이라는 공간과 상황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동안 '가출'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개인의 일탈 행위로 간주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았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강조되어 더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학대나 방임,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가출, 비행, 위기청소년 등으로 지칭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그동안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으로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서 제외/누락되었다면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은 이러한 낙인을 줄이고 정책대상으로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104], 결정적으로 법적 보호 토대를 마련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105].

그러나 용어 변경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용어 변경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와도 같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아동복지법의 지원을 받는 시설보호아동을 지칭하기도 하는 '가정외보호'와 용어상 유사함에 따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외보호(out-of-home child care)는 가정해체, 학대 및 방임 등으로 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국가가 부모역할을 대리(substitute)하는 공공아동복지서비스" (Kadushin & Martin, 1988; 강현아 외, 2012; 194에서 재인용)로 일반적으로 원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아동보육시설, 그룹홈, 위탁가

104) [실천 4] 전문가는 '가출'이란 단어 때문에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비행/문제청소년이라는 낙인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쉼터까지 집을 나온 아이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외부지원이나 후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변경에 따른 인식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법/정책3]전문가는 기존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명칭 변경되면서 사회전반의 거부감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가출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도 마찬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5)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적인 보호 토대 마련과 관련하여 [학계7] 전문가는 본인 의지에 의한 가출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부랑청소년 homeless, 유기청소년)으로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 밖' 용어가 더 적합하며, 다양한 원인에 따른 가정 밖 상황에 맞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등에서 보호 및 양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의 가정 내 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 역시 원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원 속에 성장, 생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외보호 청소년과 일정 부분 그 의미와 용어가 중복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 사용에는 동의하나 가출청소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을 양육시설보호 청소년과 기타 사유로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가출청소년 명칭은 그대로 두거나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이 된 원인에 초점을 두어 하위 분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명칭 변경 시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정 밖' 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출과 상황 상 동일하기 때문에 용어 변경에 따른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어변경에 따른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가정 밖'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모호함과 시설보호 청소년과의 불명확한 경계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에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만약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판단으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면 법과 정책, 실천 분야 모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여명의 전문가들은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면 용어 사용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일관성 있는 이해와 혼란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 실천 분야 모두에서 통일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법률에서만의 변경은 이를 해석하여 실천할 때 정책 및 현장에서의 적용에 차이가 있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단위사업의 특성이나 행정전달체계에서의 편의 등을 위해 가출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가

적절히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106] 청소년으로 통칭하여 관련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까지 일관성 있게 개입(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 변경 시 일련의 관련 제도와 정책 및 실천분야까지의 용어 일치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한 법률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그동안 법과 정책, 실천 분야에서 '가출'자체를 문제행동으로 범죄시했으며, 특히 소년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07].

이외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거나 사전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며, 한편으로 실천분야의 경우 특히 다양한 가정 밖 사유에 따른 하위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용어 사용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국가가 대신 보호, 지원한다고 할 때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나 가정 해체 등 가정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 가정/보호자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인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가정

106) '학교 밖'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맥락은 다소 다르나 최근 정부의 청소년폭력예방대책 등에서 '학교안팎'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예, 교육부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018.8.31 보도자료)

107) 이 법률전문가(법/정책1)는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제1항 제3호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등의 사유와 함께 환경이나 성격 등을 비추어 형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어, 가출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출을 '가정 밖'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법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외 보호체계의 청소년, 그리고 이외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면 표 Ⅵ-5와 같다.

먼저 집에서 쫓겨났거나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또는 가정 해체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모두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비자발적 상황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자의로 집을 떠난 청소년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상황에 처한 요인에 따른, 그리고 정책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 감호처분에도 보호자 부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초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아 이들 청소년들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특히 정책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 종료 후에도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과 같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되었는데, 이는 특히 재비행 예방 및 자립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Ⅵ-5.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의견 요약
사유/상황	범위 포함 동의 여부	
가정 내 폭력/가정해체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동의 의견 (25명)	- 집에서 쫓겨났거나 학대, 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또는 탈출한 청소년, 가정 해체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간주해야 함. - 위의 경우 외에도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자의로 집을 떠난 경우도 포함하여 범위 확대 필요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 의견 요약
사유/상황	범위 포함 동의 여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생활 청소년	동의 의견 (21명)	- 과거 비행청소년으로 간주되었으나 보호처분 이후 가정/보호자의 부재로 가정에서 생활하고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포함 - 보호자/가정 부재 시 지속적인 보호/지원 위한 방안 필요, 가정 밖 청소년으로 포함될 경우 회복지원시설 위탁이 종료된 후 쉼터와 자립지원관 같은 관련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해짐. -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아 포함시킬 수 있음.
	비동의 또는 기타 의견 (4명)	-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시설입소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 가능 - 이 경우 제한된 유형과 숫자만 해당되므로 구체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또는 생활) 청소년으로 칭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출한 상태가 아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가정 형태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음.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생활 청소년	동의/ 부분 동의 의견 (17명)	- 쉼터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고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가정 밖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범위에 포함 가능 - 아동양육시설/그룹홈에도 자의적·타의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될 수 있음.
	비동의 또는 기타 의견 (8명)	- 가정 밖 청소년이 가출청소년을 대신하는 용어라면 구별이 필요함. 어릴 때부터 시설보호받고 있고 또 일부는 부모가 아이를 맡겨놓는 경우도 있어 가정 밖 청소년과는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음. -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은 일시 위탁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목적이며(미복귀시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궁극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구분이 필요함. - 적용되는 연령범위도 다르며, 관련법과 해당시설 입소기준 등의 차이로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임. -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보호시설의 경우 대안가정 성격으로 안정적인 가정 양육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 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주: 전문가 25명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임.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대안양육(가정외보호)체계의 청소년의 경우 앞서 가정 내 폭력 등의 문제로 집을 나왔거나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비동의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설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또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가정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나 반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대체한다고 할 때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어릴 때부터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가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겨두었다가 경제적인 여건들이 회복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처럼 가출청소년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관련 법과 연령 범위, 그리고 해당 시설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대안가정 성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양육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의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나올 경우에만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가정위탁 받고 있는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그리고 부모의 교도소 수감이나 사망 등으로 가정이 없었진 청소년,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친구집 등을 전전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주거지가 없는 주거취약 청소년, 가출을 시작으로 비행하여 소년원에서 출원한 청소년의 경우도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범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연령 기준의 차이 역시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청소년들의 유형과 상황들을 정리하면 표 Ⅵ-6과 같다.

표 Ⅵ-6.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해당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정 밖 청소년 범위 포함 가능 대상
• 일시적, 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정 내 폭력, 부모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또는 여기서 이탈한 청소년
• 위의 이유로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부모의 이혼·재혼, 부모의 교도소 수감, 사망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없어진 청소년
•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
• 소년원 출원 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예스센터 직업훈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는 주거 취약 청소년
• 이외에 다양한 사유로 자의나 타의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2) 가출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108)]

①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내용

원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립과 관련된 자립지원 내용/기술, 지원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크게 제도·인프라, 심리·사회 지원, 일상생활지원, 경제 및 주거 지원, 학업지원, 자립·진로지도·취업지원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Ⅵ-7과 같다.

108) 이 절에서는 연구자의 사견 없이 25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의견이나 부연, 예시의 경우는 각주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다(pp.356-369).

표 Ⅵ-7.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
제도 및 인프라	- 자립에 대한 정책 방향 정비. 자립지원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 및 제공(예시. 자립관련 정책 수립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 일자리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정책 마련, 청년주거할당 등 주거지원 정책 확대, 청년수당 등)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 심리치료 및 지지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종사자 소진 해소 및 처우 개선, 자립전담요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모니터링 등
	- 청소년쉼터 확충 통한 주거지원 확대, 장기적으로 자립지원시설 마련, 소규모 수준의 자립지원 활성화(공동생활가정) 등
	- 위급상황에 대응할 근거리 지원망 마련, 장기적으로 사회적 지지망 확대, 유관기간 연계 및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심리·사회 지원	- 전문심리상담, 트라우마 치유·치료, 각종 중독문제 해결 - 자립의지 고취, 자립위한 동기 부여 및 지지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위기대처 능력, 청소년 개인 역량 강화(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확립), 멘토링 제공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기술, 채무문제관련 상담 및 교육, 근로계약 및 전·월세계약서 작성 훈련 - 장기적으로 저축(적금), 자신의 수입에 맞는 예산세우기 교육 - 일상생활기술, 개인위생 등 자기보호기술, 자기관리능력, 가정관리기술(장보기 및 음식 만들기, 청소·정리정돈 등) 교육 - 기초 건강 및 영양상태 검진, 치료 등 긴급 의료지원, one-stop으로 질병이나 임신 여부 검사 시스템 마련, 성교육 실시 등 건강관리 지원
경제 및 주거 지원	- 의식주 지원, 숙식 제공, 안정적인 주거지원(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지원)(일정기간 무상, 이후 저렴하게 임대 등), 청년주거할당 등 - 생활비 및 용돈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 장기적으로 보호 연장,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중장기쉼터 이용 청소년으로의 확대
학업지원	- 학교적응/학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수 및 학력취득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학업, 자격증 취득 등) 지원 - 대학진학 희망 시 대학진학 지원(교육비 경감 등)
자립, 진로지도, 취업 지원	- 자립관련 정보제공·상담 지원, 자립관련 정보활용 능력 고양 및 자립 계획수립 지원, 자립준비 프로그램 또는 자립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적성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진로상담, 다양한 직업군 경험하기, 경험자 초청 특강, 유망 직종에 대한 정보공유 - 취업 용이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및 특정 분야 기술 훈련 제공(바우처 등 제공) - 취업준비 지원(이력서쓰기, 계약서 쓰기, 면접기술), 직장적응기술 등 훈련 제공 -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소개 및 장기 취업 연계,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
기타	- 생활규범 및 사회규범 프로그램 제공(공동체 생활 적응, 타인배려, 갈등조절 능력 등) - 다양한 문화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대상 부모교육, 연애, 임신, 출산, 양육, 돌봄 등 관련 구체적 정보 전달 -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가족 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가족관계 개입, 가정 복귀 지원 - 개별 욕구에 따른 특화된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진학, 취업, 직업교육관련) - 사례관리 제공

가. 제도 및 인프라

일차적으로 자립의 개념이나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준비프로그램(READY ACTION)과 같은 표준화된 자립훈련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관련 전문가의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109]. 이러한 종사자 역량강화와 전문 인력 배치와 함께 현 종사자의 소진문제와 처우 등을 개선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쉼터 뿐 아니라 자립지원관련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생활형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자립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대규모시설보다는 가정형태의 소규모 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근거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확대와 유관기관 간 연계, 즉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9) [실천6] 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테이크(intake)와 사정(assessment)를 포함한 자립지원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 심리·사회적 지원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상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등을 통해 먼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위급 시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평상 시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불가피하에 자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립의지를 독려하거나 자립을 위한 동기 부여도 매우 중요하며, 이후 사회생활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인관계기술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등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확립 등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역량 강화[110]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기술로 금전관리기술, 채무문제[111]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근로계약 및 전월세 계약서 작성 등 경제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합리적 소비와 지출, 또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위생 및 자기관리, 가정관리기술(장보기, 요리, 청소 등)의 교육도 필요하며, 영양상태와 기초건강을 점검하여 필요 시 치료 등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특히 질병 확인, 임신 여부와 출산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10) 쉼터에 종사하는 [실천4] 전문가는 쉼터를 찾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대와 가족해체, 부모와의 관계 단절, 학교부적응 등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함에 따라 경계성지능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11) 비행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한 현장전문가(실천6)는 핸드폰 결제, 핸드폰 명의 대출, 사회초년사업자 작업 대출, 중고차 대출 등에 따른 채무 문제를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인 채무문제관련 교육이 필요함으로 지적하였다,

라. 경제 및 주거 지원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예방과 인간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의식주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매우 중요하다[112]. 또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저축 독려의 일환으로 매칭 펀드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와 같은 자립정착금 지원을 청소년쉼터나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립정착금 지원은 중장기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에서 퇴소하고 독립한 후에도 일정기간 필요하다.

마. 학업 지원

가출 등의 이유로 잦은 결석과 학업 중단, 그리고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저학력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지원과 검정고시 취득을 위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며, 학업과 기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지원 등도 필요하다. 또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경감이나 기타 대학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자립,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자립과 관련된

112)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 현장전문가들이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LH청년주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반자립 거주 지원을 통해 비교적 규모가 큰 생활시설에서 점차 공동생활로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예, 20인 거주 청소년자립관→1가구 2~3인의 희망빌라/자립희망하우스→1가구 1인의 자립희망하우스)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자립생활 계획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법/정책3).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후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113]이 중요하다. 적성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자 초청 특강, 유망 직종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 또 취업에 용이한 직업을 위한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와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취업을 위한 개인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건전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소개와 장기적으로 취업 알선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실제 취업상황과 유사한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이에 기초한 현장경험이 외부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취업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취업준비(이력서 쓰기, 면접기술 등)가 필요하며, 취업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도 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경우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역시 필요하다.

사. 기타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생활 규범 및 사회규범(공동체 생활적응, 타인배려, 갈등조절능력 등)을 잘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대상의 부모교육과 연애,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등 가족관계 개입을 통해 가능한 경우 가정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법률문제에 관여될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상담을 포함한 법률적 문제 해결 역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마다 진학, 취업, 직업교육등과 관련하여 처한 상황과 여건에 차이가

113) 본 조사에 참여한 [법/정책1] 전문가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크므로 개별 욕구에 따른 특화된 개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립지원의 전 과정과 관련하여 시설퇴소 후에 인테이크와 사정, 서비스 제공과 이후 및 평가 과정까지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자립과정에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자립준비 정도와 과정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립척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자립지원관련 시설/기관에 필요한 내용

전문가들이 상술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표 Ⅵ-8). 전문가들 간 의견이 상당부분 상술한 내용과 유사하여,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유나 근거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표 Ⅵ-8.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필요 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필요 여건
정책	-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과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과 실천 -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서비스 대상 확대(쉼터 청소년 포함)
예산	-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충원 및 배치, 자립지원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시설인프라	- 자립지원센터 설립(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은) - 아웃리치를 포함한 일시 및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확대 - 자립지원관 증설과 거주기간 연장 - 자립형 그룹홈 확대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시설 확대 - 주택지원 - 적성/진로 중심 생활시설 확충(체육중심자립생활관)
인력	- 자립준비 전문(전담) 인력 충원/배치(직업상담사 등) -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필요(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양육, 학업, 상담, 진로지도, 취업준비 등 자립준비 제반을 위한 종사자 충원 - 전문 상담치료 인력 및 직업상담사 등 상담전문 인력 배치 -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인적수준 고양 - 근로여건 개선 등 종사자 처우 개선

구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필요 여건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심리·정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 경제교육(보험, 금융 포함) - 각종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 경제적 지원(아동발달계좌, 용돈, 초기 사회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 생활관리 교육 확대 - 사회적 기술 형성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립역량 강화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 실습기관 운영 - 사전고용예약제 시행 - 취업준비위한 교육비 지원 - 법률지원 및 사후관리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 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 - 지원관련 정보의 접근용이성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타	- 정부/사회적 인식 전환 및 홍보 확대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자립시설로 특성화될 경우 평가 실시로 수준 제고

먼저 자립지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정책과 실천, 그리고 청소년의 독립과 자립, 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현재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서비스 대상을 청소년쉼터의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별도로 자립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대상 및 관련시설의 주무부처 차이로 단기적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부처 차이로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할 때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 같은 별도의 자립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 가정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에도 필요하며, 이러한 상설 기관을 통해 퇴소 후에도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 및 관련 시설의 부족과 보호 및 생활, 교육지원 등과 비교할 때 진로 및 자립준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과 관련된 시설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충원, 또 자립지원 사업(시설 포함)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조기발굴을 위해 아웃리치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당장 필요한 숙식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 및 단기쉼터 역시 확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비해 전국의 중장기쉼터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 증설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만 24세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개인 공간 부족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시설수준 향상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독립생활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공동주거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점차 개별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 시 희망진로가 유사한 청소년들의 공동생활을 통해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동기부여도 가능할 수 있다.

많은 청소년쉼터가 종사자가 부족하며 처우도 열악함에 따라(저임금, 업무 과중 등) 관련 시설 종사자를 충원하고, 급여 및 근로여건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우수한 전문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근속을 위해서도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114]. 또한 현재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진로준비, 적성에 맡는 직종선택, 취업 연계 등 전반적인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중장기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 전문적인 자립지원인력 배치와 함께 상담 및 복지관련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인적 자원도 필요하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상당

114) [실천2] 현장 전문가는 현재 청소년쉼터는 임금수준이 낮아 전문 인력이 채용되기 힘든 여건으로,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상 청소년들을 대안가정처럼 돌보는 형태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상담 및 복지 전문가들이 취업을 꺼리고 이직률 또한 높은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수준과 업무 과중에 따른 이직률이 높아 청소년들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였다(학계4, 실천4, 실천7).

수가 학대를 경험하거나 이후 비행을 경험하기도 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상담인력도 매우 필요하다. 부모를 대신하여 청소년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도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예, 야간 당직 업무) 쉼터의 생활교사의 추가배치 및 인적수준 고양도 요구된다[115].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 대비 인력 배치와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법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이나 금전관리 등 독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과 생활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대인관계 기술을 비롯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의 소비 및 지출, 저축 등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를 통한 진로 및 진학지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들이 별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표준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단체, 인적·물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의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큰 저해요인 없이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 자원 획득이 용이해야 한다.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115) [실천4]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경우 쉼터의 행정업무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주/야간 근무는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며 또 많은 입소청소년이 분노조절 장애, 우울감, 경계선 지적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생활지도와 심리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자립준비를 위해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을 위한 시설로 특성화될 경우 정기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성과급이나 시설확충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반적인 시설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

③ 자립지원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결과는 표 Ⅵ-9와 같으며, 앞서 상술된 내용 중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가. 사회 및 정부의 인식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낙인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한다[116]. 또한 원가정이 문제가 많음에도 아직까지 가출청소년의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고집하는 경향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여서 정부 및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117].

116)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법/정책2] 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을 할 경우 '가출팸'으로 폄훼하며 범죄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문제없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17) 이와는 별개로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한 성급한 자립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며, 청소년 자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학계6].

표 Ⅵ-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정부/인식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 - 정부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원가정 상황 관계없이 복귀만 강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 마련 - 가정 밖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인식 전환
정책/주무 부처간 연계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특히 자립과 관련된 정책 미흡 - 관련 부처 간 연계성 부족 - 지원 연령의 제한 - 조기개입 미흡 - 쉼터 유형별 사업구분 모호 - 청소년 권리 중심의 자립정책 부재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상 확대 - 관련 정책 및 사업 범위 확대 - 개인, 가족, 학교, 또래 등 청소년 가출 위험요인과 연계한 다차원적 접근 및 조기 대응 필요 - 쉼터 유형별 역할 및 기능 명확화 - 청소년의 권리관점에서의 자립의 개념과 자립지원 방향 정비
예산/시설/인력	- 가정 밖 청소년 실태파악 및 자립 지원 예산 부족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문(허브) 기관 및 자립지원시스템 부재 - 전문 지원기관 부족 및 시설 미흡 - 가정 밖 청소년 주거 공간 부족 - 생활지도 인력부족, 전문인력 부족 및 높은 이직률	-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총괄 기관과 자립지원시스템 마련 - 쉼터 및 자립생활관 증설 및 물리적 환경·시설 개선 - 안정적인 소규모 주거 공간 확보 - 장기적으로 자립과정을 지원할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서비스·프로그램	- 기존 유사내용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취업지원 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알선 등) - 자립관련 전문프로그램 부족 -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도 인프라 부족 - 부모자산과 관계없는 의식주·교육 지원	- 장기적 관점의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시설 퇴소 후 정기적인 사례관리 필요 - 기초생활수급 혜택 부여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 위기관리 기관에 대한 인식, 연계 부족 -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 연계 및 활용 - 핫라인 신설 및 쉼터 접근성 강화와 관련 정보 홍보
기타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 연구와 실태파악 미흡	- 자립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 - 대규모 실태조사와 가정 밖 청소년 수 추정 및 이에 기초한 예산 마련과 사업·서비스 제공 필요

나. 정책 및 주무 부처 간 연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특히 자립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매우 미흡한데[118],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 유형과 연령 범위를 고려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와 연령범위와, 또 자립지원과 관련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범위와 지원 내용 및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원화와 법적 기반의 차이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원가정 및 부모의 보호 하에서 생활·성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립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쉼터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의 동일 연령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서비스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119].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와 사업성격, 예산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120].

그동안 현재 경제적 자립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심리·정서적 자립지원도

118) [학계10] 전문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내일이룸학교'로 이관되는 등 최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나 아직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체계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아동발달계좌,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등)과 비교할 때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함을, 또 다른 전문가(실천2)는 주무부처의 특성화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19) [실천8] 전문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5년간 자립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이에 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흡함을, [실천7] 전문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호시설 종류 및 기관설치, 위탁운영, 종사자배치, 운영지원 등 관련 내용이 더욱 보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20) 정부 부처 간 연계와 관련하여 소년원 출원생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되어 자립지원을 받는 등 관련 부처의 통합서비스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실천6)도 있었으며, [법/정책3] 전문가는 청소년쉼터 및 자립생활관(법무부 산하) 퇴소자의 경우 불안정한 거주로 인한 재범노출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지원 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행되도록 정책 및 사업 범위 역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쉼터 유형별로 사업구분이 모호하여 쉼터 간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아웃리치 센터, 일시 및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등 각 시설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과 응급구호, 비행예방, 부모상담, 원가정 복귀 불가 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연결까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121]. 그동안의 정책방향이 공급자 중심이어서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준비나 동기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나 한시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청소년의 권리(인권) 관점에서 자립에 대한 개념과 자립지원의 정책 방향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 예산/시설 인프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이 없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을 위해 예산 및 사업수행을 총괄할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관(허브 역할, 핫라인 등)이 필요하다[12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 및 시설, 주거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을 증설·확대하고 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지원 전 과정을 follow-up하며 지원할 생활지도교사와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높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라.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존의 유사한 자립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체험[123]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 따른 자립지원

121)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실천4] 전문가는 쉼터 간 원활한 연계와 이로 인한 지원 내용은 이용 청소년들을 통해 더 확산되어 가정 밖 청소년의 해당 시설의 적극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122) 이에 대해 [법/정책3] 전문가는 허브기관을 통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이 더 가능해질 수 있으며(꿈키움센터와 청소년쉼터 연계), 이 경우 예산 증액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23) 이 의견을 제시한 [학계14] 전문가는 기존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바리스타나 미용사와 같은 단기적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시설 퇴소 후 정기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의식주와 교육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기타 내용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위기를 관리할 기관들에 대한 인식과 연계가 부족하며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으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립지원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기초 연구 및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숫자 등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 마련 및 전달체계들이 구성되어 관련 사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중 자립지원과 관련한 의견들을 각 영역별로 그리고 해당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들로 정리하였으며,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활용하였다. 먼저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도·환경, 시설인프라, 인력, 서비스·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각각의 영역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또는 청소년의 흥미위주의 직업체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체험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부연하였다.

정책과제를 범주화하였다. 각 정책과제에 해당되는 상세 내용을 포함한 결과는 아래 표 Ⅵ-10와 같다.

표 Ⅵ-1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제반여건(영역) 및 정책과제, 상세설명

영역	정책과제	설명
1. 제도·환경	1-1) 인식개선 및 정책 방향성 전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으로의 사회인식 전환,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성 전환
	1-2)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	가출청소년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 정비 및 주무부처(여성가족부) 정책 개선·신설
	1-3) 관련 정부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간 정책 연계를 통한 정책/서비스 대상 확대(예, 가출청소년,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초생활수급혜택, 자립정착금 및 CDA 지원 등)
2. 시설 인프라	2-1) 중앙자립지원관(총괄기관) 신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중앙자립지원관(총괄기관) 신설
	2-2) 청소년쉼터 확대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시설 확대 및 수준 고양
	2-3) 자립지원관 증설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 자립형 그룹홈 등 포함) 증설
	2-4) 기존 관련시설/기관 간 연계 협력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3. 인력	3-1) 전문인력 배치·충원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에 자립지원(상담, 진로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요원 배치·충원
	3-2) 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성(진로상담, 상담자격증 취득 등) 강화 및 인적수준 고양
	3-3) 종사자 처우개선	현 관련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급여, 근로여건 등)
4. 서비스·프로그램	4-1) 심리·사회적 지원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전문 심리·상담 치료 지원,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4-2) 일상생활교육	금전관리 등 경제 교육, 일상생활기술 교육,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 등
	4-3) 건강지원	개인위생·자기보호 교육,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4-4) 경제 및 주거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
	4-5) 진로지원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 직업훈련 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주: 각 영역과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를 위해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시 상기 표를 첨부하였음.

이 중 특히 4번째 영역인 서비스·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실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세부과제까지 범주화하여 표 Ⅵ-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Ⅵ-11. 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정책과제, 세부과제, 상세내용

정책과제	세부과제	상세내용
1. 심리·사회적 지원	1-1)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자립의지 등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응원/도움, 멘토링)
	1-2) 전문 심리·상담치료 지원	트라우마 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 지원(정신건강 지원)
	1-3)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 훈련	예절교육, 인간관계 기술, 합리적 의사결정, 위기대처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교육
2. 일상생활 교육	2-1) 금전관리 등 경제교육	금전관리, 저축, 합리적 소비생활, 전월세 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2-2) 일상생활기술교육	정리정돈, 시간관리, 살림 및 요리, 청소, 세탁 등
	2-3)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	지역사회 자원(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활용 교육
3. 건강 지원	3-1) 개인위생·자기보호 교육	개인위생, 영양상태 점검, 자기보호 교육
	3-2) 건강검진	기초건강, 여성청소년 대상 여성질환 검사 등
	3-3) 질병치료	긴급의료지원, 질병치료, 중독치료 등
4. 경제 및 주거 지원	4-1) 생활비 지원	식비, 의류구입비, 용돈 포함 생활비 지원
	4-2)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숙식장소) 마련 및 주거비 지원(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
	4-3)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법 적용대상 보호종료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 미복귀 상태의 중장기쉼터 및 자립지원관 생활 청소년에게 아동발달계좌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지원
5. 진로 지원	5-1)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학업(중·고·대 학비 지원) 및 학력 취득 지원(검정고시 등)
	5-2)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	진로상담, 적성검사, 직업체험·탐색 등
	5-3)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 지원
	5-4) 취업·창업지원	구직전략 및 면접 준비 등의 취업준비 지원, 취업·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주: 1) 각 영역과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를 위해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시 상기 표를 첨부하였음.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를 위한 기본 틀(정책과제, 세부과제)은 선행 연구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자립기술의 8대 영역'(보건복지부, 2018a:219) 등을 일부 참조하였음.

본 2차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방식을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이 중요하고 또 시급한 정책제언들이었으나, 여러 제약과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정리, 제시하는 것이 그 실현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HP는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포괄적인 틀로, 복잡한 사안들을 개념화·구조화하고 정량적·비정량적 요소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Rabinowitz, 1992: 87). 이 방법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정성적,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종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옥선, 권정언, 2015; 6). AHP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 농촌경제발전 전략, 보건관련 조사 뿐 아니라(Rabinowitz, 1992), 대중교통, 환경, 공학 분야, 기업 내 의사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124]에서 우선순위 도출에 활용되었으며 국내의 사회과학 분야에도 널리 활용되어 진로체험(김옥선, 권정언, 2015), 평생교육 정책(박명신, 한상훈, 윤종찬, 2016), 보육시설 민간위탁(정종원, 김정호, 2014) 등의 분야 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 및 여가, 보호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김민규, 서정은, 2015;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김형주, 김정주, 김혁진, 2017;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에서도 사용되었다.

AHP는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또는 이원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Saaty는 9점 척

124) https://www.jstor.org/, https://www.ebsco.com/, https://scholar.google.co.kr/ 등의 학술검색엔진에서 '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2018. 9. 20 검색

도[125]를 개발, 활용하였다(Saaty & Vagas, 1991; 김옥선, 권정언, 2015; 8에서 재인용). 본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도 1차 의견조사에서 취합된 정성자료에서 도출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과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해 그림 Ⅵ-1과 같이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이원 비교를 위해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주요 정책 영역 및 과제

영역	정책과제
1. 제도·환경	1-1) 인식개선 및 정책 방향성 전환
	1-2)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
	1-3) 관련 정부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확대
2. 시설 인프라	2-1) 중앙자립지원관(총괄기관) 신설
	2-2) 청소년쉼터 확대
	2-3) 자립지원관 증설
	2-4) 기존 관련시설/기관 간 연계 협력
3. 인력	3-1) 전문인력 배치·충원
	3-2) 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3-3) 종사자 처우 개선
4. 서비스·프로그램	4-1) 심리·사회적 지원
	4-2) 일상생활 지원
	4-3) 건강지원
	4-4) 경제 및 주거지원
	4-5) 진로지원

② '4.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책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심리·사회적 지원	1-1)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1-2) 전문 심리·상담치료 지원
	1-3)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 훈련
일상생활 지원	2-1) 금전관리 등 경제교육
	2-2) 일상생활기술교육
	2-3)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
건강지원	3-1) 개인위생·자기보호 교육
	3-2) 건강검진
	3-3) 질병치료
경제 및 주거지원	4-1) 생활비 지원
	4-2)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4-3) 자립정착금 지원
진로지원	5-1)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5-2)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
	5-3) 직업훈련 지원
	5-4) 취업·창업지원

주: 4번째 영역인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천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정책과제별로 또 계층을 설정하여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음.

그림 Ⅵ-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계층 구조

125) 1=equal importance(동등하게 중요), 3=moderate importance(약간 중요), 5=essential/strong importance(중요), 7=demonstrated/very strong importance(매우 중요), 9=extreme importance(절대 중요)(Saaty, 1986; 김옥선, 권정언, 2015)

수집된 조사지 중 일부 응답이 중복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5부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AHP에서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가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0.1(10%) 이하일 경우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고 판단한다(Saaty, 2008;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82에서 재인용). 25명의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일관성 지수는 모두 0.1이하로 전문가들의 응답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신뢰성이 있는 결과로 판단하고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126].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 및 정책과제 중요도

그림 Ⅵ-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큰 영역인 '제도·환경', '시설인프라', '인력', '서비스·프로그램' 들 간의 중요도에서 '제도·환경'의 중요도가 0.4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부분(0.286), '시설인프라'(0.159), '서비스·프로그램'(0.139)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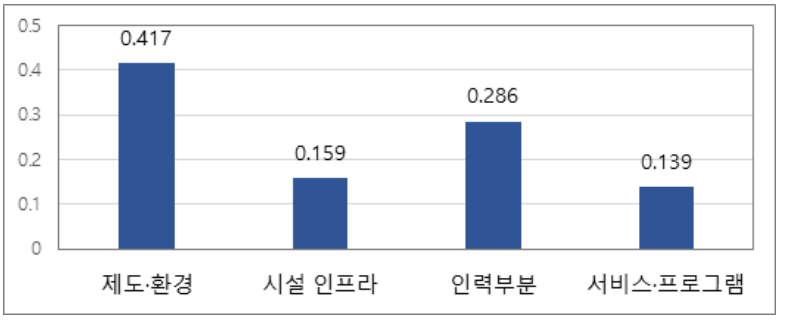


그림 Ⅵ-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 중요도

126) AHP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김지연 외, 2015)를 참조하여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함(Calculator 출처: http://yjhyjh.egloos.com/366791, 2018.8.20. 검색).

각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표 Ⅵ-12), 먼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제도·환경' 영역에서는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 과제가 0.53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식개선 및 정책 방향성 전환'과 '관련 정부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확대'는 각각 0.243, 0.226으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표 Ⅵ-1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 및 정책과제 중요도

영역	영역 내		정책과제	국지적 우선순위		복합적 우선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1. 제도·환경	0.417	1	1-1) 인식개선 및 정책 방향성 전환	0.243	2	0.101	**3**
			1-2)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	0.530	1	0.221	**1**
			1-3) 관련 정부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확대	0.226	3	0.094	**4**
2. 시설 인프라	0.159	3	2-1) 중앙자립지원관(총괄기관) 신설	0.343	1	0.054	6
			2-2) 청소년쉼터 확대	0.170	4	0.027	12
			2-3) 자립지원관 증설	0.231	3	0.037	9
			2-4) 기존 관련시설/기관 간 연계 협력	0.257	2	0.041	8
3. 인력	0.286	2	3-1) 전문인력 배치·충원	0.353	2	0.101	**3**
			3-2) 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0.220	3	0.063	5
			3-3) 종사자 처우 개선	0.427	1	0.122	**2**
4. 서비스·프로그램	0.139	4	4-1) 심리·사회적 지원	0.243	2	0.037	10
			4-2) 일상생활 지원	0.122	5	0.017	13
			4-3) 건강지원	0.124	4	0.017	13
			4-4) 경제 및 주거지원	0.311	1	0.043	7
			4-5) 진로지원	0.200	3	0.028	11

주: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I.는 정책영역들 내에서는 0.006, 그리고 각 영역 내 세부 정책과제들에서는 제도·환경은 0.000, 시설인프라 0.006, 인력 0.004, 서비스·프로그램 0.009 등으로 모두 0.1미만으로 나타남.

두 번째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나타난 '인력'부분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약 0.43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전문 인력 배치·충원'(0.353)과 '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0.22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인프라' 영역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중앙 지립지원관 신설이 가장 높은 중요도(0.343)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기존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의 중요도가 0.257, 자립지원관 증설 0.231, 청소년쉼터 확대 0.17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 항목이 0.31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사회적 지원이 0.243, 진로지원이 0.200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은 각각 0.124, 0.1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영역 내 중요도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과 더불어 제도·환경, 시설인프라, 인력, 서비스·프로그램의 4개 모든 영역의 15개 정책과제를 통틀어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앞의 경우는 국지적 우선순위, 후자의 경우는 복합적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국지적 우선순위(local priorities)는 비교되는 요소들의 상대적 크기로 추산되며, 복합적 우선순위(global priorities)는 계층의 처음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의 가중치를 더해 산출된다(Saaty & Vargas, 1998).

복합적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그림 Ⅵ-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5개 중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1순위 정책과제는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0.22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0.122), '인식개선 및 정책 방향성 전환'(0.101), '전문 인력 배치·충원'(0.101), '관련 정부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확대'(0.094)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응답한 전문가들은 제도·환경 영역과 인력 부분의 정책과제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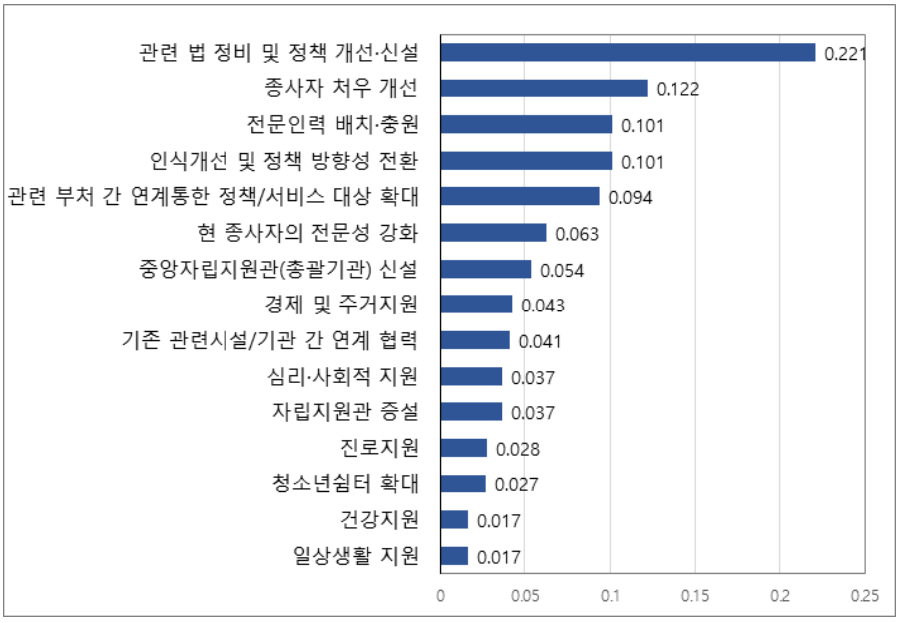


그림 Ⅵ-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총 15개 정책과제의 중요도

(3)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중요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 중 네 번째 영역인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섯 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실제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은 직접적인 내용인 것을 고려하여 각 정책과제의 세부과제별로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책과제 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및 주거지원'이 0.311로 가장 높은 1순위 중요도를 보였다(그림 Ⅵ-4). 세부과제별로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0.52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자립정착금 지원'과 '생활비 지원'이 각각 0.243, 0.231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표 Ⅵ-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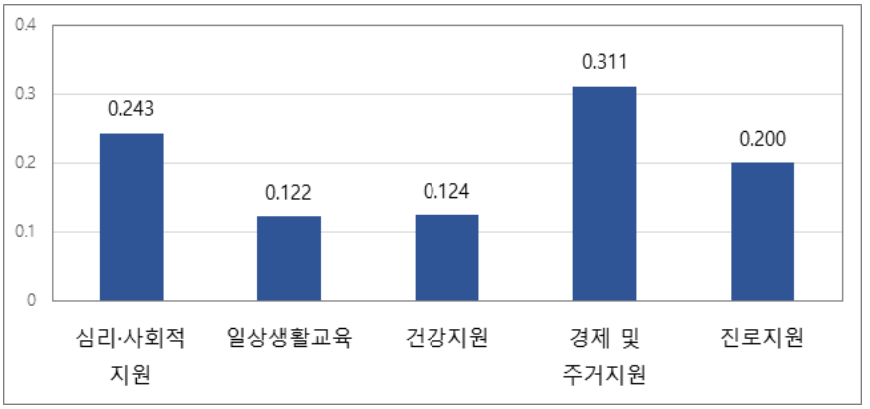


그림 Ⅵ-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관련 정책과제 중요도

정책과제 중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심리·사회적 지원'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동기부여'가 0.489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훈련'(0.281), '전문 심리·상담 치료 지원'(0.230)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난 '진로지원'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직업훈련 지원'이 0.323으로 가장 높게 중요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0.26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0.242), '취업·창업지원'(0.174) 순이었다.

'건강지원' 정책과제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질병치료'가 0.434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0.312), '개인위생·자기보호 교육'(0.254) 순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일상생활교육' 정책과제 중에서는 '금전관리 등 경제교육'이 가장 높은 0.434의 중요도를, 그리고 정리정돈, 시간관리, 요리 청소 등의 '일상생활교육'이 0.385,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이 0.180순으로 중요도를 보였다.

표 Ⅵ-13.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중요도

정책과제	과제내		세부과제	국지적 우선순위		복합적 우선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1. 심리·사회적 지원	0.243	2	1-1)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0.489	1	0.119	2
			1-2) 전문 심리·상담치료 지원	0.230	3	0.056	7
			1-3)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 훈련	0.281	2	0.068	5
2. 일상생활 교육	0.122	5	2-1) 금전관리 등 경제교육	0.434	1	0.053	9
			2-2) 일상생활기술교육	0.385	2	0.047	12
			2-3)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	0.180	3	0.022	16
3. 건강지원	0.124	4	3-1) 개인위생·자기보호 교육	0.254	3	0.032	15
			3-2) 건강검진	0.312	2	0.039	13
			3-3) 질병치료	0.434	1	0.054	8
4. 경제 및 주거지원	0.311	1	4-1) 생활비 지원	0.231	3	0.072	4
			4-2)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0.526	1	0.164	1
			4-3) 자립정착금 지원	0.243	3	0.076	3
5. 진로지원	0.200	3	5-1)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0.242	3	0.048	11
			5-2)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	0.260	2	0.052	10
			5-3) 직업훈련 지원	0.323	1	0.065	6
			5-4) 취업·창업지원	0.174	4	0.035	14

주: 각 세부과제별로 C.I,를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지원은 0.000, 일상생활교육 0.005, 건강지원 0.003, 경제 및 주거지원 0.000, 진로지원 0.005로 모두 0.1미만으로 나타남(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정책과제 간 C.I,는 0.009로 앞의 표에서 제시하였음).

이러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영역의 5개 정책과제의 16개 세부과제들의 복합적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그림 Ⅵ-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0.164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가 0.119로 2순위의 중요도를 보였고, 3순위는 '자립정착금 지원'(0.076), 4순위는 '생활비 지원'(0.072), 5순위는 '대인관계·의사소통 기술 훈련'(0.0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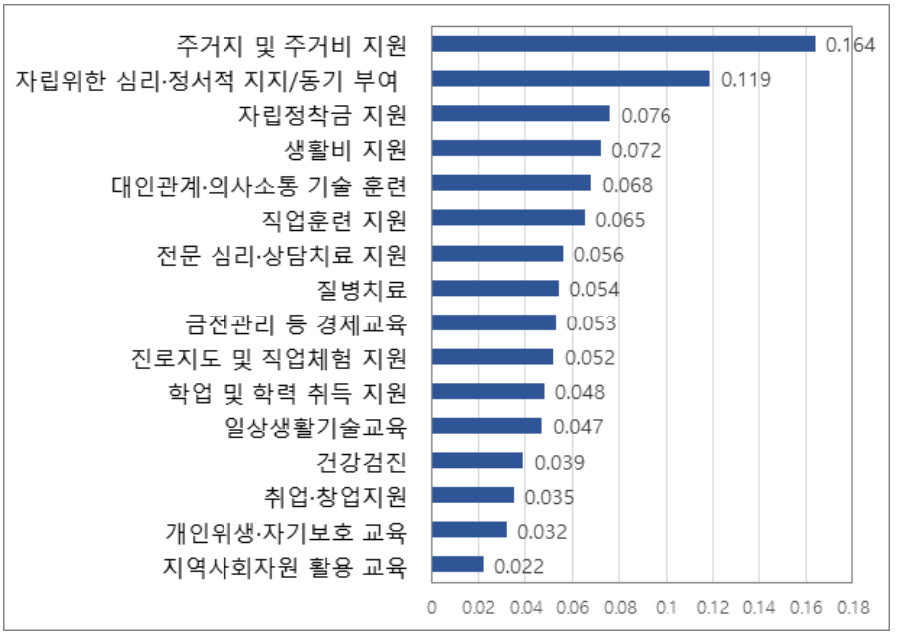


그림 Ⅵ-5. '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총 16개 정책 세부과제의 중요도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종사하는 현장종사자[127]들을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 및 범위, 그리고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자립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 및 필요 정도, 자립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어 및 연령기준과 관련해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1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도출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1차 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연령 기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이에 대해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자립지원관련 내용과 함께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많은 내용들을 유목화하여 정리한 후 최종 조사지 개발에 참고하였다. 조사지 구성내용은 아래의 표 Ⅵ-14와 같다.

표 Ⅵ-14. 현장종사자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시설 및 종사자 정보	시설위치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종사경력, 직급(시설장, 팀장/선임 실무자), 성별 및 연령
가정 밖 용어 변경 및 범위	용어 변경 필요성,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필요 정도	심리사회지원, 일상생활지원, 건강지원, 경제 및 주거지원, 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기타 내용
자립지원관련 문제점	제도적 요인, 시설 및 인적 요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127) 본 연구의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현장종사자에 대한 조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실천현장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장의견을 더욱 수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종사자 조사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 조사대상 시설의 시설장 또는 팀장급이나 선임실무자들로 총 124개 시설의 종사자들이 조사에 응하였다(표 Ⅵ-15)[12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30.6%, 여자가 69.4%로 여자 응답자가 2배 이상 많았고, 20~30대 연령인 응답자는 52.4%, 40대 이상은 47.6%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유형별로는 일시쉼터 종사자가 12.1%, 단기쉼터 44.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이 31.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12.1%였으며, 시설장이 28.1%, 팀장이거나 선임 종사자가 71.9%로 나타났다. 종사경력을 보면 3년 미만 26.6%, 10년 미만 60.5%, 10년 이상 12.9%로 2/3 이상의 응답자가 3년 이상의 종사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48.4%, 이외 지역이 51.6%로 나타났다.

표 Ⅵ-15.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24	100.0
성별	남자	38	30.6
	여자	86	69.4
연령	20~30대	65	52.4
	40대 이상	59	47.6
시설유형	일시쉼터	15	12.1
	단기쉼터	55	44.4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9	31.5
	회복지원시설	15	12.1
시설/기관 직급*	시설장	34	28.1
	팀장/선임	87	71.9
종사경력	3년 미만	33	26.6
	10년 미만	75	60.5
	10년 이상	16	12.9
지역규모	대도시	60	48.4
	기타지역	64	51.6

주: 시설/기관 직급 무응답자 3명 제외 수치

128)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도 사전 섭외 및 컨택 시 본 조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표지에 조사 목적과 내용 안내, 자율적 조사 참여 중단 가능 숙지 여부,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해당 내용 숙지 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및 범위

①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 필요성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표 Ⅵ-16), 124명의 조사대상 중 90.3%인 11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여성 종사자가 남자보다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시설유형이나 종사경력 등에 따른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16.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의 필요성

단위: 빈도(%)

배경변인		필요 여부		전체	χ^2(df)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112(90.3)	12(9.7)	124(100.0)	
성별	남자	31(81.6)	7(18.4)	38(100.0)	4.792*(1)
	여자	81(94.2)	5(5.8)	86(100.0)	
연령	20~30대	58(89.2)	7(10.8)	65(100.0)	0.186(1)
	40대 이상	54(91.5)	5(8.5)	59(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2(80.0)	3(20.0)	15(100.0)	4.944(3)
	단기쉼터	51(92.7)	4(7.3)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7(94.9)	2(5.1)	39(100.0)	
	회복지원시설	12(80.0)	3(20.0)	15(100.0)	
직급	시설장	30(88.2)	4(11.8)	34(100.0)	0.409(1)
	팀장/선임	80(92.0)	7(8.0)	87(100.0)	
종사경력	3년 미만	30(90.9)	3(9.1)	33(100.0)	-
	10년 미만	66(88.0)	9(12.0)	75(100.0)	
	10년 이상	16(100.0)	0(0.0)	16(100.0)	
지역규모	대도시	54(90.0)	6(10.0)	60(100.0)	0.014(1)
	기타	58(90.6)	6(9.4)	64(100.0)	

*p<.05, 교차분석 시 '0'cell이 있는 경우 chi-square값은 제시하지 않음.

가출청소년에 대한 명칭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들(n=12)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기술하게 한 결과, 가정 밖 용어가 아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 밖 역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출청소년과 관련하여 용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가출청소년 용어가 특별히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없으며 실제 가출과 가정 밖 용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또 다른 종사자는 가출과 가정 밖 용어 자체의 의미에 차이가 있어 오히려 용어 대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그림 Ⅵ-6, 표 Ⅵ-17), 현장종사자들은 가출청소년(99.2%), 집에서 쫓겨나거나 양육거부/유기된 청소년(97.6%), 가정 내 폭력 및 부모학대 피해 청소년(96.8%), 빈곤 등 가정형편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95.9%), 일시적/영구적으로 주거지 없는 주거취약 청소년(95.1%), 또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93.5%) 등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높은 비율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교도소 수감, 사망 등으로 가정이 없어진 청소년과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이탈한 청소년은 동일하게 89.4%, 친구 권유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87.9%의 응답자가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장종사자의 85.2%가, 그리고 소년원 출원 후 법무부 자립생활관이나 예스센터와 같은 직업훈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70.7%의 종사자가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

활하는 청소년(57.5%),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41.8%), 친인척, 조부모, 일반가정에 위탁된 위탁가정 보호 청소년(35.5%)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타났다.



주: 항목별로 일부 무응답이 있으나 모든 항목에서 전체 124명 중 120명 이상이 응답함.

그림 Ⅵ-6.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

표 Ⅵ-17. 가정 밖 청소년 범위

단위: 빈도(%)

가정 밖 청소년 유형	포함여부		전체
	예	아니오	
1) 가출청소년	123(99.2)	1(0.8)	124(100.0)
2) 친구 권유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청소년	109(87.9)	15(12.1)	124(100.0)
3) 집에서 쫓겨나거나 양육거부 또는 유기(遺棄)된 청소년	121(97.6)	3(2.4)	124(100.0)
4) 가정 내 폭력, 부모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120(96.8)	4(3.2)	124(100.0)
5) 빈곤 등 가정형편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118(95.9)	5(4.1)	123(100.0)
6)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9(57.5)	51(42.5)	120(100.0)
7)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이탈한 청소년	110(89.4)	13(10.6)	123(100.0)
8) 친인척, 조부모, 일반가정에 위탁된 위탁가정 보호 청소년	43(35.5)	78(64.5)	121(100.0)
9)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115(93.5)	8(6.5)	123(100.0)
10)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04(85.2)	18(14.8)	122(100.0)
11) 가정이 없어진(부모의 교도소 수감, 사망 등으로) 청소년	110(89.4)	13(10.6)	123(100.0)
12)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	51(41.8)	71(58.2)	122(100.0)
13) 소년원 출원 후 법무부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예스센터 직업훈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87(70.7)	36(29.3)	123(100.0)
14)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는 주거 취약 청소년	117(95.1)	6(4.9)	123(100.0)
15) 기타	7(87.5)	1(12.5)	8(100.0)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Ⅵ-18, 표 Ⅵ-19),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일부 변인만 하위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아동복지법의 우선적용을 받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5%의 종사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종사경력이 3년 미만인 종사자가 81.3%, 10년 미만은 53.4%, 10년 이상은 26.7%로 종사경력이 짧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팀장/선임급 종사자(89.5%)들이 시설장보다(72.7%) 더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상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시설 종사자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57.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종사자들은 대부분(94.7%)이 긍정 응답을 나타냈다.

표 Ⅵ-18. 가정 밖 청소년 범위: 아동양육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단위: 빈도(%)

구분	배경변인		가정 밖 청소년 범위 포함 여부		전체 사례수(%)	χ^2(df)
			예	아니오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종사경력	3년 미만	26(81.3)	6(18.8)	32(100.0)	13.718** (2)
		10년 미만	39(53.4)	34(46.6)	73(100.0)	
		10년 이상	4(26.7)	11(73.3)	15(100.0)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직급	시설장	24(72.7)	9(27.3)	33(100.0)	5.248* (1)
		팀장/선임	77(89.5)	9(10.5)	86(100.0)	
	시설유형	일시쉼터	12(80.0)	3(20.0)	15(100.0)	12.021** (3)
		단기쉼터	48(87.3)	7(12.7)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36(94.7)	2(5.3)	38(100.0)	
		회복지원시설	8(57.1)	6(42.9)	14(100.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종사자는 51.7%, 기타지역의 종사자는 3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도시 지역 종사자에게서 빈곤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속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Ⅵ-19. 가정 밖 청소년 범위: 빈곤 청소년

단위: 빈도(%)

구분	지역규모	가정 밖 청소년 범위 포함 여부		전체 사례수 (%)	χ^2(df)
		예	아니오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	대도시	31(51.7)	29(48.3)	60(100.0)	4.721* (1)
	기타지역	20(32.3)	42(67.7)	62(100.0)	

*p<.05 **p<.01 ***p<.001

③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만 9~24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고, 축소해야 한다는 35.5%, 확대해야 한다는 3.2%로 매우 낮았다(그림 Ⅵ-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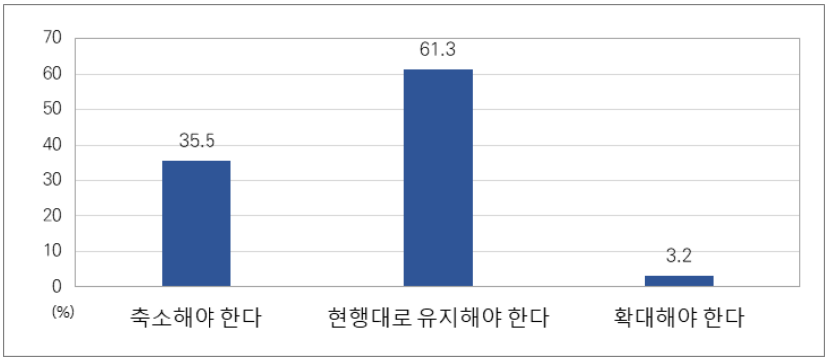


그림 Ⅵ-7.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만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현장종사자들에게 연령 범위 축소 시 적정 연령범위를 조사한 결과 평균값 기준으로 9.9~20.5세로 나타났다(표 Ⅵ-20). 이는 현재 서비스 대상 연령 상한선이 만 24세인 것을 볼 때 상한 연령 범위가 4세 정도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 범위 하한선의 경우 평균 9.9세였는데, 연령별 응답률을 보면 9세를 지원시작 연령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77.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0.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축소 경우

구분	지원 대상 청소년 연령 범위를 축소할 경우														
	연령 하한선								연령 상한선						
	8세	9세	10세	12세	13세	14세	19세	합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빈도	1	34	1	1	3	3	1	44	6	22	8	5	1	2	44
%	2.3	77.3	2.3	2.3	6.8	6.8	2.3	100.0	13.6	50.0	18.2	11.4	2.3	4.5	100.0
평균 (SD)	9.9세(2.14)								20.5세(1.21)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대상 연령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의 3.2%(4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연령범위는 평균값기준으로 만 8.5~26.8세였다(표 Ⅵ-21).

표 Ⅵ-21.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 확대 경우

구분	지원 대상 청소년 연령범위를 확대할 경우					
	연령 하한선			연령 상한선		
	7세	9세	합계	26세	29세	합계
빈도	1	3	4	3	1	4
%	25.0	75.0	100.0	75.0	25.0	100.0
평균 (SD)	8.5세(1.00)			26.8세(1.50)		

이러한 서비스 대상 연령범위 적절성과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표 Ⅵ-2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빈도수가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없으나 연령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응답에 대해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의 종사자가(46.2%)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13.3%)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Ⅵ-22.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범위(만 9~24세) 적절성

단위: 빈도(%)

배경변인		지원 대상 연령범위			전체
		축소해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전체		44(35.5)	76(61.3)	4(3.2)	124(100.0)
성별	남자	9(23.7)	27(71.1)	2(5.3)	38(100.0)
	여자	35(40.7)	49(57.0)	2(2.3)	86(100.0)
연령	20~30대	22(33.8)	39(60.0)	4(6.2)	65(100.0)
	40대 이상	22(37.3)	37(62.7)	0(0.0)	59(100.0)
시설유형	청소년일시쉼터	4(26.7)	10(66.7)	1(6.7)	15(100.0)
	청소년단기쉼터	20(36.4)	33(60.0)	2(3.6)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8(46.2)	20(51.3)	1(2.6)	39(100.0)
	회복지원시설	2(13.3)	13(86.7)	0(0.0)	15(100.0)
직급	시설장	8(23.5)	26(76.5)	0(0.0)	34(100.0)
	팀장/선임	34(39.1)	49(56.3)	4(4.6)	87(100.0)
종사경력	3년 미만	12(36.4)	19(57.6)	2(6.1)	33(100.0)
	10년 미만	26(34.7)	47(62.7)	2(2.7)	75(100.0)
	10년 이상	6(37.5)	10(62.5)	0(0.0)	16(100.0)
지역규모	광역시	20(33.3)	39(65.0)	1(1.7)	60(100.0)
	기타	24(37.5)	37(57.8)	3(4.7)	64(100.0)

(3)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①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그림 Ⅵ-8, 표 Ⅵ-23), 모든 현장종사자가 자립에 대해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100.0%)고 응답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90% 이상이 전문 심리상담 지원(94.4%), 대인관계 훈련(95.9%), 생활교육(95.9%), 경제교육(92.7%), 건강지원(96.7%), 진로지도(96.7%)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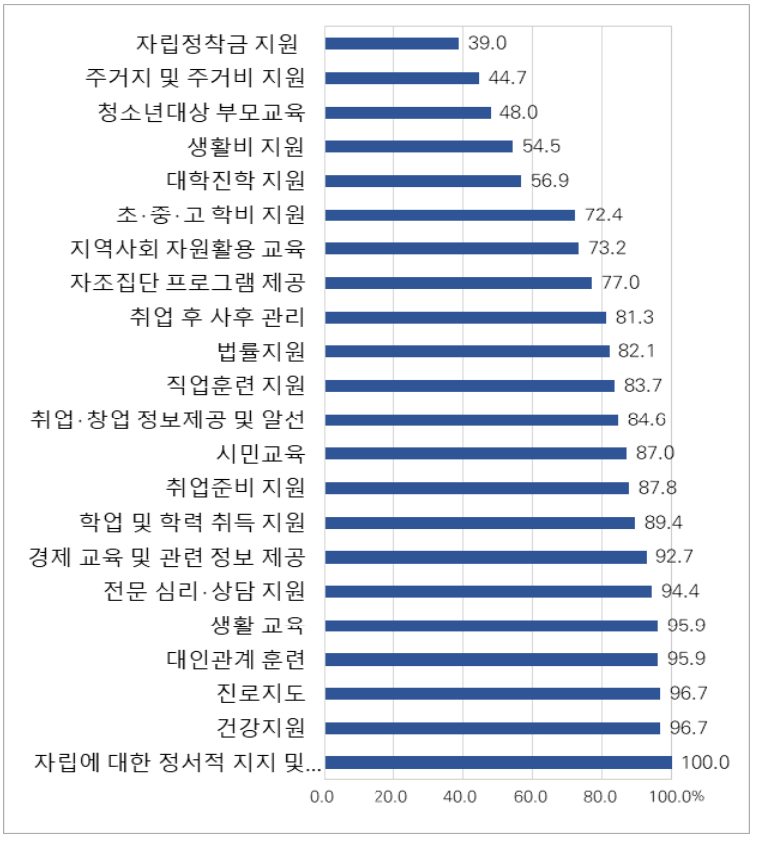


그림 Ⅵ-8.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다음으로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89.4%), 취업준비 지원(87.8%), 시민교육(87%),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84.6%), 직업훈련 지원(83.7%), 취업 후 사후관리(81.3%) 등의 자립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현장종사자의 80%이상이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자조집단 프로그램(77%), 지역사회 자원활용 교육(73.2%), 초·중·고 학비지원(72.4%) 등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지원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 지원(39.0%), 생활비 지원(54.5%),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44.7%), 대학진학 지원(56.9%) 등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Ⅵ-23. 자립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빈도(%)

지원 항목		제공여부		전체
		예	아니오	
심리사회 지원	1) 전문 심리·상담 지원	117(94.4)	7(5.6)	124(100.0)
	2) 자립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동기 부여	123(100.0)	0(0.0)	123(100.0)
	3) 대인관계 훈련	118(95.9)	5(4.1)	123(100.0)
	4) 자조집단 프로그램 제공	94(77.0)	28(23.0)	122(100.0)
일상생활 지원	5)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114(92.7)	9(7.3)	123(100.0)
	6) 생활 교육	118(95.9)	5(4.1)	123(100.0)
	7) 지역사회 자원활용 교육	90(73.2)	33(26.8)	123(100.0)
건강지원	8) 건강지원	118(96.7)	4(3.3)	122(100.0)
경제 및 주거지원	9) 생활비 지원	67(54.5)	56(45.5)	123(100.0)
	10) 자립정착금 지원	48(39.0)	75(61.0)	123(100.0)
	11)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55(44.7)	68(55.3)	123(100.0)
학업지원	12)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110(89.4)	13(10.6)	123(100.0)
	13) 초·중·고 학비 지원	89(72.4)	34(27.6)	123(100.0)
	14) 대학진학 지원	70(56.9)	53(43.1)	123(100.0)
진로/ 취업지원	15) 진로지도	119(96.7)	4(3.3)	123(100.0)
	16) 직업훈련 지원	103(83.7)	20(16.3)	123(100.0)
	17) 취업준비 지원	108(87.8)	15(12.2)	123(100.0)
	18)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104(84.6)	19(15.4)	123(100.0)
	19) 취업 후 사후 관리	100(81.3)	23(18.7)	123(100.0)
기타	20) 시민교육	107(87.0)	16(13.0)	123(100.0)
	21) 청소년대상 부모교육	59(48.0)	64(52.0)	123(100.0)
	22) 법률지원	101(82.1)	22(17.9)	123(100.0)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에 차이를 보여(표 Ⅵ-24), 생활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대학진학 지원 등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의 제공여부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기쉼터와 일시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항목 특성상 가정 밖 청소년들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제공가능한 지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24.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차이[129)]

단위: 빈도(%)

지원 항목	시설 유형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전체 사례수 (%)	χ^2(df)
		예	아니오		
생활비 지원	일시쉼터	4(26.7)	11(73.3)	15(100.0)	7.840* (3)
	단기쉼터	28(50.9)	27(49.1)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6(66.7)	13(33.3)	39(100.0)	
	회복지원시설	9(64.3)	5(35.7)	14(100.0)	
자립정착금 지원	일시쉼터	2(13.3)	13(86.7)	15(100.0)	13.401** (3)
	단기쉼터	17(30.9)	38(69.1)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9(48.7)	20(51.3)	39(100.0)	
	회복지원시설	10(71.4)	4(28.6)	14(100.0)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일시쉼터	3(20.0)	12(80.0)	15(100.0)	8.187* (3)
	단기쉼터	23(41.8)	32(58.2)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19(48.7)	20(51.3)	39(100.0)	
	회복지원시설	10(71.4)	4(28.6)	14(100.0)	
대학진학 지원	일시쉼터	3(20.0)	12(80.0)	15(100.0)	13.453** (3)
	단기쉼터	29(52.7)	26(47.3)	55(100.0)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28(71.8)	11(28.2)	39(100.0)	
	회복지원시설	10(71.4)	4(28.6)	14(100.0)	

*p<.05 **p<.01 ***p<.001

129) 시설유형별로 자립관련 서비스 제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있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②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그림 Ⅵ-9, 표 Ⅵ-25),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130] 생활교육이 9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현장종사자 대부분이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정리정돈, 시간관리, 살림 및 요리, 청소, 세탁과 같은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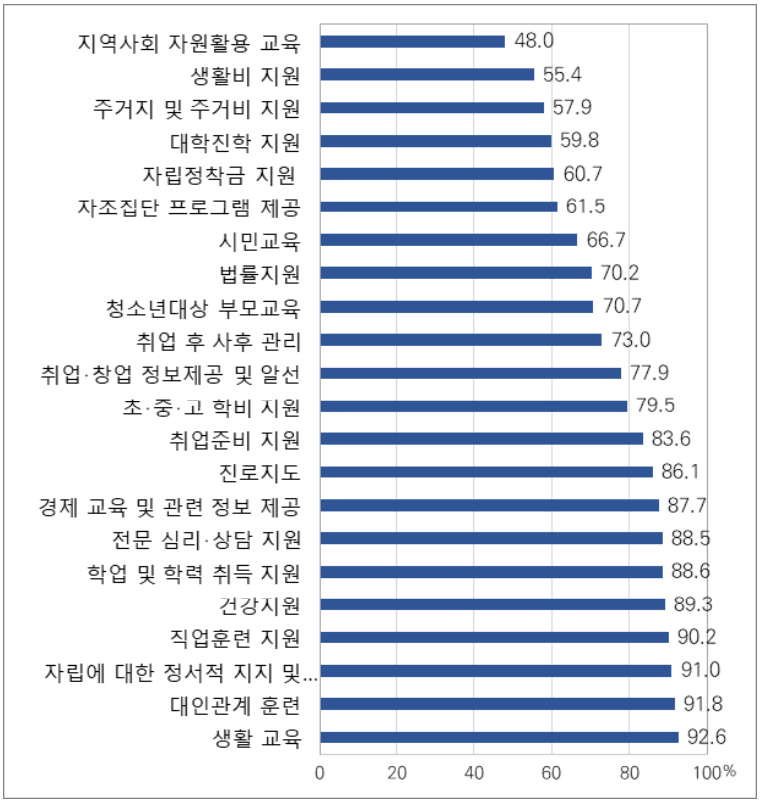


그림 Ⅵ-9.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매우 필요하다 비율)

130) 일반적으로 긍정 응답(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기준으로 기술하나, 모든 항목에서 긍정비율 응답이 90~100%로 나타나 상대적인 필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예절교육 및 인간관계 기술과 같은 대인관계 훈련(91.8%), 자립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동기 부여(응원/도움, 멘토링 등)(91%)와 같은 심리·사회적 지원과 인턴십 및 자격증을 포함한 직업훈련 지원(90.2%) 등에 대해 현장종사자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25. 자립 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빈도(%)

지원항목		필요 정도				전체 사례수(%)	평균 (SD)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심리 사회 지원	1) 전문 심리·상담 지원	0(0.0)	0(0.0)	14(11.5)	108(88.5)	122(100.0)	3.89(0.32)
	2) 자립 정서적 지지 및 동기 부여	0(0.0)	0(0.0)	11(9.0)	111(91.0)	122(100.0)	3.91(0.29)
	3) 대인관계 훈련	0(0.0)	0(0.0)	10(8.2)	112(91.8)	122(100.0)	3.92(0.28)
	4) 자조집단 프로그램 제공	0(0.0)	7(5.7)	40(32.8)	75(61.5)	122(100.0)	3.56(0.60)
일상 생활 지원	5)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0(0.0)	0(0.0)	15(12.3)	107(87.7)	122(100.0)	3.88(0.33)
	6) 생활 교육	0(0.0)	0(0.0)	9(7.4)	113(92.6)	122(100.0)	3.93(0.26)
	7) 지역사회 자원활용 교육	2(1.6)	5(4.1)	57(46.3)	59(48.0)	123(100.0)	3.41(0.65)
건강 지원	8) 건강지원	0(0.0)	0(0.0)	13(10.7)	108(89.3)	121(100.0)	3.89(0.31)
경제 및 주거 지원	9) 생활비 지원	3(2.5)	9(7.4)	42(34.7)	67(55.4)	121(100.0)	3.43(0.74)
	10) 자립정착금 지원	3(2.5)	6(4.9)	39(32.0)	74(60.7)	122(100.0)	3.51(0.71)
	11)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3(2.5)	4(3.3)	44(36.4)	70(57.9)	121(100.0)	3.50(0.68)
학업 지원	12)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	1(0.8)	2(1.6)	11(8.9)	109(88.6)	123(100.0)	3.85(0.46)
	13) 초·중·고 학비 지원	0(0.0)	5(4.1)	20(16.4)	97(79.5)	122(100.0)	3.75(0.52)
	14) 대학진학 지원	1(0.8)	8(6.6)	40(32.8)	73(59.8)	122(100.0)	3.52(0.66)
진로/ 취업 지원	15) 진로지도	0(0.0)	1(0.8)	16(13.1)	105(86.1)	122(100.0)	3.85(0.38)
	16) 직업훈련 지원	0(0.0)	1(0.8)	11(9.0)	110(90.2)	122(100.0)	3.89(0.34)
	17) 취업준비 지원	0(0.0)	2(1.6)	18(14.8)	102(83.6)	122(100.0)	3.82(0.43)
	18)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1(0.8)	2(1.6)	24(19.7)	95(77.9)	122(100.0)	3.75(0.52)
	19) 취업 후 사후 관리	1(0.8)	2(1.6)	30(24.6)	89(73.0)	122(100.0)	3.70(0.54)
기타	20) 시민교육	0(0.0)	4(3.3)	37(30.1)	82(66.7)	123(100.0)	3.63(0.55)
	21) 청소년대상 부모교육	2(1.6)	4(3.3)	30(24.4)	87(70.7)	123(100.0)	3.64(0.63)
	22) 법률지원	0(0.0)	2(1.7)	34(28.1)	85(70.2)	121(100.0)	3.69(0.50)

이외에 건강지원(89.3%),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88.6%), 전문 심리·상담 지원(88.5%),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87.7%), 진로지도(86.1%), 취업준비 지원(83.6%) 등에 대해 현장종사자 8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 시민교육(66.7%), 자조집단 프로그램 제공(61.5%)은 상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대학진학 지원(59.8%),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57.9%), 생활비 지원(55.4%), 지역사회 자원활용 교육(48%) 등은 더 낮은 수준의 필요정도를 보였다.

표 Ⅵ-26. 종사자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지원 항목	시설유형	필요 정도				전체	평균 (SD)	F (Scheff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초·중·고 학비 지원	일시쉼터[a]	0(0.0)	2(13.3)	6(40.0)	7(46.7)	15(100.0)	3.33(0.72)	4.234** b,c,d〉a
	단기쉼터[b]	0(0.0)	2(3.7)	8(14.8)	44(81.5)	54(100.0)	3.78(0.50)	
	중장기/자립지원관[c]	0(0.0)	1(2.6)	4(10.5)	33(86.8)	38(100.0)	3.84(0.44)	
	회복지원시설[d]	0(0.0)	0(0.0)	2(13.3)	13(86.7)	15(100.0)	3.87(0.35)	
대학진학 지원	일시쉼터[a]	0(0.0)	2(13.3)	8(53.3)	5(33.3)	15(100.0)	3.20(0.68)	3.851* d〉a
	단기쉼터[b]	0(0.0)	5(9.4)	20(37.7)	28(52.8)	53(100.0)	3.43(0.67)	
	중장기/자립지원관[c]	1(2.6)	1(2.6)	11(28.2)	26(66.7)	39(100.0)	3.59(0.68)	
	회복지원시설[d]	0(0.0)	0(0.0)	1(6.7)	14(93.3)	15(100.0)	3.93(0.26)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일시쉼터	0(0.0)	1(6.7)	4(26.7)	10(66.7)	15(100.0)	3.60(0.63)	2.915*
	단기쉼터	0(0.0)	0(0.0)	15(27.8)	39(72.2)	54(100.0)	3.72(0.45)	
	중장기/자립지원관	2(5.1)	3(7.7)	10(25.6)	24(61.5)	39(100.0)	3.44(0.85)	
	회복지원시설	0(0.0)	0(0.0)	1(6.7)	14(93.3)	15(100.0)	3.93(0.26)	

*p<.05 **p<.01 ***p<.001

종사자의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의 차이는(표 Ⅵ-26) 초·중·고 학비지원과 대학진학 지원, 청소년대상 부모교육 등의 지원항목에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초·중·고 학비지원의 경우 청소년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이 일시쉼터 종사자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대학진학 지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응답수준이 청소년 일시쉼터 종사자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청소년 일시쉼터의 평균치가 낮은 이유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단기적으로 머무는 시설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생활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학업 및 학력취득 지원, 초·중·고 학비 지원, 대학진학 지원 등의 항목에서는 시설장들의 필요 정도가 팀장/선임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Ⅵ-27).

표 Ⅵ-27. 종사자 직급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지원 항목	직급	필요 정도				전체	평균 (SD)	t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생활비 지원	시설장	0(0.0)	1(3.0)	10(30.3)	22(66.7)	33(100.0)	3.64(0.55)	2.029*
	팀장/선임	3(3.5)	7(8.2)	30(35.3)	45(52.9)	85(100.0)	3.38(0.79)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장	0(0.0)	0(0.0)	9(27.3)	24(72.7)	33(100.0)	3.73(0.45)	2.406*
	팀장/선임	3(3.5)	5(5.8)	28(32.6)	50(58.1)	86(100.0)	3.45(0.76)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시설장	0(0.0)	1(3.0)	6(18.2)	26(78.8)	33(100.0)	3.76(0.50)	2.935**
	팀장/선임	3(3.5)	3(3.5)	35(41.2)	44(51.8)	85(100.0)	3.41(0.73)	
학업 및 학력취득 지원	시설장	0(0.0)	0(0.0)	1(2.9)	33(97.1)	34(100.0)	3.97(0.17)	2.472*
	팀장/선임	1(1.2)	2(2.3)	9(10.5)	74(86.0)	86(100.0)	3.81(0.52)	
초·중·고 학비 지원	시설장	0(0.0)	0(0.0)	2(5.9)	32(94.1)	34(100.0)	3.94(0.24)	3.300**
	팀장/선임	0(0.0)	5(5.9)	16(18.8)	64(75.3)	85(100.0)	3.69(0.58)	
대학진학 지원	시설장	0(0.0)	0(0.0)	9(26.5)	25(73.5)	34(100.0)	3.74(0.45)	2.481*
	팀장/선임	1(1.2)	6(7.1)	30(35.3)	48(56.5)	85(100.0)	3.47(0.68)	

*p<.05 **p<.01 ***p<.001

지역사회 자원활용 교육은 다른 지원 항목에 비해 필요정도가 낮았으나 유일하게 종사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Ⅵ-28). 시설종사 경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사경력이 많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Ⅵ-28. 종사자 경력에 따른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지원 항목	경력	필요 정도				전체	평균 (SD)	F (Scheff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	3년 미만[a]	0(0.0)	1(3.0)	11(33.3)	21(63.6)	33(100.0)	3.61(0.56)	3.231* a>c
	10년 미만[b]	1(1.4)	2(2.7)	39(52.7)	32(43.2)	74(100.0)	3.38(0.61)	
	10년 이상[c]	1(6.3)	2(12.5)	7(43.8)	6(37.5)	16(100.0)	3.13(0.89)	

*p<.05 **p<.01 ***p<.001

③ 자립지원관련 문제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이슈에 대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수렴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많은 조사항목에 대해 긍정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이 매우 높게 나타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정도를 기준(매우 그렇다)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그림 Ⅵ-10, 표 Ⅵ-29),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필요(78.2%), 업무대비 낮은 종사자 처우 수준(74.2%), 표준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66.1%), 예산부족(65.3%),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 위한 홍보 필요(60.5%), 아동·청소년정책 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51.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50%이상이 현재 정책 및 서비스, 인력, 예산 등 관련 인프라와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자립준비 및 실습기관 부족(48.4%), 자립전담 전문 인력 부족(46.0%), 청소년 자립역량 부족(45.2%),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된 취업지원(43.5%), 청소년 자립의지나 동기 부족(41.1%), 자립지원 관련 정보 부족(38.7%), 숙식제공을 위한 기관/시설 부족(33.3%)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30~40%이상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현장종사자들은 기관 내 시설 낙후(29.3%), 청소년 자립준비 시작 부족(29%), 시설퇴소 후 사후관리 부족(26.6%), 자립지원 필요 가정 밖 청소년 발굴/접근 어려움(25.8%), 기관 내 시설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20.3%),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기관 부족(20.2%) 등의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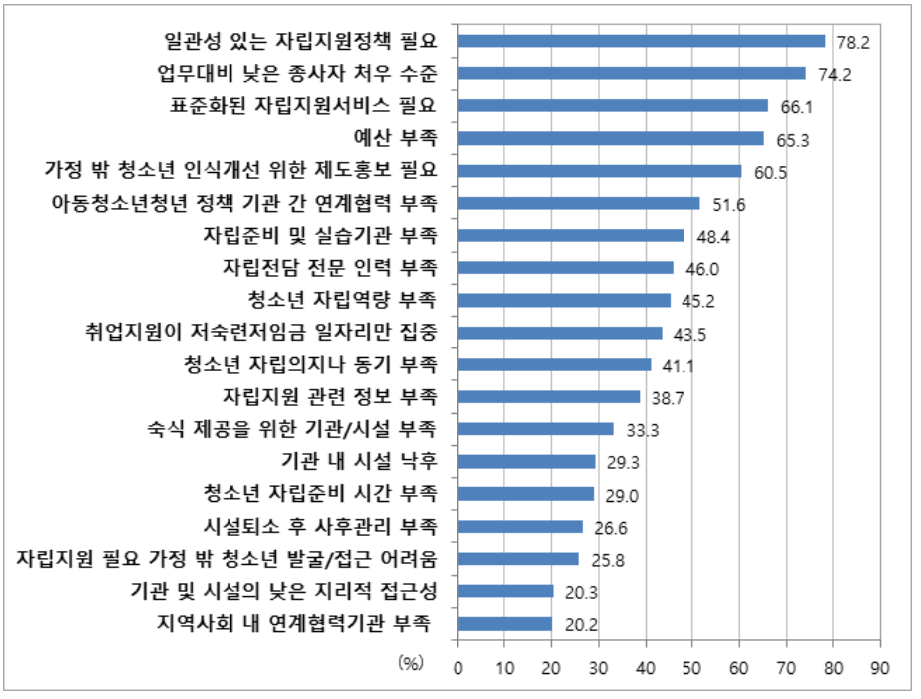


그림 Ⅵ-10.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정도(매우 그렇다 비율)

표 Ⅵ-29.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빈도(%)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동의 정도				전체	평균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제도적 요인	1) 예산 부족	0(0.0)	6(4.8)	37(29.8)	81(65.3)	124(100.0)	3.60(0.58)
	2)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필요	0(0.0)	1(0.8)	26(21.0)	97(78.2)	124(100.0)	3.77(0.44)
	3)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1(0.8)	6(4.8)	53(42.7)	64(51.6)	124(100.0)	3.45(0.63)
인프라 (시설 및 인적 요인)	4) 기관 내 시설 낙후	6(4.9)	39(31.7)	42(34.1)	36(29.3)	123(100.0)	2.88(0.89)
	5) 숙식 제공을 위한 기관/시설 부족	4(3.3)	20(16.3)	58(47.2)	41(33.3)	123(100.0)	3.11(0.79)
	6) 자립준비 및 실습기관 부족	0(0.0)	9(7.3)	55(44.4)	60(48.4)	124(100.0)	3.41(0.62)
	7) 기관 및 시설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	12(9.8)	42(34.1)	44(35.8)	25(20.3)	123(100.0)	2.67(0.91)
	8) 자립지원 필요 가정 밖 청소년 발굴/접근 어려움	5(4.0)	38(30.6)	49(39.5)	32(25.8)	124(100.0)	2.87(0.85)
	9) 자립전담 전문 인력 부족	0(0.0)	4(3.2)	63(50.8)	57(46.0)	124(100.0)	3.43(0.56)
	10) 업무대비 낮은 종사자 처우 수준	0(0.0)	5(4.0)	27(21.8)	92(74.2)	124(100.0)	3.70(0.54)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요인	11) 표준화된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0(0.0)	3(2.4)	39(31.5)	82(66.1)	124(100.0)	3.64(0.53)
	12) 자립지원 관련 정보 부족	0(0.0)	12(9.7)	64(51.6)	48(38.7)	124(100.0)	3.29(0.63)
	13) 취업지원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중	0(0.0)	13(10.5)	57(46.0)	54(43.5)	124(100.0)	3.33(0.66)
	14) 시설퇴소 후 사후관리 부족	2(1.6)	30(24.2)	59(47.6)	33(26.6)	124(100.0)	2.99(0.76)
개인적 요인	15) 청소년 자립의지나 동기 부족	0(0.0)	11(8.9)	62(50.0)	51(41.1)	124(100.0)	3.32(0.63)
	16) 청소년 자립역량 부족	1(0.8)	3(2.4)	64(51.6)	56(45.2)	124(100.0)	3.41(0.58)
	17) 청소년 자립준비 시간 부족	5(4.0)	25(20.2)	58(46.8)	36(29.0)	124(100.0)	3.01(0.81)
환경적 요인	18)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기관 부족	4(3.2)	40(32.3)	55(44.4)	25(20.2)	124(100.0)	2.81(0.79)
	19) 가정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위한 제도/홍보 필요	1(0.8)	6(4.8)	42(33.9)	75(60.5)	124(100.0)	3.54(0.6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일부 문제점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Ⅵ-30). '청소년의 자립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일시쉼터와 단기쉼터의 종사자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0. 종사자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시설 유형	동의 정도				전체	평균 (SD)	F (Scheff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 자립준비 시간 부족	일시쉼터[a]	0 (0.0)	7 (46.7)	5 (33.3)	3 (20.0)	15 (100.0)	2.73 (0.80)	4.310** d>a,c
	단기쉼터[b]	4 (7.3)	6 (10.9)	28 (50.9)	17 (30.9)	55 (100.0)	3.05 (0.85)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c]	1 (2.6)	11 (28.2)	21 (53.8)	6 (15.4)	39 (100.0)	2.82 (0.72)	
	회복지원시설[d]	0 (0.0)	1 (6.7)	4 (26.7)	10 (66.7)	15 (100.0)	3.60 (0.63)	

*p<.05 **p<.01 ***p<.001

또한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표 Ⅵ-31) 기관의 시설장이 팀장/선임 종사자에 비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시설운영에 책임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더 종사한 시설장이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Ⅵ-31. 종사자 직급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직급	동의 정도				전체	평균 (SD)	t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필요	시설장	0 (0.0)	0 (0.0)	4 (11.8)	30 (88.2)	34 (100.0)	3.88 (0.33)	2.089*
	팀장/선임	0 (0.0)	1 (1.1)	22 (25.3)	64 (73.6)	87 (100.0)	3.72 (0.48)	

*p<.05 **p<.01 ***p<.001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부족에 대해서는 종사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검증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Ⅵ-32). 청소년의 자립역량 부족의 경우에는 현장 종사자의 종사경력이 길수록 더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2. 종사자 종사 경력에 따른 자립지원관련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

단위: 빈도(%)

	종사 경력	동의 정도				전체	평균 (SD)	F (Scheff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시설퇴소 후 사후관리 부족	3년 미만	2 (6.1)	12 (36.4)	12 (36.4)	7 (21.2)	33 (100.0)	2.73 (0.88)	4.214*
	10년 미만	0 (0.0)	12 (16.0)	40 (53.5)	23 (30.7)	75 (100.0)	3.15 (0.67)	
	10년 이상	0 (0.0)	6 (37.5)	7 (43.8)	3 (18.8)	16 (100.0)	2.81 (0.75)	
청소년 자립역량 부족	3년 미만[a]	1 (3.0)	2 (6.1)	18 (54.5)	12 (36.4)	33 (100.0)	3.24 (0.71)	3.309* c>a
	10년 미만[b]	0 (0.0)	1 (1.3)	41 (54.7)	33 (44.0)	75 (100.0)	3.43 (0.52)	
	10년 이상[c]	0 (0.0)	0 (0.0)	5 (31.2)	11 (68.8)	16 (100.0)	3,69 (0.48)	

*p<.05 **p<.01 ***p<.001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1) 조사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대상의 초점집단면접(FGI)은 2018년 8월 27일에 시설장 6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실시하였다. 참석한 시설장의 근무지역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인데 이는 시설의 소재지가 대부분 경상도[131]이기 때문이다. 시설장의 성별 및 각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현황은 표 Ⅵ-33과 같다.

표 Ⅵ-33. FGI 참가자 특성 및 근무시설 현황

구 분	참가자 성별	시설별 거주 청소년 현황
1	남	남자 6명(재학 3명, 학교 밖 3명)
2	여	남자 10명(재학 5명, 학교 밖 3명, 고졸(검정고시) 2명)
3	남	여자 5명(재학 4명, 학교 밖 1명)
4	남	남자 8명(재학 5명, 학교 밖 3명)
5	여	남자 3명(학교 밖 3명)
6	여	여자 6명(재학 2명, 학교 밖 4명)

FGI의 주요 내용은 현 회복지원시설별 현황(시설의 특성, 거주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인원 등), 시설 청소년들의 자립 및 관련 지원의 필요성, 시설 내 자립지원 현황, 자립지원 관련 문제점 및 선결조건, 자립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FGI는 본 조사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자(moderator) 역할을 수행하였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FGI 녹음자료는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는데,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두드러진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131) 2017년 12월 기준 총 16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 14개소가 경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FGI 결과

(1) 시설 거주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일반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의 지원이 매우 약하고 시설의 지원이 이들에 대한 지원의 전부인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들 청소년은 자립준비 및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립 준비도나 지원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① 낮은 학력

우선적으로 이들의 학업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표 Ⅵ-3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반의 청소년(38명 중 19명)만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2명은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학력 취득, 나머지 17명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수업을 듣기보다는 상담실 등에서 자숙하거나 위탁대안학교, 특별반 과정, 숙려기간 등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두 명과 취업훈련 중인 청소년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어떤 곳에도 적을 두지 않고 있었다.

> "정상적으로 아침에 등교를 하고 오후에 하교하는 아이는 1명도 없는 상태고. 중학생 아이 둘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다 학교 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어떤 아이는 숙려제로 돌리느냐 아니면 어떤 아이는 좀 늦게 등교하고 상담실에 앉아있다 그냥 오는 정도로 하고 있고."

>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명은 이제 5명 중에 4명은 학적은 있는데 출석인정은 받고 있고, 1명은 재학 중이고요."

> "중학교 2명은 숙려기간이고 집에서 대기하면서 좀 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1명이 자퇴되어 있고 2명은 이번에 고등학생, 중학교, 이렇게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 "1명은 중졸해서 지금 네일아트학원에 다니고 있고, 1명은 바리스타학원 다니고 있고."

② 자립의지 및 생활훈련 부족

시설장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자립의지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설장들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동기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우며 동일선상에서 자립의지 역시 낮다보니 자립훈련을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아이들을 보면 의지가 약하잖아요? 뭘 시켜도 안하고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인권이니 뭐니 하다보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좀 며칠 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 하나는 정직원으로 해서 연봉을 그때 한 2천 가까이 그리해서 보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생활이 지나고 돈이 모이게 되면서 애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했던 3명의 아이들을 또 다 실패했어요."

청소년들이 자립의지를 포함하여 학습이나 생활 동기가 낮은 것에 대해 시설장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다 보니 자립의지를 키우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거를 돌이켜서 보면 결국은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 부족한 그거거든요."

"자립이라는 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결이 다듬어지고 의지가 생기고 먹고 살려고 어떤 개념을 갖고 친구들에게 자립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입소하는 친구들 (중략) 무방비로 위탁을 딱 처분하니까…."

"(6개월 후 청소년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마음만 급하기만 하고 거기서 갈등도 일어나고 '왜 선생님, 다른 센터, 상담을 받았던 데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아침 9시까지 준비를 다해야 되고 교육을 가야되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느냐?' 항의할 때도 있어요."

"저희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 자립지원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중략) 그리고 센터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보호자의 지원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모으게 하고. (중략) 근데 걔들도 그냥 우리가 하는 식당이니

까 쓰지. 손님들 편에서는 힘든 거예요, 서빙해주는 애가 함부로 음식 갖다 주고. (중략) 그러면 식당은 적자가 나는데 아이들은 뭐먹고 재료 함부로 쓰고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③ 열악한 지원체계 및 경제적 어려움

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물리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원가정의 지원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위탁되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경우 가족이나 주변의 어른들로부터의 심리적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입소하는 친구들, 저희 기준으로 보면 6명중에 1명은 보육원에서 퇴소, 보육원에서 내보낸 아이, (중략) 나머지 5명은 재혼가정이에요. 재혼가정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그중에는 또 재혼하시고 이혼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정, 진짜 순수한 가정방임인거예요. 돌아가도 본인들이 적응할 수가 없고, 혈연관계가 아닌 형제들, 이복형제들 이런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밀려나고."

"원가정이 다 온전치 않으니까 (원가정에) 보내도 비행이 반복되거나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 결국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서는 게 낫겠다. (중략) '아, 이 부모에게는 더 기대할게 없으니까 일단 네 스스로 살아'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남자아이지만, 3명의 아이가 가정이 없어요. 다들 보육원 아이들이고. (중략)"

"이 친구는 보육원에서 통보해서 내보낼 정도면 보육원에서 살 정도도 안 되는 성격인거예요. 분노조절도 안되고."

가정상황이 위와 같다 보니 가정 등에서의 경제적 지원 역시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경우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정부 등의 지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자금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이마저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또한 기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이나 내구제 휴대폰[132] 등을 통해 빚을 내는

경우도 나타났다.

"저희 아이가 기초수급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근데 기초수급비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강 시 나와야 하는) 수당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중략) 할머니가 계시니까 또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수당도 안 나와 자기 기초수급가지고 왔다 갔다 차비도 해야 되죠. 밥도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 코스인데 1달은 정말 잘 다녔어요. 근데 2번째 달에는 할머니가 아프시고 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지금 11월 달에 내보내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육원 시설 생활을 했다보니까 (중략) 디딤씨앗통장이 있어요. 그게 보통 어릴 때부터 적립하면 나중에 많게는 천만원까지도 모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이 되어 있어서 매달 적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적금을 또 다른 기관에 있으면서 연계된 거를 계속해서 넣다보니까 적금 만기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이, 삼천은 아이한테 적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자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원룸을 일단은 저하고 해서 제 명의로 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통장을 줘버리면 그거를 자기가 어떤 쉽게 돈에 대해서 어릴 때 벌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천 오백만원 가까운 돈을 모으고 했는데 또 남자친구한테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지금 거의 원상태로 돌아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기초수급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돈이 없어요. (원룸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200, 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략) 6개월 동안 기초수급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모을 수 있느냐? 그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빚이 있는 친구들이 꽤 돼요. 남의 명의 빌려서 휴대폰해서 몇 백씩, 천단위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중략) 요즘 심각한 청소년 사이의 소액대출문제. 소액대출을 해서 (놀러가려고) 30만원을 빌렸어요. 30만원 빌려서 10만원 이자 값, 20만원을 가져요. 20만원 갚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 또 빌려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100이 200되는 아이들도 있고."

132)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할부로 개통하거나 구입한 휴대폰을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자립지원 방안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장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① 거주지 및 보증금 지원

청소년 자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주거지 확보라 할 수 있다. 자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독립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월세는 개인 선에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목돈인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시설장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주거지를 마련하여 청소년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설장들은 보증금 지원을 통한 거주지 확보를 우선적인 지원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덧붙여 해당 청소년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주거지원이고요. 주거지원 문제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주공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을 머물러야 돼요. 그럼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중략)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또 아이들이 기초수급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돈이 없어요. 보증금이 200, 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략) 주거지원 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 지원이 제일 필요하고요."

> "퇴소하는 아이들이 원가정에 못가니까 또 반복적인 문제가 생겨서 원룸을 했는데, 원룸을 하면 제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도망 나가. 그러면 그 월세를 제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②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자립의지가 약하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설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관을 거치면서 수많은 상담을

받아왔지만 그러한 상담이 모두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한 전문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담당자와의 단기적인 상담을 반복적으로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상담의 효과는 높지 않다. 종사자들은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의 상담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아이들이 웬만한 심리는 다 받고 왔어요. 학교, 상담실 거쳤죠. 상담복지센터 거쳤죠. 꿈드림 거쳤죠. 기본적으로도 개인 상담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소년원가서 분류심사 받았죠.) 네. 거기서도 상담하죠. 또 보호관찰소 상담하죠, 법원에서 40시간 수강도 하죠.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았는데 또 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어떤 애들은 10분 상담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상담쇼핑을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아이의 어떤 그 가장 그 부분을 어떤 전문가가 찾다보니까 이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게 들어가니까 매주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사실은 조금 일어설 수 있는 살아야 되겠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찾아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해 볼래요, 저거 해볼래요.' (중략) (저는)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사실 어떤 부분은 베일에 가려놓고 안하기 때문에 어떤 제 3자의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부모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상담 등을 통한 원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가정 복귀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이 좀처럼 아까 원가정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서려고 상담이 도움이 되지만, 부모가 어중간하게 있는 아이들 그것도 안 됩니다."

③ 대상자 수준에 맞는 취업 지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훈련 및 알선이 필요하다. 학력이 부족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청소년들은 직업교육과정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경우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부족하거나 학습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훈련에서 실패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기회를 얻기까지 2년이라는 제한을 두기보다는 심의를 거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애들은 나가면 100% 배달맨들입니다. 배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뭐 학업도 달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직업 개발 면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쉽게 또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략) (아이들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서울대생 할 거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격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안돌아가는 머리로, 10분도 못 앉아 있는 머리로 취업 뭐 가서 하다보면 억지로 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떠 밀려가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진짜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하는 거 같은 거라. 그게 안 됩니다. 제일 어려워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저희 아이들 2명을 보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낙인이 찍혔어요. 블랙이 떴어요. 왜냐하면 성공취업패키지를 실패하면, (그 패키지 실패하면 안받아줘요.) 실패하면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취업 훈련 중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라도 소정의 훈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기초수급을 받더라도 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오는 친구들이 어떤 고용노동부의 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비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자격증을 따야 취업을 하죠. (중략) 동사무소도 60만 원 이하의 수입이면 기초수급 유지래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 수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라도 조금 부처가 협의가 된다면 일자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관도 세워지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애들이 없다고 그래요. '학교 밖 애들이 없어요.' 하는데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④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을 보면 보호정원이 5~10명에 종사자 2명(시설장 1명, 보호·상담원 1명)이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이 24시간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생활시설이고 청소년들의 특성상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다 보니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지원까지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 시설 내 인력배치가 어렵다면 지역 내에 자립지원 전담요원과 같은 인력이 배치되거나 청소년자립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등을 고려해볼만하다. 이러한 인력이나 기관을 통한 자립지원은 단순한 취업훈련이나 취업알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자금관리, 주거, 진로 및 취업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두 명이서 24시간 북 치고 장구치고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시설 내에, 센터 내의 아이들이 거의 행동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한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상생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 "자립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그냥 아주 편안한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중략) 여기에 등록을 해서 이런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하면, 이 애들한테 돈 주면 안돼요. 얼마 안 있어서 그거를 다 날려먹고 없어요. (중략) 어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자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이 자립지원센터에 들어오면 네가 월급을 타면 나한테 통장을 맡기라고 하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들은 절대 관리가 안돼요."

⑤ 지원기간의 조정 및 시설 연계

청소년들이 회복지원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감호위탁기간동안인 6개월이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6개월 더 연장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 685, 702). 대부분의 아이들은 6개월 이후에는 퇴소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립지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복귀해야 하는 가정의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현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자립의지가 있으나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시설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생활시설로의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타 시설로 연계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시설 담당자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청소년들이 안전망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이후에 아이들을 과연 집으로 보낼지 아니면 자립을 할지 6개월 안에 다 결정해야 되는데 6개월이 어떨 때는 되게 벅차요."

"아이에게서 개인 면접을 하든지 일정기간에 그거를 통과한 아이에게 뭔가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6개월이라는 한계죠, 의무적인."

"이 아이들이 만기가 되었지만 여기서 머물고자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거를 떠나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되었으면. (중략) 아이가 당장 지금 다음 달 되면 나가야되는 아이인데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저 안 갈 건데요. 저 여기서 살건 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실 갈 곳이 없으니까 걔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걔한테는 가장 절실한데 사실 저희들은 제도적인 거 때문에 이 아이를 머물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4. 소결 및 시사점

1) 전문가 의견조사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및 범위에 대한 1차 개방형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로 가출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가정 밖 용어가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133]. 또한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정해체와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과 소년법 제1호 처분을 받았으나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원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법과 법 적용 연령 기준, 그리고 정책 및 서비스 적용의 차이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파급력 있는 정책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많은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134] 한편으로 현실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서는 이들의 다양

133)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실천7] 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상황적으로 잠깐 집을 나와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부모 없이 생활하는 상황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해 '가정 밖'이라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34) [학계10] 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부적응,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무업상태의 청소년, 근로청소년, 홈스쿨링하는 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 밖'청소년도 가출청소년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정책1] 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으며 '가정' 개념의 범위를 좁혀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위분류나 범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나 과도한 언론 보도 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후에 또 다른 낙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그리고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청소년 모두 가정이나 성장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매우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 요보호청소년이란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 다른 주무부처의 정책대상이 되어 있으나 결국 거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시설을 통해 생활하느냐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나 처우가 달라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사용, 또는 용어 통일로 각자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마치 유사한 서비스 제공 및 중복 시혜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일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관련 정책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지원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유사한 맥락으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립생활관, 아동발달계좌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예시로 들면서 이러한 자립지원체계와 서비스·프로그램이 시설보호 아동과 유사한 상황인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

였다. 둘째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에 많은 예시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생활형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및 용돈 제공과 실제 자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정착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가정에서 학대나 폭력 등의 문제를 겪거나 가출 이후 비행 등을 경험한 경우 심리·정서적 안정과 트라우마 및 각종 중독 문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초로 자립의지를 독려하고 더불어 대인관계기술,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 의사소통기술 등 개인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자금관리기술이나 부채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제교육과 가정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학력취득을 위한 학업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지원, 적성 및 진로 탐색을 통한 구체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청소년의 적성과 유망 직업을 고려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취업준비 지원(면접기술, 이력서 쓰기 등)과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 소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사회규범 교육, 부모교육과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 원가정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각각의 상황과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관련한 선결 조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전문가들은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으며, 용어 변경 뿐 아니라 이들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부의 정책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 및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황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데다가 정부부처별로 분절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내용이 각 부처 산하 시설이용 청소년에만 국한되고, 이에 따라 타 부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배제되는 문제도 상당 수 지적되었다. 관련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연령 범위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유사 맥락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용시설 유형이 아닌 상황에 초점을 두어 동일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자립지원 서비스 표준화 및 총괄기구 구성 등)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쉼터유형에 따른 기능 및 서비스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셋째, 전반적인 자립지원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과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의 시설인프라 확충, 생활지도를 위한 종사자와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현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자원 활용, 자립관련 정보의 접근성, 자립지원관련 효과성 검토 등의 중요성도 제시되었다.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성급한 자립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이는 원가정의 지원 없이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립에 직면한 청소년들에게 성급한 자립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된 내용 중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제도·환경, 시설인프라, 인력, 서비스·프로그램 중 제도·환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관련

법·정책과 환경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전체 15개 정책 과제 중에서도 관련 법 정비 및 정책 개선·신설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 인력 배치에도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인력부분에 우선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정책내용 및 현장실천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책과제 중에서는 경제 및 주거지원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16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1순위,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동기부여가 2순위, 자립정착금 지원이 3순위로 나타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거지원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인 중요도에서 다소 후순위일 수 있으나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다수 현장전문가가 지적한 금전관리 등의 경제교육,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지원, 일상생활기술 교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립지원 내용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된 124개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에게도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 사용과 이들 청소년 대상의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여부와 필요 정도, 또 자립지원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종사자의 90.3%인 11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현장종사자가 용어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일부 종사자들은 가정 밖 용어 역시 부정적 의미가 있으며 용어 변경 시 혼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90%가 기존의 가출청소년, 양육 거부/유기된 청소년, 가정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빈곤 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 일시적/영구적 주거취약 청소년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57.5%)이나 위탁가정 청소년(35.5%)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해 아동복지법 우선적용대상인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에 대해 현재의 청소년기본법 기준(만 9세~24세)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고, 축소해야 한다는 35.5%, 확대해야 한다는 3.2%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서비스 중 정서적 지지 및 동기 부여,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인관계훈련, 생활교육, 경제교육, 건강지원, 진로지도 등은 90% 이상의 조사대상 시설/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사자들의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도가 대부분 90%가 넘게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립정착금 지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인 것에 비해 실제 제공하는 시설은 39.0%에 불과하였으며, 주거지·주거비 지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였으나 실제 제공 비율은 44.7%에 불과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자립정착금이나 주거지·주거비 지원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기관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기에는 예산소요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낮았는데, 특히 종사경력이 많은 종사자에게서 필요성이 더 낮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관련 문제점 또는 개선 필요 내용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은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필요, 업무대비 낮은 종사자 처우

수준, 표준화된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관련 예산 부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위한 제도와 홍보 필요, 아동·청소년·정책 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등이 매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50%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열악한 가정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업 중단 비율이 높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자립이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지만 자립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낮아 취업 관련 기회가 주어져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처한 상황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이들에게는 국가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앞서 언급한 낮은 자립의지 및 학습수준, 경제적 열악함, 지원체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한계에 더하여 열악한 재정, 인력의 부족, 한정된 보호기간 등 지원시설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에 더욱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에 종사자들은 거주지 및 보증금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수준에 맞는 취업 지원,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지원기간의 조정 및 시설 연계 등을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제Ⅷ장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3. 정책과제

Ⅶ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제언[135)]

1.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 제안의 기초가 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결과

(1)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본 연구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조사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규모를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9~18세 청소년 중에는 약 56,000여 명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사실과 이에 더하여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중에도 원가정에서 이탈되었으나 자립을 이루지 못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9~24세 청소년 중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문제를 비롯하여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학업 중단, 어려운 경제적

135) Ⅶ장은 김희진 연구위원과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다.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 등을 겪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없는 한 자립의 길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립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방해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자립에 대한 논의들과 자립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결국 자립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되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며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금전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원활한 대인관계, 취업 및 직장생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립 준비는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기 이행 지연과 이 과정에서의 원가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이들의 자립과 성인기 이행 준비 시 상대적으로 더 결핍될 수 있는 영역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요구가 잘 파악되어야 하며, 당장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균형잡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 없는 자립 촉진이나 독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계속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 일자리에서 그대로 성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나은 자립을 위해서는 당장의 의식주 문제해결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성인기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 및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낮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부담 등), 낮은 자립준비정도와 자립의지와 같은 요인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정책현황 분석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아동양육시설 보호청소년이 정책대상인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정책을 법적근거, 정책대상, 급여형태 및 내용, 전달체계, 재원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상세내용 및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자립관련 시설이용에 있어서 연령이나 이용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전담/총괄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며, 지역별 자립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국비 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같은 현금지원 역시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국내외 사례 연구

국내의 자립지원 우수사례로는 보호 종결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인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과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업 내용과 대상, 운영 예시, 우수 사례,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립 사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립 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과 평가, 자립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다양한 진로영역 개발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관련법 및 정책, 지원 우수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지원의 우수사례로 영국의 센터포인트(Centrepoint), 미국의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Sasha Bruce Youthwork: SBY), 독일의 오프로드키즈 재단(Off Road Kids Foundation)과 갱웨이

(Gangway), 프랑스의 알규 포아예(Foyer les Algues)와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Apprentis d'Auteuil)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각 국가의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민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 자립지원 전담총괄기구 설립·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도 평가 및 계획 수립, 직업 훈련의 다양화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4)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

(1)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평균 15.6세에 처음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부분(73.2%)은 2회 이상, 약 40%는 1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는 역시 가족 간 갈등과 가정 폭력이었다. 가정 밖 생활 기간과 부모와의 불화 및 가정 내 학대 경험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대다수(73.7%)의 청소년들은 가정을 나온 후 최소 두 군데 이상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일부는 가출 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쉼터를 비롯하여 지원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 중 70% 이상은 지원기관 및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고 보호시설 종사자를 믿고 의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시설/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만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분노 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계획, 건강상태, 사회적 역량,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그 비율이 높아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재학률은 53.1%, 학업중단율은 29.8%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은 17.0%였다. 이들의 재학률은 가정 밖 생활이 길어질수록,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보다는 일시쉼터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더 낮았다. 비재학생 중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청소년은 63.4%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가정 밖 생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회복지원시설이나 단기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검정고시 준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별 간 비교에서는 학업 지원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 즉 여자 청소년에게는 학업의지가 꺾이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중단된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고 비재학중인 경우, 가정 밖 생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 경험률이 높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숙련 저임금 근로를 주로 경험하였으며 근로 청소년 중 일부는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거나 낮은 보수, 기술이나 자격·학력 부족,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즉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이나 탈법 일자리를 경험하기도 하며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을 경험하는 등의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자신의 능력(26.6%)과 적성(23.3%), 경제적 수입(16.3%) 등이었는데, 일반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한 반면,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고 있었다. 또 3년 이내에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일반 청소년보다 높았는데 이 역시 가정 밖 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진로관련 활동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54.9%가 경험하였는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학교 재학인 경우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5%가 직업훈련을 경험했는데, 가정 밖 생활이 1년 이상이고,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 생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응답자의 43.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직업훈련관련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은 특히 진로와 관련된 정보 습득과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더 받고 싶어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은 예술/디자인/방송계통, 이·미용 분야, 요리사/바리스타, 군인/경찰/공무원, 상담/심리/사회복지 분야, 간호사/간호조무사, 학교교사/보육교사 등이 전체 64.1%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직업들을 선호했다.

90%가 넘는 조사대상 가정 밖 청소년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시기를 독립하는 시기,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각각 73.4%, 74.9%). 자립의지에 대해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향후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의지가 다른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립의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취업관련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내일배움카드제도, 일학습병행제, 기타 정부지원 등)을 받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자립지원 서비스 경험정도를 보면 일반 심리·상담 지원과 건강지원 경험률이 각각 60.3%, 60.1%로 가장 많았고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를 포함한 진로지도가 54.1%였으며, 직업훈련 지원(35.8%), 취업정보 제공(32.7%) 등은 비교적 낮은 경험률을

보여 진로지도와 직업/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9.7%로 가장 높았으며, 자립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83.0%,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조사항목 중 일부 동일 항목에 대해 2차 자료(일반 가정 내 청소년)와 비교하였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내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높은 반면 자존감이나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진로관련 활동 및 직업훈련 경험은 2차 자료의 청소년들보다 두 세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현재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을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와 별개로 불가피하게 경제적 자립에 직면하여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향후 직업선택 기준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2차 자료의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하였으나, 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미래에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도 2차 자료의 청소년들보다 낮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약 50%가 향후 3년 이내에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차 자료의 청소년들의 응답률(약 40%)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진학보다 취업을 더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와 같이 이른 자립 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들도 다른 일반 가정 내 청소년들과 같이 보다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 지도의 필요성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과 대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면접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는 만 15세 이상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일인당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내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연구 주제를 추출, 분류하고 항목화 하였는데 분류된 연구 주제로는 '가족', '기관생활', '현재 학업 상황', '학업 지속 의지',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저축', '빚',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의 의미', '자립시기',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을 위한 준비' 등 12개 항목이었다. 추출된 주제 및 내용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중심현상은 기관생활, 중재적 조건은 기관의 지원 및 지지, 상호작용은 자립을 위한 시도, 그리고 결과는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양육체계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며,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은 학교나 또래 관계 등 주요 사회화 과정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경제생활 등으로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지만 근로 환경은 열악하고 진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지원과 지지는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가정의 대안으로서 시설/기관 및 종사자의 지원 방안,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지방 소재 기관의 역량 제고,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 연구, 학업 및 취업 관련 지원 방안, 근로 지원 방안, 건전한 재정관리 지원 방안,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 지원 방안 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5) 전문가 및 종사자 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5명의 학계/현장/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 및 범위에 대한 1차 개방형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가출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 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대체로 가정문제로 집을 나왔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 및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과 관련 정부 부처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 등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2차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제도/환경적 영역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요도 조사에서는 1순위가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2순위가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동기 부여, 3순위가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2)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가 실시된 124개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현장종사자의 90.3%인 11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비슷한 비율로 기존의 가출청소년, 양육거부/유기된 청소년, 가정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 빈곤 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 일시적/영구적 주거취약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57.5%)이나 위탁

가정 청소년(35.5%)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여 아동복지법 우선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종사자에 따라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서비스 중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인관계 훈련, 생활교육, 경제교육, 건강지원, 진로지도 등은 90% 이상의 조사대상 시설/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자립정착금 지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이나 실제 제공하는 시설은 39%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것을 고려할 때 예산부족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현장종사자의 50% 이상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및 서비스, 인력, 예산 등 관련 인프라와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FGI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시설장 6명을 대상으로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와 관련 문제점, 자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거주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열악한 가정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업 중단 비율이 높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립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낮아 취업 관련 기회가 주어져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들이 처한 상황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낮은 자립의지 및 학습 수준, 경제적 열악함, 지원체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에 더하여 열악한 재정, 인력의 부족, 한정된 보호기간 등 지원시설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이 어려운 상황임이

나타났다. 이에 종사자들은 거주지 및 보증금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수준에 맞는 취업 지원,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지원기간의 조정 및 시설 연계 등을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표 Ⅷ-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요약 표

연구방법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선행연구 고찰		- 대다수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문제와 학업중단,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자립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되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고 스스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상태로,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는 건강관리, 금전관리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취업 및 직장생활 역량을 배양하는 일 등 다양한 영역의 준비가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 전 다양한 지원 필요 ▷ 다양한 내용의 통합적 자립지원 필요성 시사
2. 정책현황 분석		- 가정 밖 청소년과 다양한 자립지원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은 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처럼 자산형성사업 및 자립정착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거의 없음. -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전담/총괄 지원할 기관 부재 - 자립지원관련 내용의 지자체 이양이나 매칭펀딩 방식지원으로 지역별 자립지원 편차 발생	▷ 가정 밖 청소년 및 지원내용 법적 근거 마련 ▷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총괄기구 필요 ▷ 자산 형성을 포함한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 ▷ 지역별 자립지원 편차 없는 자립준비 기회 제공
3. 국내외 사례연구		- 국내 자립지원 우수사례로, 보호 종결 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과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사례 검토 - 국외 우수 사례로 영국의 센터포인트(Centrepoint), 미국의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Sasha Bruce Youthwork: SBY), 독일의 오프로드키즈 재단(Off Road Kids Foundation)과 갱웨이(Gangway), 프랑스의 알규 포아예(Foyer les Algues),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Apprentis d'Auteuil)의 사례 검토	▷ 자립준비사정(assessment), 자립계획 수립/평가체계 및 매뉴얼 개발 필요 시사 ▷ 통합적 지원책을 포함한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자립지원 서비스 표준화, 종사자 전문성 확보 필요성 시사 ▷ 다양한 직업훈련 필요
4. 가정밖 청소년 대상 조사	설문 조사	-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평균 15.6세에 처음 가정 밖 생활을 시작하였고 73.2%는 2회 이상, 약 40%는 일 년 이상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함.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는 가족 간 갈등, 가정 폭력이었음. - 40~50% 이상이 과거 경험에 따른 괴로움, 분노조절 어려움, 무기력, 낮은 주의집중, 우울 등을 경험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 가출청소년 인식개선 필요 ▷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 뿐 아니라 가정 밖 생활 사유를 고려한 권리보장차원에서의 자립지원 필요

		재학 중이었으며, 학업중단인 청소년(29.8%) 중 63.4%가 검정고시 준비중임. 심리적 문제와 학업관련하여 성별차이를 보임. -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근로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 비숙련 저임금 근로였고, 일부는 불법/탈법 일자리 및 채무/신용불량 경험있음. - 직업훈련 경험률은 36.5%로 응답자의 43.7%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진로관련 정보 습득과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 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더 받고 싶어함. - 예술/디자인/방송, 이·미용 분야, 요리사/바리스타, 군인/경찰/공무원, 상담/심리/사회복지, 간호사/간호조무사, 교사/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 희망 - 자립의지 관련 항목에 대해 7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나 혼자서 해낼 자신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보임. 성별, 일 경험 여부, 가정 밖 생활 이후 계획에 따라 자립의지에 차이를 보임. - 취업관련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내일이룸학교 등) 경험이 20% 미만이었고, 진로지도 경험은 과반수 정도였으며, 직업훈련 지원(35.8%), 취업정보 제공(32.7%) 등은 다소 낮게 나타남. - 자립관련 서비스 필요성 중 주거지/주거비 지원이 83.0%, 자립정착금 지원이 8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성별과 가정학대 경험 정도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 경험 정도에 차이보임.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와 관련성 보임.	▷ 오랜 가정 밖 생활기간을 고려한 자립지원 방안 필요 ▷ 전문 심리상담 지원 ▷ 학대피해 청소년 치료 지원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 성인지적 지원방안 모색 ▷ 체계적인 금전관리 교육 및 부채대응책 마련 필요 ▷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필요 ▷ 다각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과 지원수준 재고 ▷ 청소년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교육 필요 ▷ 주거지원 우선순위 필요 ▷ 자립정착금, 생활비 등 현금지원의 필요성 재고 ▷ 사회적 역량(기술) 배양 필요 ▷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
	2차 자료 비교 (설문조사 결과)	-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 가정 내 청소년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자존감,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낮음. - 가정 내 청소년보다 근로경험과 직업/진로관련 활동/직업훈련 경험이 더 많았고, 희망교육수준이 낮은 반면 3년 이내 취업계획 비율은 더 높았음. 향후 직업선택 기준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수입은 더 고려한 반면, 직업 안정성과 장래성은 덜 고려하였고, 미래에 희망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은 낮았음.	▷ 심리사회적 지원 필요 ▷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 이른 자립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희망진로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가능 환경/대책 필요 ▷ 가정 밖 청소년의 이른 자립에 대한 인식 재고
	면접 조사	-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양육체계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은 학교나 또래 관계 등 주요 사회과정에서도 이탈하게 됨. - 궁핍한 경제상황으로 일을 하게 되나 근로 환경은 열악하고 진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지원과 지지는 이들이 자립의 기회를 갖는데 중요한 자원이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이해 필요 ▷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지지 필요 ▷ 학업 및 취업관련 지원 방안, 근로지원 방안, 재정관리교육, 지방소재 지원기관의 역량 제고 등 고려

5. 전문가·종사자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 1차 조사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가출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 가정 밖 용어가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에 동의함. 가정문제로 집을 나왔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도 이 용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 제시 -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대,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 및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과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 관련 정부 부처 간 연계 협력의 필요성 등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 해결의 필요성 제시 - 2차 조사(AHP)결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련 1순위 중요영역은 제도/환경, 2순위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배치였으며, 서비스/프로그램 영역 중에서는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 자립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 부여, 자립정착금 지원 순으로 중요도 보임.	▷ 가정 밖 청소년과 범위에 대한 합의/인식 개선 ▷ 관련 부처 연계·협력 필요 ▷ 자립지원 위한 법/제도/환경적 영역 우선순위 필요 ▷ 주거지 및 주거비 우선 지원 필요. 더불어, 심리·정서적 지원 및 자립의지와 동기 부여 강화 필요 ▷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 ▷ 외부자원/연계협력 필요 ▷ 자립전문요원 양성·배치 ▷ 종사자 처우 개선
	현장 종사자 설문 조사	- 가출->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 필요성에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비슷한 비율로 양육거부/유기, 가정 폭력/학대 피해, 빈곤에 따른 가출, 일시/영구적 주거취약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함. 아동양육시설(57.5%)이나 위탁가정 청소년(35.5%)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로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중 자립정착금 지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으나 실제 제공하는 시설은 39.0%에 불과하였음. - 현장종사자의 50%이상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력, 예산 등 관련 인프라와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출->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변경 재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합의 필요 ▷ 예산확충을 통한 자립정착금 지원 필요성 제고 ▷ 관련 제도, 정책과 서비스, 인력, 예산 등에서의 개선과 부처 간 협력 필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종사자 FGI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자립의지 및 학습 수준, 경제적 열악함, 지원체계의 부족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에 더하여 열악한 재정, 인력 부족, 한정된 보호기간 등 지원시설의 한계로 청소년들의 자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남.	▷ 거주지 및 보증금 지원 ▷ 전문 심리상담 지원 ▷ 대상자 수준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 자립지원 인력의 보충 ▷ 지원기간 조정과 시설 연계

2.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기초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그림 Ⅷ-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률적 기반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자립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계획과 수행 시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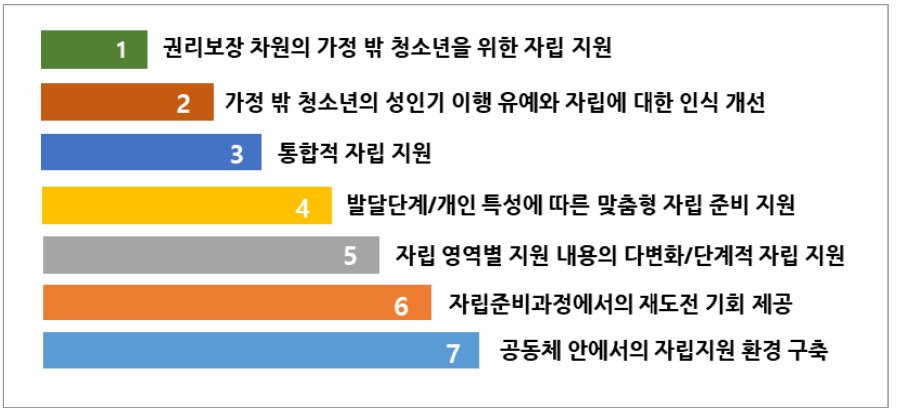


그림 Ⅷ-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1) 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청소년쉼터의 현장종사자와 학계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로의 변경을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주는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낙인감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원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용어 변경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생존과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정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개입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의 생존과 보호에 집중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자립(또는 자립 준비) 지원해야 한다.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일반적인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소년들이 가족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지원 받는 상황에서 가정 밖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자립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가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 자신들이 수혜를 받는 서비스이지만 당초 기획이나 과정·절차 등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었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136]. 즉 가정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임파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부터 현장 실천에까지 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 밖 청소년 권리보장 차원에서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은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가능한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도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그 과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가정의 지원에서 원천적

136) 이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견조사와 정책과제 워크숍(2018.10.16.)에서 제안된 의견을 참조하였다.

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조사결과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청소년들은 가족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장 큰 이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비해 성인기로의 이행을 가족의 지원한도에 따라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신속한 자립보다는 이들이 희망하는 미래와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그 기간 동안의 주거마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등 다른 항목들에서는 모두 80% 넘게 응답했으나 이 시기를 독립하는 시기이거나 자립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73.4%, 74.9%)을 보였다. 또한 2차 자료와의 비교에서 동일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보다 직업/진로관련 활동 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2배 이상 많은 것을 볼 때 이들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더 일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보다 직업선택기준에서 미래 직업의 안정성과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고려가 일반 청소년보다 덜한 반면 경제적 수입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려한다는 조사결과 역시 부모의 지원을 받는 가정 내 청소년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을 고려할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반 청소년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3년 이내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더 많아 상대적으로 더 일찍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에서 한 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에 이끌려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를 찾아가면서 이미 일반적인 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루트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청소년들은 이른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른 자립(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을 요구받게 되면서 본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저숙련, 저임금의 일자리를 우선 갖게 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미래를 계획하며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현장 모두에서 인식전환과 함께 필요한 지원(예,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연장, 청소년이 희망하는 장래성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로 탐색 기회와 충분한 준비기간은 성장·발달단계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가정의 지원을 받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3) 통합적 자립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은 주거지 및 일자리 확보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지원,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이어야 한다. 통합적 지원의 영역으로는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일반생활 및 건강지원,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그림 Ⅶ-2).

본 연구의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센터포인트는 노숙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의 숙식 제공 뿐 아니라 자립을 통한 퇴소준비를 돕기 위해 거주지 확보에서부터 심신건강, 기본 생활기술, 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자립생활 이후 6개월까지 사후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사례 역시 한 개인의 건강한 자립에는 단순히 공간적,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정서적 자립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신체 및 정서지원을 자립지원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거주 지원,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 수당 지원 등을 연계하

여 실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모두 청소년들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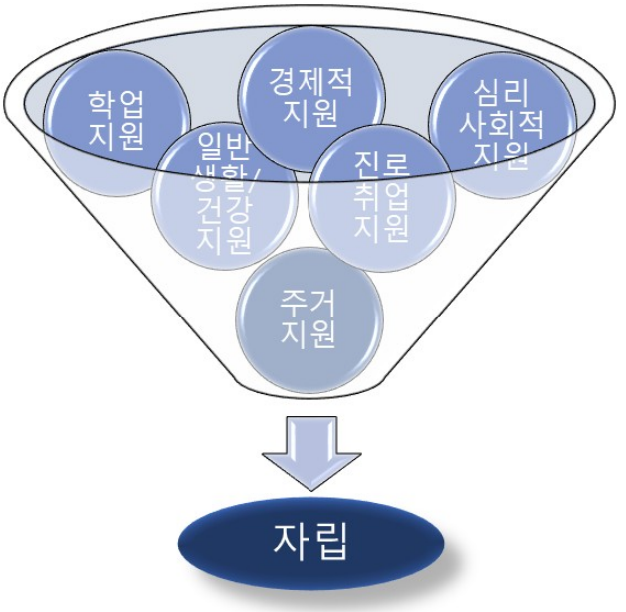


그림 Ⅷ-2.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의 영역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후관리나 전문적인 상담 개입,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이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발달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인구의 다양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연령, 성별, 과거 경험 등에 따라 저마다의 요구 내용이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청소년과 19세 이상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가 다르고 금융거래나 근로활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상황에서의 법적 지위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청소년'을 단일 집단으로 가정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앞서 정책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시설보호 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처럼 발달단계에 따른 장기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 15세 내외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개인과 가족환경(경제적 여건, 가족구성원 등) 등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마치고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이후 장기적인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적성 탐색을 포함한 일상생활기술과 사회적 기술 훈련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좀 더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본격적인 진로탐색과 더불어 필요한 학업 및 직업/취업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재학률이나 검정고시 준비율, 희망교육수준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정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근로현장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있어 성별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립지원 방식에 차이를 보여야 한다. 가정학대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가정 및 학교 등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전문적인 심리·정서치료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준비도 역시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마다 자립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각자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파악을 통해 더 강화시켜야 할 영역과 상대적으로 개입이 덜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한 현장종사자는 경계선지능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특수한 여건의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자립지원단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자립준비를 위해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를 양성하는 바[137], 해당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5) 자립을 위한 영역별 지원 내용의 다변화 및 단계적 자립지원

각 지원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양한 형태를 지닐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원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획일화된 지원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주거 지원 및 진로·취업 지원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주 형태 및 진로·취업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다시 서술하겠으나 획일

137) SBSCNBC(2018. 7. 2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제 3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9449 에서 2018년 10월 24일 인출

적인 기숙사 형태의 주거 지원 외에도 높은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립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적성이나 학력 수준 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진로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단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준비과정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도 행동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정 내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러한 자립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의 지지체계가 약한 만큼 더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도움과 더 오랜 준비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자립은 단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자립의 욕구나 의지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준비가 먼저 지원되어야 하며, 준비 단계에 들어선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해야 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자립 시작 단계의 청소년들은 단계별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자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물리적, 심리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거주지에서 본격적인 자립단계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는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별 거주지로 이주한 경우에라도 사회적 지원이 단번에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청소년들이 자립 후 지역 공동체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립지원 전문가는 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조절해 나가야 한다.

6) 자립준비과정에서의 재도전 기회 제공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열악하여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진로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동기 및 의욕의 저하로 인해 진로 선택이나 취업, 학업 등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 있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사회생활에서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자립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립의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과 자립기회의 박탈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현장종사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 매우 어렵고 실패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립 과정에서의 실패가 성인기 이행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를 보면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자는 현재 참여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지원은 물론, 이후의 취업지원 참여의 기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분노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올바른 근로태도,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취업 지원 과정에서 중도탈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정 내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배제로 이어진다면 이들이 사회 안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편입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질병이나 임신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지원이 유예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한 번의 실패로 재도전의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7)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지원 환경 구축

일반적으로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립이라고 할 때, 심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립'은 성인기의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교류 없이 고립된 삶을 살 수는 없다. 즉 성공적인 자립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의 자립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을 의미하며 이들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지역(또는 시설, 기관 내) 공동체는 필요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거지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지원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제공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자립 지원은 지역과 시설내 공동체 안에서 구축되고 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만 15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의지와 관련된 4가지 조사항목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이 '나는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로 혼자 자립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동체의 도움은 자립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정책과제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의 청소년들이 혼자 힘으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할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는 '보호'이지만 이에 더하여 성인기 이행에 직면하여 가정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립'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에 있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여러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률 개정 및 전담체계 구축 등의 관련 환경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다양한 영역별로 제안하였다. 그림 Ⅶ-3은 이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며 정책영역과 과제들을 정리하면 표 Ⅶ-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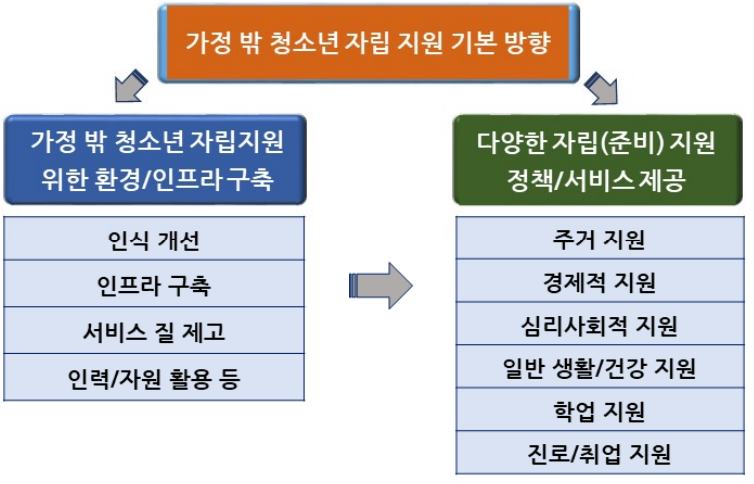


그림 Ⅶ-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구축 및 지원 서비스

표 Ⅷ-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총괄표

구분		세부 정책과제 내용
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정책과제1. 가정 밖 청소년 용어의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2.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정책과제3.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정책과제4. 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정책과제5.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서비스 질 제고	정책과제6.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정책과제7. 자립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인력/자원 활용	정책과제8. 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과제9. 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기타	정책과제10. 지역 편차 없는 자립준비 기회 제공
		정책과제11.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Ⅱ.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정책과제1. 주거지원 우선 확대
		정책과제2. 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
	경제적지원	정책과제3.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과제4. 생활비 및 학비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정책과제5.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정책과제6.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일상생활/건강지원	정책과제7.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정책과제8.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홍보
		정책과제9.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지원 확대
	학업지원	정책과제10.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11.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진로/취업지원	정책과제12. 향후 직업 전망 및 희망 직업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다각화
		정책과제13.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정책과제14.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정책과제15.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정책과제16. 근로 환경 개선
		정책과제17.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정책과제18.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러 제반여건과 환경, 인프라 등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자립지원을 도모한다고 해도,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률적 기반 마련을 포함한 전담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정책 및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기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인력 및 서비스 질 제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수행할 수 없다. 이외에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과 연계, 또 지역별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편차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정 밖 청소년 특유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인식개선	정책과제 Ⅰ-1	가정 밖 청소년 용어의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Ⅰ-2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정책과제 Ⅰ-3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정책과제 Ⅰ-4	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책과제 Ⅰ-5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서비스 질 제고	정책과제 Ⅰ-6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정책과제 Ⅰ-7	자립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인력/자원 활용	정책과제 Ⅰ-8	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과제 Ⅰ-9	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기타	정책과제 Ⅰ-10	지역 편차 없는 자립준비 기회 제공
	정책과제 Ⅰ-11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그림 Ⅷ-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Ⅰ-1 가정 밖 청소년 용어에 대한 합의 및 인식 개선

가족해체와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그리고 청소년의 개인 사유 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명칭이 '가출청소년'인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미 가정 밖 청소년 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외에도 학계와 언론, 정책분야에서 사용 중이나[138],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사안의 적절성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각종 자문회의 등에 참여한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 대부분은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할 때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더 많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일례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지원과 후원 확대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낙인감 해소를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가출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인데 이들을 통칭하여 '가출청소년'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포함해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로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및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문제와 개인 사유로 집을 나온 청소년, 또 이런 이유로 거주지가 취약한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그리고 원가정에서 성장하

138) 그동안 가출청소년관련 일부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변경에 대한 제안 외에도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학술논문이 발간되기도 하였으며(이창훈, 안계원, 김원기, 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역시 소년원 퇴소 후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아동양육시설 청소년과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은 각각 아동복지법과 소년법에 우선 적용되어 이에 해당되는 여러 자립지원을 받고 있어, 이러한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각종 조사에서 학계/현장/법률/정책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광범위하게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정책/실천에서 모두 일관성 있게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법률과 관련 정책 주무부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의미와 정책대상으로서의 제도권에서 사용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표 Ⅶ-3. 가정 밖 청소년 범위(안)

가정 밖 청소년		법률 및 제도적 차원
• 가정 내 폭력, 부모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 집에서 쫓겨나거나 양육거부/유기된 청소년 •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거취약 청소년 • 상기 이유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이용/생활하는 청소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이탈한 청소년 • 상술한 항목에 해당하는 만 9~24세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 아동복지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 청소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 법무부 위탁·운영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생활 청소년		아동복지법과 소년법 우선 적용 대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와 정의를 일반적 차원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그 중 제도적 차원에서는 타 법률(아동복지법, 소년법)에 우선 적용되는 대상이외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표

Ⅶ-3).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와는 별개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유와 상관없이 집을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실태조사들이 보고하듯이 상당수 청소년들이 가정 및 사회 환경의 구조적 피해자로 불가피하게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행시기에 자립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원가정을 통해 받지 못하는 많은 지원을 국가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달리 원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우려를 조명하고, 성인기 이행이라는 중요한 인생전환기에서 일반 청소년과 큰 격차 없이 자립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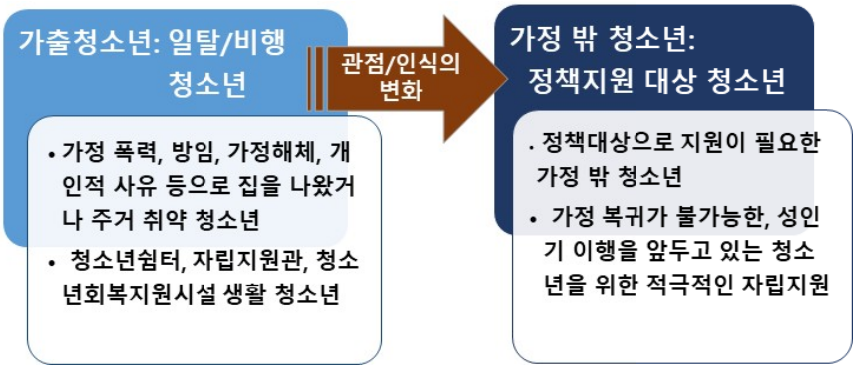


그림 Ⅶ-5. 가출/주거 취약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관점/인식의 변화

정책과제 Ⅰ-2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대체 및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연구의 서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 용어와 관련하여 이 용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25명의 학계/현장/법률 전문가 대상의 AHP 조사결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1순위 영역은 관련 법 정비로 조사되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가출청소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해당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표 Ⅶ-4와 같다. 특히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김지연, 정소연, 2014)에서도 제안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이다.

표 Ⅶ-4.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변경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이하 생략)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이하 생략)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복지법이나 소년법과 같은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보다는 기존 법률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원 대상, 즉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하면 표 Ⅶ-5와 같다.

표 Ⅶ-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제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또는 시행령 내용(안)
"학교 밖 청소년[139]"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9세에서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가정 내 폭력, 부모 학대, 빈곤 등을 피해 집을 나왔거나 이탈한 청소년 나. 부모의 양육거부 또는 유기된 이탈한 청소년 다. 상기 이유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이용/생활하는 청소년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의 보호대상아동으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이탈했거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거취약 청소년

이외에도「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항목이 삭제될 필요가 있다(표 Ⅷ-6)[140]. 이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낙인화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함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은 현장종사자 조사결과에서 강조된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책사업 개발 및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표 Ⅷ-6. 소년법 제 4조 '가출관련 항목' 용어 삭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이하 생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삭제** (이하 생략)

139) 최근에는 청소년폭력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안팎'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예시, 정부합동「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2.)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9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2018.10.24. 인출)

140) 이에 대해서는 김지혜(2013), 김지연, 정소연(2014)의 가출청소년대상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안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도 동일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정책과제 Ⅰ-3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과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설명 중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등으로만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이고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표 Ⅶ-7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또는 해당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선행연구와 정책사례분석에서 파악한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관련 내용, 그리고 청소년 및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결과 등에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표 Ⅶ-7.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시행령 포함 내용 제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자립관련 내용		법과 시행령 등에 추가필요 내용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내용 강화 • 자립역량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용 •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 사후관리체계 • 자립지원전담기구 법적근거 내용 • 자립전담요원 배치 및 교육 •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자산형성과 자립정착금에 대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의 해당 조항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제3조 제2항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생활 중인 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가출청소년 용어 대체 및 범위 확대 시)을 아래 표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표 Ⅷ-8.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포함 예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포함 예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생활 중인 청소년** **5.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이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141].

141) 본 연구 과제의 정책과제 워크숍(2018.10.16.)에서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2017.1.24.)에도 제시된 바 있다.

정책과제 Ⅰ-4 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전담 지원할 총괄적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복잡하고(가족관계,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준비에 매우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개인 및 해당 시설과의 원활한 연계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연결과 사후관리까지를 고려할 때,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안정적으로 자립이 될 때까지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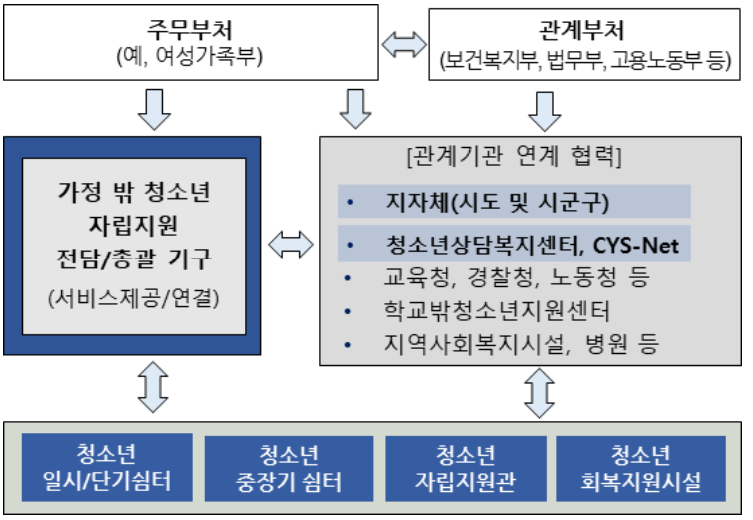


그림 Ⅶ-6.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예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즉 이용 및 생활 시설 간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으로 조율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여성가족부 내에서 유사 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새로운 예산 및 인력투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총괄기구가 설치된다고 해도 실제 전국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다양한 지원사업, 거점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더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이유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의 보호 및 자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표 Ⅶ-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총괄 조직 역할(예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총괄 조직 역할
• 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시설과 CYS-Net,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자립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 개별 개별 및 자립(준비) 계획 평가 • 표준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평가 • 자립전담직원,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데이터 베이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연계(병원,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시설 등) 체계 구축 및 적극 연계·활용 • 청소년개별적인 자립단계/수준 평가/모니터링 및 이후 사례관리 제공 • 각 지역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전담 조직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주: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의 지원업무(보건복지부, 2018a: 213-214)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사업단의 역할(여성가족부, 2018: 534) 내용 일부 참조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역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해당 기구의 설치와 운영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될 경우 현재 조항인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6항)외에 자립지원과 관련된 보다 상세

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총괄)기구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Ⅷ-9와 같다.

정책과제 Ⅰ-5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뿐 아니라 다양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을 통한 규모 추정과 이들의 현재 생활실태, 그리고 필요 지원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성가족부에서 학업 중단 등을 이유로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16년에 노숙인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탈한 경우도 많아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두 조사를 참조하여 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경우 이용 및 생활시설 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등을 구분하여 노숙의 원인과 사회복지 서비스,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경제활동 실태, 주거 현황, 노숙 생활 중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어(이태진 외, 2016)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바,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 역시 관련 법률인 「청소년복지 지원법」[142]에 포함시켜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 2항에 청소년의 의식 · 태도 ·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가정 밖'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Ⅰ-6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설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시스템이 아닌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시설이나 종사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청소년 자립시설인 센터포인트에서는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에 중앙경영단을 두고 각 지역의 지점들에 대한 시설 점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기금 모금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청소년쉼터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협회는 각 개별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거의 없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청소년쉼터 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개별 쉼터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나 쉼터의 편차를 최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소년쉼터는 국내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공공성과 책임성이 다소 낮으며 지역이나 개별 쉼터 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매뉴얼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제안한 것처럼(정책과제 Ⅰ-5: 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자립지원 서비스관련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각 시설별 서비스 운영의 관리·감독을 관장할 중앙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유관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정책과제 Ⅰ-7 자립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평가가 필수적이다. 국내외 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사업에서는 자립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일례로 국내의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 사업에서는 자립생활의 주요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욕구 및 강점·자원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청소년들에게 저마다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세우도록 하며 매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의 달성 정도와 청소년의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개입과 관리·감독수준 및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청소년 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 계획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립 계약서(C.A.A.)라는 개인별 자립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 당사자인 청소년 뿐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 민관 기관들의 종사자가 총체적으로 연계되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개인별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과정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족한 영역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는 종사자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립 진행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단계별 수정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자립의지를 더욱 촉진한다.

특히 보다 엄밀하게 자립지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 사업에서도 자립생활의 주요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욕구 및 강점·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청소년 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 계획

및 준비 정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케이시 생활기술 평가(Casey Life Skills Assessment)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평가하고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심사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서도 개개인의 자립정도와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립 단계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자립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개인별 자립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자립 및 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과제 Ⅰ-8 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종사자 처우 개선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대상 AHP분석결과에서 전문인력 배치 및 충원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중요 영역 중 3번째의 우선순위를 보이기도 하였다. 전문성 확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영역의 전문화이다.

체계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장 종사자들은 복합적이고 어려움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 정부는 종사자 훈련 및 기술 지원센터를 운영,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에서 설치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이처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한 명의 종사자에게 자립의 모든 영역을 모두 전담시키는 것은 업무의 과중화를 불러일으키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자립지원 종사자들이 각자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한 명의 종사자가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지원하기 보다는 상담자, 건강지원 전담자, 진로지도 전담자 등으로 각 영역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Ⅶ-7. 효과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분야 개선사항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서 자립전담 종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자립지원요원이 배치되고 있으나 종사자 한 명이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지원 정책 안에서 한 명의 자립요원이 모든 영역을 전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개입에 있어서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전담 전문가 및 영역별 지원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립전담 전문가는 전반적인 자립 과정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영역별 전문가는 심리상담 전문가, 진로지도 전문가, 생활지원 전문가 등 고유한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분업화 및 전문화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의 처우개선에

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내용 역시 전문가 대상 AHP분석결과에서 관련 법 정비 및 정책개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현재 종사자의 낮은 처우 수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종사자 처우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종사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은 지속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력충원 등에 있어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종사자 3명->4명 충원배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업무과중과 낮은 처우 수준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Ⅰ-9 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자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발굴에서부터 정착까지 장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세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한두 명의 종사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지원의 모든 과정과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 질 좋은 자원들과의 긴밀한 연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자립지원센터인 센터포인트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발굴 및 아웃리치는 스트리트링크라는 단체에서, 두 기관 간 대상자 연계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기부물품들을 조달받고 있다.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협력

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자립지원기관은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연계를 필수적으로 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일상생활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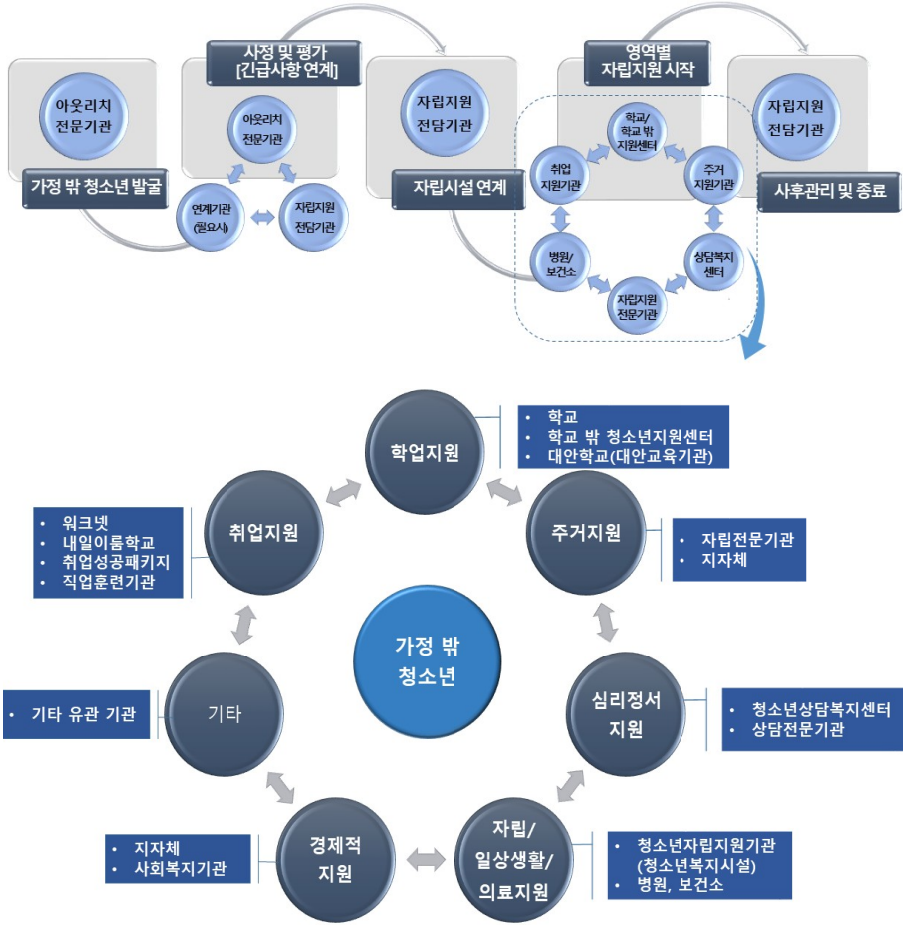


그림 Ⅷ-8.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지원과정에 따른 기관 간 연계 및 역할(예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구조·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해당 청소년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의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도록 하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원 기관들의 연계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로 아웃리치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발굴은 일시쉼터 등에서 담당하고, 학업·진로·취업 훈련, 심리상담 지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시설에서는 일상생활훈련과 자립계획수립 지원, 각 기관과의 연계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Ⅶ-8).

정책과제 Ⅰ-10 지역 편차 없는 자립준비 기회 제공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거주인들은 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방, 특히 그중에서도 중소도시 미 농산어촌 소재 시설과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진로 모색, 취업 활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방 거주 청소년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복지지원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관 및 시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쇄를 유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인프라를 갖추고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대상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차이는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책 현황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되듯이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지원 사업이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방에 이양되면서 지자체간 자립정착금에 차이를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통한 국비지원의 확대로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거주 지역에 따른 편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제 Ⅰ-11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사회화 과정 밖의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곧 학생이며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외에 가정 밖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정이나 학교 내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성인기 이후 이들에 대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 안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향후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서비스 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자립지원의 방향성과 환경 구축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 선행 또는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자립지원관련 세부 정책과제 및 서비스들을 제안하였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시되는 주거 지원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생활 및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취업 지원의 6개 영역으로 본 연구의 정책분석 및 국내외 우수사례, 청소년과 전문가 대상의 각종 조사결과와 자문회의, 정책개발 워크숍에서의 논의 사항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주거 지원	정책과제 II-1	주거지원 우선 확대
	정책과제 II-2	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
경제적 지원	정책과제 II-3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과제 II-4	생활비 및 학비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정책과제 II-5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정책과제 II-6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생활 및 건강 지원	정책과제 II-7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정책과제 II-8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홍보
	정책과제 II-9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지원 확대
학업 지원	정책과제 II-10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II-11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진로/취업 지원	정책과제 II-12	향후 직업 전망 및 희망 직업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다각화
	정책과제 II-13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정책과제 II-14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정책과제 II-15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정책과제 II-16	근로 환경 개선
	정책과제 II-17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정책과제 II-18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그림 Ⅶ-9.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별 정책 과제

정책과제 II-1 주거지원 우선 확대

청소년 자립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주거 공간의 확보이다. 본 연구의 가정 밖 청소년들 역시 자립지원 서비스로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성인들의 경제적 자립조차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물며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없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경우 자립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 대상 주거지원에 가정 밖 청소년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립에 대한 욕구 및 준비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보증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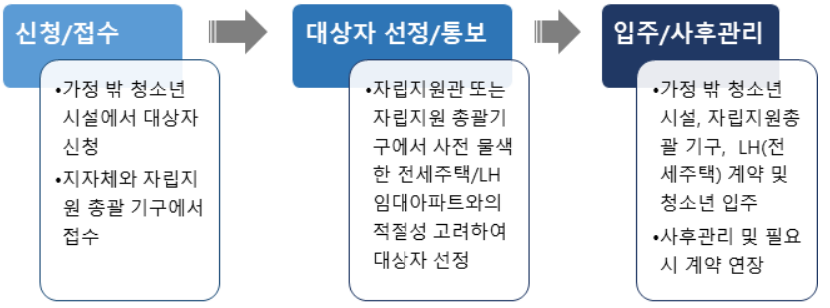


그림 Ⅷ-10. 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절차(안)[143]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주거취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한국토

143)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절차(보건복지부, 2018a: 224-225) 일부 참조

지주택공사(LH공사) 연계 전세주택, 다가구 입주 지원 등 사회적 주택 공급체계를 활용한 적극 지원을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 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한 청소년자립지원관 뿐 아니라 가정과 같은 형태에서 보다 자율적인 자립준비가 가능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거주지 지원 정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주택과 영구임대 지원 등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2 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대부분 2인1실 이상의 기숙사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일괄적인 형태의 숙소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하게 되었고 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중에는 기숙사 형태의 생활관 운영이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청년기인 만 19~24세의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기 이행 시기로(최근에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나) 독립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본격적인 자립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지자체 등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 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이 중 일부를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 공간 마련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 통합되어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책과제 II-3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본 연구의 정책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차원에서 지원하는 현금 지원은 거의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유사한 상황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가장 큰 서비스 격차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자립을 위한 기초 자산 형성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지원(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통장)과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지원의 필요성은 본 연구의 여러 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7%로 주거 지원(83.0%)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도 자산형성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생활비와 용돈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AHP)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항목(복합적 우선순위 기준)으로 '주거마련·주거비 지원'과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동기부여'의 뒤를 이어 자립정착금 지원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종사자들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도 자립정착금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이나 실제 제공하는 시설은 39.0%에 불과했는데 이는 자립정착금이나 주거지·주거비 지원이 매우 필요함에도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기관차원에서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들도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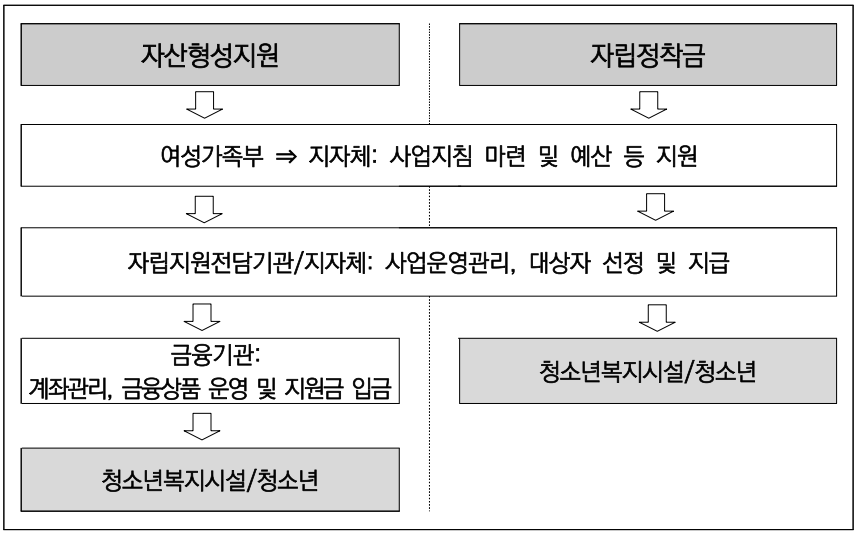
그림 Ⅶ-1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정부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연령이 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중기, 후기 청소년기라고 할 때 실제 적립기간이 길지 않아 자립 시 활용할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작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소년과 정부 각각 적립하는 매칭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 이양되어 지급되는 관계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지자체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은 보호 종료 2년간 월 30만원씩의 현금으로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예정이다[144].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립지원수당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금지원을 고려한다고 할 때,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앞서 [정책과제 Ⅰ-3.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서 논의한 것처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현금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Ⅶ-12]를 참고해 볼

144) 연합뉴스(2018. 8. 28). [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6/0200000000AKR20180826059700002.HTML?input=1195m(2018.10.22.)

수 있다. 이때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과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소년 자산형성지원사업단'(가칭)이 설립되어 전담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사업의 디딤씨앗통장 전달체계 참조(보건복지부, 2018a: 243).

그림 Ⅷ-1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전달체계(안)

정책과제 Ⅱ-4 생활비 및 학비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용과 학비를 포함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복비나 휴대폰 요금 등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쉽게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당장의 생활비 조달을 위해 저임금·저숙련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진로계획

및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년배 청소년들 수준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역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을 통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거나 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기관을 통해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식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절치 못하게 생활비를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으나 가능한 청소년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학비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에 진학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비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 76.3%의 청소년들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질적 조사 결과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 국가 장학금 등을 통해 학비를 해결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어 학비와 생활비 모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력 취득은 이후 성인기 자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빈곤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개인별 상황에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어 교재 · 도서 구매비, 온라인학습 · 학원 · 문화체험비, 중식 ·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헤럴드 경제, 2018.10.17.)[145]. 일부 가정 밖 청소년 중 이 수당에 해당되는 청소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사 결과(고졸미만 학업중단자 약 30%), 이에

145) 헤럴드경제 (2018.10.17.).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 기본 수당 지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170005 90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비·생활비 지원은 초중고생에 한정되어 있는 바, 가정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을 위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증(청소년카드)을 이용한 바우처 제공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통한 학업·취업·건강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7a), 가정 밖 청소년들 역시 필요한 사용처에 청소년증을 활용하게 하고 이들의 주요 사용처를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교통, 문화시설 이용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통장 개설 등의 금융거래와 대학입시와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7a: 91).

정책과제 II-5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일반적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담 및 정서 지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정서적 불안정이 심한 청소년이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 및 만족도가 높았고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은 우울·불안·자살충동 등 정서적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종사자들보다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146]. 이들이 심리치료를 통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이고 전문적

146) 정신적 문제와 관련하여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이 병행될 수 있다.

개입이 요구되므로 필요시 전문가와의 상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이들과의 연계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경력을 쌓아온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들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상담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조사와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의 현장종사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안정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AHP분석결과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립지원 서비스로 나타남), 이를 전제로 한 자립의지와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또한 자립의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기술),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하였다.

정책과제 II-6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즉 청소년이라면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안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비행청소년, 주의해야 할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하자

면 가정이 제 역할을 강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할 때에는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피해 및 학대 경험을 통한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와 개입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은 장기간에 걸쳐 심리·정서적으로 이들을 괴롭힘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 중 학대 및 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규모와 상태 등을 정확히 규명하고 심리적 개입을 비롯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II-7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경제교육 및 자금관리 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74%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경제 교육 및 관련 정보(저축관리, 충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규모 있는 살림'을 하는 것은 개인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통장관리 등을 포함한 재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규모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관리 및 저축·대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경제적 자립준비에 필수적인 항목이

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관 및 시설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모범적인 프로그램 및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고려해볼만 하다.

정책과제 II-8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 홍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명 '핸드폰 내구제'[147]나 고금리가 적용되는 소액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 빚으로 남아 경제적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로써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액 대출의 경우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채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건전한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핸드폰 내구제나 소액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조정 창구는 돈을 빌린 청소년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상대해야 하는 불법대출업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금융거래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인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불법대출이 아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은행의 설립 및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지원과

147) '내구제'란 단어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핸드폰 내구제'란 휴대전화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참조 기사: YTN [수도권] 청년 파고드는 '작업대출' 무엇이 문제인가?(2018. 10. 22)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21028506987(2018.10.25.인출)

더불어 청소년들이 소액이라도 대출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대출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앞서 언급한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II-9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지원 확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불안정한 거주지와 끼니 해결, 위생 문제 등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실제로 임신 및 여성과 질환과 관련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이들의 기초 건강 및 영양상태 검진,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료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한 전문가는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질병/임신 등을 고려한 one-stop 건강검진/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지원은 이들의 자립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시설/기관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한 현장종사자는 의견조사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비 지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시설/기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148]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8) 정책과제 워크숍에서 한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정책과제 II-10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학업 수행 능력의 부족, 규율 및 통제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성적, 교사의 지원 부재는 이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학교 교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특히 학교 내 또래관계에서 가정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배려와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를 비롯한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출석하는 학교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 연수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인근 지역의 학교를 못 다니고 장거리 통학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하면서, 지역 내 시설-학교 간 협력을 넘어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정책과제 II-11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현재 쉼터를 비롯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업 지도는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학생 개인 수준별 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수준별 지도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업 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부가적 기능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업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만큼 학업 지도 방법이 미숙하거나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파악 부족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전에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지원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지도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의 질적 제고는 비단 학업지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시설 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12 향후 직업 전망 및 희망 직업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내용 다각화

진로·취업 지원 역시 청소년의 학력과 인지적 수준을 포함하는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수준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아프런티스 오토이 재단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2015년 기준 72개의 기술자격증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교육으로서의 훈련과정에서 지원하는 분야로는 농업·원예, 건축, 전기전자, 요식업, 산업·기계, 그래픽, 인적 서비스업, 판매·회계·관리·IT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밖 가정 밖 청소년들 대상 직업 훈련은 몇 가지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면접조사에서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관심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직업의 취업 전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으로 예술/디자인/방송계통, 이·미용 분야, 요리사/바리스타, 군인/경찰/공무원, 상담/심리/사회복지 분야, 간호사/간

호조무사, 학교교사/보육교사 등 매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준비시키기에 한계가 많다.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미용 관련 기술 등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흔히 제공되는 편이지만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직업들, 특히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전망이 있는 직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발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고용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는, 또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을 발굴하고 발굴된 직업 관련 체험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취업 훈련 및 경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13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학업 중단 및 고졸의 학력이 많고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극히 적다. 고졸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면접조사 참여자 중에는 취업 의지는 분명하지만, 취업 관련 정보 부족으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에 맞는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학력에 구애받

지 않고 자신의 특성과 재능을 반영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훈련과정 및 일자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청소년들이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진로·취업 지원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과제 II-14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성인지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센 직종이 대부분으로 남자 청소년이 선호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나마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 등 보다 좀 더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뛰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자 청소년들의 적법한 근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성 인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는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지자체 및 미혼모생활시설 및 관련지원시설에 연계하여 자녀가 있는 청소년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책과제 II-15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쉼터를 비롯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및 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체험 활동의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진로에 비전과 동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실습 방식의 교육에 대해 선호도가 높고 효과성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해당 직업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업무 방법 및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연령·성별·학력 등 청소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강의에서부터 체험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근로현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의 최신 업무 내용과 방식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16 근로 환경 개선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 청소년들은 연령적 한계와 취약한 경제 상황, 경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로현장에 뛰어들다 보니 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불리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청소년 근로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근로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기준을 잘 준수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해 친화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17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청소년 대상 근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하는 근로관련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로 청소년으로서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부분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로와 관련한 올바른 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둘째, 청소년 대상 근로윤리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종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훈련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경우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실성이나 예절이 부족하여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근로윤리를 함께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등 근로 현장에서 이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잘 준수한 청소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근로윤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II-18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의 생계급여 지원은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그러나 생계 급여 지급이 이들의 취업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책상황 하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이 근로나 취업훈련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나

수당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근로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고 급여에 의지하여 생활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취업 대신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의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보다 취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생활비가 들기도 하고 취업 상황 하에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수입액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와 동일하다면 힘들여 일하거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소년들에게 기초수급액 감액이나 중단 시점에 유예기간을 두어 일을 통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 급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중복수혜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 지급이 어렵다면 취업장려금 등의 명목을 통해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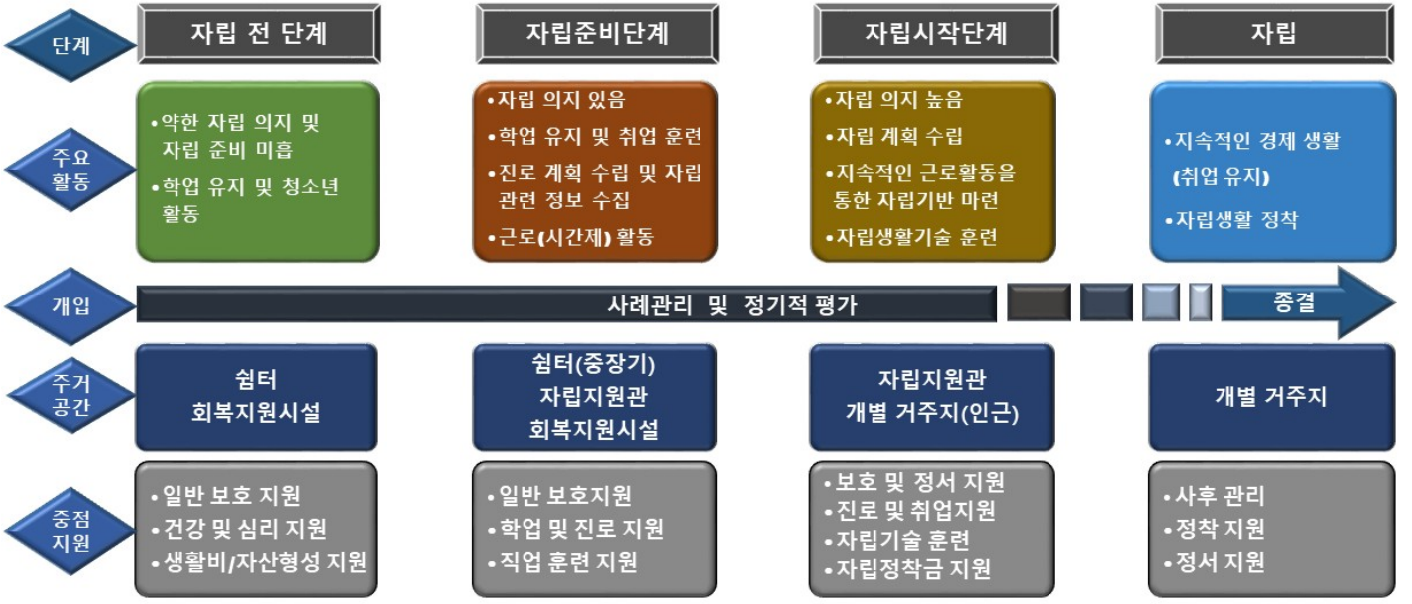
3) 자립지원 정책 추진 체계 및 자립지원 로드맵

이렇게 제안된 세부 정책과제들의 추진기간과 추진체계는 표 Ⅶ-10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그림 Ⅶ-13은 전반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로드맵이다.

표 Ⅶ-1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추진 총괄표

영역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추진체계
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합의 및 인식개선	단기~중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범부처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인프라 구축	2.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단기	여성가족부, 국회, 법무부
		3.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범부처
		4. 자립지원 전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서비스 질 제고	6.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7. 자립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인력/자원 활용	8. 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종사자 처우 개선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9. 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단기	여성가족부, 관련부처,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기타	10. 지역 편차 없는 고른 자립준비 기회 제공	중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11. 가정 밖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중기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				
Ⅳ. 자립지원 영역별 세부 정책/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1. 주거지원 우선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2. 만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제적 지원	3.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영역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추진체계
		4. 생활비 및 학비 지원	중기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심리 사회적 지원	5.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자립의지 고양	단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6.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	단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청, 일선 학교, 현장 전문가 집단
	생활/ 건강 지원	7.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단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8.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 홍보	단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9.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 지원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학업 지원	10.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현장 전문가 집단
		11.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단기	여성가족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진로/ 취업 지원	12. 향후 직업 전망 및 희망 직업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다각화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집단
		13.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집단
		14.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단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
		15.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집단
		16. 근로 환경 개선	중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17.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18.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	중장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출처: 김지연, 백혜정(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p.74)의 그림을 수정·보완하였음.

그림 Ⅷ-1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로드맵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현아 (2010). 시설 퇴소청소년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115-179.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관계부처합동 (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관계부처합동 (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에서 2018년 7월 5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교육부 (2017). **201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나남.

국민권익위원회 (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3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4077&currPageNo=4&confId=29&conConfId=29&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

OARD_NUM+DESC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상임위원회 결정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2월 6일 인출.

국회예산정책처 (2016). **아동복지사업 평가-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평가 16-09(통권 361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8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김남욱 (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기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미라 (2008).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방향 모색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희 (2008). **양육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비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규, 서정은 (2015). 청소년의 통합여가행위중독 다차원 개입전략 정책연구. **여가학연구, 13**(3), 29-49.

김석향, 정익중, 김미주, 오은찬 (2017).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9**(1), 137-164.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예성, 이경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8-32.

김옥선, 권정언 (2015). AHP를 이용한 교육기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성과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1-19.

김용길, 조윤오, 백혜정, 서보람, 정정숙 (2011).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서울: 여성가족부.

김은녕 (2014). **쉼터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녀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5- 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2013).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법상 가출 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23**, 35-60.

김형주, 김정주, 김혁진 (201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17-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박금식, 손주영, 박지영 (2017).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명신, 한상훈, 윤종찬 (2016). AHP기법을 이용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정책 중요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3), 499-508.
박은선 (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
백혜영, 강현아 (2016), 가출청소년 정책 분석: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을 적용한 청소년쉼터 정책 분석. **교정복지연구, 43**, 33-65.
백혜정, 김승경, 박세경, 정경은 (2016).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b).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a).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신연희 (2013).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 길버트와 테렐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교정담론, 7**(2), 225-256.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prism.go.kr/homepage/lately/retrieveLatelyDetail.do?research_i

d=1382000-201500067에서 2018년 2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6).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a).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b).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c). 청소년쉼터 주간 행사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186에서 2018년 10월 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7d).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GErw90k+eKbIQZ+StaEFR5Tk.mogef11?mid=plc502&bbtSn=704744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오수생, 변상해 (2012).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연구-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2), 195-205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서울: 여성가족부.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개요 보고서**(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 의식과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1**(1), 181-207.
이진숙, 전효정 (2010). 산출분석을 이용한 보육정책 분석 -길버트, 스펙트, 테렐

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8**, 765-794.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훈, 안계원, 김원기 (2017).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3**(4), 1-14.

이태진, 김태완, 김문길, 김현경, 정원오, 주영수, 임정기, 송아영, 이기재, 임덕영, 우선희, 정희선, 김선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2014).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 106~111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전경숙, 이의정(2012).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미숙, 김형모 (2017). 쉼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임파워먼트를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231-253.

전민경 (2016). **경기도 가출청소년의 지지체계 실태 및 자원방안**.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문진 (2011).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출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문진,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정은주, 한정은 (2014). 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3), 183-212.

정익중, 장혜림 (2015). **요보호아동 사회적응과정과 빈곤예방대책 연구**. 청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종원, 김정호 (2014). AHP(계층분석)법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1**(3), 167-195.

조규필 (2016).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2). 273-310.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천종호 (2013).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 부산법조 제 30호. 부산: 부산지방변호사회.

최은숙, 이태연 (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IV: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한국소년보호협회 (2017a). 한국소년보호협회 소개(내부자료).

한국소년보호협회 (2017b). **2017년 희망드림 페스티벌 사례보고대회 발표집**.

한국소년보호협회 (2018). 한국소년보호협회 소개(내부자료).

한국아동복지협회 (2018).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2016). **자립체험 지원단계 업무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 기술 개발**. 경기도: 미래창조과학부.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ronson, P. (2008). Breaking barriers or locked out? class-based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41-54.

Ben-Ami, N., & Baker, A. J. (2012). The long-term correlates of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alienation on adult self-sufficiency and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169-183

Bengtson, V., Biblarz, T., & Roberts, R. (2002). *How families still matter : A longitudinal study of two gener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97). The forms of capital. In: Halsey A.H., Lauder H., Brown P., Wells A.M (Eds), editors.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6-58.

Centrepoint (2018). Research report: 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wil l it work for young people」 https://centrepoint.org.uk/media/2511/th e-homelessness-reduction-act-will-it-work-for-young-people.pdf 에서 2018년 10월 30일 인출

Delon, A. (2007). Les droits de l'enfant et la justice des mineurs. *In Journal du droit des jeunes*, 264(2007/4), 8-15.

Dovona-Ope, D. R. (2008). A rationale for employing mixed methods design in doctoral research about femal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econdary schools in Papua New Guinea. *International Journal of Pedagogies and Learning*, 4(2), 59-67.

Furstenberg, F. (2008). The intersection of social clas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New Directions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1-10.

Gilbert, N. & Terrell, P. (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Boston: Allyn & Bacon.

Gilbert, N. & Terrell, P. (2007). 사회복지 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남찬섭, 유태균 역. 서울: 나눔의집.

Kadushin, A. & Martin, J. A. (1988). *child welfare services*(4th ed)

Kins, E. & Beyers, W. (2010). Failure to launch, failure to achieve Criteria for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5). 743-777.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luccio, A. N., Krieger, R., Pine, B. A. (1990).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Washington, DC.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C. R.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binowitz, J. (1992).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6*(1), 87-97.

Reifman, A., Arnett, J.J., & Colwell, M.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1). 1-22 https://jyd.pitt.edu/ojs/jyd/article/download/359/345에서 2018년 4월 10일 인출.

Saaty, T. L. (1986). Axiomatic found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2*(7), 841-855.

Saaty, T. L. & Vargas, L. G. (1998). Diagnosis with dependent symptoms: Bayes theorem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Operations Research, 46*(4), 491-502.

Settersten, R. & Ray, B. (2010). What's going on with young people today? The long and twisting path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 19-41.

Strauss, A. & Cobin, J.(1990). The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ed.). Sage. 김수진, 신경림 역(1996).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In J. T. Mortimer (Eds),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11-24.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CA: Sage Publication.

Warrener, C., Koivunen, J. M., & Postmus, J. L. (2013). Economic self-sufficiency among divorced women: impact of depression, abuse, and efficac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 163-175.

[보도자료]

교육부 (2017.12.22) 정부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9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10월 24일 인출.

교육부 (2018.8.31).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173&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7&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10월 24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기호일보 (2018.1.24). 정착금 300만원 보금자리 마련도 빠듯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4365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나눔일보 (2017.3.21). 권미혁의원, 가출 청소년 '그만'가정 밖 청소년으로...잠재적 범죄자 취급'우범소년'삭제. http://www.nanumilbo.com/ sub_read.html?uid=12824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매일경제 (2018.3.9).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근로기준법 위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55762에서 2018년 10월 9일 인출.

매일경제 (2018.5.30.). 자치단체 첫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광주에 문 연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42090에서 2018년 11월 15일 인출.

세계일보 (2017.1.24). 인권위,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부를

것 권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24003505에서 2018년 1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8.8.27.). 보도자료: 2019 여성가족부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849에서 2018년 10월 10일 인출.
연합뉴스 (2017.1.24).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인권위 용어 개정 권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KR201 70124167400004.HTML?input=1195m에서 2018년 1월 29일 인출
연합뉴스 (2018.8.28). [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6/0200000000AKR20180826059700002.HTML?input=1195m에서 20018년 10월 22일 인출.
울산매일 (2017.11.27). 가출청소년 모두가 비행청소년은 아닙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226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중앙일보 (2017.10.30). 가출위기청소년, 관심 갖고 보면 일반 청소년과 다를 것 없죠. http://news.joins.com/article/22062778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청년일보 (2017.11.6.).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급증…"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8 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한겨레 (2017.10.26). 18살 가출 청소년의 서글픈 독백 “난 쓸 데가 없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6164.html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한겨레 (2017.11.5). 청소년 고용업소 87%가 근로기준법 위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09974.html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헤럴드경제 (2018.10.17).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 기본 수당 지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17000590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SBSCNBC (2018.7.2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제 3기 경계선 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9449에서 2018년 10월 24일 인출.

YTN (2018.10.22). [수도권] 청년 파고드는 '작업대출' 무엇이 문제인가?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21028506987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법령자료]

「건강가정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월 29일 인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1월 12일 인출.

「근로기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9월 13일 인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2월 9일 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소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2월 9일 인출.

「아동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0월 18일 인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월 22일 인출.
「청소년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월 22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월 23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0월 18일 인출.

[홈페이지 자료]

1. 국내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board?menuId=MENU00633&siteId=null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04_pr/news/news_view.jsp?sno=44438.0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 홈페이지」
http://adongbokji.or.kr/jarip/contents/sub0201_2.html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통계청 사회조사(2010). 사회조사표」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에서 검색 후
http://kosis.kr/upsHtml/online/downSrvcFile.do?PUBCODE=KN&FILE_NAME=/KN/KN05.zip&SEQ=613에서 2018년 5월 25일 다운로드.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kjpa.or.kr/sub.asp?cate1=2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http://kjpa.or.kr/sub.asp?cate1=2&cate2=4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YES센터 홈페이지」 http://yescenter2014.org/에서 2018년 6월 8일 인출.

2. 국외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4/6/contents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https://www.acf.hhs.gov/fysb/ resource/rhy-act에서 2018년 1월 25일/ 5월 8일 인출.
「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2017」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13/contents/enacted에서 2018년 5월 9일 인출.
「가족 및 청소년 지원국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fysb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갱웨이 홈페이지」 http://gangway.de/en/ selbstdarstellung/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근로 청소년 포아예 사이트」
http://annuaire.action-sociale.org/etablisse ments/readaptation-sociale/foyer-de-jeunes-travailleurs-non-transforme-en-residence-sociale-257.html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독일청소년연구소 통계자료」
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2017/Strassenjugendliche_Endbericht.pdf에서 2018년 5월 30일 인출.
「독일 청소년정책 영문 소개 사이트」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germany/에서 2018

년 5월 11일 인출.
「사샤 부르스 청소년사업 홈페이지」
http://www.sashabruce.org/에서 2018년 5월 9일 인출.
「센터포인트 홈페이지」 https://centrepoint.org.uk/에서 2018년 4월 27일 인출.
「아프런티스오토이재단 홈페이지」
https://www.apprentis-auteuil.org/adolescent-ou-jeune-adulte.html에서 2018년 6월 4일 인출.
「안내포인트·아동청소년 들어주기 홈페이지」
http://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 familles-enfance/lieux-d-accueil-et-d-ecoute-des-jeunes/article/points-accueil-et-ecoute-jeunes-paej에서 2018년 6월 3일/4일 인출.
「알규 포아예 홈페이지」
http://foyer-les-algues.pagesperso-orange.fr/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영국정부 홈페이지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UK. (2017). Fair chance fund evaluation: interim repor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ir-chance-fund-evaluation-interim-reports에서 2018년 1월 25일 인출.
「오프 로드 키즈 재단」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https://offroadkids.de/information/english-description/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오프 로드 키즈 재단」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https://offroadkids.de/information/kurz-buendig/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오프로드키즈 2017년 통계자료」
https://offroadkids.de/fileadmin/ork/PDFs/Jahresstatistik-Streetwork_2017.pdf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지역사회 임무 보건프로그램 사이트」
https://www.mission-locale.fr/sante/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직업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 사이트」
https://www.aljt.com/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청소년권리」저널(2002년 6월호, 216호)
https://www.cairn.info/revue-journal-du-droit-des-jeunes-2002-6-page-27.htm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청소년을 위한 보장 법령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12/23/ETSD1629714D/jo에서 2018년 5월 27일 인출.
「청소년의 집 홈페이지」
http://www.anmda.fr/nc/les-mda/la-carte-de-france/에서 2018년 6월 3일/4일 인출.
「청소년정책 홈페이지」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germany/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프랑스 가족수당센터의 사이트」
http://www.caf.fr/allocataires/caf-de- paris/actualites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 내 법령 'La loi du 4 juilliet 200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 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22631&categorieLien=id 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 내'주거권'에 대한 법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159413& categorieLien=cid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프랑스 사회연대 보건부 통계자료」
http://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
「프랑스 사회연대·보건부 사이트 내 '기초단체 청소년수당 대책법안'」
http://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open-data/aide-

et-action-sociale/les-fonds-d-aide-sociale-decentralises-faj-fsl/article/le-fonds-d-aide-aux-jeunes-faj에서 2018년 5월20일 인출.
「프랑스 정부의 자립 계약서」
http://www.ville.gouv.fr/IMG/ pdf/dossier_presse_contrats_d_autonomie_Vfinale.pdf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프랑스 주거연대기금 사이트」
https://www.paris.fr/aidesaulogement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플렉스 개방학교 홈페이지」
https://www.flex-fernschule.de/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청소년 포야예 사이트」
http://www.jeunes.gouv.fr/interministeriel/logement-et-transports/trouver-un-logement/article/foyers-de-jeunes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청소년복지 정보 독일 사이트」
https://www.jugendaemter.com/jugendaemter-in-deutschland/에서 2018년 5월 25일 인출.

[기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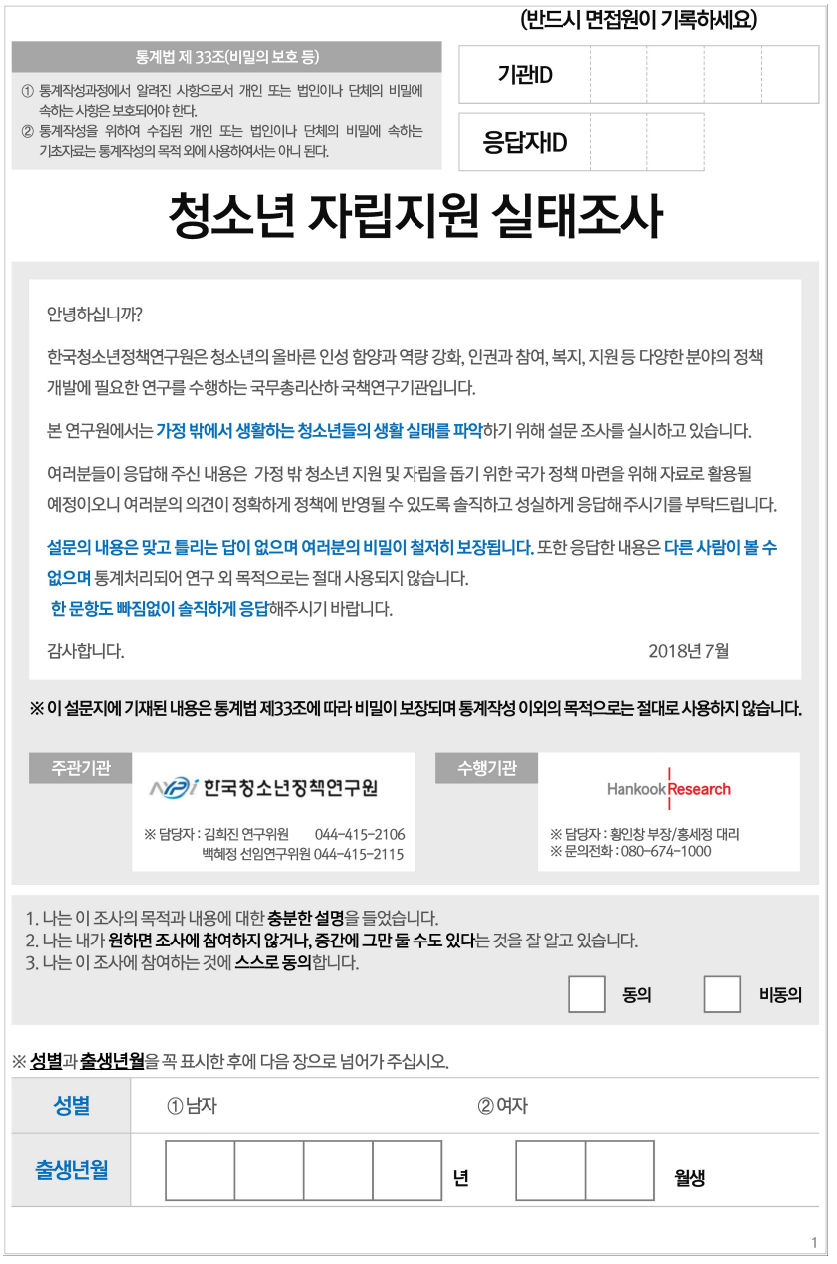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위한 Excel calculator와 양군 블로그 설명자료. http://yjhyjh.egloos.com/366791에서 2018년 8월 20일 검색.
Analytic Hierarchy Process 활용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검색 엔진 및 구글 검색. https://www.jstor.org/, https://www.ebsco.com/, https://scholar.google.co.kr/에서 '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2018. 9. 20 검색
Collins English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에서 2018년 2월 9일 인출.

부 록

부록

1. 가정 밖 청소년용 조사지
2. 현장 종사자용 조사지

1. 가정 밖 청소년용 조사지



(반드시 면접원이 기록하세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ID

응답자ID

청소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을 위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며** 통계처리되어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15

수행기관 Hankook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과 **출생년월**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년월	☐☐☐☐ 년 ☐☐ 월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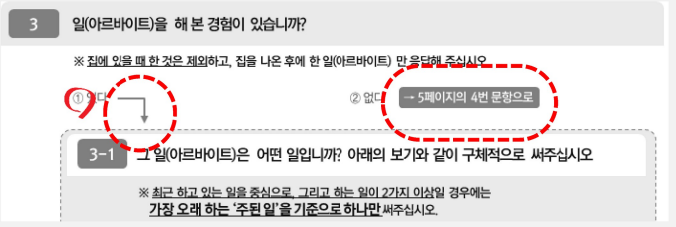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해주십시오.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해주십시오.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십시오.**
단, 다른 항목을 잘 살펴보고,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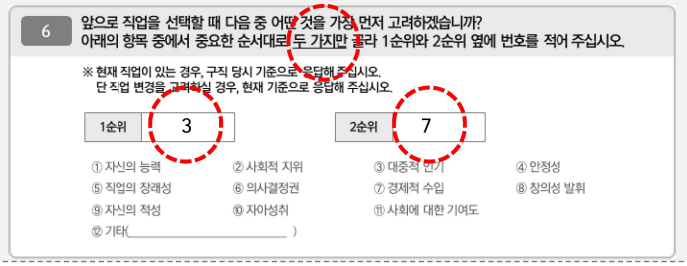


03 선택한 항목 뒤에 '화살표'나 '음영이 있는 화살표'가 있는 문항 에서는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합니다.





04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질문에 **'모두'** 또는 **'두가지만'** 등이 있는 문항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Ⅰ. 학업 관련 현황 및 계획

1 귀하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졸업 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닌 경우는 아래에서 '② 학교를 그만두었음'을 선택하십시오

① 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

1-1 현재 어느 학교 몇 학년입니까?

① 중학교 _____ 학년
② 고등학교 _____ 학년
③ 대학교 _____ 학년
④ 기타(_____)

→ 2번으로

② 학교를 그만두었다(자퇴, 유예 등) →

1-2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중퇴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중퇴
⑤ 고등학교 졸업 ⑥ (전문)대학교 중퇴
⑦ 전문대학 졸업 ⑧ 대학교 졸업

1-3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치를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번으로

1-4 어느 수준의 검정고시를 치를 계획이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②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③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2번으로

2 귀하께서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2~3년제) ③ 대졸(4년제) ④ 대학원 이상(석. 박사)

Ⅱ. 아르바이트 및 취업 경험

3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집에 있을 때 한 것은 제외하고, 집을 나온 후에 한 일(아르바이트) 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5페이지의 4번 문항으로

3-1 그 일(아르바이트)은 어떤 일입니까? 아래의 보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 최근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쓰되, 하는 일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오래 하는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하나만 써주십시오.

보기

커피숍에서 음료 만들기/서빙, 편의점 판매, 네일 아트, 택배회사 상하차, 카센터 자동차 수리, 마트 화장품 판매 등

주된 일을 한가지만 써주세요 : (_____)

3-2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일)
②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파견, 용역 등 대개 2년 미만의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일)

3-3 그 일(아르바이트)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생활비(용돈 포함)를 벌기 위해서
② 학비를 벌기 위해서
③ 유흥비가 부족해서
④ 호기심에
⑤ 주위의 권유로
⑥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⑦ 기타 (_____)

3-4 그 일(아르바이트)을 한 경험이 귀하의 현재 또는 미래에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될 것이다 → 3-5번 문항으로
② 도움이 안될 것이다

3-4-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③ 보수가 나빠서
④ 단순한 일이어서
⑤ 기타 (_____)

3-5 일자리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①	②	③	④
2) 보수가(돈이) 적어서	①	②	③	④
3) 학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4) 직장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5)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6)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7) 적성을 잘 몰라서	①	②	③	④
8) 건강이 나빠서	①	②	③	④
9) 취업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10)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3-6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6-1**

② 없다 → 4번 문항으로

3-6-1 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주소지(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② 연락처가 없어서
③ 집을 나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에
④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⑤ 외모(옷차림, 문신, 염색 등 포함) 때문에
⑥ 기타(_____)

4 귀하께서는 보기와 같은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보기

- 미성년자인데 PC방, 유흥업소 등 미성년자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한 경우,
- 법에 어긋나거나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월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현재 귀하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부	금액
1)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① 빚이 있다 →	액수 : (_____ **만** 원)
	② 없다	
2)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① 저축을 한다 →	저축금액 : (_____ **만** 원)
	② 하지 않는다	
3)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Ⅲ. 진로준비 관련 실태

6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아래의 항목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1순위와 2순위 옆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구직 당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직업 변경을 고려하실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신의 능력 ② 사회적 지위 ③ 대중적 인기 ④ 안정성
⑤ 직업의 장래성 ⑥ 의사결정권 ⑦ 경제적 수입 ⑧ 창의성 발휘
⑨ 자신의 적성 ⑩ 자아성취 ⑪ 사회에 대한 기여도
⑫ 기타(_____)

7 최근 1년 동안 직업/진로 관련 활동* 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직업/진로 관련 활동이란?
직업체험, 진로 탐색 등을 위한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청소년진로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산업체, 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직업/진로 관련 활동

① 있다 → **7-1**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③ 도움이 된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없다 → 8번 문항으로

8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8-1**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취업·창업을 위해
② 더 나은 직무 수행을 위해(일을 더 잘하기 위해)
③ 경력 개발을 위해
④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⑤ 기타(_____)

→ 응답 후 9번 문항으로

② 없다 → **8-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일)와 관련된 훈련이 없어서
③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해서
⑤ 기타(_____)

→ 응답 후 9번 문항으로

9 다음의 각 항목들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의 흥미나 성격,적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① 상급 학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가업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 ⑦ 기타 (_____)

⑧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11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① 정하였다 → ② 정하지 않았다 → 12번 문항으로

11-1 귀하께서 정하신 장래 희망 직업을 하나만 아래에 기록해 주십시오.

장래희망직업 _____

Ⅳ.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12 귀하께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2) 불안정한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5) 독립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6) 자립하는(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7)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8)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9)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13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아래 항목 중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⓪ 없다"에 표시해 주십시오.

	없다	있다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1) 취업성공 패키지	⓪	①	②	③	④
2)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⓪	①	②	③	④
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자립지원 (취업 관련 훈련비 등의 지원)	⓪	①	②	③	④
4) 내일배움카드제도 (훈련 관련 계좌 발급 및 훈련비 제공)	⓪	①	②	③	④
5)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도제식 교육훈련)	⓪	①	②	③	④
6) 기타 정부 지원 직업 훈련(학원 수강)	⓪	①	②	③	④
7) 기타 정부 외(후원자, 시설) 지원 직업 훈련 (학원 수강)	⓪	①	②	③	④
8) 기타 (_____)	⓪	①	②	③	④

14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5 귀하께서는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없다	있다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⓪	①	②	③	④
2)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⓪	①	②	③	④
3) 대인관계 훈련(예절교육, 인간관계 기술 등)	⓪	①	②	③	④
4) 경제 교육(저축 관리, 충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⓪	①	②	③	④
5)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⓪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자원(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교육	⓪	①	②	③	④
7)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⓪	①	②	③	④
8)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⓪	①	②	③	④
9)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복학, 검정고시 등)	⓪	①	②	③	④
10) 학비 지원(등록금, 교재비 등)	⓪	①	②	③	④
11)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⓪	①	②	③	④
12) 직업훈련 지원(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⓪	①	②	③	④
13) 취업준비 지원 (구직전략 수립, 면접 준비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⓪	①	②	③	④
14) 취업정보 제공	⓪	①	②	③	④
15) 취업 후 사후 관리(직장 내 어려움 상담, 이직 고민 등)	⓪	①	②	③	④
16) 기타 (_____)	⓪	①	②	③	④

16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서비스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일반 심리·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2)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①	②	③	④
3) 대인관계 훈련(예절교육, 인간관계 기술 등)	①	②	③	④
4) 경제 교육(저축 관리, 충동구매 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5) 생활 교육(살림 및 음식하기, 청소, 세탁 등)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자원(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교육	①	②	③	④
7)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①	②	③	④
8)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①	②	③	④
9) 자립정착금 지원	①	②	③	④
10)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복학, 검정고시 등)	①	②	③	④
11) 학비 지원(등록금, 교재비 등)	①	②	③	④
12)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①	②	③	④
13) 직업훈련 지원(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14) 취업준비 지원 (구직전략 수립, 면접 준비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①	②	③	④
15) 취업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16) 취업 후 사후 관리(직장 내 어려움 상담, 이직 고민 등)	①	②	③	④
17)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V. 가정 밖 생활의 동기 및 실태

17 집* 에서 쫓겨나거나 가출, 쉼터나 시설* 생활로 인해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회 정도인가요? (반드시 횟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이 문항에서 '집'에는 양육시설, 공동가정(그룹홈), 위탁가정도 포함됩니다.
※ 이 문항에서 '시설'이란 쉼터, 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 회복센터)을 의미합니다.

① 이번이 처음이다 ② 2~3회 ③ 4~5회 ④ 6~9회 ⑤ 10회 이상

18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 학교 및 기관 행사, 여행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허락 아래 있었던 일,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학교 입소 등으로 집을 떠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 ][ ] 세

19 집 밖에서 생활한 기간은 모두 합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집 밖 생활 도중 집에 다시 들어가서 생활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 집 밖에서 일주일(7일), 집에 들어가서 3일, 다시 나와서 20일 정도 생활했다면
집 밖 생활은 총 27일(7일 + 20일, 집에 들어간 3일은 제외)이 되어 ② 일주일 이상~한 달 미만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1주일 미만 ② 1주일 이상 ~ 한달 미만 ③ 한달 이상 ~ 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 1 년 미만 ⑥ 1 년 이상

20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첫번째 이유 [ ] 두번째 이유 [ ]

①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② 부모님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경제적 어려움)
④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⑤ 왕따 등 학교폭력 때문에
⑥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⑦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⑧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⑨ 기타 (_____)

21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센터 등)
② 친·인척집
③ (집 밖 생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집
④ (집 밖 생활 후에 알게 된) 친구, 선·후배집
⑤ 고시원, 모텔, 원룸 등
⑥ 노숙(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⑦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학교
⑧ 24시간 상점 (PC방, 찜질방, 코인노래방 등)
⑨ 기타 (_____)

22 집을 나와서 도움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한 번도 없다	이용한 적이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생활형 청소년쉼터	⓪	①	②	③	④
2) 버스형 청소년쉼터	⓪	①	②	③	④
3) 청소년자립지원관	⓪	①	②	③	④
4) 청소년회복시설(청소년회복센터)	⓪	①	②	③	④
5) 청소년전화 1388	⓪	①	②	③	④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⓪	①	②	③	④
7) 학교(Wee 클래스 포함)	⓪	①	②	③	④
8) 경찰서	⓪	①	②	③	④
9) 기타(_____)	⓪	①	②	③	④

23 가출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팸은 집을 나와서 알게 된 친구, 선후배들과 찜질방, 원룸, 거리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24 이번에 집을 나온 후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자립이란 집에서 독립하여 내가 번 돈으로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②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립할 것이다
③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갈 것이다
④ 특별한 계획이 없다

Ⅵ. 사회적 지지체계

25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함께 살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래 각 가족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가족이 없는 경우는 "⓪ 해당사항 없다"에 표시해 주십시오.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에 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거나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5) 기타'에 적고 관계를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3) 형제자매	⓪	①	②	③	④
4)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⓪	①	②	③	④
5) 기타 (_____)	⓪	①	②	③	④

26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4)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의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	①	②	③	④

27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다	믿고 의지하는 편이다	매우 믿고 의지한다
1) 부모님 (보호자)	①	②	③	④
2) 형제, 자매	①	②	③	④
3)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4) 보호시설 선생님	①	②	③	④
5)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Ⅶ. 자신에 대한 생각

28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느낀 적이 없다
② 한 두 번 경험했다 ③ 가끔 경험했다 ④ 자주 경험했다

29 최근 3개월 동안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폭력,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가족과의 갈등, 공부나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화를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이 재미없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5) 공부나 오래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6)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7)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8)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0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1) 진로·진학 문세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불화	①	②	③	④
3)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4) 향후 거취(생활) 문제	①	②	③	④
5) 가정 밖(가출 등에 따른) 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①	②	③	④
6)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31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32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중간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3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함께 하는 일)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성품(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배경변인

배문1 귀하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2 귀하가 집을 나오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답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현장 종사자용 조사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면접원이 기록하세요)

기관ID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현장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를 부탁드림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여러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고유 연구과제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장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 결과는 통계처리되어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희진 연구위원 044-415-2106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15

수행기관 Hankook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기관 및 종사자 일반 현황

시설 및 종사자 정보

1. 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산어촌

2. 귀하가 현재와 같은 청소년 복지시설/기관에서 근무한 지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년 _____개월

3. 현재 시설/기관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시설장 ② 팀장급 또는 선임 실무자

4.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

가정 밖 용어 변경/범위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기존의 가출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용어가 아닌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용어 변경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실천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2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

1-1 용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_____

_____

2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는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대상의 청소년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가정 밖 청소년 범위 포함 가능 대상	포함여부	
	예	아니오
1) 가출청소년	①	②
2) 친구 권유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청소년	①	②
3) 집에서 쫓겨나거나 양육거부 또는 유기(遺棄)된 청소년	①	②
4) 가정 내 폭력, 부모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①	②
5) 빈곤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을 나온 청소년	①	②
6)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①	②
7) 양육시설(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이탈한 청소년	①	②
8) 친인척, 조부모, 일반가정에 위탁된 위탁가정 보호 청소년	①	②
9)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①	②
10)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가정의 부재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①	②
11) 가정이 없어진(부모의 교도소 수감, 사망 등으로) 청소년	①	②
12)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만 24세 미만 청소년	①	②
13) 소년원 출원 후 법무부 청소년자립생활관 또는 예스센터 등 직업훈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①	②
14)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는 주거 취약 청소년	①	②
15) 기타(_____)	①	②

3 현재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 만9세~24세 청소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연령으로 이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축소해야 한다(___세 ~ ___세) ②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③ 확대해야 한다(___세 ~ ___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필요 정도

4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또한,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제공여부		필요정도			
		예	아니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심리 사회 지원	1) 전문 심리·상담 지원(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2) 자립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동기 부여(응원/도움, 멘토링)	①	②	①	②	③	④
	3) 대인관계 훈련(예절교육, 인간관계 기술 등)	①	②	①	②	③	④
	4) 자조집단(또래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①	②	③	④
일상 생활 지원	5) 경제 교육(금전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전·월세계약서 작성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①	②	③	④
	6) 생활 교육(개인위생, 정리정돈, 시간관리, 살림 및 요리, 청소, 세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지역사회 자원(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활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건강 지원	8)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치료, 중독치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경제 및 주거 지원	9) 생활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10) 자립정착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11)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 지원(전·월세 보증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학업 지원	12) 학업 및 학력 취득 지원(복학, 검정고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3) 초·중·고 학비 지원(등록금, 교재비, 교복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4) 대학진학 지원(진학지도 및 등록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진로/ 취업 지원	15)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6) 직업훈련 지원(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7) 취업준비 지원(구직 전략 수집, 면접 준비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8)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19) 취업 후 사후 관리(직장 내 어려움 상담, 이직 고민 등)	①	②	①	②	③	④
기타	20) 시민교육(사회규범 교육, 권리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1) 청소년대상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2) 법률지원(법률전문가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23) 기타 ( )	①	②	①	②	③	④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제점

5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 4번 문항 보기와 같이 다양한 내용의 자립준비 및 관련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제도적 요인	1) 예산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2) 일관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담당부처의 다원화로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인프라 (시설 및 인적) 요인	4) 기관 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5)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6) 자립준비 및 실습기관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7) 기관 및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8)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접근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9) 자립전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①	②	③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요인	11) 표준화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자립지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3) 취업지원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4) 시설퇴소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개인적 요인	15) 청소년의 자립의지나 동기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6) 청소년의 자립역량(사회적 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7) 청소년들이 자립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환경적 요인	18)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기관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기타	20) 기타 ( )	①	②	③	④

6 자립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Out-of-family Youths and Independence Support Policies

Given that youths (including runaways) who, for various reasons, live outside family care cannot receive support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during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this study aims to derive multilateral support plans for them to become independent members of society. Accordingly, we defined what out-of-family youths are, considering that a change in terminology from "runaway youths" to "out-of-family youths" has been requested by academics, various disciplin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offset the negative image of the name, "runaways." Thus, the scope of out-of-family youths was somewhat expanded and, by identifying the status and independence support requirements of housing-vulnerable youths (such as runaways and the homeless), and youths in halfway houses who become independent while facing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without their original family's support,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for their independence support.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 survey of expert opinions,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arget out-of-family youths,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field workers,

expert consultations and expert workshops. First, in the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of youths living outside family care were analyzed. Moreover, the status of polici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support was reviewed, and exemplary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re examined. By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youths, their living, education, part-time job conditions, career plan, and the content and needs of independence support were investigated. For some survey questions (including career plans), a comparison with secondary data targeting ordinary youths was perform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were derived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 with family, will to pursue studies, work experience, savings, loans, the satisfaction of job education/training programs, perception on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and the support and preparation needed for independence. Furthermor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xpert opinions, the importance of the policy/environmental domain to the independence support of out-of-family youths was highlighted. The need for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motivation and independence support funding were highlighted regarding residential spaces, housing expense support, and independ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f the definition of out-of-family youths and

the revision of laws; second, providing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f the youths is needed; third, policy tasks are needed related to environment construction; and finally, specific policy tasks related to housing, financial, psychological/social, daily life/health, study, and employment supports are needed.

Keywords: out-of-family youths, runaway youths, independence support, youth shelters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김기헌·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헌·김인규

18-R24 청소년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헌·김태성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헌·이윤주·최정원·유설희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헌·하형석·유민상·조성호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 · 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이 영 란 (순천향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연구원)

◈ 자 문 진 ◈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김 기 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회장)
김 미 숙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민 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사무국장)
김 범 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장)
남 미 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방 은 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서 진 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신 혜 령 (前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단장)
유 수 천 (샬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시설장)
이 현 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교수)
전 경 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교수)

연구보고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87-5 94330
979-11-5654-186-8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4330
9 791156 541875
ISBN 979-11-5654-187-5
ISBN 979-11-5654-186-8 (세트)